



신흥국의 세정연구 | 베트남

신흥국의 세정연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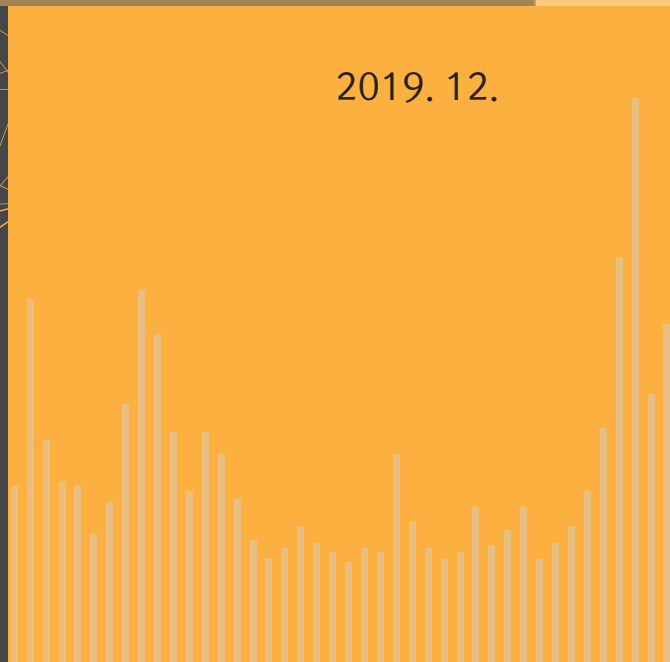
신흥국의 세정연구

베트남



— 베트남 —

2019. 12.



www.kipf.re.kr



신흥국의 세정연구

베트남

2019. 12.

• 연구진:

딜로이트 베트남 Bui Tuan Minh(Tax Partner & Korean Service Group Leader)

딜로이트 베트남 손원식(Korean Service Group Director)

딜로이트 베트남 김선준(Korean Service Group Associate Director)

국세청 김일국(국제협력담당관실)

• 책임의 면제(Disclaimer):

각 국가의 세정은 그 국가의 사회·경제 상황의 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잦은 개정이 이루어지므로 가장 최신의 내용을 담기에는 한계가 있어 이 보고서는 각 국의 세정을 이해하는 데에 최소한의 길라잡이 역할을 수행합니다. 따라서 각 국가의 최신 세정을 포함한 보다 구체적이며 정확한 내용은 법령·과세관청의 홈페이지 등을 참고하거나 관련 전문가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보고서의 내용은 저자들의 개인적인 의견이며, 한국조세재정연구원과 국세청, 딜로이트 베트남의 공식적인 견해와 무관합니다.

목 차

제1장 베트남 개요	3
I. 경제 및 사회적 배경.....	3
1. 일반 사항.....	3
2. 사회환경.....	3
3. 정치, 정부 및 법적인 시스템.....	4
4. 경제환경.....	4
II. 베트남 조세체계 소개.....	11
1. 베트남 조세체계 개요.....	11
2. 베트남에 적용되는 세목.....	13
3. 관련 행정체계.....	13
4. 조세절차.....	14
5. 세무조사/감사, 관세조사/감사.....	29
제2장 베트남의 세법	45
I. 개인소득세.....	45
1. 현행 법령.....	45
2. 납세의무자.....	46
3. 과세소득.....	47
4. 비과세 소득.....	48
5. 과세기간.....	49
6. 소득공제.....	50
7. 개인소득세 계산.....	52
8. 개인소득세 신고 절차 및 서류.....	58
9. 사회보험, 의료보험 및 퇴직금.....	61

II. 법인세(법인소득세).....	63
1. 현행 법령.....	63
2. 납세의무자.....	64
3. 법인세 과세기간	64
4. 법인세 계산 방법.....	65
5. 법인세 인센티브.....	76
6. 지분 양도소득.....	81
7. 증권 양도소득.....	83
8. 부동산 양도소득.....	84
9. 법인의 구조조정.....	86
10. 모국으로 이익 송금.....	87
11. 법인세 신고 및 납부.....	88
III. 특수관계자거래.....	89
1. 현행 법령.....	89
2. 적용범위.....	89
3. 주요 개념.....	91
4. 특수관계자거래가격 산출방법.....	96
5. 비교 가능성 분석.....	97
6. 특수관계자거래가격/이익률 조정 근거.....	98
7. 특수관계자거래 가격결정에 관한 규정을 위반한 경우.....	100
8. 기타 규정.....	100
IV. 부가가치세.....	104
1. 현행 법령.....	104
2. 적용범위.....	105
3. 납세의무자(납세자).....	108
4. 부가가치세 산출 시기.....	108

목 차

5.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세금 산출 기준	109
6. 부가가치세액의 산정 방법	114
7. 부가가치세 환급	118
8. 세금계산서(e-invoice)	120
9. 부가가치세 신고	128
V. 외국인계약자세	130
1. 현행 법률	130
2. 적용범위	130
3. 조세 부과대상	132
4. 외국인계약자세 산출방법	132
5. 이중과세방지협정	135
6. 외국인계약자세 신고, 납부 절차	136
VI. 베트남과 한국 간의 이중과세방지협정	137
1. 현행 법령	137
2. 적용 범위	137
3. 거주자	137
4. 베트남 내 협정 적용의 원칙	138
5. 한국여권 소유자의 베트남 영토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과세 여부 분류	139
6. 고정사업장(Permanent Establishment)	142
7. 협정 적용 절차	142
VII. 관세법	145
1. 과세대상	145
2. 납세의무자	145
3. 세금 산출(과세방법)	146
4. 관세 신고, 납부	152

5. 면제, 감면, 환급 및 세액추징	153
6. 보호무역, 반덤핑, 반보조금, 반차별을 위한 관세조치	156
7. 수출전용기업(EPE)	157
8. 수출안전관리 우수업체(AEO) 제도	157
9. 수출입 관리	158
VIII. 기타 세금	161
1. 특별소비세	161
2. 천연자원세	168
3. 비농업용 토지세	173
4. 환경보호세	178
5. 등록세	181
6. 영업세	182
제3장 한국 투자자의 주요 세무 이슈	187
I. 베트남 외국투자자의 사업 유형별 세무 관련 유의사항	187
1. 베트남 외국투자자의 사업 유형	187
2. 베트남에서 설립된 법인의 (회계적)독립지점과 부속지점 간의 세금에 관한 유의사항	190
II. 사업 유형별 세무 이슈	191
1. 건설 및 부동산업 기업의 경우	191
2. 가공, 제조업 기업의 경우	193
3. 특수관계자거래	197

목 차

제4장 베트남 진출확대 방안.....	201
1. 수출 및 투자진출 유의사항.....	201
2. 법인 설립 및 개인 등록 절차 및 유의사항.....	206
참고문헌.....	217
부록 1: 사례 연구.....	219
부록 2 : Useful websites.....	228

제1장 베트남 개요

- I. 경제 및 사회적 배경
- II. 베트남 조세체계 소개

제1장 | 베트남 개요

I 경제 및 사회적 배경

1. 일반 사항

베트남은 동남아의 중앙지역에 위치하며 북쪽으로 중국, 서쪽으로 라오스, 캄보디아와 접경해 있다. 2019년 8월 기준으로 베트남 인구는 약 9,750만명이며 세계 15위 규모이다. 젊고 풍부한 인구 구조는 경제 발전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강력하고 잠재적인 노동력을 제공한다.

중앙계획경제에서 시장경제로 전환하기 위해 주창한 개혁(‘도이모이’) 정책을 수행한 지 30년 이상의 기간 동안 베트남은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국가에서 중·저소득 국가로 성장했으며 수많은 성과를 달성해 왔다. 국제화 상황에서 베트남은 다양한 부문, 특히 경제 및 사회적 측면에서 활발하게 발전하고 있다. 베트남의 최근 노력은 국제기구, 자유무역협정 등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기업을 위한 법률 및 정책의 개선으로 나타나고 있다.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외국인 직접투자(FDI)는 베트남이 매력적인 투자 시장임을 보여준다.

2. 사회환경

2019년 10월 현재 베트남 인구는 9,674만 4,183명(World meters 자료 기준)으로 세계 전체 인구의 1.25%를 차지하며 세계순위 15위이다. 또한 베트남의 인구밀도는 311명/km²이며 거의 70%가 15~54세 범위에 있으며, 기대수명은 76세로 세계순위 55위이다.

베트남은 의심할 여지없이 풍부한 노동력을 가진 국가로 근로 연령대의 인구가 총인구의 절반을 차지한다. 다만 외국어, 기술, 관리 및 기타 기능 부족이 베트남 노동력의 주요 한계로 꼽히기도 한다. 이 때문에 수많은 대기업들은 환경 발전에 발맞추고 내부 운영관리 능력을 확보하기 위해 핵심인력의 경우 외국인을 채용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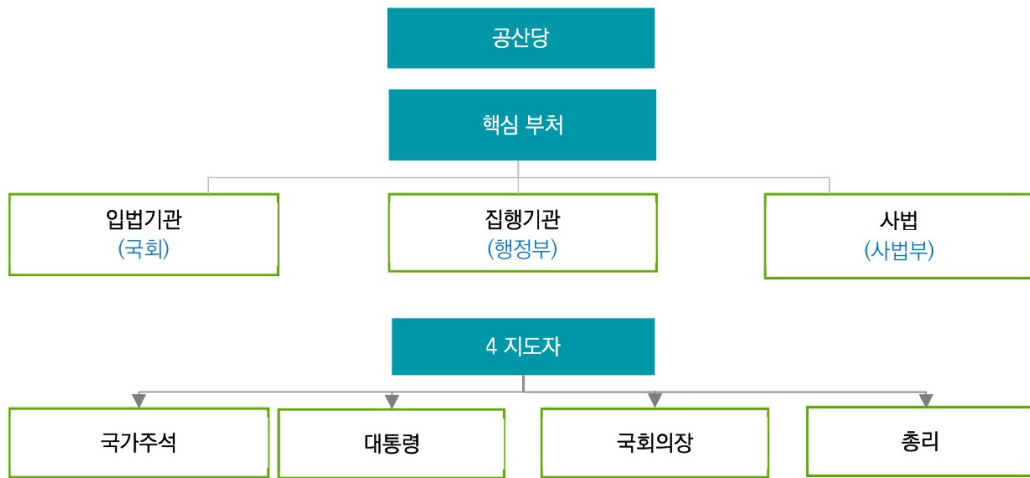
베트남의 1인당 평균 임금은 월 320만VND(약 USD150) 수준이며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해

지역 간에 상대적인 차이가 있다. 게다가 베트남에서의 생활비는 아시아의 다른 나라들에 비해 여전히 낮은 수준이다.

3. 정치, 정부 및 법적인 시스템

베트남은 사회적, 정치적 환경 측면에서 안정적인 국가로 여겨진다. 베트남사회주의공화국은 중국, 북한, 쿠바 및 라오스와 함께 세계에 남아있는 5개의 단일 공산당 국가 중 하나이다.

[그림 I-1] 베트남 정부 구조



베트남 정부는 입법, 행정, 사법부가 있는 ‘권력 분립’ 구조형태이다. 국회는 행정부에 의해 제출된 법률을 규제하는 헌법을 제정한다. 한편 사법부는 국내에서 적용법 해석의 확실성을 보장한다.

4. 경제환경

가. 경제규모

베트남은 강력한 경제성장을 이루고 있으며 1990년부터 1인당 평균 GDP 성장률이 6.4%로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성장하는 국가 중에 하나이다. 글로벌 환경의 위기와 불확실성에도 불구하고 베트남의 2018년 GDP는 7.08% 증가하여 계속 성장할 것으로 보이며 베트남 경제도 계속 성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중앙계획경제에서 시장경제로 전환하였고 젊고 풍부한

노동력을 가진 9,700만명의 인구는 최근에 소득이 계속 증가되고 있으며 해외기업들에 점점 더 매력적으로 다가오고 있다.

베트남 통계청에 따르면 2017년과 2018년 국내 총생산(GDP)이 6.81%, 2008년 이후 최고인 7.08%씩 증가했다. 한편 2019년 소비자물가지수(CPI)는 2019년 8월 112.92에서 113.28로 상승폭이 잘 관리됐다¹⁾. 예상을 상회하는 성장은 외국인직접투자(FDI)의 강한 유입, 노동 생산성 증가, 농업 등 기타 녹색산업에 대한 적절한 집중 등 다양한 이유에서 비롯된다.

위의 지표를 바탕으로 베트남 경제가 자체적인 방식과 속도로 호황을 누리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성장 속도를 설명하고 베트남 투자를 위해 고려할 폭넓은 주요 성장 동력은 아래와 같다.

- 동남아시아의 중앙에 위치하여 무역과 문화교류에 유리
- 디지털에 능숙한 인력, 발전하고 있는 기업가 정신, 새로운 아이디어에 대한 개방성을 갖춘 젊고 활기찬 국가
- 이웃국가에 비해 경쟁력이 높은 생산비용
- 북미, 유럽, 아시아의 주요 선진 시장과의 자유무역협정(FTA)
- 안정적인 사회정치 환경 및 외국투자자에게 매력적인 경제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정부의 지원
- 2016~2018년 기간 동안 6~7%의 높은 GDP 성장률 기록

나. 산업구조

베트남의 경제구조는 농업, 임업, 어업의 비율을 감소시키면서 산업, 건설, 서비스 부문의 비율을 증가시키는 방향으로 계속 긍정적으로 변화해 왔다. 2018년 기준으로 농·임·어업 부문은 국내 총생산(GDP)의 15%를 차지했고 산업, 건설 부문이 34%, 서비스 부문이 41%에 달했다. 상품 및 용역에 대한 순세금에서 보조금을 뺀 금액은 10%에 달했다.

경제구조 변화는 경제부문 간뿐만 아니라 산업 내에서도 이루어지고 있으며 향후 경제성장을 촉진할 것으로 예상된다. 농업 부문은 농작물 구조가 저부가가치에서 고부가가치로 변화하고 있으며 수산물 생산과 양식은 가공 및 수출에 중요한 상품에 집중하고 있다. 산업부문은 고부가가치 및 수출상품 중심으로 전환될 것으로 예상되며 생산 및 가공산업은 계속적으

1) General Statistics Office in Vietnam(2019). Consumer price index, gold and USD price indexes, September 2019. Available at: https://www.gso.gov.vn/default_en.aspx?tabid=625&ItemID=19366. (Accessed: 28 October 2019)

로 2019년의 산업 성장의 중요한 원동력이 될 것으로 보인다.

각 산업에서의 상당한 조정이 본질적으로 또는 부분적으로 첨단 기술을 적용하여 이루어지고 있다. 최근 몇 년간 베트남 정부는 토지, 조세 등 여러 형식의 혜택을 통해 기술개발을 권장하고 있다.

다. 무역

베트남은 수출 주도형 성장모델에 따라 무역 자유화 정책을 결합하여 수출을 촉진하고 직접 투자를 유치해 왔다. 베트남은 최근에 저비용 제조 및 자원 분야에서 분명한 리더로 부상하고 있다. 거시경제적 측면에서 베트남의 총수출 금액은 2018년 기준으로 전체 GDP의 39.1%를 차지한다(美貨로 구매력평가지수는 710억 3천만달러에 달했다). 그러나 2018년의 39.1%는 2014년의 53.9%에 비해 감소한 것으로 베트남의 총경제에서 수출에 대한 의존도가 상대적으로 감소한 것으로 보인다.

베트남의 2018년 전 세계 출하량 중 비중이 가장 높은 수출 제품 그룹은 아래와 같다.²⁾
(출처: worldtoexports.com)

- 전기 기계, 장비: 1,172억달러(전체 수출액의 40.4%)
- 신발: 227억달러(7.8%)
- 컴퓨터를 포함한 기계: 159억달러(5.5%)
- 의류, 액세서리(니트나 크로세 외): 159억달러(5.5%)
- 니트 또는 크로세 의류, 액세서리: 148억달러(5.1%)
- 가구, 침구, 조명, 표지판, 프리팩 건물: 98억달러(3.4%)
- 광학 기술, 의료기기: 62억달러(2.2%)
- 어류: 56억달러(1.9%)
- 커피, 차, 향신료: 44억달러(1.5%)
- 가죽/동물 내장 물품: 42억달러(1.5%)

주요 수입 제품은 컴퓨터, 전기 제품, 예비 부품 및 원료, 기계, 장비, 도구 및 기구, 철 및 철강이다.

2019년 6월을 기준으로 베트남 관세당국의 통계에 따르면, 베트남이 수출액 90억달러 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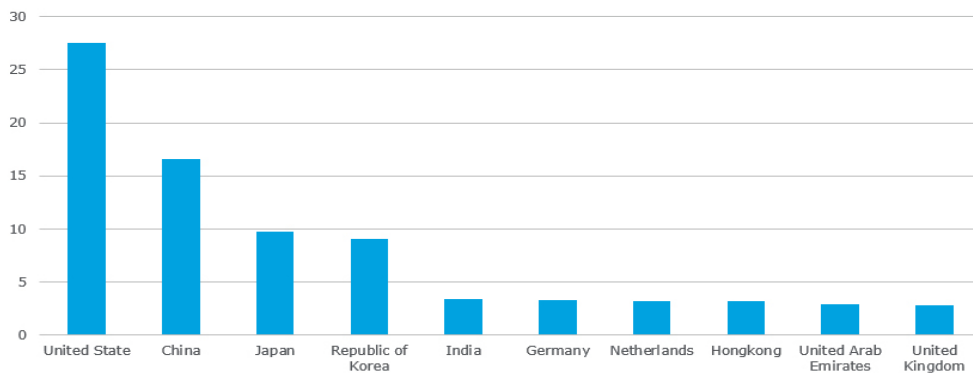
2) Daniel Workman(2019), *Vietnam's Top 10 Exports*. Available at: <http://www.worldstopexports.com/vietnams-top-10-exports/>(Accessed: 28 October 2019)

상을 달성한 4개의 국가는 미국(275억달러), 중국(166억달러), 일본(97억달러) 및 한국(91억달러)이었다. 반면 베트남의 3개 주요 수입국은 중국(357억달러), 한국(225억달러) 및 일본(88억달러)이다.³⁾

[그림 I-2] 2019년 상반기 베트남의 10대 주요 수출국

(단위: 십억달러)

Top 10 main exporting markets of Vietnam in the first half 201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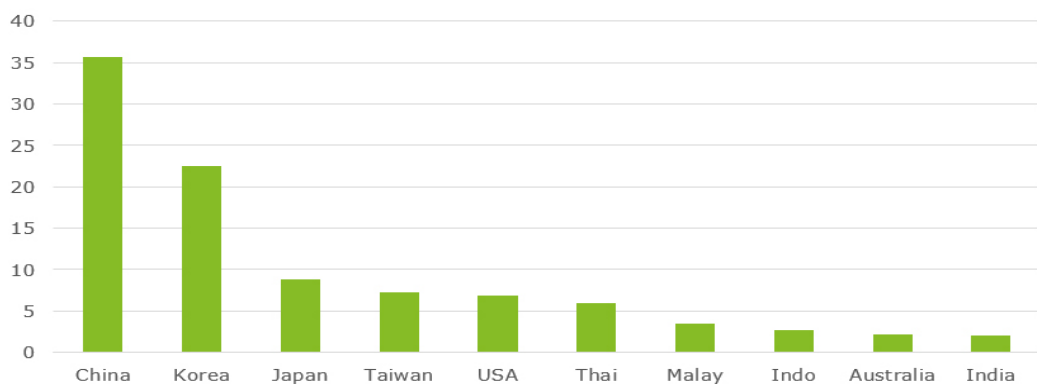


Source: Vietnam Customs

[그림 I-3] 2019년 상반기 베트남의 10대 주요 수입국

(단위: 십억달러)

Top 10 main importing markets of Vietnam in the first half 2019



Source: Vietnam Customs

3) Vietnam Customs Statistics(2019), Preliminary assessment of Vietnam international merchandise trade performance in the first half of 2019. Available at: <https://www.customs.gov.vn/Lists/EnglishNews/ViewDetails.aspx?ID=692&Category=News%20and%20Events&language=en-US>(Accessed: 28 October 2019)

베트남의 대미 수출은 2019년 1분기에 전년 동기 대비 28.9% 증가하였으며, 미국은 베트남 제품의 최대 수입국이 되었다.

미중 무역전쟁 덕분에 베트남 경제발전이 촉진되었는데 2019년 1분기에 베트남의 미국 수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 28.9% 증가하였다.

지난 30년 동안 베트남 경제는 지속적으로 개혁되면서 세계화 방향으로 전환해 왔다. 베트남은 WTO 가입뿐 아니라 지역 내외의 파트너들과의 FTA 협의를 포함하여 수많은 협약의 당사자가 되었다. 베트남의 무역활동에서 가장 주목할 만한 사항 중에 하나는 최근 몇 년간 다양한 FTA에 참여했으며 세계경제 통합에 많은 기여를 하였다는 점이다. 주요 무역협정은 아래와 같다.

- ASEAN 경제 공동체
- 환태평양 경제동반자 협정-Comprehensive and Progressive Agreement for Trans-Pacific Partnership(CPTPP)
- 지역 포괄적 경제 동반자(Regional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RCEP)(교섭 중)
- ASEAN 회원국으로서 주요무역 협정: 일본, 한국, 인도, 중국, 홍콩, 호주 - 뉴질랜드
- 상호 협정: 칠레, 한국, 일본, 유라시아 경제연합, EU(아직 발효전), 이스라엘(교섭중), EFTA(교섭 중)

또한 베트남은 185개국과 외교관계를 수립하고 220개국 이상의 시장과 무역 및 투자관계를 확대하며 80개국과 이중과세방지협정을 체결했다.

라. 외국인 투자 환경

외국인 업체들이 베트남에 투자하고 운영하는 데 보다 유리한 투자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규제가 계속 개선되고 있다. 2014년 신규 투자법 및 기업법이 통과된 이후 더 나은 투자유치를 할 수 있도록 많은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이 발표되었다.

2019년 8월 기준으로 베트남 내 FDI는 2019년 1월부터 8월까지 119억 6천만달러를 기록하며 전년 동기 대비 6.3% 증가하였다. 또한 신규 프로젝트, 자본 확대 및 지분 인수에 대한 FDI는 226억 3천만달러를 달성하며 전년 대비 92.9% 증가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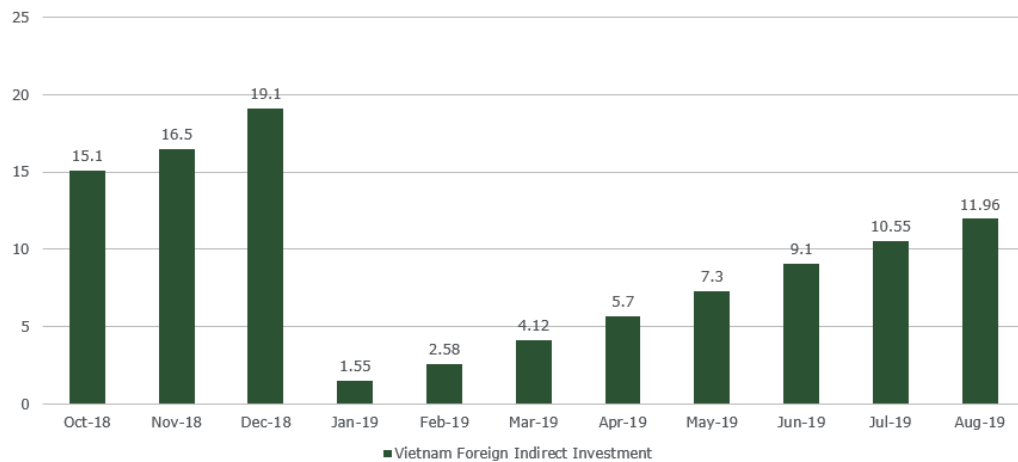
FDI 부문과 관련하여 제조 및 가공산업이 가장 많은 총투자의 69.6%를 차지하고 이어서, 부동산산업, 도소매산업이 각각 10.2%, 5.2%를 차지했다.

투자국가 측면에서, 2019년의 첫 8개월 동안 홍콩이 총프로젝트의 24.9%를 차지하여 가장 큰 투자국이 되었고, 이어서 한국(15.4%), 싱가포르(14%)로 나타났다. 또한 일본이 중국을 제치고 약 31억달러로 베트남의 4번째로 큰 투자국이 된 것은 주목할 만한 사항이다. 베트남은 대부분의 분야에서 100% 외국인 투자를 허용하는 국가 중 하나이다. 375 SOES는 2017~2020년 기간 동안 부분적 또는 전체적으로 폐지될 예정이다.

기획투자부 산하 외국인투자청에 따르면 2018년 해외직접자본은 354억 6천만달러이며 2019년 첫 9개월 동안 261억 6천만달러를 유치하여 2018년 대비 3.1% 증가했다.

[그림 I-4] 베트남 외국인 직접 투자

(단위: 십억달러)

Vietnam Foreign Direct InvestmentSource: [Tradingeconomics.com](https://tradingeconomics.com/vietnam/foreign-direct-investment)/ Ministry of Planning and Investment Vietnam

또한 미중 무역전쟁의 결과로 가까운 장래에 베트남에 대규모 FDI가 유입될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 진출 장벽으로 인한 손실을 피하기 위해 중국에서 영업하고 있는 기업들이 투자처 교체를 모색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베트남은 2019년 1사분기 기준으로 41억 2천만달러의 FDI를 기록하였으며(출처: 베트남 외국인 투자국, 2019) 대부분은 하노이, 호치민 및 기타 대도시에서 집중되었다. FDI가 수년에 걸쳐 높아지는 것은 경제 전망에 대한 투자자의 신뢰가 향상되었으며 베트남이 장기 투자를 유치하겠다는 의사의 반영으로 보인다.

요약하자면 베트남은 FDI가 계속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베트남은 거의 모든 분야에서 대규모 투자자들로부터 FDI를 유치해 왔으며 이는 국내시장에 잠재적인 기회로 간주된다. 또

한 첨단기술과 제조, 관광, 첨단농업 등 '고부가가치' FDI를 고려하고 있다. 베트남 정부는 중요 부문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고급인력을 제공하기 위한 교육정책에 집중하고 있다.

향후 자유무역협정과 젊은 노동 인구와 같은 가용 인력과 함께 베트남은 경제 가속화를 위해 강력한 동력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II 베트남 조세체계 소개

1. 베트남 조세체계 개요

국가의 거시경제에 있어 조세는 재원조달이라는 세수 목적과 경제활동의 규제·유도, 국민 경제 안정 및 성장에 정책 목적이 있다. 최근 몇 년간 국제협력과 국제사회로의 진입을 목표로 하여 베트남 정부는 법인 또는 개인사업자의 편의를 위해 각종 사업활동 촉진, 수출 및 투자 확대 격려, 기술개혁을 위한 조세체계 개혁을 실시해 왔다. 또한 조세체계 개혁은 외국인 투자자들에게 더 공정하고 매력적인 투자환경을 조성하는 데에 기여한다.

베트남 조세체계는 국회를 통과해 공표된 법률, 정부에 의해 공표된 시행령 또한 재무부에서 공표된 시행규칙 등으로 규정·안내·정의된다. 그 외에 납세자의 납세의무 이행에 있어 세무총국과 각 지역의 세무국 또는 세무지국에서 발표한 각종 문서들이 있다. 위의 법령들은 투자법, 기업법, 민사법, 회계법 등과 긴밀하게 연결되고 이행함에 있어 서로 영향을 미치는 부분이 있다.

가. 베트남 조세체계 개혁 배경

기타 국가발전정책과 마찬가지로 베트남 정부는 1986년 ‘도이머이’ 이후부터 조세에 관한 정책 발전에 중점을 두었다. 과거 베트남은 중앙통제계획 경제체제를 운영하여 국가 거시경제에 대한 조세의 역할은 매우 미흡한 수준이었다.

경제의 자유화와 시장경제 도입을 위해 베트남은 1990년부터 세법을 제정해 왔으며, 현재도 개정 중이다. 조세 종류는 농업용 토지세, 소득세, 특별소비세 그리고 토지사용료, 공증료 등의 징수 항목들이 있다.

1999년 1월 1일 베트남은 최초로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기업소득세)를 도입하여 조세개혁에 관한 새로운 장을 열었다.

세계무역기구(WTO) 가입(2007년 1월 11일)을 계기로 글로벌 경제체제에 본격 편입됨에 따라 대외지향적 성장 방식이 공고해진 베트남은 조세 등에 관한 쌍방 또는 다자간 협정을 체결하고 실행해 왔다. 이 과정에서 재원조달, 즉 세수목적은 보장하면서 경제성장 속도에 맞춘 조세관리를 위한 새로운 정책이 국회에 상정됐다. 2010년 조세개혁 프로세스 승인에 관해 2004년 12월 6일에 통과된 제201/2004/QĐ-TTg 정부 시행령도 그중 하나이다.

2011-2020 조세개혁정책은 2015년 5월 17일에 통과된 제732/QĐ-TTg 정부 시행령에 따라)을 채택하여 최근 들어 베트남은 계속해서 조세개혁을 시행하고 있는데 기본 원칙은 다음과 같다.

- 생산 개발, 수출 촉진, 투자 유치 및 경제구조조정을 위한 개혁
- 납세자 및 과세기관의 편의를 위해 조세절차 및 기타 관련 절차 간소화
- 납세자에 대한 전국 범위 데이터베이스 구축, 관련 행정절차 간 상호작용 강화를 위해 정보기술 개발 및 응용
- 해외과세기관·관청 또는 국제기구 등과 협력관계 확대
- 행정업무 수행에 있어 세무당국 및 관세청, 사회복지공사, 환경보호관리공사 등 기관 간 현대화·통합화

나. 정보통신기술 응용 확대로 조세관리업무 현대화

정보통신기술(ICT)의 융합으로 이뤄지는 4차 산업혁명 배경으로 베트남은 조세개혁 등 경제의 모든 측면에 최첨단 기술을 단계적으로 적용하기 시작했다.

전국 범위로 전자세금신고 시스템을 시행하는 동시에 통합관리시스템을 도입하여 조세관리업무에 있어 세목별 정보를 관리하고 보관하도록 하였다.

2030년 비전을 향한 2018~2025년 기간의 조세개혁을 위한 제도 및 정책을 수립·발표할 예정이며 전자금융, 디지털금융을 계속해서 개발하고 인프라 서비스를 구축하여 금융정보 보호 및 4차 산업혁명의 신기술을 응용 확대할 계획이다.

다. 세계은행의 '기업환경평가'(Doing Business 2020) 상 베트남 세금납부지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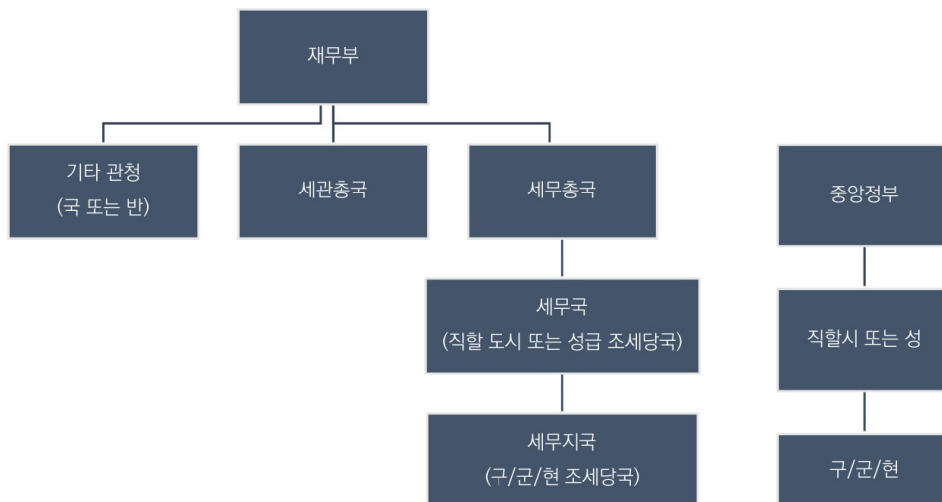
세계은행이 발표한 『기업환경평가보고서』(Doing Business 2020)에 따르면 세계 190개국 가운데 베트남은 70위지만 세금 납부 부문에서는 109위를 차지하였다. 보험 고지 및 세금 납부시간은 384시간이며 평균 납부횟수는 6회이다. 반면에 경제개발협력기구(OECD) 회원국 중 고소득 국가들의 경우 세금 납부 평균시간은 158.8시간이며 동아시아 및 아시아태평양 국가의 경우는 173시간이다. 베트남에서 기업들의 세금신고·납부는 여전히 상당한 부담이다.

2. 베트남에 적용되는 세목

베트남에 적용되는 세목은 법률 형식으로 공표되며 다음의 10가지가 있다.

- 가. 개인소득세
- 나. 기업소득세(법인세)
- 다. 부가가치세
- 라. 특별소비세
- 마. 천연자원세
- 바. 농업용 토지세
- 사. 비농업용 토지세
- 아. 환경보호세
- 자. 수출세, 수입세(관세)
- 차. 기타세 및 징수항목

3. 관련 행정체계



세무관리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각 행정 급에 해당 세무당국이 있다. 베트남의 각급의 세무당국은 재무부의 관리하에 세무관리와 관련 업무를 수행한다. 중앙 정부급 및 직할시/성도/구/군/현 등까지 해당 지역의 관할 세무당국이 있다.

재무부(또는 재정부)는 베트남 중앙정부직속 기관으로서 재무예산(국가예산, 조세, 기타 국가예산에 대한 비용 또는 해당 기타 징수항목, 국가비축(國家備蓄), 국가 재정자금, 재정 투자, 기업재정, 협동조합재정, 법률의 규정에 따른 공공재산), 세관, 회계, 독립회계감사, 물가(가격), 유가 증권, 보험, 재무부의 국가관리 기능을 수행함에 있어 관리범위 내의 금융 영역 또는 기타 용역에 관한 국가 관리 기능을 수행하며 법률의 규정에 따라 국가자본의 투자를 받은 기업에서의 국가자본분에 대한 대리권을 수행한다.

세무총국은 재무부의 산하기관으로서 세법 또는 세법 이행에 관한 내용 자문, 해당 문서 작성의 의무를 가진다. 또한 전국 및 각 지방에서 세금 신고/납부에 대한 계획 수립/운영, 각종 세법 이행에 있어 세무공무원을 대상으로 관련 업무에 대한 안내/훈련/교육 실시, 세법 체계에 있어 행정구조 형성 및 발전에 대한 연구, 세법의 효율적인 이행을 위해 전국 또는 각 지방에서의 세법 이행 여부 조사/감사 실시, 세금과 관련 고충, 불복 처리 등의 임무를 수행한다.

세무국은 세무총국 직속기관으로서 각 중앙직할 성, 도시, 특구에 설치되어 있다. 세무국의 구조는 과세대상별 세금등록/신고/납부 등 해당 특수임무를 수행하는 과 또는 반으로 되어 있다. 세무국은 또한 관할 지역의 세법 이행에 있어 지도 역할을 하며 전 지역 또는 소속 세무지국의 세무공무원을 대상으로 관련 업무에 대한 안내/훈련/교육을 실시하고 세금 신고/납부에 대한 계획 수립/운영, 소속 세무지국으로 하여금 관련 고충 또는 불복 처리에 대해 안내하고 조사한다. 또한, 관할 지역에서 조세 또는 기타 해당 항목에 대해 징수업무를 수행한다.

세무지국은 세무국 직속기관으로서 각 지역세무서로 구성된다. 각 세무지국의 구조는 각 전담부서, 특수업무부서 또는 조세징수 직접 관리팀 등으로 되어 있다. 세무지국은 군/구 전 지역에서의 발생 세액에 대해 구체적인 징수계획 수립/운영, 과세대상별 관리업무 수행, 세법 이행 여부 확인/조사 등의 임무를 수행한다.

사업 활동을 등록한 기업은 관할 지역의 세무국 또는 세무지국의 직접 관리를 받는다. 외국인투자기업은 중앙직할 성/도시의 해당 세무국의 직접 관리를 받는다.

4. 조세절차

2020년 7월 1일 발효되는 2019년 조세관리법

2019년 6월 13일 베트남 국회는 법률의 규정에 따라 조세, 국고에 해당하는 기타 징수항목에 관한 세법 개정안을 공표하였으며 아래 3가지를 목표로 한다.

- 세금 분야 수속 절차 간소화
- 국제관례에 부합한 현대화와 국제사회로의 편입 지향
- 현실에 부합하는 관리업무 효율성 제고를 위해 행정절차 간소화 및 납세자 편의 향상을 우선
베트남 세법의 규정 및 2019년 세무관리법 개정사항은 다음과 같이 요약된다.

가. 조세관리에 관한 리스크 관리

세무당국은 조세관리에 있어 리스크 관리규제를 적용한다.

납세의무자의 법준수 여부를 평가하기 위해서 세무당국은 납세자의 사업내역, 세법준수 및 위법수준 등을 평가한다. 조세관리를 위한 리스크 수준의 분류는 납세의무자의 법규준수 정도에 달려 있으며 리스크에 관한 기타 기준, 세금관리의 위반 행위, 세무당국과 기타 유관기관의 업무 활동 결과를 포함하여 진행한다.

세무당국은 세무관리에 있어 (자동)통합관리시스템을 채택한다.

나. 납세자의 권리 및 의무

납세자의 권리 및 의무는 다음과 같다.

납세자의 권리	납세자의 의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세무당국에 세액산출, 부과고지에 관한 설명을 요구할 수 있다. • 조세에 관한 의무나 권리를 이행하기 위해 관할 국가기관에 제공하는 정보 또는 관련 법률의 규정에 따라 공개해야 하는 정보 외의 납세정보의 비밀을 보호받을 권리가 있다. • 법률의 규정에 따라 세금 감면, 환급 등 우대를 받을 수 있으며 환급의 경우 환급 처리 기한, 법적 근거, 환급액 등에 관한 정보를 요구할 권리가 있다. • 세무, 통관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대행업체와 계약 체결이 가능하다. • 세무감사보고서, 세무조사보고서 등의 통지를 받을 권리 및 해당 보고서 내용에 대해 설명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 세무감사보고서, 세무조사보고서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고 세무감사 또는 세무조사 후의 결과보고서를 통지받을 권리가 있다. • 세무당국, 세무공무원 등이 야기한 손해를 배상받을 수 있다. • 합법적인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위법행위를 고발할 수 있다. • 납세의무 확정에 관한 세무당국 또는 관할 국가기관의 안내서 혹은 결과보고서 등에 따라 이행하는 경우 세법 행정위법행위로 취급되지 않으며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세무서류의 정확성 및 사실 여부 등에 관한 법적 책임을 진다. • 세금, 납부지연가산세, 과소신고가산세 등을 지정납세지에 기한 내에 납부해야 한다 • 법률의 규정에 따라 회계처리, 계산서 및 증빙서류 등을 작성 및 보관한다. • 납세의무확정을 위해 적시에 정확하고 충분한 정보 또는 자료를 제공해야 한다. 세무당국의 요구에 따라 시중은행 또는 금융기관에서의 거래내역 및 세액 결산, 신고, 납부에 대해 설명할 의무가 있다. • 법률의 규정에 따라 세무당국의 결정, 통지, 요구 등을 이행한다. • 법적대리인 또는 위임인을 통해 대신 신고하고 납부 시 만약 세법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에는 납세자가 법률의 규정에 따라 납세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 특수관계자간거래를 하는 경우 납세자가 해당 특수관계자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여 신고, 제공하여야 한다.

다. 세무당국의 권리 및 의무

세무당국의 권리 및 의무는 다음과 같다.

세무당국의 의무	세무당국의 권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세금징수를 담당하며 세법을 공표하고 안내한다. • 납세자의 납세의무금액을 확정하기 위한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설명한다. • 유관기관에 제공하는 정보 또는 관련 법률의 규정에 따라 공개해야 하는 정보 외의 납세자 정보 비밀을 유지한다. • 법률 규정에 따라 납세자의 납세의무 이행에 대해 확인해준다. • 관할 범위 내 세법 이행에 관련 고충, 고발 등을 처리한다. • 법률 규정에 따라 납세자에게 배상한다. • 정보기술을 적용, 전자정보시스템을 구축하여 세금분야에서 전자거래를 도입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납세자에게 납세의무확정과 관련된 정보나 자료, 시중 은행 등 금융기관에 개설된 예금의 잔액, 거래내역을 제공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 법률의 규정에 따라 세무감사, 조사 등 임무를 수행한다. • 부과고지를 한다. • 세금에 관한 행정결정에 따라 강제 집행한다. • 관할 범위 내 세무관리에 관한 행정적 위법행위를 처벌하고 해당 위법건을 대중매체에 공개한다. • 법률 규정에 따라 세법에 관한 행정위법행위를 방지하고 위법행위 발생 시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 • 과세가격 산출과 관련해서 납세자 또는 해당 외국 과세당국(베트남과 이중과세방지협정을 체결한 국가 또는 지역)과 사전합의를 적용한다. • 세무관리 임무를 수행하면서 필요한 정보, 자료 등을 국내외의 기관 또는 단체로부터 구비한다.

라. 납세등록

1) 납세등록대상

납세자가 영업 개시 또는 납세의무 발생 전 납세등록하여 Tax Code(납세번호)를 발급받는다.

- 사업자(법인) 경우
 - ✓ 유한책임회사, 주식회사, 합작회사 또는 개인사업자(단일 창구 시스템을 통해 사업자 등록 및 납세등록한 사업자, 즉 납세등록증인 확인서가 동시에 사업자등록인 경우)
 - ✓ 증권, 보험, 회계, 회계감사, 변호사, 공증 분야 또는 사업자등록 담당기관에서의 등록신청이 필요없는 분야에서 활동하는 사업자
- 영리단체의 경우
 - ✓ 각 국가기관, 인민위원회 산하기관, (교육, 의료, 문화, 체육 등) 국영기관 등이 법률의 규정에 따라 영리활동을 하면서 사업자등록을 접수한 경우 및 허가 발급업무 수행 국가기관에서의 등록이 필요없는 단체 또는 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되어 활동하는 협동조합
- 기타 단체의 경우

- ✓ 납세의무가 발생하지 않고 환급 대상인 사업자 또는 개인기업
 - 외국 개인 또는 단체 그리고 베트남 단체가 인도지원 활동을 하기 위해 무상원조금을 이용해 베트남 영토에서 부가세 대상의 재화 또는 용역을 구매하거나 제공받는 경우
 - 외교특권을 가진 개인 또는 단체로서 부가세 면세 대상의 주베트남 외국대사관, (총)영사관 또는 국제기구 대표사무소
 - 부가세 면세 대상의 ODA 사업주 또는 ODA 사업 지원자의 대표사무소
- 외국인 계약자의 경우: 베트남에서 법인자격을 보유하지 않은 외국 단체 또는 베트남에서 사업을 영위하면서 이익 및 납세의무를 발생한 외국 법인 또는 개인
- 원천징수하는 법인 또는 개인
 - ✓ 원천징수하여 외국인 계약자 대신 신고하고 납부하는 사업자, 영리법인 또는 개인 또는 개인과 계약을 체결함으로써 개인 대신 신고하고 납부하는 단체
 - ✓ 수수료 또는 급여를 지급하는 단체 또는 개인
- 가족사업자, 개인사업자
- 개인소득세 대상의 소득이 발생하는 개인
- 납세의무 발생하는 기타 단체 또는 개인

2) Tax Code(납세번호) 발급 원칙

- 사업자, 영리법인 또는 기타 단체 등은 납세등록일 또는 설립일로부터 Tax Code(납세번호)가 무효화될 때까지 Tax Code(납세번호)를 발급받는다.
- Tax Code(납세번호) 형식
 - ✓ 10자리 숫자로 구성된 Tax Code(납세번호): 법인자격을 가진 사업자, 단체 또는 가족사업자 대표, 기타 개인사업자에게 발급된다.
 - ✓ 13자리 숫자 및 기타 문자로 구성된 Tax Code(납세번호): 사업자의 지사 또는 대표 사무소 등에 발급된다.
- 단일 창구 시스템을 통해 사업자등록 및 납세등록을 동시에 하는 경우, 기업등록증명서(사업자등록증명서)에 기재된 일련번호는 Tax Code(납세번호)이다.
- 개인은 평생 사용하는 하나의 유일한 Tax Code를 발급받는다. 부양가족(의존자)에게 발급된 Tax Code는 해당 부양가족이 납세의무가 발생하면 해당 개인의 Tax Code가 된다.

마. 납세등록 기간

- 사업자 즉 납세자는 다음 날로부터 10영업일 이내에 납세등록하여야 한다.
 - ✓ 사업자등록증, 영업등록증, 설립운영허가서 등의 관할기관으로부터 발급받은 기타 등록증이나 허가서에 기재된 날
 - ✓ 사업등록 대상이 아닌 법인, 단체의 경우 사업활동을 시작한 날
 - ✓ 원천징수하여 하도급 계약자, 외국인 계약자 대신 납세할 책임이 발생한 날
- 재화 또는 용역을 판매/제공하면서 납세의무가 발생하지 않은 단체 또는 개인은 법률의 규정에 따라 세금신고서 또는 최초 세금환급서류 제출기한 내에 납세등록을 해야 한다.
- 가족사업자, 개인사업자 등은 최초 세금신고서류 제출기한 내에 납세등록을 해야 한다.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은 경우 등록증에 기재한 날로부터 10영업일 이내 세무당국에 직접 납세등록을 해야 한다.
- 개인소득세 납세자가 법 규정에 따라 부양가족공제 신청기한까지 부양가족의 Tax Code등록을 해야 한다.
- 급여지급자는 연간세금결산서류 제출기한 10일 전까지 해당 급여로부터 소득이 발생한 개인 및 부양가족을 대신하여 Tax Code를 등록해야 한다.

바. 납세등록서류

- 법인/비영리법인 경우
 - ✓ 납세등록 신고서
 - ✓ 사업자등록증, 설립운영허가서, 투자허가서 등 및 기타 관할기관으로부터 발급받은 증명서 등의 사본(법적효력이 있는 서류)
 - ✓ 기타 관련 서류
- 개인사업자, 가족사업자
 - ✓ 납세등록 신고서
 - ✓ 주민등록증 또는 여권 등 신분증 사본
 - ✓ 기타 관련 서류

사. 납세등록 신고시 제출지

구분	등록지
법인, 개인	주사무소 소재지 관할 세무당국
대신 신고/납부하는 법인 또는 개인	
개인이 직접 신고하는 경우	과세대상 소득이 발생한 지역 또는 거주등록지 관할 세무당국

아. 납세등록정보 정정

납세자가 납세등록정보를 정정한 날로부터 10영업일 이내에 세무당국에 통지하여야 한다.

구분	변경통보기한
사업자(기업)등록과 동시에 납세등록하는 경우	납세등록정보 변경사항이 있는 경우 납세자가 법률의 규정에 따라 납세등록정보 및 기업등록정보 변경에 대해 통지를 하여야 한다.
사무소 주소 이전으로 인한 관할 세무당국 변경	사업자등록 담당기관에 통지하기 전에 납세자가 세무에 관한 모든 절차를 완료하여야 한다.
납세자가 세무당국에게 직접 등록하는 경우	변경 발생일로부터 10영업일 이내 관할 세무당국에 통지하여야 한다.
급여 지급자가 개인 및 해당 부양가족의 납세등록정보 정정신고에 관한 위임을 받아 대행하는 경우	개인은 변경 발생일로부터 10영업일 이내 급여지급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급여지급자는 위임받은 날로부터 10영업일 이내 세무당국에 통지해야 한다.

자. Tax Code(납세번호) 무효화

- 세무당국이 특정 Tax Code(납세번호) 무효화 사실을 공표한 이후 해당 Tax Code는 더 이상 경제거래에서 사용할 수 없다.
- 기존 Tax Code(납세번호)는 무효화 이후 재사용이 되지 않는다. 사업을 재개하면 새로운 Tax Code를 발급받는다.
- Tax Code가 무효화되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 ✓ 사업자 또는 소속단체의 경우
 - 사업중단 또는 해산, 파산
 - 사업자등록증 철회
 - 기업구조조정(분할, 합병 등)
 - ✓ 가족사업자, 개인사업자 또는 개인

- 사업 중단
 - 법 위반 행위를 취함으로써 사업자등록증 또한 기타 등록증, 허가서 철회
 - 영리법인(기업 등) 구조조정(분할, 합병 등)의 경우
 - 세무당국에서 납세자가 등록된 주소에서 1년 이상 사업 중단하며 재운영 등록하지 않는다는 통지서를 받은 법인
 - 석유 분야의 계약 당사자가 계약 해지 또는 해당 계약의 권한 양도의 경우
 - 계약 종료된 외국인 계약자의 경우
- ✓ 비사업자의 경우: 법률의 규정에 따라 사망, 실종 또는 행위 무능력자로 간주된 경우

차. 무효화 시 납세자의 의무는 다음과 같다.

- 모든 납세의무를 완료한다.
- 세금계산서 사용에 대한 보고서를 작성/제출한다.
- 지점이 있는 경우 해당 지점 Tax Code에 대해 우선적으로 무효화 신고한다.
- Tax Code 무효화에 관한 서류를 작성/구비한다.

카. 세금신고/계산

1) 세금신고/계산 원칙

- 납세자가 자신의 소득액을 계산하여 세무서에 자진 신고하는 것이 일반적이거나 세무당국이 납세자가 내야 할 세금을 결정하여 부과하는 특정한 경우, 즉 부과지를 하는 경우 제외
- 납세자가 양식에 따라 세금신고서를 정확하고 충실하게 작성하고 관련 서류 또는 자료를 충분히 제출하여야 한다.
- 납세자가 주사무소 소재지 관할 세무당국에서 세금을 신고/납부한다. 주사무소에서 통합회계처리를 하는 경우 다른 지역(성, 직할 도시 또는 일반 도시 등)에 지점을 보유하고 있으면 납세자가 주사무소 소재지 관할세무당국에서 세금을 신고하고 법률의 규정에 따라 각각 해당 지점 소재지에서 분납 처리한다.
- 월별 또는 분기별 신고/납부의 경우 해당 기간에 납세의무가 발생하지 않거나 면세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납세자는 법률의 규정에 따라 기한 내에 세금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 월별 또는 분기별 신고/납부의 경우 최초 신고 기간은 사업 개시일로부터 해당 월 또는 분기의 종료일까지로 한다. 또한 최종 세무신고 기간은 해당 월 또는 분기의 첫날로부터 사업활동 완료일까지로 한다.
- 법인세, 환경보호세 등의 경우 연간 과세기간은 역년 또는 회계연도로 하며 기타 세목은 역년으로 한다.

사업을 중단하는 경우

- 납세자는 최대 1년 동안 사업을 중단할 수 있으며 사업 중단 또는 (통지서에 기재한) 재개 예정일 이전에 사업을 재개하는 경우 해당일로부터 15일 이전에 세무당국 또는 사업자등록 담당기관에 통지하여야 한다.
- 통지서에 기재한 재개 예정일 이후 사업 중단 상태를 유지하는 경우 납세자는 재개 예정일부터 15일 이전에 세무당국에 통지하여야 한다.
- 사업 중단 기간은 2년을 초과할 수 없다.
- 사업 중단 기간 중 납세의무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 세금신고서를 제출하지 않는다. 역년 혹은 회계연도의 전체 기간에 사업이 중단되지 않는 경우 연간 회계정산서류를 접수하여야 한다.

2) 신고, 납부기한

신고 유형	신고/납부기한
월별 신고/납부의 경우	납세의무가 발생하는 월의 다음 달 20일
분기별 신고/납부의 경우	납세의무가 발생하는 분기의 최종 월 마지막 날
연간 세액결산	역년 또는 회계연도의 종료일로부터 셋째 달의 마지막 날
개인소득세 직접 결산	역년의 종료일로부터 셋째 달의 마지막 날 2020년 7월 1일 이후: 역년의 종료일로부터 120일
연간 예정납세 신고/납부의 경우	전년도의 12월 15일 사업개시일로부터 10일 이내 예정납세 신고서 제출
납세의무 발생 시마다 신고/납부의 경우	납세의무 발생일로부터 10일
활동종료, 계약종료 또는 기업구조조정의 경우	해당일로부터 45일

타. 세금신고서 제출기한의 연장

- 납세자가 천재지변, 화재, 갑작스런 사고로 인해 기한 내에 세금신고서 제출이 불가능한 경우 관할 세무당국은 세금신고서 제출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 최대 연장 가능 일수는 제출기한 종료일로부터 아래와 같이 적용한다.
 - ✓ 월별 납세신고, 분기별 납세신고 등 납세의무 발생 시 제출하는 세금신고서의 경우: 30일까지
 - ✓ 세액 결산신고 서류의 경우: 60일까지
- 납세자는 세무당국에 세금신고서 제출기한 종료 이전에 연장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관할 인민위원회 또는 공안의 확인을 받은 기한 연장 신청사유를 기재하여야 한다.
- 세무당국은 제출기간 연장신청서를 받은 날로부터 3영업일 이내에 서면으로 납세자에게 승인 여부를 통지하여야 한다.

파. 세금신고서의 수정신고

- 납세자가 세무당국에 제출한 세금신고서에서 오류를 발견하는 경우 해당 과세기간의 세금신고서 제출기한 종료일로부터 10년 이내에 수정신고를 할 수 있으며 세무당국이나 관할당국이 납세자에 대한 조사를 통지하기 전까지 수정신고가 가능하다.
 - 세무당국이나 관할당국이 납세자에 대한 조사를 통지했을 경우 아래의 경우에 해당하면 납세자는 수정신고가 가능하다.
 - ✓ 납세자가 해당 조사 대상기간과 범위에 해당하지 않은 신고분에 대한 오류를 발견한 경우
 - ✓ 납세자가 조사 대상기간과 범위에 해당하는 신고분에 대한 오류를 발견했고 이 오류로 납부세액이 증가하거나 환급세액이 감소하는 경우 수정 신고가 가능하되 세무당국이 오류를 발견한 경우와 동일하게 과태료를 부과한다.
- 수정신고로 납부세액이 감소하거나 공제 또는 환급세액이 증가하는 경우 세제에 관한 이의신청 처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하. 부과지

세무당국은 다음의 경우에 납세자에게 부과지를 할 수 있다.

- ① 납세자가 세법을 위반하는 경우
- ② 또는 개인사업자가 예정납세 납부하는 경우

1) 납세자가 세법을 위반하는 경우

세무당국이 납세자에게 부과지를 하는 경우는 아래와 같다.

- 무등록, 무신고 납세자의 경우 또는 세무당국의 요구에 따라 납세서류를 충분히 제공하지 않는 경우
- 납세의무 확정에 있어 회계장부상에 관련 자료가 반영되지 않거나 정확하고 성실하게 반영되지 않은 경우
- 기한 내에 납부할 세액 확정과 관련된 회계장부, 세금계산서, 기타 증빙 서류 또는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 세무감사 또는 세무조사 결정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 재화 또는 용역을 판매하고 제공함에 있어 통상거래가격에 따르지 않은 경우
- 비합법적 세금계산서 사용 또는 유관기관의 확인에 의한 재화가 실제 존재하는데도 세금계산서를 적절하게 발행하지 않은 경우
- 납세의무 회피를 위해 자산을 은폐하거나 분산하는 징후가 발견되는 경우
- 납세의무를 줄이기 위해 거래를 정상적으로 하지 않은 경우
- 특수관계자거래의 경우는 거래가격을 산출함에 있어 관련 규정을 준용하지 않거나 특수관계자거래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은 경우

2) 부과지 근거

- 세무당국의 내부 데이터베이스 또한 상업용 데이터베이스
- 동일한 지역에서 동일한 제품에 대하여 거래를 하는 다른 사업자의 납부세액과 비교
- 유효한 세무조사 또는 세무감사 결과
- 법률의 규정에 따른 업종별 원천징수세율

거. 부과지에 의한 납세 가족사업자, 개인사업자의 세금 산출

세무당국은 회계기준, 전표기장세금계산서 등 제도를 미이행 또는 충분히 이행하지 않는 가족사업자, 개인사업자에 대하여 납세자의 신고자료, 세무당국의 자료, 현지 지역의 자문위

원의 의견을 근거하여 추계과세방법으로 세금을 산출한다.

너. 납세자의 책임

납세자는 세무당국의 부과지세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부과지세액에 동의하지 않은 경우에도 납부해야 하며 이후 설명요구, 이의신청, 소송 등을 제기할 수 있다.

이의신청, 소송 등의 경우 납세자가 관련 증빙서류를 충분히 제출해야 한다.

더. 조세의 납부

1) 납부기한

- 납세자가 신고납부하는 경우: 세금신고서 제출기한의 마지막 날로 한다. 수정신고의 경우 신고분에 대한 오류를 발견한 조사 대상 기간의 제출기한으로 한다.
- 세무당국이 부과조치하는 경우: 납부통지서에 기재된 납부기한으로 한다.

2) 매출, 비용, 세액 산출과 각종 세목의 통화(납세통화)

- 매출, 비용, 과세표준 등은 베트남 동(VND)을 기준으로 하며 별도 규정에 따른 외환으로 신고/납부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 회계법의 규정에 따라 외환으로 회계처리하는 경우 거래 발생 시점의 실제 환율을 적용하여 환산한 베트남 동(VND)으로 납부한다.

3) 납세지/납세장소

- 국고
- 세무당국
- 세무당국이 조세징수를 위임한 법인
- 법률의 규정에 따른 금융기관, 대행업체

4) 납부일

- 현금으로 직접 세액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 국고, 시중은행, 기타 금융기관 등이 납세자

의 납세 세금계산서에 기재한 날로 한다.

- 현금으로 직접 세액을 납부한 경우 국고, 세무당국 또는 위임기관이 세액 수납 영수증을 발급한 날로 한다.

5) 납부지연가산세

- 체납세액에 대하여 일 0.03%(연세율 10.95% 상당)
- 납부지연가산세 계산 기간은 납부지연가산세 발생일의 다음날로부터 납부일의 전일까지이다.
- 납세자가 법률의 규정에 따라 납부지연가산세를 계산하여 납부한다.

6) 세액, 납부지연가산세, 과소신고가산세 등 처리

- 납세자가 세액, 납부지연가산세, 과소신고가산세 등을 과다납부하는 경우 해당 금액은 상계처리되거나 그다음 납부할 세액, 납부지연가산세, 과소신고가산세에 충당하거나 환급을 받는다.
- 납세자가 상계처리를 원하는 경우 해당 금액이 발생한 날로부터 세무당국은 상계일까지 납부지연가산세를 계산하지 아니한다.
- 세액, 납부지연가산세, 과소신고가산세를 과다납부한 경우 납부일로부터 10년이 경과 되면 환급되지 않는다.

7) 이의신청, 소송 등 기간 중의 세금 납부

- 세무당국이 세액계산 또는 부과지한 세액에 관해 납세자가 제기한 이의 또는 소송의 처리기간 중에도 납세자는 해당 세액의 납부의무를 부담한다(관할국가기관이 세무당국으로 하여금 세액계산 또는 부과지의 시행을 일시 정지한 경우 제외).
- 이의, 소송 등 처리 후 재산정된 세금, 납부지연가산세 또는 과소신고가산세가 납세자가 납부한 금액보다 작은 경우 납세자는 과다납부액을 환급받을 수 있으며 세무당국에 동 금액에 대하여 일 0.03%에 해당하는 이자를 요구할 수 있다.

8) 납부기한의 연장

다음의 경우에 납세자는 납부기한의 연장을 신청할 수 있다.

구분	납부기한 연장
천재지변, 화재, 갑작스런 사고로 생산·경영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는 물질적 피해를 입은 경우 또는 정부의 규정에 따른 기타 경우	납부기간 종료일로부터 최대 2년 이내
생산, 사업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관할 국가기관의 요구로 생산, 사업 공장을 이전하여 운영을 중단하게 된 경우	납부기간 종료일로부터 최대 1년 이내

납세자는 납부기한 연장기간 중 조세채무에 대해서는 납부지연가산세 또는 과소신고가산세를 납부하지 아니한다.

러. 납세의무의 이행

1) 출국하는 경우

- 외국에서 거주하기 위해 출국하는 베트남인, 외국에서 거주하고 있는 베트남인 또는 외국인인 베트남을 출국하기 전에 납세의무를 완료하여야 한다.
- 납세의무를 완료하지 못한 경우 법률의 규정에 따라 출국을 정지한다.

2) 해산, 파산, 활동종료의 경우

- 기업이 해산하는 경우 납세의무는 기업법, 금융기관법, 보험사업법 및 기타 관련법의 규정에 따른다.
- 활동을 종료하는 기업이 납세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남아 있는 조세채무 납부의무는 기업소유주, 1인 유한책임회사 소유주, 주주 등이 부담한다.
- 사업활동을 종료하는 가족사업자 또는 개인이 납세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남아 있는 조세채무 납부의무는 호주 또는 개인이 부담한다.
- 지사나 자회사가 사업활동을 종료하면서 납세의무 또는 국고에 해당하는 기타 징수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해당 납세자가 납세의무를 부담한다.

3) 기업 구조조정의 경우

- 기업분할, 분할합병, 합병 등이 이루어지기 전에 납세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납세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신설 분할 또는 합병 기업이 납세의무를 부담한다.

4) 사망자, 행위무능력자, 실종자의 경우

- 법률에 의해서 사망한 것으로 간주되는 자의 납세의무는 사망자의 잔여재산을 한도로 상속인이 이행한다. 상속인이 없거나 상속인이 재산을 원하지 않은 경우 사망인의 납세의무는 민사법률의 규정에 따라 이행된다.
- 실종자 또는 법률 규정에 따른 행위무능력자의 납세의무는 해당 실종자 또는 행위무능력자의 재산관리인이 재산을 한도로 이행하도록 한다.
- 관할국가기관에 의해 사망자, 실종자 또는 행위무능력자의 결정이 취소되는 경우 해당 조세채무의 면제는 취소되고, 사망자, 실종자 또는 행위무능력자로 간주된 기간에 대한 납부지연가산세 또는 과소신고가산세는 계산되지 아니한다.

머. 조세의 환급

- 조세에 관한 법률 규정에 따라 과세관청은 조세의 환급을 처리한다.
- 경우에 따라 조세환급은 (i) 조세환급 후 서류조사 대상과 (ii) 서류조사 후 조세환급 대상으로 나뉜다.
- 세무당국은 세무관리의 위험에 관한 원칙을 적용하여 조세환급을 결정한 날로부터 5년 이내에 해당 대상 서류조사를 진행한다.

버. 조세채무, 납부지연가산세, 과소신고가산세의 면제

아래의 경우 조세채무, 납부지연가산세, 과소신고가산세를 면제한다.

- 파산법 규정에 따라 파산 선고된 기업으로 변제의무를 이행하였으며 조세 또는 납부지연가산세, 과소신고가산세를 납부할 재산이 남아 있지 않은 기업의 경우
- 법률에 따라 사망자, 실종자, 행위무능력자로 간주되었으며, 조세 또는 연체가산세, 과소신고가산세를 납부할 재산(상속재산 포함)이 남아 있지 않은 개인의 경우
- 세무당국은 조세 또는 연체가산세, 과소신고가산세에 대해 강제 납부를 실행하였으나

납부기한 종료일로부터 10년이 지났으나 회수 불가능한 경우
조세채무, 납부지연가산세, 과소신고가산세 등이 면제된 경우 사업재개 또는 신규 등록 전
에 면제된 조세채무, 납부지연가산세, 과소신고가산세 등을 국고에 납부하여야 한다.

서. 세무관리에 관한 행정의무 강제집행(체납처분)

1) 체납처분 대상

- 납부기간 종료일로부터 90일 경과한 체납
- 납부기한 연장기간 종료 후 체납
- 납세의무 회피를 위해 자산을 은닉하거나 분산 혐의를 받는 납세자
- 납세자가 체납처분 결정을 기한 내에 이행하지 않은 경우, 이행 일시정지인 경우 제외
- 관세 또는 국경관문을 거쳐 운송되는 재화 관련 채무가 있는 자에게 체납처분을 적용하
지 아니한다.
- 법인대표는 법인의 모든 채무를 완납해야 출국할 수 있다. 경우에 따라 일시 출국 정지
될 수 있다.

2) 체납처분의 종류

- 국고, 시중은행, 기타 금융기관의 체납처분 대상자 계좌로부터 총당하거나 계좌 동결
- 급여 또는 소득 일부 공제
- 수출입 재화의 통관 중단
- 세금계산서 사용 정지
- 법률의 규정에 따라 재산 압류, 압류재산의 매각, 매각대금의 정산
- 제3자가 점유하고 있는 체납처분 대상자의 금전 또는 재산 몰수
- 사업자등록증, 투자허가서, 설립과 운영허가서, 직업 자격증의 회수

5. 세무조사/감사, 관세조사/감사

가. 세무감사, 조사

1) 세무감사, 조사 경우

세무당국에서 설정한 리스크 평가 기준 시스템(리스크에 의한 감사·조사) 그리고 정부 감사관, 재무부, 성급 감사관과 세무총국(주제별 감사, 조사)의 지도에 따른 탈세 가능성이 높은 해당 업종, 영역, 사안에 따라 납세의무자의 세금 관련 리스크 분석과 평가를 바탕으로 납세의무자를 선별하여 해당 세무 감사, 조사의 계획을 수립한다. 다음의 경우 즉시 세무감사, 조사를 이행한다.

순서	구분	세무조사	세무감사
1	승인된 계획, 주제에 따른 경우	○	○
2	즉각		
	- 고충(이의), 소송의 해결	○	
	- 탈세 용의 발견	○	○
	- 분할, 분할&합병, 통합, 해산, 부도, 민영화한 납세의무자	○	○
	- 각급 세무당국장 혹은 재무부 장관의 요구에 따름	○	○
	- 신고한 세액의 적정성과 관련된 소명, 보충 정보와 자료 또는 소명을 위한 자료 제시가 없거나 세무당국에서 납부 세액을 확인할 근거가 부족한 경우		○
	- 환급(세금 환급/환급 전 조사와 환급 후 조사)		○

2) 세무감사, 조사의 관할 기관

2010년 조사법에 따라 감사 수행 기관은 아래와 같다.

- 정부조사관
 - ✓ 정부조사관
 - ✓ 정부의 각 부처 또는 유사한 기관의 조사관
 - ✓ 중앙직할 성 또한 도시의 감사관(이하 성급 감사관이라 한다)
 - ✓ 성도급 조사관
 - ✓ 구/군/면급 조사관(이하 현급 조사관이라 한다)
- 주제별 전문 조사 기능의 이행 기관

세무감사, 조사관 과세당국(세무총국, 세무국, 지방 소속 세무국)의 활동으로 납세의무자의 납세 이행 현황을 평가하여 정부의 이익과 법인, 개인의 권한과 이익을 위하여 위반 행위를 적발하고 처리하는 것을 말한다.

현재 세무조사는 세무총국과 세무국에서, 세무감사는 세무총국, 세무국과 지방 세무지국에서 수행한다.

세무감사와 조사 간의 주요 차이는 다음과 같다.

기준	세무조사	세무감사
적용대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양하고 대규모의 복잡한 사업활동 중인 납세의무자를 대상으로 한다. • 납세의무자의 소재지에서 감사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단순한 사업활동을 하는 납세의무자를 대상으로 한다. • 세무감사 장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세무당국 또는 ✓ 납세의무자의 소재지
진행기간	<p>세무조사는 세무감사보다 시간이 더 소요된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세무총국에 의한 감사: 감사결정 통보일로부터 최대 45영업일, 최대 25영업일로 1회 연장이 가능하다. • 현지 세무국: 조사결정 통보일로부터 최대 30영업일, 최대 15영업일로 1회 연장이 가능하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감사결정 통보일로부터 최대 5영업일 (2020년 7월 1일로부터 10영업일 적용), 5영업일로 1회 연장이 가능하다. (2020년 7월 1일부터 10영업일 적용)
관할 세무당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세무총국 • 각 지방 세무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세무총국 • 각 지방 세무국 • 하급 세무지국

3) 세무조사, 감사의 절차

세무조사, 감사의 계획 수립

매년 재무부 장관의 조사 계획 동향과 가이드라인 그리고 조세관리업무의 요구를 바탕으로 각급 세무당국에서 규정에 의한 감사, 조사 계획을 수립한다. 승인된 감사, 조사 계획은 다음의 경우 수정 가능하다.

- (1) 재무부 장관 혹은 상위 세무당국장의 지도에 따른 경우
- (2) 세무당국의 제안대로 조사 계획 수립을 위임받은 경우

매년 조사 계획의 수정은 관할 상위 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하위 세무당국의 세무감사, 조사 계획이 상위 세무당국의 계획과 중복되는 경우에는 상위 세무당국의 계획에 따라 진행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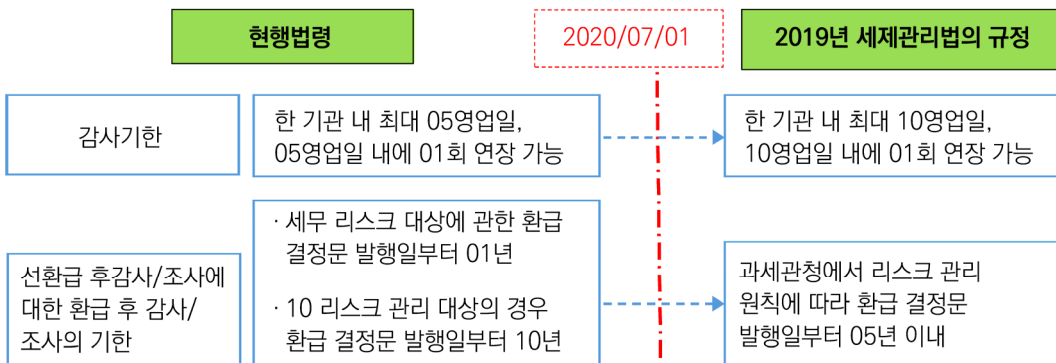
납세의무자의 소재지 세무감사 및 조사의 순서와 절차

납세의무자의 소재지에서의 세무감사 및 조사의 순서와 절차는 아래와 같다.

순서	세무당국
1. 세무조사 계획의 통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납세의무자 소재지에서의 세무조사 계획은 세무조사 계획 승인일부터 최대 30영업일(근무일) 이내 통보한다. 납세의무자가 이미 세무감사 계획의 대상인 경우 세무당국에서 별도로 통보하지 않는다.
2. 세무감사/조사 결정문의 발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세무당국에서 조사/감사 결정문 발행일부터 3영업일 이내 감사/조사 이행 전 납세의무자에게 해당 결정문을 발송한다. 해당 감사/조사 결정문을 수령하였으나 납세의무자가 해당 감사/조사 진행 기간의 연기를 원하는 경우, 세무당국에서 해당 제안을 받은 후 5영업일 이내 해당 제안의 승인 여부를 통지해야 한다.
3. 세무감사/조사 결정문의 확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세무조사 결정문 발행일부터 15일 이내 또는 세무감사 결정문 발행일부터 10영업일 이내에 확정한다. 감사/조사의 결정문 내용과 감사/조사관의 일정을 확정한다. 감사/조사 결정 기록서를 작성하여 서명날인한다.
4. 감사/조사 이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납세의무자의 소재지에서 이행한다. 감사/조사의 내용과 관련된 정보, 자료의 제공을 납세의무자에게 요청한다. 감사/조사관은 세금신고서류의 정보와 관련된 회계장부, 회계자료, 재무제표, 자료와 비교하여, 필요시 감사/조사 내용에 관한 파악, 문제의 명확한 규명, 그리고 정확하고 객관적인 결론 수립을 위하여 결정문의 범위 내에서 납세의무자의 자산 조사 진행이 가능하다. 세무조사 기간은 조사 결정문 공표일부터 최대 45영업일(세무총국 경우), 30영업일(세무국)이다. 세무당국의 세무감사 기간은 세무감사 결정문 공표일부터 최대 5영업일(2020년 7월 1일부로 10영업일 적용 예정)이다.
5. 감사/조사 기간의 연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조사 기간의 연장: 조사 기간 연장 필요 시 세무당국에서 조사 기간 만료 전 5영업일 이내 조사 연장 결정문을 발행한다. 조사 결정에 관하여 01회만 연장 가능하며 조사 연장 기간은 세무총국의 경우 최대 25영업일, 그리고 세무국의 경우 최대 15영업일이다. 감사 기간의 연장: 증거물 확인 및 수집을 위한 추가 시간 필요 시 규정에 의한 감사 기간 만료 전 최대 1일 이내 세무당국에서 해당 감사 기간 연장의 결정문을 발행한다. 감사 기간은 1회만 연장 가능하다. 연장 기간은 5영업일로 한다.(2020년 7월 1일부로 10영업일 적용 예정)
6. 세무감사/조사 결과서 (Minutes) 작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세무감사/조사 결과서는 다음과 같이 작성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결과서의 법적 근거 감사/조사 이행한 내용별 결론, 위반행위 또는 위반 정도의 확정, 권한에 따른 위반 처리, 감사/조사관의 권한 외 처리 방안 건의 상위 기관 의견이 필요한 문제가 있는 경우, 확인서에 기재한다. 상위 기관의 의견이 있는 경우 감사/조사관이 규정에 의하여 납세의무자를 처리하기 위한 확인서의 별첨을 작성한다. 세무감사/조사 기록서는 감사 종료 또는 조사 결과서 공표 후 5영업일 이내 날인한다.

순서	세무당국
7. 감사/조사 결과의 보고와 결론 문서 초안 작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감사/조사관은 조사 종료일부턴 최대 15영업일 이내 또는 감사/조사 보고서 날인한 후 최대 5영업일 이내 상위 부서에 보고를 해야 한다. • 보고서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사 이행 내용별 상세 결과 - 위반의 성격 및 정도의 확정과 처리 방법 제안을 위한 근거 법령
8. 감사/조사의 결정 문서와 세무 처리 결정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세무조사: 세무조사 결정문을 발행한 세무당국장은 서식에 의한 세무조사의 결론 문서와 위반 처리 결정문을 발행해야 한다. 조사 결과 보고서 수령 후 최대 15영업일 이내 세무당국장은 조사 결론 문서를 발행해야 한다. 관할기관 및 조직의 의견 수렴이 필요한 경우를 제외한다. • 세무감사: 감사 결과에 따라 세무 처리와 행정 위반 처리 필요 시 감사 보고서 날인 일부턴 7영업일 내에(복잡한 경우 감사 보고서 날인한 일부턴 30영업일 내에 적용) 세무당국장은 세무 위반 처리 결정문을 발행하여야 한다.
9. 감사/조사 결정 문서, 세무 위반 처리, 결정문 공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세무조사: 조사 결정 문서에 날인한 때로부터 10일 이내 세무당국장(조사관장)은 납세의무자의 소재지에서 조사 결론을 공표한다. 세법 집행의 조사를 통한 조사의 결정 문서, 세무 처리, 행정 위반 처리의 결정문을 납세의무자와 관리 세무당국에(상위 세무당국에서 조사 이행 경우) 발송하여야 한다. • 세무 감사: 세무 위반 처리 결정문 혹은 세무 감사 결론 문서는 세무 위반 처리 결정문을 발행한 일부턴 2영업일 이내 납세의무자에게 직접 전달하거나 우편으로 발송한다.
10. 감사/조사를 통한 결정문의 관리와 이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사 결론 문서와 처리 결정문에 따라 기한 내에 납세의무자가 관련된 세금, 체납, 가산세 등을 국고에 납부하도록 감사/조사관에게서 관리한다. • 조사 결론 문서와 처리 결정문과 관련하여 기한 만료 후 90일 이내 각종 세액을 국고에 납부하지 않는 경우 감사/조사관에게서 손실 관리 및 세무 손실 강제 관리 부서와 협조하여 징수를 진행한다. • 조사 결론 문서와 처리 결정문에 따른 기한 만료 후 90일 이후까지 각종 세금을 국고에 납부하지 않는 경우 손실관리부서에서 세무손실관리 규정에 의하여 세무 손실강제 방법으로 관련된 세무손실, 체납, 가산세를 징수한다.

2020년 7월 1일부로 발효되는 2019년 세제관리법상 세무감사, 조사에 관한 신규 조항은 다음과 같다.



나. 세관검사, 감독

세관감사, 조사 외에도 수출입 물품과 관련된 세관 신고자(기관·개인)도 세관검사, 감독의 대상이다. 세관검사란 세관 서류, 관련 자료 및 문서의 세관당국의 조사, 물품 및 운송 수단의 물리적 조사를 의미한다. 세관감독은 통관 관리 대상인 운송 수단의 물품, 출하, 출입 및 운송에 있어 통관, 보관, 적재, 하역, 운송 및 사용에 관한 법조항의 준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세관당국이 취하는 전문적인 조치이다.

세관검사, 감독은 세관에 대한 국가 차원의 관리 효율성과 효과를 보장하면서 수출입 및 출입국과 환승 활동을 촉진할 수 있도록 위험 관리를 병행하여 수행해야 한다. 위험 관리 기준은 다음과 같다.

- 기업의 분류: 우선순위 기업, 준수 기업, 비준수 기업
- 수출입 상품 분류: 관리 정책, 관세 정책, 상품 특성, 원산지 등 관련 위법행위 정도
- 기타 요인: 경로, 운송 수단

세관조사에는 통관 및 통관 사후 조사가 포함되며, 통관 사후 조사는 세관 사무소나 세관 신고자의 사무소에서 실시할 수 있다. 아래는 조사 범위의 예시이다.

- 상품명, 코드 및 해당 세율
- 관세 가치
- 상품의 원산지
- 수출 라이선스, 수입 라이선스, 전문 시험 결과에 대한 서면 통지 또는 전문 조사 면제 (해당 시)
- 면세품의 조건, 결정 기준, 상태 및 절차

다. 세법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

1) 제재원칙

일반적으로 세관 제재가 행해지는 3가지 행정 위반행위는 다음과 같다.

- 통관 절차 위반행위
- 납부세액 감소 또는 면제, 환급, 비과세 금액의 증가를 위한 허위신고행위
- 탈세행위

위반행위를 취한 납세자는 아래의 경우에 해당하면 제재를 받지 아니한다.

- 납부세액 감소 또는 면제, 환급, 비과세 금액의 증가를 위해 허위신고 행위자가 규정에 따라 세액을 추가로 납부하는 경우
- 수출입의 경우 다음과 같다.
 - a) 신고 오류로 인해 세액 과소납부, 과다감면이나 과다환급을 받았지만 세관관청이 서류조사 결과를 통지하기 전에 납세자가 수정신고 하는 경우
 - b) 세관관청이 납세자의 세무감사, 조사를 진행하기 전에 납세자가 세관신고서 등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수정신고하는 경우

2) 납세절차 위반행위

납세절차 위반행위는 다음과 같다.

- 납세등록서류 제출기한 또는 수정신고 기한을 위반하는 경우
- 세금신고서를 제출기한까지 제출하지 않거나 제출기한 연장기간 종료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제출하지 않는 경우
- 관세법의 규정에 따라 세관신고서 제출기간 종료일로부터 수하인 없는 재화의 처리일 전까지 기간 사이에 세금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 납세자가 규정된 기한 내에 추가 신고를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서류상 오류가 있거나 내용이 불완전하게 신고되어 있으나 과소납부나 과다환급이 발생하지 않은 경우
- 납세의무 확정과 관련된 정보제공규정을 위반하는 경우
- 세무조사, 세무감사, 체납처분 등에 관한 규정을 위반하는 경우

납세절차 위반행위는 다음의 경우에 해당하면 행정처벌을 받지 아니한다.

- 납세신고기한이 연장된 납세자
- 개인이 소득세를 직접 신고한 경우로서 체납처분 서류를 기한 후 접수하고 환급액이 발생되는 경우
- 추계과세방법에 따라 납세하는 가족사업자, 개인사업자

3) 허위신고로 인한 과소납부나 과다환급에 해당하는 경우

- 세액산출근거를 잘못 신고하여 면제, 감면 또는 환급액이 적절하게 계산되지 않아 과소납부 또는 과다환급이 발생하지만 회계장부, 적법한 세금계산서 및 증빙서류상에 거러가 제대로 반영된 경우

- 납세자가 작성한 정상가격범위 보고서 또는 특수관계자거래 신고서가 세무당국 또는 관할기관의 조사 및 조사결과와 동일하지 않아 과소납부 또는 과다환급이 발생한 경우
- 적법하지 않은 계산서, 자료의 사용에 의한 과소납부 또는 과다환급 발생 시 해당 위법은 판매자의 책임

4) 조세회피

조세회피 행위는 다음과 같다.

- 납세등록 신고서류 또는 세금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제출기한 종료일로부터 또는 연장기한 종료일로부터 90일 이후에 납부신고서를 제출하는 경우
- 납부할 세액 확정을 위한 회계장부를 구비하지 않은 경우
- 재화와 용역을 판매, 제공 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거나 실제 거래대가보다 낮은 금액으로 세금계산서에 기재하는 경우
- 재화와 용역을 판매, 제공하면서 납부세액 감소, 세액감면 또는 공제, 환급세액 증가를 위해 적법하지 않은 세금계산서를 사용하는 경우
- 납부 또는 감면세액, 공제, 환급액 등의 조작을 위해 실제 거래내역과 다른 계산서 또는 자료를 사용하는 경우
- 수출이나 수입 재화를 실제와 다르게 신고하고 통관절차 완료 후 수정신고하지 않은 경우
- 수출이나 수입 재화에 대하여 고의적으로 무신고 또는 허위신고하는 경우
- 수입 재화에 대하여 탈세 목적으로 송하인과 공모하는 경우
- 비과세 또는 면세 대상의 재화를 기존 사용 목적과 다르게 사용하면서 세무당국에 변경 신고하지 않은 경우
- 사업 중단 또는 일시 중단 기간 내에 거래를 하면서 세무당국에 신고하지 않은 경우

다음에 해당하면 조세회피 행위가 아닌 조세절차 위반 행위로 처리된다.

- 세금등록서류 미접수, 세금신고서류 미접수, 납부세액이 발생되지 않아 90일 이후 세금 신고서류를 접수하는 경우
- 과세거래로부터 90일 경과 후 세금신고서류를 접수하고 세무당국에서 세무감사, 조사 결정문을 공표하기 전 또는 세금신고서류 체납 행위에 관한 확인서 작성 이전에 납세자가 국고에 세금과 체납금을 모두 납부한 경우

5) 과소신고가산세 소멸시효

구분	가산세	소멸시효
납세절차 위반행위	해당 법률의 규정에 따른 가산세	위반행위를 취한 날로부터 2년, 위반 행위일은 납세의무 이행기한의 다음 날로부터 한다.
허위신고로 인한 과소납부 또는 과다환급	과소신고 세액의 20%	위법행위를 취한 날로부터 5년
형사상 책임을 추궁할 수 없는 조세회피 행위	탈루세액의 1~3배, 납세자가 탈세에 대한 가산세를 납부해야 할 경우 연체 이자가 부과되지 않는다.	

조세관리 행정위반에 대한 제재 과소신고가산세 소멸시효가 경과한 경우 납세자는 처벌을 받지 않지만 아래와 같이 미납 본세와 납부지연가산세를 완납하여야 한다.

- (i) 과소납부세액, 탈루세액, 과다감면 및 과다환급세액
- (ii) 체납세 0.03%/일

이는 납세자가 신고납부한 경우 위반행위 적발 시점으로부터 10년 이전 기간까지 위반행위 적발일 이전의 모든 기간에 적용된다.

6) 세관 제재

일반적으로 세관 제재가 행해지는 3가지 행정 위반행위는 다음과 같다.

- 가) 통관 절차 위반행위
 - 나) 납부세액 감소 또는 면제, 감액, 환불, 비과세 세액의 증가를 위한 허위신고 행위
 - 다) 탈세행위

기본적으로 세관 절차를 위반하는 행위 및 탈세행위의 제재는 일반 세금과 동일한 가산세 및 제한 규정을 갖는다.

납부세액 감소, 면제, 감액 또는 환급액, 비과세 금액의 증가를 위한 허위신고 행위자는 규정에 따라 과세액과 연체이자액의 납부 외에도 다음과 같은 제재를 받는다.

- 다음의 경우 과소신고액 또는 규정을 초과하여 면제, 감액, 환급, 비과세된 세액의 10%를 과소신고가산세로 징수
 - ① 납세자가 물품 통관일 기준 60일 이후에 세금 신고상 오류를 발견하고, 세관당국의 통관 사후 조사 시행을 결정하기 전에 보완하는 경우

- ② 통관과정에서 상품명, 분류, 수량, 품질, 가격, 상품코드, 세율, 수출 원산지 또는 수입 상품의 신고를 누락하거나 오류가 있으며, 수출입 통관 절차에 따라 세관당국이 통관 서류를 직접 확인하고 통관이 완료되기 전에 납세자가 세금 신고의 오류를 발견하고 자진신고한 경우
- 다음의 경우 과소신고액 또는 규정을 초과하여 면제, 감액, 환급, 비과세된 세액의 20%를 과소신고가산세로 징수
 - ① 통관과정에서 상품명, 분류, 수량, 품질, 가격, 상품코드, 세율, 수출입품의 원산지 기재 누락 또는 오류가 있으며, 세관당국의 통관 조사 과정에서 적발된 개인 또는 기관이 위법행위 사실을 기록하기 전에 규정에 따른 세금을 전액 자진 납부하는 경우
 - ② 면세 또는 비과세대상 신고 오류
 - ③ 규정을 위반하여 관세 할당량 내에서 상품을 사용하는 행위
 - ④ 면세 서류, 면세 또는 감면 검토 서류, 세금 환급, 세금 미징수, 초과 납세액 및 가산세 취급 서류의 내용 작성 및 신고 오류
 - ⑤ 원자재, 소모품, 기계, 장비, 가공 제품, 수출 생산 및 수출 처리 관리 규정 위반으로 회계장부와 물품 재고 간 오차가 있는 경우, 조세회피 행위에 규정되지 않은 수출입 물품의 회계기록
 - ⑥ 면세창고에서 물품 관리규정을 위반하여 조세회피에는 해당되지 않으나 회계장부에 비해 실제 재고가 부족한 경우
 - ⑦ 과소신고액 또는 규정을 초과하여 면제, 감액, 환급, 비과세된 세액을 허위신고하는 등의 기타 행위

세금 탈루에 대한 처벌

- 관세회피 및 사기행위는 다음과 같다.
 - ① 실제 거래와 일치하지 않는 비합법적인 세금계산서 및 문서를 사용, 납부세액을 줄이거나 면제, 축소 또는 환급될 세금 금액을 증가시키는 세금계산서를 임의로 삭제 또는 수정하는 행위
 - ② 세관이 안내하는 상품코드, 세율 및 세율에 대한 상품코드를 잘못 신고하는 경우
 - ③ 세관이 관할하는 상품명, 카테고리, 수량, 품질, 가치, 코드, 세율, 수출 또는 수입품의 출처를 신고하고 오류가 없는 경우 세관원 조사 후 위반한 개인 또는 조직이 위반 기록

을 작성하기 전에 규정에 따라 자발적으로 납부 가능한 세액을 납부하지 않는 것을 발견한 경우

- ④ 수출 절차 완료 후 실제로 수출되지 않은 가공 제품
 - ⑤ 가공 제품의 종류 및 수량 측면에서 실제 수출 제품보다 과다신고한 경우
 - ⑥ 수출가공기업이 제품 가공 또는 생산을 위해 수입된 원료를 사용하지 않고 제품을 가공 생산해 수출한 것 또는 해외에서 가공된 제품을 수입하였으나 제품 가공 또는 생산 시 해당 가공 제품을 사용하지 않은 경우
 - ⑦ 세관에 규정에 따라 사용 목적 변경을 신고하지 않고 부당한 목적으로 세금을 납부하지 않거나 세금 면제 대상으로 간주한 경우
 - ⑧ 비관세 지역에서 내륙 지역으로 수입되는 상품명, 코드, 카테고리, 수량, 품질, 금액, 세율, 상품의 원산지를 신고하지 않거나 잘못 신고하는 경우
 - ⑨ 납부 세액 결정과 관련된 회계 장부를 기록하지 않은 경우
 - ⑩ 규정된 대상이 아닌 자에게 면세품을 판매한 경우
 - ⑪ 상품명, 카테고리, 수량, 품질, 금액, 세율, 수출 원산지 또는 세금을 회피하기 위해 수입품을 의도적으로 신고하지 않거나 허위로 신고하는 경우
- 상기 규정을 위반하였으나 형사상 책임을 추궁할 정도가 아닌 경우는 납세자에게 다음과 같이 가산세를 부과하여야 한다.

형량 가중사유가 없을 경우: 해당 조세회피 상당액에 대해 가산세를 부과한다.

형량 가중사유가 있을 경우: 법인의 경우에는 가중사유당 0.2배를 추가 부과하나 총가산세액은 해당 조세회피액의 3배를 초과해서는 안 된다. 개인의 경우에는 가중사유당 0.1배 추가 부과하나 총가산세액은 해당 조세회피액의 1.5배를 초과해서는 안 된다.

라. 세무정책의 질의 및 불복

1) 세무정책의 질의

다음의 경우에 세무정책 질의를 할 수 있다.

- 납세의무자가 세무정책에 관한 문제가 있는 경우
 - 납세의무자가 세무감사, 조서관이 기재한 감사, 조사 보고서의 결과에 불복하는 경우
- 세무정책 질의 순서는 다음과 같다.

가) 납세의무자가 관할 세무당국에 세무정책에 관한 질의 서면을 접수한다.

- 나) 세무당국에서 납세의무자의 서면을 받아 질의 회신을 담당할 부서를 지정한다(주관부서-납세의무자 지원부서 전담).
- 다) 주관부서에서 세무회계 신고부서, 세무감사, 조사부서 등의 유관 부서의 의견을 수집. 통합하고 답변 초안을 작성하여 기관장에게 보고한다.
- 라) 기관장은 납세의무자에게 회신 문서를 발송한다(초안의 내용에 동의한 경우)
- 마) 상위 기관의 지도의견이 필요한 경우 담당부서가 의견 요청 문서를 작성하여 기관장의 날인을 받고 상급 기관에 발송한다.
- 바) 하위 기관으로부터 의견 요청 문서를 받은 상위 기관은 상위 (1), (2), (3)순서로 진행한다.
- 사) 상위 기관은 안내 문서로 하위 기관에 회신한다.
- 아) 상위 기관의 공문을 받은 후 하위 기관은 그 내용을 바탕으로 납세자에게 회신한다. 납세의무자가 관할 세무당국의 답변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세무총국이나 재무부 등의 상급 기관에 재질의한다. 이때 진행 절차는 위의 순서와 유사하다.

2) 불복

감사, 조사의 보고서가 법률을 위반하였거나 납세자의 합법적인 권리와 이익을 침해받았다는 증거가 있는 경우 납세의무자는 다음 순서로 불복을 진행한다.

- 행정 결정문 발행자 혹은 행정 위반자가 소속된 기관에 1차 불복하거나 행정소송법에 따라 재판소에 행정소송한다.
- 1차 결정에 불복하거나 규정에 명시된 기한 내에 해결되지 못한 경우 납세자는 1차 불복 해결 유권자의 직속 상위부서에 2차 불복할 권리가 있으며 행정소송법에 의한 재판소에서 행정소송을 할 수 있다.
- 2차의 결정에 불복하거나 규정에 명시된 불복 기한 내에 해결되지 못한 경우 행정소송법에 따라 재판소에서 행정소송할 수 있다.

불복 기간은 행정 결정문 수령한 날 또는 행정결정과 행정행위에 관하여 속지한 날로부터 90일이다.

	1차 불복	2차 불복
고소 기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행정 결정문 수령일 또는 행정 결정과 행정 행위에 관하여 속지한 날로부터 90일 이내 	<ul style="list-style-type: none"> 1차 고소 기한 종료일로부터 30일(기한 내 해결되지 못하는 또한 납세자가 판정을 동의하지 않는 경우). 왕래가 어려운 소외된 지역의 경우 45일 내이다.
불복 처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수령한 날로부터 10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불복 고지일로부터 10일
세무당국의 해결 기한	<ul style="list-style-type: none"> 수령한 날로부터 30일 내. 복잡한 사건 경우 수령한 날로부터 45일 내 왕래가 어려운 소외된 지역의 경우 고지일로부터 45일 내. 복잡한 사건 경우 고지일로부터 60일 내 	<ul style="list-style-type: none"> 수령한 날로부터 45일 내. 복잡한 사건의 경우 수령한 날로부터 60일 내 왕래가 어려운 소외된 지역의 경우 고지일로부터 60일 내. 복잡한 사건의 경우 고지일로부터 70일 내
불복 해결 결정문의 발송과 공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불복 결정문 발행일로부터 3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불복 결정문 발행일로부터 7일
불복 해결의 공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2차 불복 결정문 발행일로부터 15일

관할 세무당국의 불복 해결의 절차

- 해결을 위한 사실의 확인이 필요한 경우: 불복 서류의 검토 분석 후, 사실 확인이 필요한 복잡한 사건으로 인정되는 경우 세무당국장의 승인을 받아 다음의 절차를 진행한다.
 - 1단계: 불복인과 상담
 - 2단계: 결정문 초안과 확인 계획 수립
 - 3단계: 결정문 및 불복 내용 확인 계획의 승인
 - 4단계: 확인 결정 공표
 - 5단계: 확인 진행
 - 6단계: 확인 결과 보고서 작성과 불복결정문 초안 작성
 - 7단계: 필요 시 전문기관의 의견, 조언, 검토 절차
 - 8단계: 대화 주최
 - 9단계: 문서 심사
 - 10단계: 불복 결정문 발행
 - 11단계: 불복 결정문 발송
 - 12단계: 불복 공개 해결(2차 소송 결정의 경우)
 - 13단계: 불복 결정문 이행
 - 14단계: 관련 서류 기록과 서류 보관
- 즉시 해결의 경우: 신고서 혹은 관련 법적서류 분석을 통해 고소 내용의 진실성/허위성

을 확인하기에 충분한 법적 근거가 있는 경우 담당자가 다음의 순서로 처리한다.

1단계: 불복인과 상담

2단계: 불복 내용 확인 결과 보고서 초안 및 불복 결정문 초안 작성

3단계: 필요 시 전문기관의 의견, 조언의 수집

4단계: 대화 주최(필요시)

5단계: 문서 심사

6단계: 불복 결정문의 완성과 승인 제출

7단계 ~ 11단계: 사실 확인이 필요한 불복 대상의 경우 상위 10단계 ~ 14단계로 진행한다.

3) 납세의무자에 관한 유의사항

- 소재지에서 감사·조사 이행 전
 - 세무감사, 조사는 관할 세무당국의 결정문이 있어야 진행 가능하므로 납세의무자는 공식 결정문이 없는 경우 감사, 조사를 거부할 수 있다.
 - 서면으로 세무조사 계획 혹은 세무감사 통보를 수령한 경우(유선 통보 가능) 납세의무자는 감사·조사 진행 기간을 서면으로 소재지 감사관에게 제안할 수 있다.
 - 세무감사·조사 결정문을 수령한 경우 납세의무자가 해당 감사·조사 진행 이전에 세무당국에 서면으로 사유를 명시하여 연기 요청을 하고 세무당국의 승인이 있는 경우에만 연기가 가능하다.
- 소재지에서 감사·조사 진행 시
 - 감사, 조사관의 요구 시 감사·조사 내용과 관련된 충분하고 정확한 정보와 자료를 즉시 제공하여야 한다.
 - 정보 및 자료가 부족하거나 명확하지 않은 경우 조사관에게 직접 대면 또는 서면으로 해명 또는 설명한다.
 - 납세의무자는 세무 감사·조사 업무 범위 외의 정보 및 자료 제공을 거부할 수 있다.
 - 세무감사·조사 보고서를 수령하고 보고서의 내용에 관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 세무감사 종료 또는 보고서 공개 공표일부터 최대 5영업일 이내 감사·조사 보고서에 서명, 날인한다.
 - 정책 제도에 관한 문제 발생 시 상위 세무당국에 질의서를 제출하는 것을 고려할 수 있다.

- 감사 결과, 세무처리결과와 행정위반처리(납세의무와 위반가산세)를 집행한다.
- 감사·조사 종료 후 납세의무자가 세무조사 보고서에 날인하지 않는 경우 해당 감사·조사 보고서 공개 공표일부터 최대 5영업일 이내 감사·조사관은 행정 위반 보고서를 작성하여 상위 기관에 보고하고, 납세의무자의 확인서 날인을 요청한다. 납세의무자가 계속 확인서 날인을 하지 않는 경우 확인서 공개 공표일부터 최대 30영업일 이내 세무당국장은 감사·조사 보고서 내용과 수집된 자료, 데이터에 따라 징수 처리 결정문 혹은 세무감사·조사 결론 문서를 발행한다.

제2장 베트남의 세법

- I. 개인소득세
- II. 법인세(법인소득세)
- III. 특수관계자거래
- IV. 부가가치세
- V. 외국인계약자세
- VI. 베트남과 한국 간의 이중과세 방지 협정
- VII. 관세법
- VIII. 기타 세금

제2장 | 베트남의 세법

I 개인소득세

개인소득세란 개인의 실제적인 소득을 바탕으로 직접 부과되는 세금이며 베트남 내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글로벌 소득에 적용된다.

1. 현행 법령

단계	문서명	발효일	만료일
2009/01/01 ~ 현재	개인소득세에 관한 04/2007/QH12호의 법률	2009/01/01	
	개인소득세법 개정에 관한 26/2012/QH13호의 법률	2013/07/01	
	개인소득세법 안내에 관한 65/2013/NĐ-CP호의 시행령	2013/07/01	
	65/2013/NĐ-CP호의 시행령 안내에 관한 111/2013/TT-BTC호의 시행규칙	2013/10/01	
	111/2013/TT-BTC호 시행규칙 개정에 관한 119/2014/TT-BTC호의 시행규칙	2014/09/01	
	218/2013/NĐ-CP호 시행령 개정에 관한 91/2014/NĐ-CP호의 시행령	2014/11/15	
	91/2014/NĐ-CP호 시행령 안내에 관한 151/2014/TT-BTC호의 시행규칙	2014/11/15	
	65/2013/NĐ-CP호 시행령 개정에 관한 12/2015/NĐ-CP호의 시행령	2015/01/01	
	개인소득세에 관한 92/2015/TT-BTC호의 시행규칙	2015/07/30	
	세금 등록에 관한 95/2016/TT-BTC호의 시행규칙	2016/08/12	
	111/2013/TT-BTC호 시행규칙 개정에 관한 25/2018/TT-BTC호의 시행규칙	2018/05/01	

2. 납세의무자

가. 거주자

1) 조건

아래 3가지의 조건 중 한 가지를 충족하면 거주자로 분류된다.

- 월력으로 베트남에서 183일 이상 거주하거나 베트남에 입국한 첫날부터 연속 12개월 간 거주하는 경우

베트남에서 거주하는 일수는 해당 개인이 베트남에 입국하고 출국 시 여권 또는 통행서류를 근거로 확정된다. 입국일과 출국일은 1일로 산출된다.

또는

- 거주법에 의하여 베트남에 상주지가 있는 경우
 - 베트남 국민의 경우, 거주하는 곳이란 일정한 장소에서 연속, 안정적으로 생활하며 규정에 의하여 상주 등록된 곳이다.
 - 외국인의 경우, 주로 거주하는 곳이란 거주증에 명시되는 상주지 또는 임시 거주증 발급 등록 시 임시 거주하는 곳이다.
 - 베트남에서 주로 거주하는 곳이 있으나 베트남에서 183일 이하 체류하는 경우 타 국가의 거주자임을 증명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베트남 거주자로 인정된다.

또는

- 해당 연도 내 183일 이상의 기간을 계약한 임차주택이 있거나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 개인이 베트남에서 주로 거주하는 곳이 없으나 임차주택 계약서들에 의하여(다수의 임차 경우 포함) 총임차 기간이 해당 연도 내 183일 이상인 경우
 - 개인 임차 또는 근로 사용주의 대행 임차 등 임차 형식과 관계없이 호텔, 게스트하우스, 여관, 근무지에서의 거주 등을 포함하여 거주하기 위한 임차주택이 있는 경우

2) 과세소득의 확정 범위

거주자의 과세소득은 베트남 국내외 소득의 지급처 및 수취처 관계없이 발생한 모든 소득을 말한다.

나. 비거주자

1) 조건

비거주자는 상기 거주자에 관한 조건을 충족하지 못한 자를 말한다.

2) 과세소득의 확정 범위

비거주자에 관하여 과세소득은 지불처 및 수취처 관계없이 베트남 내에서 발생하는 소득이다.

3. 과세소득

개인소득세가 부과되는 10가지 소득은 다음과 같다.

순서	소득 종류	예시
1	근로소득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지불하는 임금, 급여와 같은 성질의 대가
2	사업소득	개인사업자란 각종 사업 분야 및 영역에서 재화 및 용역을 생산 및 판매, 제공하는 개인을 말한다. 개인과 가정 단위의 연간 매출이 1억 동 이상이며 아래와 같은 경우를 포함한다. a) 재화 및 서비스의 생산 및 판매, 제공함에 따른 소득 b) 법에 의한 인허가 및 자격증 보유 중인 개인의 독립적인 업무 활동으로부터 발생한 소득 c) 복권, 보험, 단단계판매 대리점의 정가 판매 대리 d) 조직과 경영 협력
3	자본 투자소득	a) 대출 이자 b) 자본 투자, 지분 투자의 수익과 배당금 c) 법인의 해산, 활동 유형 변경, 분할, 합병 또는 회수 시 취득한 가치 증가분 d) 국내 기관에서 발행하는 채권, 단기 증권과 기타 채권의 이자로 수취하는 소득
4	자본 양도소득	a) 지분 양도에서 발생한 소득 b) 증권 양도로 발생한 소득
5	부동산 양도소득	a) 토지 사용권과 지상물 재산의 양도로 발생한 소득 b) 주택 소유권 또는 사용권 양도로 인한 소득 c) 토지 임차권, 수면 임차권의 양도로 인한 소득 d) 각종 형식의 부동산 양도로 수취되는 소득
6	당첨소득	a) 복권 당첨 b) 각종 프로모션의 당첨

순서	소득 종류	예시
6	당첨소득	c) 각종 내기 형식의 당첨 d) 상금이 있는 게임, 시합과 기타의 수상
7	저작권소득	a) 저작권 대상의 이전과 사용권 이전으로 인한 소득 b) 기술 이전으로 인한 소득
8	가맹점 영업권 양도소득	개인이 가맹점 영업권 양도계약서로 수취하게 되는 각종 소득
9	상속으로 인한 소득	소유권 또는 사용권 등록이 필요한 경제 조직 내 증권·자본 그리고 재산과 부동산과의 상속
10	증여소득	소유권 또 사용권 등록이 필요한 경제 조직 내 증권, 주식, 그리고 재산과 부동산의 증여소득

4. 비과세 소득

주요 비과세 소득은 아래와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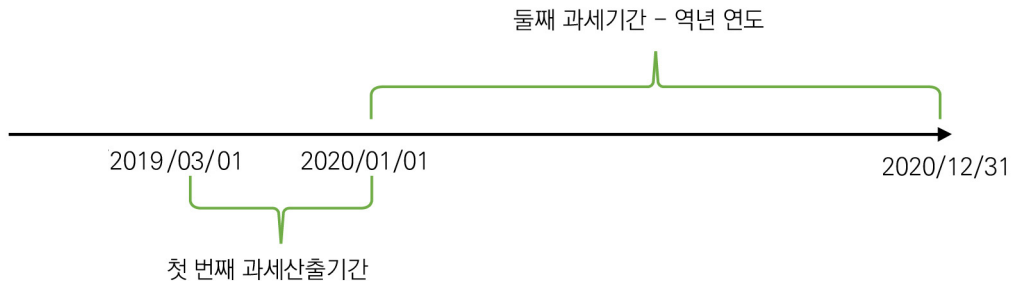
근로소득	기타소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규정에 의한 출장비 지출 • 유니폼비 지출(현행 수준에 의하여 연간 일당 500만동 내) • 식비(현행 수준에 의하여 월 일당 73만동 내) • 베트남에 거주 중인 외국인, 해외에서 근무 중인 베트남 사람, 해외에서 장기 거주하고 베트남에서 근무 중인 베트남 사람의 1회 이주비용 • 외국인 주재원과 해외에서 근무 중인 베트남 사람의 연 1회의 고국 방문 왕복 비행기표 • 베트남에서 공부 중인 외국인의 자녀와 해외에서 공부 중인 베트남 사람의 자녀의 유치원부터 고등학교까지의 학비 • 베트남 또는 해외의 자진 휴직 기금으로 수취한 휴직금 • 근로자 단체에 공동으로 지원되는 현금이 아닌 일부의 복지(예: 회원비, 회식비, 헬스케어비) • 법인에서 대신 지불하는 집세 및 포함된 전기세, 수도세와 기타 서비스비용(있는 경우) 중 초과세소득의 15% 초과분 • 야간, 초과근무 등으로 지급되는 추가 급여 • 비저축성 보험 • 거주지부터 근무지까지 출퇴근에 관련하여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비용 • 베트남에서 석유, 광산 개척 분야에 근무 중인 외국인의 파견, 발령에 관한 비용 • 직원과 가족의 혼·상례의 지원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족 구성원 간의 부동산 양도 • 베트남에서 하나뿐인 주택 및 토지 사용권이 있는 개인의 지상물과 포함된 부동산의 양도 • 가족 구성원 간의 부동산으로 상속 및 교환 수취로 인한 소득 • 베트남의 신용조직과 외국은행 지점에서의 예금의 이자, 생명보험의 이자, 정부채권 이자의 소득 • 해외에서 거주하는 베트남인으로부터 송금받은 소득 • 장학금 소득 • 생명보험, 비생명보험, 건강보험 계약의 보상금 그리고 규정에 의한 일부의 기타 보상금 • 수익 용도로 설정되거나 인정된 자원기금으로의 소득 • 자선, 인도적 목적의 해외 지원비로 인한 소득

5. 과세기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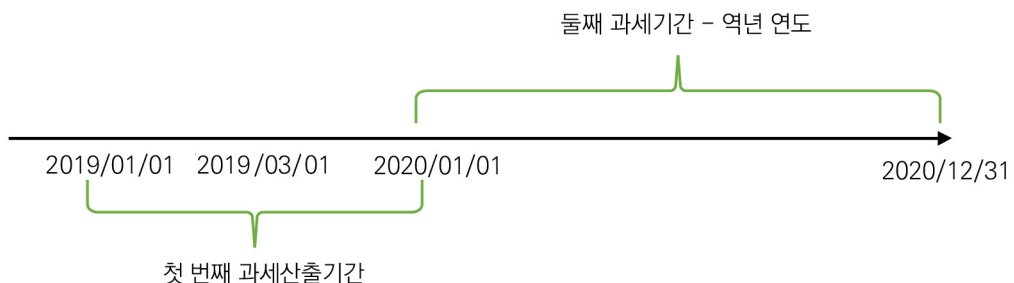
가. 거주자

1) 역년에 의한 과세기간: 임금, 급여소득에 적용

- 베트남에 처음 입국하고 첫 역년 내 183일 이상 거주하는 개인에 관한 첫 번째 과세산출기간은 아래와 같다.
 - 개인이 베트남과의 이중과세방지협정을 체결한 국가 및 영토의 국민인 경우(예: 한국) 과세산출기간은 개인이 베트남에 입국한 월(달)부터 근로 계약 종료하고 베트남을 출국할 때까지 또는 12월 31일까지(개인이 다음 해에도 베트남에 지속적 거주하는 경우)로 한다. 이 경우 이중과세방지협정 이행을 위한 영사 확인 절차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 구체적으로 아래와 같다.



- 개인이 베트남과의 이중과세방지협정을 체결한 국가 및 영토의 국민이 아닌 경우 과세산출기간은 역년으로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적용된다. 개인은 해외에서 발생한 소득이 있으며 해외 규정에 의하여 개인소득세를 납부한 경우, 해외에서 기납부한 세액은 공제된다. 공제될 금액이 베트남의 세율표에 의하여 해외에서의 소득부분에 분배되는 세금보다 큰 경우 초과공제는 불가하다.



베트남에 입국한 첫 역년 내 개인이 베트남에서 183일 이하 거주하였으나 베트남에 입국한 첫날 이후 12개월 내에 183일 이상 거주하는 경우 첫 과세 산출기간은 베트남에 입국한 첫날부터 연속적인 12개월로 확정된다. 둘째 해부터 과세산출기간은 역년에 의해 확정된다.



2) 소득 발생 시 과세기간

자본의 투자, 자본의 양도(증권 양도 포함), 부동산 양도, 당첨, 저작권, 가맹점 영업권 양도, 상속, 증여로 인한 소득에 적용된다.

3) 사업소득은 연간 과세기간(추계과세방법) 또는 발생 시마다 적용

나. 비거주자

- 비거주자의 과세기간은 소득 발생 시마다 산출된다.
- 비거주자이지만 베트남 영토 내 고정적인 영업소재지(매점)가 있는 개인사업자의 경우 거주자인 개인사업자에게 적용한 과세산출기간과 동일하다.

6. 소득공제

소득공제는 세금 산출 전 과세소득에서 공제되는 금액이며, 급여소득이 있는 거주자에게만 적용된다. 3개의 소득공제는 아래와 같다.

가. 가족공제

나. 필수 보험가입, 자발적 휴직기금의 공제

다. 자선, 인도, 학업증진 목적으로 기부한 금액 공제

가. 가족공제

1) 가족공제금액

가) 납세의무자: 월 900만동

나) 부양가족: 월 360만동

2) 가족공제의 원칙

가) 개인이 복수의 급여소득이 있는 경우 해당 연도에 한곳에서만 가족공제 선택이 가능하다.

나) 베트남에서 거주 중인 외국인의 경우 베트남에 입국한 월부터 가족공제 적용이 가능하다.

다) 납세의무자는 부양가족 공제를 위하여 과세당국에 부양가족 등록이 필요하다.

라) 부양가족은 아래와 같다.

- 18세 이하의 자녀
- 18세 이상의 장애, 근로 무능력의 자녀
- 대학, 전문대학, 전문직업 및 직업양성 고등학교에서 베트남 또는 해외에서 공부하며 18세 이상이지만 소득이 없거나 당해 연도 내 월 100만동 이하 소득이 있는 자녀
- 납세의무자가 직접 돌보는 아내 또는 남편, 부모 또는 보호자가 없는 기타 가족이며 동시 (i) 근로 연령 대상이며 장애가 있거나 근로 무능력과 수입이 없거나 월 100만동 이하 소득이 있는 경우, (ii) 근로 연령 초과 대상이며 소득이 없거나 월 100만동 이하 소득이 있는 경우

3) 보험료, 자발적 휴직기금 공제

가) 공제 가능 보험료: 사회보험, 의료보험, 개인 부과 실업보험, 베트남 규정에 따른 특수한 업종에 관한 필수 보험료 부담분

나) 외국인이 국적이 있는 국가 또는 근무 국가의 규정에 의하여 필수 보험에 가입한 경우 베트남 법의 규정과 마찬가지로 베트남에서 세금 산출 시 해당 금액이 공제된다.

다) 재무부의 안내에 따른 자발적 휴직기금에 투입한 금액에 대해 월 최대 100만동 한도로 실비가 공제된다.

4) 자선, 인도, 학업증진 기금에 기부금 공제

가) 특별히 어려운 상황에 있는 아동, 장애인, 보호자 없는 노인의 부양 및 요양기관에 대한 기부, 베트남 법에 의해 설립되며 운영 중인 자선, 인도, 학업증진 기금 기부는 세금 산출 시 공제한다.

나) 기부금이 합법적인 소득임을 증명하는 서류

다) 기부금이 발생한 해에 전액 공제되지 않은 경우 이월공제되지 않는다.

7. 개인소득세 계산

가. 과세소득의 계산 시점

소득 종류	과세소득 계산 시점
근로소득	법인, 개인이 납세의무자에게 소득을 지급하는 시점 또는 납세의무자가 소득을 수취한 시점 저축성 있는 보험에 대한 과세소득은 보험사와 자발적 휴직기금 관리회사의 보험료 지불 시점에 확정된다.
사업소득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개인사업자는 아래와 같이 소득 발생 각 시점에 따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재화 판매 활동의 경우는 재화의 소유권 및 사용권의 이전 시점 또는 재화 소유권 및 사용권 이전 시점 이전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경우 세금계산서 발행 시점으로 한다. - 운송 활동 및 서비스 공급의 경우 구매자에게 서비스 공급을 완료한 시점 또는 서비스 공급 완료 시점 이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경우 서비스 공급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행 시점으로 한다. - 건설 및 설치 작업의 경우는 공사완료 또는 인수인계 시점으로 한다. 개인사업자가 추계과세방법에 따르는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추계과세방법 적용 시 과세 매출은 확정 시점 과세연도의 전년 11월 20일부터 12월 15일까지 적용한다. - 추계과세방법을 적용하는 개인사업자가 새로이 영업을 시작하거나(연초부터 운영하지 않음) 당해에 사업규모 및 업종을 변경하는 경우 매출 확정시점은 영업 시작일 또는 사업 규모 및 업종 변경일로부터 10일 이내 적용한다. - 세금계산서로 인식된 매출의 경우의 과세 매출 확정 시점은 상기 소득별 발생 시와 동일하다. 재산 임대하는 개인: 매출 인식 시점은 재산 임대 계약서상 지급 기한별 시작시점으로 한다.
자본 투자소득	조직, 개인이 납세의무자에게 지급하거나 또는 납세의무자가 소득을 수취하는 시점
자본 양도소득	자본 양도 계약서 발효 시점

소득 종류	과세소득 계산 시점
증권 양도소득	- 증권거래소에서 거래되는 증권: 증권소득 수취 시점 - 증권보관센터의 권한 이전 시스템을 통해 소유권 이전이 이루어지는 증권거래소의 증권: 증권보관센터에서 증권 소유권이 이전되는 시점 - 상기 경우가 아닌 증권: 증권 양도 계약의 발효 시점 - 증권으로 자본 투입: 자본 투입 시 납세의무가 없으며 개인이 자본 양도 및 자본 회수 시 납세의무가 발생한다.
부동산 양도소득	부동산 양도 절차의 진행 시점
당첨소득	당첨 금액 수취 시점
저작권 소득	저작권 금액 지급 시점
가맹점 영업권 양도소득	수취인과 양도인 간의 가맹점 영업권 양도금액의 지급 시점
상속, 증여소득	개인이 상속 및 증여로 받은 재산의 소유권 및 사용권 등록 절차 진행 시점

나. 거주자에 대한 개인소득세 계산

1) 근로소득

개인소득세 = 과세대상소득 × 세율

구체적으로 아래와 같다.

가) 과세대상소득 = 실제 수취 소득 + 대행 지급 소득 - 공제소득

그 중

- ✓ 실제 수취 소득이란 근로자가 매월 수취하는 세금이 포함된 급여(비과세 소득 제외)
- ✓ 대행 지급 소득이란 사용주가 근로자를 대신하여 지급하는 현금 또는 현금이 아닌 이익(세금 포함)
- ✓ 공제 소득이란 가족수당 공제, 필수 보험 가입공제, 자발적 휴직기금, 자선, 인도, 학업증진 기금 공제

나) 적용 세율은 아래 누계표에 따른다.

세금	(월) 과세소득(백만동)	세율(%)
1	5 이하	5
2	5 이상 10 이하	10

세급	(월) 과세소득(백만동)	세율(%)
3	10 이상 18 이하	15
4	18 이상 32 이하	20
5	32 이상 52 이하	25
6	52 이상 80 이하	30
7	80 이상	35

다) 실수령 급여와 급여 총액

실수령급여-순소득(Net income)은 개인소득세 차감 후 실제 수령하는 금액이다. 고용자가 근로자에게 순소득기준으로 급여를 지급하는 경우 순소득을 gross up하여 총소득으로 과세소득을 확정한다. 이 경우 개인소득세는 고용자가 부담한다.

급여총액-총소득(Gross income)은 개인소득세를 포함한 총금액이다. 고용자가 개인소득세가 포함된 총소득으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과세소득을 확정하기 위한 gross up이 필요없다. 이 경우 개인소득세는 개인이 부담한다.

Net income에서 Gross income으로 Gross up 공식:

Gross up 근거소득 = 실제 받은 소득 + 현물이익 - 공제사항		
순서	Gross up 근거 월소득(백만동) (‘Gross up 근거 월소득’으로 함)	과세소득
1	4.75 이하	Gross up 근거 월소득/0.95
2	4.75 이상 9.25 이하	(Gross up 근거 월소득-0.25백만동)/0.9
3	9.25 이상 16.05 이하	(Gross up 근거 월소득-0.75백만동)/0.85
4	16.05 이상 27.25 이하	(Gross up 근거 월소득-1.65백만동)/0.8
5	27.25 이상 42.25 이하	(Gross up 근거 월소득-3.25백만동)/0.75
6	42.25 이상 61.85 이하	(Gross up 근거 월소득-5.85백만동)/0.7
7	61.85 이상	(Gross up 근거 월소득-9.85백만동)/0.65 (Gross up 근거 월소득-9.85백만동)/0.65

2) 사업소득

개인사업자의 형식은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구분된다.

가) 개인사업자가 추계과세방법에 의하여 납세하는 경우

추계과세방법에 의해 납세하는 개인사업자란 제조와 경영 영역 및 업종에 속한 모든 재화 및 서비스 매출이 있는 개인사업자로 규정되며, 소득 발생 시마다 납세하는 개인사업자, 자산을 임대하는 개인사업자, 복권/보험대리점/다단계 판매의 대리점으로 직접 계약 체결하는 개인을 제외한다.

부가가치세와 개인소득세 산출 근거

$$\begin{aligned} \text{납부 부가가치세 금액} &= \text{부가세 과세 매출} \times \text{부가세율}(\%) \\ \text{납부 개인소득세 금액} &= \text{개인소득세 과세 매출} \times \text{개인소득세율}(\%) \end{aligned}$$

부가가치세 및 개인소득세 과세 매출이란 세금계산 시기 내 세금이 포함(과세대상의 경우)된 재화 및 서비스의 제조와 사업으로 인한 총판매금액, 가공비, 인센티브, 서비스 공급 대가이다. 세금계산서를 사용하는(추계과세방법으로 납세하는) 개인사업자인 경우 세금계산서상 매출에 상당한 세액을 추가 납부한다. 과세 매출을 확정하지 못하거나 적절하게 확정하지 못한 경우 과세당국은 조세관리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의 과세 매출을 확정한다.

나) 소득 발생 시 납부하는 개인사업자

소득 발생 시 납부하는 개인사업자란 베트남 영토 외에서 사업 매출이 발생하는 거주자, 계속해서 사업을 하지 않거나 고정적인 사업장이 없는 개인사업자를 포함한다.

추계과세방법으로 납세하는 개인사업자와 마찬가지로 세금을 산출한다.

다) 자산을 임대하는 개인사업자

자산을 임대하는 개인사업자란 거주 서비스가 미포함된 주택, 가게, 공장, 창고의 임대, 운송수단 임대, 기사가 미포함된 장비의 임대, 서비스가 미포함된 기타 자산임대 활동으로 소득이 발생하는 개인을 이른다.

부가가치세와 개인소득세 산출의 근거

$$\begin{aligned} \text{납부 부가가치세} &= \text{부가가치세 과세 매출} \times \text{부가세율}(5\%) \\ \text{납부 개인소득세} &= \text{개인소득세 과세 매출} \times \text{개인소득세율}(5\%) \end{aligned}$$

과세 매출은 아래와 같이 확정된다.

- 재산 임대에 대한 부가세 과세 매출이란 임차인이 임대 계약에 의해 각 지급 시기별 지급한 세금이 포함된(과세대상인 경우) 대가로 계약상의 벌금, 보상금 등이 포함되지 않은 기타 매출이다.
- 자산 임대 활동에 대한 개인소득세 과세 매출이란 임차인이 임대 계약에 의해 지급시기별 지불한 세금(과세대상인 경우)이 포함된 대가와 계약상의 벌금, 보상금 등을 포함한 기타 매출이다.
- 임차인이 향후 몇 년간에 대한 재산 임차료를 선지급하는 경우 부가세와 개인소득세 과세 매출은 해당 일시불로 지급된 금액으로 확정된다.

라) 복권대리점, 보험대리점, 다단계판매

복권대리점, 보험대리점, 다단계판매와 직접 계약 체결하는 개인이란 복권법인, 보험회사, 다단계판매법인과 정가 판매 대리점 형식에 따라 각각 직접 계약을 체결하는 개인이다.

개인소득세 계산

$\text{납부 개인소득세} = \text{개인소득세 과세 매출} \times \text{개인소득세율}(5\%)$
--

과세 매출이란 개인이 복권법인, 보험회사, 다단계판매법인으로 수취하는 세금(과세대상인 경우) 포함 총수수료, 각종 보너스, 상금, 지원금 및 기타 수취금 등의 매출이다.

사업소득의 세율

순서	소득 종류	개인소득세
1	사업소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매출 연 1억동 이하: 비과세 • 매출 연 1억동 초과: 경영 유형에 따라 과세 매출의 0.5~5% 적용 - 재화 유통 및 공급: 개인소득세 0.5%와 부가세 1% 적용 - 원자재 미포함 서비스와 건설: 개인소득세 2%와 부가세 5% 적용 - 자산 임대, 보험대리, 복권대리, 다단계판매대리: 개인소득세 5%와 부가세 5% 적용 - 원자재 포함된 재화와 건설과 관련된 제조, 운송, 서비스: 개인소득세 1.5%와 부가세 3% 적용 - 기타 사업 활동: 개인소득세 1%와 부가세 과세 서비스에 대하여 부가세 2% 적용

3) 기타소득

기타소득의 세율과 과세소득은 아래와 같다.

순서	소득의 종류	개인소득세
1	자본 투자소득	수취한 소득의 5%
2	자본 양도소득	순이익의 20%
3	증권 양도소득	양도가치의 0.1%
4	부동산 양도소득	양도가격의 2%
5	저작권, 가맹점 영업권 양도소득	1000만동 초과 소득의 5%
6	당첨, 상속, 증여소득	1000만동 초과 소득의 10%

4) 해외 납부 세액 공제

- 거주자가 해외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해당 국가의 규정에 따라 개인소득세를 납부한 경우 국내에서 납부할 세금에서 공제된다.
- 공제되는 세액은 해외에서 발생한 소득에 베트남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된 세액을 초과할 수 없다.
- 해외에서 납부한 세액을 베트남에서 창출된 소득과 해외에서 창출된 소득에 안분하는 경우 총소득에서 해외에서 창출된 소득이 차지하는 비율을 사용하여 계산한다.
- 필요 서류
 - ✓ 해외 유관기관에 신고된 소득세 신고서 복사본
 - ✓ 해외 세액 납부증빙(ex. 은행이체전표 등) 복사본
 - ✓ 소득세에 관한 외국 과세당국의 확인서 원본

다. 비거주자

1) 근로소득

비거주자의 세금 산출 방식은 거주자와 동일하나 세율은 20%를 적용한다.

이중과세방지협정에 의한 개인소득세 면제와 감면

베트남과 기타 국가 및 영토 간의 이중과세방지협정을 적용하므로 외국인 개인이 비과세,

감세 적용 대상인 과세소득이 있는 경우, 베트남 조직, 개인과 계약을 이행하기 15일 이전에 외국인 개인이 비과세, 감세 대상 자격에 대한 통보서류를 베트남 계약 당사자의 관할 과세당국에 접수한다. 세부 절차 및 서류는 156/2013/TT-BTC호의 시행규칙에 따른다.

해당 협정 적용은 개인소득세 의무 발생일 이후 3년간 유효하다. 기한 경과 시 과세당국에서 협정 적용을 거부할 수 있다.

2) 기타소득

소득 종류에 따라 과세소득에 해당 세율을 적용하여 확정한다.

순서	소득의 종류	세율
1	자본 투자소득	비거주자가 베트남에서 기관, 개인에 대한 자본 투자로 수취한 과세소득의 5%
2	자본 양도, 증권 양도소득	양도가치의 0.1%
3	부동산 양도소득	양도가치의 2%
4	저작권, 가맹점 영업권 양도소득	1천만동 초과 소득분 5%
5	당첨, 상속, 상금, 상속, 증여	1천만동 초과 소득분 10%
6	사업소득	매출의 1~5% • 재화 판매 시 1% 적용 • 서비스 제공 시 5% 적용 건설, 운송과 기타 사업 활동 시 2% 적용

8. 개인소득세 신고 절차 및 서류

가. TAX CODE 등록

- 개인소득세에 대한 의무를 가진 개인이 TAX CODE를 등록한다.
- 근로소득의 경우 개인이 과세당국에 TAX CODE를 직접 등록하거나 사용자가 등록한다.
- 기타소득이 있는 개인은 거주지의 과세당국에 세금 등록 서류를 접수한다.

나. 개인소득세 신고 책임과 확정신고

- 베트남에 있는 법인 또는 개인은 소득을 지급할 때 세금을 신고, 공제, 납부하며 개인에게 지급한 각종 과세소득에 대한 확정신고 책임이 있다.

- 근로소득이 있는 개인은 법인, 개인이 해외에서 지급하는 소득과 급여 외 기타소득에 대하여 과세당국에 직접 신고할 책임이 있다.
- 역년 말 또는 법인이 해산 또는 영업을 중단 시 근로소득에 대한 개인소득세 정산을 해야 한다. 다음 조건을 충족하는 개인은 법인에 (개인소득세) 확정신고를 위임할 수 있다.
 - 법인과 3개월 이상의 근로 계약을 체결하여 해당 법인에서만 근로소득이 있으며 정산 위임 시점에 실제로 근무 중인 개인(연 12개월 동안 근무하지 않은 직원 포함)
 - 상기와 같은 개인이며 추가로 타 법인에서 월 1천만동 이하의 비정규적인 소득이 있으며, 10%의 개인소득세를 공제하여도 해당 소득에 관한 확정신고가 필요없는 개인
 - 기존 조직의 분할, 합병, 통합, 유형 변경 시 기존 조직에서 신규 조직으로 발령받은 근로자인 개인
- 역년 말 현재 정산 위임 조건을 만족하지 못한 경우, 외국인이 계약을 종료하고 베트남을 떠나는 경우, 12개월 연속적 확정신고 대상인 개인이 직접 진행한다.

다. 세금신고 및 확정신고 시점

순서	대상	세금신고 및 확정신고 시점
1	소득을 지급하는 법인, 개인	<p>월별 또는 분기별 임시 신고 및 납세, 그리고 연간 세금 확정신고 진행</p> <p>분기별 신고는 아래와 같은 대상에 적용한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분기별 부가세 신고하는 법인 - 월별 부가세 신고하는 법인, 그리고 월 원천징수 개인소득세가 5천만동 이하 경우 <p>월별 신고는 기타의 경우에 적용한다.</p> <p>월 또는 분기별 세금 신고는 세금 원천징수가 발생한 첫 달부터 확정되며 해당 연도 내내 적용된다.</p>
2	사업소득 수취 거주자*	<p>A. 회계규정, 세금계산서, 증빙서류 등에 관한 규정을 이행하는 개인 및 사업자 그룹의 경우는 분기단위로 세금을 신고한다.</p> <p>B. 추계과세방법으로 세금신고하는 개인이 회계규정, 세금계산서, 증빙서류 등에 관한 규정을 충분히 이행하지 않는 경우 매출과 용역을 확정하지 않은 개인 및 사업자의 경우는 연간단위로 세금을 신고하며 확정신고할 필요가 없다.</p> <p>C. 과세당국에서 발행한 세금계산서를 사용 중인 개인, 사업자가 아니지만 재화 판매 활동이 발생한 개인의 경우 발생 시마다 신고한다.</p> <p>D. 주택, 토지 사용권, 수면 등의 기타 재산의 임대로 인해 소득이 발생한 경우 분기별 또는 발생 시마다 세금을 신고한다.</p>

순서	대상	세금신고 및 확정신고 시점
3	부동산 양도, 자본 양도, 증권, 상속, 증여, 당첨 소득 수취 개인	E. 소득 발생 시마다 신고한다.
4	해외에서 지급한 근로소득 수취 거주자*	F. 분기별 G. 세금계산 연도 종료 시/계약 종료 동시 베트남 출국 시 세금을 정산한다.
5	베트남에서 소득이 발생하나 해외에서 수취하는 비거주자	H. 근로소득의 경우에는 분기별 I. 근로소득이 아닌 기타소득의 경우에는 발생 시마다
6	증자 시 수익을 주식 및 이익으로 수취 경우/투입 자본, 증권, 부동산의 자본 투입 시 자본, 증권, 부동산의 양도소득 수취 개인	J. 자본 양도, 자본 회수, 법인의 해산 시
7	주식으로 발생된 보너스인 소득에 관한 급여, 임금을 수취한 개인	K. 보너스 주식 양도 시

주: * 사업소득 또는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추가 납부할 세액이 발생하거나 또는 세액을 과다 납부한 경우 세액 정산을 신고하거나 환급 신청한다 .

라. 신고 기한

순서	대상	신고 기한
1	TAX CODE 등록	개인소득세 의무 발생일 이후 최대 10일 이내
2	부양가족 등록	A. 자녀, 배우자, 부모에 대하여 세금 확정신고 서류 납부 기한까지(과세 당국과 직접 정산 시) 또는 세금 확정신고 서류 납부 시점 10일 전(급여를 지급하는 사용자를 통해 정산하는 경우) B. 기타 대상의 경우 12/31까지
3	근로소득	C. 월별 신고: 차월의 20일 이내 D. 분기별 신고: 다음 분기의 30일 이내 E. 연간 신고: 세금부과 연도 종료 이후 90일 이내 F. 베트남 출국 시 정산: 출국 전 또는 개인이 급여를 지급한 법인에 위임하였거나 타 조직, 개인이 대신 정산을 이행한 경우 베트남 출국 후 45일 이내
4	근로소득 외 기타소득	소득 발생 이후 10일 이내

9. 사회보험, 의료보험 및 퇴직금

가. 베트남 노동자의 경우

일반 규정에 따라 3개월 이상의 노동 계약을 체결한 외국인 근로자는 (현지인처럼) 건강(의료)보험을 가입하고 보험료가 부과된다. 현재 고용주와 근로자가 부담하는 수준은 각각 3%와 1.5%이다.

2017년 6월 1일부터 노동자의 사회보험(SI)/건강보험(HI)/실업보험(UI) 부과금은 아래 요율로 한다.

(단위: %)

베트남 노동자에게 적용된 보험	노동자 부담	고용주 부담	합계
SI	8	17.5	25.5
HI	1.5	3	4.5
UI	1	1	2
Total	10.5	21.5	32

2019년 7월 1일부터 SI/HI 부담금은 계약 총소득(임금, 수당 및 기타 수당 등 포함)과 규정된 최저임금의(2019년 5월 9일의 제38/2019/ND-CP호 시행령에 따른 149만동) 20배인 현재 2,980만동 중 더 낮은 금액을 적용한다.

UI 부담금은 계약 총소득과 지역의 최저임금의 20배(현재 8,360만동) 중 더 낮은 금액을 적용한다(2019년 1월 1일의 발효일로 한 제157/2018/ND-CP 정부 시행령에 따라 하노이나 호치민시 등의 1급 도시의 최저임금은 418만동으로 규정된다).

나. 외국인의 경우

2018년 12월 1일의 발효된 제143/2018/ND-CP 정부 시행령에 따라 베트남에서 베트남 고용주와 1년 이상의 근로계약 또는 기간의 제한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외국인 근로자는 베트남에서 근로허가증, 취업허가증, 각종 직업과 관련한 자격증 등을 발급받을 시 베트남 법률에 따라 사회보험에 가입할 의무가 부여된다.

외국인노동자에 관한 내용을 규정한 제11/2016/ND-CP 정부 시행령에 따르면 파견 근로자는 사회보험에 가입 의무가 면제된다. 본 시행령의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 해외 본사 파견 직원의 소속과 파견지 등의 정보를 표시한 해외파견근무 사실을 증명하

는 파견 명령서로 파견된 고의급 관리자, 운영감독자, 전문가, 기술자 등

- 해당 파견 직원은 해외 본사에서 파견 이전까지 12개월 이상 근무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베트남 노동법에서 규정된 정년퇴직 연령에 도달한 근로자에 대해서도 사회보험 가입 의무가 면제된다.

동 시행령에 따르면 회사는 다음과 같이 사회보험료를 부담한다.

외국인 근로자에 적용 부담률	고용주	근로자	발효일
질병 및 출산	3%		2018년 12월 1일
산업재해 및 직업병	0.5%		2018년 12월 1일
퇴직연금 및 유족연금	14%	8%	2022년 1월 1일
TOTAL	17.5%	8%	

외국인 근로자를 포함한 근로자의 부담 금액은 소득세 계산 시 공제되며 고용주의 부담 금액은 개인소득세 산출 시 비과세된다.

II 법인세(법인소득세)

법인세는 베트남 국내 및 국외에서 소득이 발생하는 합법적인 법인, 그리고 베트남 국내에서 소득이 발생하는 외국법인의 제조와 사업활동의 소득에 대한 직접세이다.

1. 현행 법령

문서명	발효일	만료일
법인세에 관한 제14/2008/QH12호의 법	2009/01/01	
소득의 해외송금에 관한 제86/2010/TT-BTC호 시행규칙	2011/01/02	
환율차액의 인정, 평가 및 처리에 관한 179/2012/TT-BTC호의 시행규칙	2012/12/10	
근로자의 실업 지원에 관한 180/2012/TT-BTC호의 시행규칙	2012/12/10	
고정자산의 관리, 사용과 감가상각 공제에 관한 45/2013/TT-BTC호의 시행규칙	2013/06/10	
32/2013/QH13호의 법의 안내에 관한 92/2013/NĐ-CP호의 시행령	2013/08/13	
92/2013/NĐ-CP호의 법의 안내에 관한 141/2013/TT-BTC호의 시행규칙	2013/11/30	
14/2008/QH12호의 법의 개정에 관한 32/2013/QH13호의 법	2014/01/01	
14/2008/QH12와 32/2013/QH13호의 법의 안내에 관한 218/2013/NĐ-CP호의 시행령	2014/02/15	
218/2013/NĐ-CP호의 시행령의 안내에 관한 78/2014/TT-BTC호의 시행규칙	2014/08/02	
세제와 관련된 시행령의 개정에 관한 91/2014/NĐ-CP호의 시행령	2014/11/15	
세제와 관련된 법의 개정에 관한 71/2014/QH13호의 법	2015/01/01	
71/2014/QH13호의 법의 안내에 관한 12/2015/NĐ-CP호의 시행령	2015/01/01	
78/2014/TT-BTC호의 시행규칙의 개정에 관한 119/2014/TT-BTC호의 시행규칙	2015/01/15	
78/2014/TT-BTC호. 119/2014/TT-BTC호 151/2014/TT-BTC호의 시행규칙의 개정에 관한 96/2015/TT-BTC호의 시행규칙	2015/08/06	
과학기술개발 기금의 내용 안내 및 관리에 관한 12/2016/TTLT-BKHCHN-BTC호의 합동 시행규칙	2016/09/01	
45/2013/TT-BTC호의 시행규칙의 개정에 관한 147/2016/TT-BTC호의 시행규칙	2016/11/28	

문서명	발효일	만료일
45/2013/TT-BTC호의 시행규칙의 개정에 관한 28/2017/TT-BTC호의 시행규칙	2017/05/26	
78/2014/TT-BTC호의 시행규칙의 개정에 관한 25/2018/TT-BTC호의 시행규칙	2018/05/01	
재고품의 가격 인하, 투자금의 손실, 대손금, 상품/물품/서비스/조립 공사의 애프터서비스와 관련된 예방용역을 설립 및 처리에 관한 48/2019/TT-BTC호의 시행규칙	2019/10/10	

2. 납세의무자

법인세 납세의무자는 과세소득이 발생하는 제조 및 사업을 운영 중인 조직(이하 '법인')으로 아래와 같다.

납세의무자	적용 범위	
	베트남 내 발생하는 과세소득	베트남 외에서 과세소득 (해당 경우)
베트남법에 의해 설립되며 운영 중인 법인	✓	✓
베트남 내 고정사업장 있는 외국법인	✓	✓ (고정사업장의 활동에 관련)
베트남 내 고정사업장 없는 외국법인	✓ (외국인계약자세 규정에 의해 납세한다)	✓
조합법인법에 의해 설립된 조직	✓	✓
베트남법에 의해 설립된 행정기관	✓	✓
베트남 내 제조 및 사업으로 과세소득이 발생하는 기타 법인	✓	✓

3. 법인세 과세기간

- 법인세 계산 기간은 역년에 의해 확정되며 회계연도가 역년과 다른 경우는 제외한다. 세금 산출 기간에 관하여 역년과 다른 경우 12개월 미만으로 적용한다.
- 신규 법인의 첫해 법인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의 유형 변경, 소유형식 변경, 합병, 분할, 해산, 부도의 경우 법인세 과세기간이 3개월 이하의 경우 다음 해의 계산 기간(신규법인) 또는 그 전년의 계산 기간(납은 대상)과 합하여 하나의 법인세 계산 기간으로 할 수

있다.

- 법인세 혜택을 적용 중인 업체가 과세기간을 변경하는 경우 다음과 같은 방식 중 선택 가능하다.
 - ✓ 법인세 산출 기간 변경 연도 내 세금 인센티브 적용
 - ✓ 변경 연도는 정상 세율로 납부하고 다음 해부터 세제혜택 적용
- 베트남 내 소득이 발생하는 외국법인의 경우 외국인 계약자세에 따라 적용한다.

4. 법인세 계산 방법

$$\text{법인세} = (\text{과세소득} - \text{과학기술기금 전입(해당 시)}) \times \text{법인세율}$$

가. 법인세 계산 시 유의사항

해외에서 제조 및 사업 활동으로 소득이 발생하는 해외투자 중인 베트남 법인, 그리고 투자 국가 규정에 의한 세금 인센티브를 적용받고 있는 경우를 포함하여 베트남 현행 법인세법에 의해 법인세를 신고, 납부한다. 각종 해외소득에 관한 법인세율은 20%이며 해당 해외 투자 중인 베트남 법인이 법인세법에 의해 적용 받고 있는 세금 인센티브(해당 경우)는 적용되지 않는다.

해외투자 사업의 소득에 대해 해외에서 법인세 또는 법인세와 유사한 세금 종류가 부과되는 경우 베트남 내 법인세 산출 시 해외에서 기납부한 세액(배당에 관한 세금 포함)은 공제 가능하나, 해당 공제 금액은 베트남 법인세법에 의해 산출되는 법인세를 초과할 수 없다. 투자 국가에 의하여 해외투자 사업소득에 대한 감면제되는 금액은 해외투자 법인의 베트남 내 부과 법인세에서 공제된다.

나. 과세대상 소득

$$\text{과세대상 총소득} = \text{과세 소득} - (\text{비과세 소득} + \text{규정에 의한 이월결손금})$$

1) 과세소득

$$\text{과세소득} = \text{매출} - \text{공제비용} + \text{기타 소득}$$

2) 매출

과세소득이란 대가의 수취 여부와 상관없이 법인의 제품/상품, 가공, 서비스 공급 대가와 단가 조정 등의 기타 대가를 포함한다.

매출액은 아래와 같이 규정된다.

구분	과세대상 매출
공제법에 의해 부가세 납부 법인	부가세 미포함 매출
부가가치세상 직접법에 의해 부가세 납부 법인	부가세 포함된 매출
서비스 제공 기업이 고객에게 서비스보수를 선수금으로 받는 경우	선불되는 기간 동안 매출을 안분 또는 일시에 선수금을 매출로 인식한다. 세금인센티브 적용 기간 중인 경우에는 인센티브 기간에 대한 세금은 선수금액에 대한 부과 세금을 해당되는 기간으로 나누어 산출한다.
건설, 조립	공사의 가치, 항목의 가치 또는 건설과 검수 조립 공사량의 가치
경영 제휴 계약	계약 규정에 의해 배분되는 매출

3) 매출 인식 시점

구분	매출 인식 시점
재화 판매	구매자에게 재화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이 이전되는 시점 수출 재화 판매 경우 해당 매출 인정 시점에 관한 명확한 규정은 없다. 다만 과세당국에서 통관절차 완료 시점(통관 신고서상 일자)를 수출 매출 확정 시점으로 인정한다.
용역/서비스	용역 또는 용역 일부의 공급 완료 시점
부동산 양도	과세 매출 인식 시점은 판매자가 구매자에게 부동산 양도 시점 또는 각종 형식으로 선수금 수취의 경우 구매자로부터 금액을 수령하는 시점이다.
항공 운송	구매자에게 운송 서비스 공급 완료 시점
기타	법의 규정에 따름

4) 공제비용

법인세 산출 시 공제비용은 아래와 같은 조건을 만족해야 한다.

- 법인의 제조와 경영 활동으로 인해 실제 발생한 비용
- 법에 의한 합법적인 증빙과 서류 보유

- 현금이 아닌 결제 방식으로 2천만동 이상의 재화 및 서비스의 구매 지출한 경우
- 특수관계자 간의 거래는 독립거래가격의 원칙을 준수
- 법인세법상 공제 불가 비용 항목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5) 공제 불가 비용 항목

가) 천재지변, 역병, 화재 등 불가항력 상황으로 인한 손실과 관련된 비용 중 보상받은 비용이나 증빙서류가 부족한 경우 공제 불가

자연 생화학 과정의 변화로 인해 손상된 재화 또는 유통기한이 만료된 재화의 경우 보상을 받았거나 법률에 따른 증빙서류가 부족하면 공제 불가

특정 원재료의 경우 수율이 정부에서 규정한 수준을 초과한 경우 공제 불가

증빙서류 관련 유의사항

- 천재지변, 역병, 화재와 불가항력 상황으로 인한 재화 손실의 경우
 - ✓ 법인에서 관리 과세당국에 사유 설명 서류 접수
 - ✓ 법인에서 작성한 자산과 재화의 손실 신고서
 - ✓ 유관 지역(지방) 위원회의 사건/사유 확인서
 - ✓ 보험사에서 보상 지급 동의와 관련된 손해 보상 신청서류(해당하는 경우)
 - ✓ 법인/개인의 책임의 규정과 관련된 서류(해당하는 경우)
- 자연 생화학 과정의 변화로 인해 손상된 재화 또는 유통기한 만료된 재화 관련
 - ✓ 관리 과세당국에 접수한 법인의 사유 설명서
 - ✓ 손실된 재화의 신고서
 - ✓ 보험사에서 보상 지급 동의와 관련된 손해 보상 신청서류(해당하는 경우)
 - ✓ 법인/개인의 책임의 규정과 관련된 서류(해당하는 경우)

나) 아래와 같은 상황에 해당하는 감가상각비

- 현행 규정보다 초과 발생 비용
 - ✓ 수익경영 보장 시 정액법에 의한 감가상각 2배 내에서 가속 감가상각 적용이 가능하다.
 - ✓ 공구, 도구, 포장 자재인 자산은 3년 내에 분할 상각 가능하다.

- 제조와 경영 활동을 위한 자산이 아닌 경우의 감가상각비(근로자의 복리를 위한 일부의 고정 자산을 제외)
- 법인 소유권(임차 자산 제외) 증명 서류 없는 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
- 회계 장부상 관리, 기록 정산이 되지 않은 자산의 감가상각비
- 감가상각 만료된 고정 자산에 관한 감가상각비
- 공제 비용으로 인정되지 않은 일부의 특별한 상황은 아래와 같다.
 - ✓ 9인승 이하의 승차용 차량에 대한 대당 16억동 이상에 대한 감가상각비(승객 운송 경영, 관광 및 호텔의 경영 용도, 자동차 판매를 위한 샘플 및 테스트용 자동차 제외)
 - ✓ 재화, 승객, 관광객의 운송 목적이 아닌 민간 비행기와 유람선의 감가상각비
 - ✓ 제조와 경영 활동의 용도로 사용되지 않은 면적에 상응하는 건축물의 감가상각비 또는 아래와 같은 조건을 충족하지 않은 건축물의 감가상각비
 - 법인 명의로 된 토지 사용권 보유(법인의 소유권의 부지 경우) 또는 부지 소유 단체 및 개인과의 부지 임차, 대여 협약서(임차 또는 대여 부지 경우)를 보유한다.
 - 법인의 명의, 주소와 세금코드로 된 공사의 건설 계약서, 계약 정산서, 건축물의 정산 서류와 함께 건축물 인수인계와 관련된 정산 산출서를 보유한다.
 - 고정자산 관리법에 따라 관리 및 회계처리된 건축물
 - 제조와 경영 용도로 사용 중으로 9개월 이내에 제조가 임시 중단되는 경우 해당 법인의 소유 고정 자산의 감가상각, 그리고 12개월 이내 수리를 위해 임시 중단, 정기적인 보수 및 수리를 위해 장소를 이전하고 그 임시 중단 시간이 종료되어 해당 고정 자산을 제조와 경영 용도로 지속적 사용하는 경우 법인에서 감가상각 공제가 가능하며 임시 중단 시간 내 고정자산의 감가상각비가 비용으로 산출된다.
 - 장기 토지 사용권에 대한 감가상각비는 인정되지 않으며 공제 비용 항목에 해당하지 않는다.
 - 유한 토지 사용권에 대해 토지 사용권상 명시된 토지 사용 기한에 대한 감가상각비의 경우 공제 비용 항목에 해당한다(수리 및 신축을 위해 활동 중단의 경우 포함).
 - 장기 토지 사용권이 포함된 주택과 건축물 등의 유형 고정자산 구매의 경우
- 장기 토지 사용권의 경우
 - ✓ 별도 확인되며 무형 고정자산으로 인정된다.
 - ✓ 부동산 매매 계약상 명시된 시세와 적합한 가격으로 인정되나 매매 시점에 중앙 정부에 소속된 도시 및 성 위원회에서 발급된 토지 단가표보다 낮은 경우는 제외한다.

- ✓ 토지 사용권을 별도로 분할할 수 없는 경우 매매 시점에 직할도시와 중앙급 성도 위원회에서 발급한 토지 단가표에 따라 확정된다.
 - 주택 및 건축물인 유형 고정자산의 원가는 실제 구매 가격에 해당 유형 고정자산의 사용을 위해 지출된 비용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다) 세금계산서가 없는 재화 및 서비스 구매 비용. 단, 아래의 경우에는 01/TNDN호의 양식에 의한 구매항목 리스트를 작성하면 세금계산서가 없더라도 비용으로 인정

- 비사업인 지점이나 개인으로부터 재화를 구매하거나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
- 부가세 부과 매출 이하의 매출이 있는 개인과 지점의 재화와 서비스를 구매하는 경우 (연간 1억동)
- 자체 제조, 개발, 수집한 개인으로부터 재화를 구매하는 경우

라) 자산 임차 계약과 자산 임차료 지급 증빙만큼 개인의 자산 임차료를 지급하지 않은 경우

그리고 법인에서 개인의 자산을 임차하거나 자산 임차 계약상 법인에서 해당 개인을 대신하여 납부하기로 한 경우 자산 임차 계약서와 개인을 대신해서 납부한 증빙을 갖추어야 공제 비용으로 인정된다.

자산 임차 계약서상 임차료가 세금(부가세와 개인소득세)이 미포함되며 법인에서 개인을 대신하여 납부하기로 한 경우 법인에서 전체의 자산 임차료와 대행 납세 용역이 포함하여 공제 비용으로 산출된다.

마) 근로자의 급여·보너스와 관련된 용역, 현재 규정에 급여, 보너스 등 비용에 관한 안내 내용은 있으나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각종 수당/지원금에 관한 명확한 내용이 없는 경우. 다만 수당/지원금이란 급여, 보너스와 유사하게 적용되는 관련된 비용이다.

- 과세기간 내에 제조와 경영 비용에 근로자의 임금, 급여와 지출 필요한 비용을 지불한 것으로 기록되었으나 실제로 미지출 또는 규정에 의한 지급 증빙이 없는 경우
- 외국인 근로자 계약서상 명시된 유치원부터 고등학교까지 외국인 자녀의 학비 지출에 관하여 임금, 급여와 같은 성질이 있어 해당 비용이 임금, 급여에 대한 법적 규정과 부합하고 관련된 세금계산서와 증빙이 있으면 공제 비용으로 인정된다.
- 근로자 계약서상 주택 임대료가 법인에서 근로자 대신으로 지불하는 것으로 명시되는

경우 해당 비용이 임금, 급여와 같은 성질이 있으며 임금, 급여에 대한 법적 규정과 부합하고 관련된 영수증과 증빙이 있으면 공제 비용으로 인정된다.

- 법인세 확정신고 전까지 지급되지 않은 근로자에 대한 임금, 급여와 관련된 수당의 경우. 다만, 회사가 다음 해에 임금 지급을 위한 충당금을 적립하고, 동 금액이 (실제)급여 비용 17% 내에 있으며 회계연도 만료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지급되는 경우 비용으로 공제된다.
- 근로자의 급여, 보너스, 수당이 근로계약서, 단체근로협약서, 회사 혹은 그룹의 재무규정, 그리고 이사회 의장, 대표자 등이 승인한 보상규정에 적용 조건과 수준에 대해 자세히 명시되지 않은 경우
- 사업가의 주인 또는 한 개인으로 설립된 유한책임 회사의 주주, 그리고 제조와 경영 운영에 직접 참여하지 않은 창업자, 이사회 및 이사회 회원에 지불되는 수당
- 일당 연 500만동 초과 근로자에게 복장 비용을 현금으로 지급하거나 현물로 지출 시 세금계산서가 없는 경우
- 근로자의 직접적인 복지와 관련된 전체의 비용이 법인의 실제 평균 1개월 급여를 초과하는 경우, 근로자의 직접적인 복지와 관련된 비용이란 근로자의 본인과 가족의 혼·상례, 휴가, 치료 지원, 교육기관에서 추가 학업, 양성 지원, 천재, 지변 등으로 인한 근로자의 가족 지원, 우수한 학습 성적이 있는 근로자의 자녀 장학금, 근로자의 명절 이동 지원, 근로자의 사고 보험, 건강(의료)보험, 기타 자발적 보험(근로자의 생명보험과 자원 휴직 보험 제외)과 복지와 관련된 기타 비용을 의미한다.
- 근로자의 자발적 휴직 기금, 자발적 휴직 보험과 생명 보험 가입을 위하여 일당 월 3백만동 초과되는 비용
- 퇴직급여충당금 전입비용
- 근로자의 실업 지원비가 노동법의 규정을 초과한 경우
- 자세한 규정 및 창조, 개혁 검수 위원회 없이 창조 및 개혁 상으로 지출한 비용

바) 법에 의한 규정과 결정에 따라 증빙서류가 부족한 수당금이나 법인의 내부 규정에 따라 지급된 출장비

사) 규정에 의하지 않은 과학기술개발기금 설립과 관련 비용

아) 아래와 같은 경우의 대출 이자

- 금융기관이 아닌 곳으로부터의 대출이자 비용이 대출 시점의 베트남 중앙은행의 기본 이자율을 적용한 이자비용의 150%를 초과하는 경우
- 특수관계자와 거래가 있는 법인의 이자 비용 중 EBITDA의 20% 초과하는 금액
- 법인의 규정에 명시된 자본 투자 일정에 부족한 금액에 상당한 대출의 이자 비용
 - ✓ 법인이 하나의 차입금만 있는 경우 공제되지 않은 이자 비용은 부족한 납입등록자본 × 대출의 이자율 × 부족한 등록자본의 기간으로 한다.
 - ✓ 법인이 다수의 차입금이 있는 경우 공제되지 않은 이자 비용은 전체의 대출금액에서 부족한 납입등록자본의 비율(%) × 전체의 이자 비용으로 한다.

자) 재고평가손, 대손금, 각종 투자자산의 손상, 품질보증충당금, 재화와 물품 또는 건설공사의 총당금 등의 전입과 사용이 재무부의 총당금에 대한 규정에 부합하지 않은 경우

차) 계약기간 만료일 현재 지급되지 않은 미지급비용. 일반적으로 법인에서 제조와 사업 활동에 의한 법인세 과세대상 매출이 인식되었고 이 매출에 상당한 비용은 공제 가능하다. 한편 계약 완료 시점에 실제 발생한 비용을 미지급비용과 비교하고 조정한다.

카) 회계기간 말에 현금, 예금, 이체 중인 자금, 외화 매출채권의 외화환산으로 인해 발생하는 환산 손실(외화채무의 환산손실은 인정)

타) 현지 지방, 단체, 사회 조직의 기부금, 다만 지원 항목이 확정된 증빙 서류를 갖춘(세부 규정 있음) 교육, 의료, 과학연구, 천재, 지변 극복의 기부금 또는 빈곤을 위한 사랑의 집 짓기의 기부금은 제외

파) 정해진 규정에 의한 당기 매출에 따른 배분 비용을 초과하여 해외에 있는 법인에서 베트남 고정사업장(Permanent establishment)에 배분하는 운영비 또는 베트남 고정사업장 설립 이전에 배분된 비용

하) 골프회원 가입비와 골프장 이용료, 법인의 과학기술개발기금 전입비용

거) 고정자산 형성을 위해 투자 단계의 기초공사를 위한 비용

너) 주식 발행비용과 주식의 배당금(부채로 분류된 주식 제외), 자기주식 매매와 법인의 소유 자본의 증가, 감가와 직접적 관련된 기타 비용

- 더) 교통위반, 경영등록제도 위반, 회계제도 위반, 세금 체납에 포함한 가산세 그리고 법에 의한 기타 행정 위반 가산금
- 러) 공제되거나 환급된 매입 부가세, 계약되지 않은 외국인 계약자 대신 납부한 법인세, 계약서에 의해 근로자를 대신하여 부담 임금, 급여의 개인소득세
- 머) 재무부의 별도 안내에 부합하지 않는 보험, 복권, 증권과 기타 특수한 경영활동과 관련된 지출 비용
- 버) 과세 매출에 대응되지 않는 비용이며 규정에 의한 특수 비용, 공산당, 정치 및 국방 조직의 지원 비용 제외
- 서) 연간 실제 발생 수준을 초과하는 광산 개척 권한 발급 관련 비용

6) 기타소득

기타소득은 아래와 같은 항목이 포함된다.

- 자본 양도 및 증권 양도소득
- 부동산 양도소득
- 투자사업의 양도, 투자사의 참가권, 광산의 탐사/채취/개발 권한의 양도로 인한 소득
- 법에 의한 자산의 소유권 및 사용권, 지적재산권, 기술이전 소득
- 지적재산권 판매와 기술이전 소득은 아래와 같이 계산한다.
받을 총금액 (-) 지적재산권 및 이전 기술의 형성을 위한 원가 및 용역 (-) 지적재산권 및 이전 기술의 유지, 업그레이드, 개발과 관련된 비용과 공제할 기타 비용
- 모든 형식의 자산 임대소득, 자산 양도소득과 자산 처리(부동산 제외)
- 예금 이자, 체납 이자, 할부 이자, 신용 보증 이자 및 대출 계약서상 기타 비용과 같은 대출 이자소득
 - ✓ 예금의 이자소득 그리고 규정에 의하여 자본의 대여로 인한 이자소득이 대출로 인한 이자비용보다 많은 경우 차액은 과세소득 확정 시 기타 소득/소득으로 인정된다.
 - ✓ 예금의 이자소득 그리고 규정에 의하여 자본의 대여로 인한 이자소득이 대출금의 이자비용보다 적은 경우 차액은 과세소득 확정 후 주요 제조와 경영의 소득에서 공제된다.

- 외환차익
- 회계기간 말 외화 부채항목 환율 재평가 이익
 - ✓ 법인의 주요 제조와 경영 활동의 매출 및 비용과 직접적 연관성이 있는 당기 환율 차액은 법인의 주요 제조와 경영 활동의 소득과 비용으로 반영한다. 법인의 주요 제조와 경영 활동의 매출 및 비용과 직접 연관이 없는 당기 환율 차액의 경우 환율 차로 손실이 발생하면 재무비용에 반영하고 이익이 발생하는 경우 과세소득 확정 시 기타소득에 반영한다.
 - ✓ 회계연도 말에 외화 지급 채무를 재평가함으로 인해 발생하는 외화환산차익은 해당 회계연도 말에 외화 지급 채무를 재평가함으로 인해 발생하는 외화환산차손과 상계한다. 법인의 주요 제조와 경영 활동의 매출 및 비용과 직접적 연관성이 있는 외환차손익은 상계 후 법인의 주요 제조와 경영 활동의 소득과 비용에 반영한다. 법인의 주요 제조와 경영 활동의 매출 및 비용과 직접적 연관성이 없는 외환차손익은 과세소득 확정 시 기타소득 및 재무비용에 반영한다.
- 당기의 외화 대여금과 채권의 외환차손익은 법인세법상 비용 및 이익으로 인식하며, 외화 대여금을 회수하거나 외화 차입금을 상환할 때, 최초 거래 당시의 환율과 상환 당시의 환율의 차이를 손실과 이익에 반영한다.
- 대손채권 추심이익, 채무자가 확정되지 않은 차입금 대출
- 과거기간에 누락된 소득(제조와 경영 활동으로)
- 계약 당사자의 위반으로의 벌금, 보상금 또는 계약서에 의한 계약사항 이행으로 인한 상금 수취의 소득
- 법인의 분할, 통합, 합병, 형태 변경 시 자본 납입과 자산의 이전을 위하여 법에 의해 자산을 재평가함으로 인한 차액
- 증여, 현금으로 된 선물, 현물로 된 선물, 후원처로부터 수취된 현금과 현물의 소득, 마케팅 지원, 비용 지원, 프로모션 상금과 기타 지원으로 수취된 소득
- 발생주의에 따라 이미 비용으로 인식하였으나 기한 내 사용되지 않은 비용 및 공사보증충당금의 환입
- 법인세 정산연도에 실제로 수입 및 수출된 물품의 수입세 및 수출세 환급 비용은 해당 정산연도의 비용에서 공제된다. 이전 회계연도에 실제로 발생한 수입세와 수출세의 환급 비용은 해당 소득 발생 정산연도의 기타소득에 반영된다.
- 세전 이익으로 분배된 국내 지분소득, 합작, 협력의 자본 투자로 인한 소득

- 폐기물과 폐품 처분과 관련된 소득
- 법인에서 자본 납입 구성원을 추가 모집 시 신규 구성원의 납입 자본이 법인의 등록자본 구성원의 납입 자본 가치보다 높은 경우 아래와 같이 처리한다.
 - ✓ 해당 차액이 법인에 귀속되며 경영활동 자금으로 사용될 경우 법인세 과세대상 소득에 반영되지 않는다.
 - ✓ 해당 차액을 기존 자본 납입 구성원에게 분배하는 경우 기존 납입 구성원의 소득으로 인정된다.
- 법에 의한 기타소득

7) 비과세대상 소득

비과세 소득 항목은 아래와 같다.

- 자본출자, 지분매입, 합작 등에서 법인세를 납부한 후 지급한 배당소득 재배, 양식, 농수산의 조리, 해산물 낚시, 소금 제조 등의 농업과 관련된 소득
- 농업을 위한 직접적 기술 서비스로 발생한 소득
- 법에 의한 과학기술 개발의 연구 소득으로 해당 과학기술 개발의 연구 계약 이행 시점부터 매출이 발생 시작할 때부터 최대 3년 내로 한다.
- 베트남에서 교육, 과학연구, 문화, 예술, 자원, 인도주의적 활동 등의 사회 활동을 위한 후원금
- 우선 분야에 속한 기술을 어려운 경제 및 사회 조건의 지역 내 법인, 개인에게 이전하며 발생한 소득
- 법인세 규정에 의한 기타 면세 소득

다. 이월결손금

세금계산 시 당기 발생하는 적자는 부(-)의 과세 소득이며 전기이월결손금에 미포함된다. 당기 과세소득 확정을 위한 결손금의 이월 원칙은 아래와 같다.

- 1) 결손금이 발생한 경우 해당 손실액 전부를 다음 해에 반영하고 손실이 발생한 연도의 다음 해부터 5년간 이월 가능하다.
- 2) 법인세 인센티브를 적용하는 제조와 경영 활동에서의 결손은 법인세 인센티브를 적용하지 않는 제조와 경영 활동의 이익과 상계한다.

- 3) 결손금을 전기로 소급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으며 베트남 내 동일한 그룹 계열사 간의 손익의 정산을 금지한다.
- 4) 부동산 양도, 투자사업 양도, 투자사업의 참가권의 양도(광산 탐사 및 개척 사업 제외)로 인해 손실이 발생하는 경우 해당 손실은 제조와 경영 활동의 이익과 정산하고(기타 소득 포함) 이후에도 결손이 발생할 경우 손실이 발생한 연도의 다음 해부터 5년간 이월 가능하다.

반면, 법인에서 제조와 경영 활동의 손실은(기타소득 포함) 부동산 양도, 투자사업 양도, 투자사업의 참가권의 양도 이익과 정산할 수 없다. 법인에서 법인 해산 절차를 진행하는 경우 해산 결정문 발급 이후 법인의 고정자산인 부동산의 양도를 할 때 해당 부동산의 양도로(해당하는 경우) 발생하는 소득(이익)에 대하여 부동산 양도 활동이 있는 기간의 제조와 경영 활동의 손실(규정에 의한 전기이월결손금 포함)과 정산한다.

계열사 그룹별로 이월결손금 신고

현재 베트남에서 그룹별로 신고 또는 결손금 공제의 형식과 관련된 규정 및 조항은 없다.

라. 과학기술개발기금의 설립과 지출

과학기술개발기금은 12/2016/TTLT-BKHCHN-BTC호의 시행규칙에 규정되었다. 이는 특수한 지출 항목으로 적용 가능 법인 대상은 상기 시행규칙을 엄격히 준수해야 한다. 이에 따라 국영법인이 아닌 법인의 경우 지출 수준을 자체적으로 결정 가능하나 최대 당기 법인세 부과 소득의 10% 이내를 한도로 한다. 법인은 해당 기금에 관한 지출, 사용, 자세한 금액에 대한 보고서를 작성하여 연간 법인세 확정 신고서에 명시한다(해당하는 경우).

해당 기금 설립 이후 5년 이내 해당 과학기술개발기금이 미사용되거나, 70% 이상 사용되지 않거나, 부당한 목적으로 사용되는 경우 법인은 미사용되거나 부당한 목적으로 사용되는 기금액을 기준으로 산출된 법인세와 해당 법인세의 이자상당액을 국고에 납부해야 한다. 다만 기금 중 미사용 잔액 30%의 사용 기한에 관한 명확한 시행령 규정은 없다.

부당한 목적으로 사용된 금액은 과학기술개발 목적으로 사용되는 비용에 반영되지 않는다.

- 추징세액의 계산을 위한 법인세율은 해당 기금 설립 기간 내 법인에 적용된 세율로 한다.
- 미사용 기금 추징세액에 대한 이자는 회수 시점에 1년 만기의 재정채권 또는 단기재정증권의 이자율을 적용하며 이자 발생 기간이 2년이다.

과학기술개발기금은 베트남에서 법인의 과학 연구 및 기술 개발에만 투자되는 것이다. 해당 기금에 지출되는 모든 비용에 관한 합법적인 세금계산서와 증빙이 필요하다.

마. 법인세율

다양한 제조와 경영 활동을 하는 법인은 각각 다른 세율을 적용하여 각 활동에 해당하는 소득에 상당한 세율로 산출한다. 세부 사항은 아래와 같다.

구분	법인세율
일반 경영 활동에 대한 법인세(인센티브의 적용)	일반세율: 20%
베트남에서 석유 당, 탐사, 개척과 관련된 활동	각 사업의 자세한 위치와 조건에 따라 32~50% 적용
법인세 인센티브 적용 규정 충족 시	각 대상별 인센티브 세율 적용

5. 법인세 인센티브

가. 세금 우대 적용에 관한 일반 원칙

- 1) 법인세 우대는 규정에 따른 회계제도, 세금계산서, 증빙과 법인세 납부를 이행하는 법인에게만 적용된다.
- 2) 법인세 인센티브는 투자 촉진 산업 및 지역 또는 대규모의 조건에 충족되는 투자사업에 적용된다. 확장 투자의 경우 일정한 조건에 충족되면 법인세 인센티브가 적용된다. 신규 투자사업과 확장 투자사업에는 법인세 인센티브가 적용되나 합병 또는 구조조정, 소유자 변경의 경우는 포함되지 않는다(자산, 경영지점, 기존 법인의 경영영역을 승계하여 지속적인 경영 활동 수행, 운영 중인 투자사업의 구매 경우 포함).
- 3) 다음의 경우 법인세 인센티브를 적용하지 않는다.
 - 자본 양도 및 자본 증가 권한 양도로 인한 소득
 - 부동산 양도소득(저소득자를 위한 주택 사업 투자 소득 제외)
 - 투자사업 양도, 투자사업의 참가권 양도, 광산의 탐사 및 개척 권한 양도소득
 - 베트남 국외 제조 및 경영 활동의 소득
 - 석유 및 기타 희귀 자원의 탐색, 탐사, 개척 활동으로 발생한 소득과 광산 개척 활동 소득
 - 특별 소비세 과세대상의 서비스 제공사업 소득

- ① 법인에서 인센티브 세율, 면세 및 감세 정도에 따라 법인세 인센티브 적용대상 활동 소득의 관리와 세액 산출 업무를 법인세 인센티브가 적용되지 않은 경영 활동의 소득과 별도로 구분하여 신고 및 납부하여야 한다.
- ② 같은 세금 산출 기간 내 서로 다른 다수의 법인세 인센티브 적용 조건을 충족한 1건의 소득이 있는 경우 법인에서 최상의 법인세 인센티브를 택하여 적용 가능하다.
- ③ 우대세율 적용 기간은 투자 사업의 매출 발생 첫해부터 적용된다.
- ④ 면세, 감세 적용 기간은 법인에서 인센티브 적용 투자사업으로 과세소득이 발생하는 첫 번째 해부터 지속적으로 적용된다(하이테크 법인의 경우 하이테크 법인 그리고 하이테크 적용 법인으로 인증된 등록증 발급연도부터 적용된다). 법인세 인센티브 적용 투자사업에서 매출이 발생하는 첫 번째 해부터 3년간 과세소득이 없는 경우 감·면세 적용 기간은 투자사업으로 매출이 발생 후 네 번째 해부터 적용된다. 첫 번째 과세대상 기간에 법인의 신규 투자사업의 제조 및 경영 활동 기간이 12개월 이하인 경우 법인에서 해당 과세기간부터 감세·면세 우대 적용 여부를 선택 가능하며 과세당국에 등록 후 다음 과세기간부터 감세·면세 우대세율 적용이 가능하다.
- ⑤ 투자 우대 분야에 관한 조건이 충족되어 법인세 인센티브가 적용된 투자 사업에 대하여 인센티브 분야의 폐기물 및 폐품의 처리, 인센티브 분야의 매출 및 비용과 직접적 연관성이 있는 환율의 차액, 무기한 은행 예금의 이자소득 그리고 직접적 연관성이 있는 소득들도 법인세 인센티브 적용이 가능하다.
- ⑥ 지역(산업단지, 경제특구, 하이테크단지)에 관한 인센티브 조건을 충족하는 법인세 인센티브 적용 투자사업이 있는 법인에서 해당 우대 지역 내 제조와 경영 활동으로 인한 소득의 경우 인센티브 적용 소득으로 인정되나 규정에 의한 우대 적용 불가 소득 항목은 제외한다.
- ⑦ 규정에 의한 법인세 인센티브 적용 기간 내 조사 유관기관 및 감독기관에서 아래와 같은 사항을 발견하는 경우
 - 법인에서 자체적으로 신고한 내용보다 인센티브 적용 가능한 법인세가 증가하는 경우 (미신고 법인 포함) 조사 유관기관 및 감독기관에서 발견한 법인세(신고되었으나 인센티브 세금이 미적용된 경우와 증가된 법인세 포함)의 경우 인센티브 적용이 가능하다.
 - 법인에서 자체적 신고한 내용보다 인센티브 적용 가능한 법인세가 감소하는 경우 감소된 법인세에 대해서만 인센티브 적용이 가능하다.

나. 투자 촉진 지역의 세금 우대

투자 촉진 지역의 조건을 충족한 투자사업 대상 법인세 우대 수준은 아래와 같다.

우대 지역 종류	우대 수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18/2013/NĐ-CP호의 시행령 부록상 규정된 특별 어려운 경제 및 사회 조건의 지역 • 경제특구 • 하이테크단지 • 행정-경제 특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5년 10%의 우대세율 • 4년 면세 9년 50% 감면
218/2013/NĐ-CP호의 시행령 부록상 규정된 어려운 경제 및 사회 조건의 지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0년 17%의 우대세율 • 2년 면세 4년 50% 감면
유리한 경제 및 사회 조건이 아닌 지역에 위치한 산업단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년 면세 4년 50% 감면

다. 투자 촉진 산업별 세금 인센티브

베트남에서 투자 촉진 산업에 대하여 교육, 의료, 문화, 스포츠, 하이테크, 지원산업, 환경 보호, 과학연구 및 기술개발, 인프라개발, 농수산의 가공, 소프트웨어 제품 및 재생에너지 제조 분야를 포함한다.

일부 산업별 법인세 우대의 자세한 수준은 아래와 같다.

활동 영역	우대 수준
하이테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과학연구 및 기술개발 • 하이테크법에 의한 개발 투자 우선이 되는 하이테크 목록에 속한 하이테크 적용 • 하이테크 인큐베이션, 하이테크 기업 인큐베이션 • 하이테크 개발의 리스크 투자 • 하이테크 인큐베이션 및 하이테크 기업 인큐베이션 사업을 위한 장소, 시설 등 건설 및 운영의 투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5년 10%의 우대세율 • 4년 면세 9년 50% 감세
인프라 개발 투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수 공급 공장, 발전소, 급-배수 시스템 • 다리, 육로, 철도 • 공항, 해항, 하항 • 공항, 역 • 정부 수상의 결정된 특수 중요한 인프라 	
소프트웨어 제품 제조	
합성의 자재, 건설 경자재, 희자재의 제조	
재생에너지, 그린에너지, 폐기물 처리로 된 에너지의 제조	

활동 영역	우대 수준
<p>환경보호</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환경오염의 처리 설비, 환경의 관측 및 분석 설비의 제조 • 환경오염 처리 및 환경 보호 • 폐수, 폐기, 폐기물의 수집 및 처리 • 폐기물의 재활용 	
<p>지원산업</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하이테크법에 의한 하이테크의 지원산업 제품 • 섬유, 가죽 및 구두, 전자 및 정보통신, 자동차 제조 및 조립, 제조기계와 같은 제품 제조를 위한 지원산업 제품(정부 총리가 발행한 우선 지원산업 제품 목록에 속함) 	
<p>사회 영역</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육, 직업 양성 • 의료 • 문화 • 스포츠 • 환경 • 사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운영 기간 내내 10%의 우대세율 • 어려운 지역 및 특별 어려운 지역 내 진행 시 4년 면세, 9년 50% 감면 • 타 지역에서 진행 시 4년 면세, 5년 50% 감면
<p>조합법인의 재배, 양식, 농수산의 가공, 소금 제조로의 소득, 조합법인의 농임어업 활동으로의 소득</p>	<p>어려운 지역 및 특별하게 어려운 지역에서 진행 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운영 기간 내내 10%의 우대세율 • 우대 지역에 의한 감, 면세 우대 • 세금 우대 적용 안 되는 지역 내 진행 시 • 운영 기간 내내 15%의 우대세율
<p>고급강철 제조, 저렴한 에너지 제품의 제조, 농어임업의 제조를 위한 기계 및 장비의 제조, 가죽, 금, 수산 먹이의 가공 및 제조, 전통직업 개발의 활동으로의 소득</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0년 17%의 우대세율

산업에 따라 법인이 규정에 의한 조건 및 기준을 충족시켜야 법인세 우대 적용이 가능하다.

라. 규모에 의한 인센티브

제조 영역 내 대규모로 투자되는 사업(특별소비세가 과세되는 재화의 제조 사업 및 광산 개척 사업 제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2가지의 경우 중 하나인 경우 15년간 10%의 우대세율, 4년간 면세와 9년간 50%의 감면이 적용 가능하다.

- 투자규모가 6조동 이상이며 첫 번째 투자허가서 발급 수취 시점부로 3년 내에 지출을 진행하고 아래와 같은 조건 중 하나를 충족하는 사업
 - ✓ 소득이 발생하는 해 이후 3년 내에 연간 총매출이 최소 10조동 달성
 - ✓ 소득이 발생하는 해 이후 3년 내에 3,000명 이상의 근로자 채용

- 특별소비세 부과 제품 제조 사업과 광산 개척 사업을 제외하고 제조 영역 내 투자 사업이며 투자자금의 규모가 최소 12조동 이상이며 하이테크법과 과학기술법에 의한 규정에 따른 심사받은 기술을 사용하고 투자에 관한 법과 규정에 의해 투자 허가서를 받으며 5년 내 총등록자본 지출을 이행한다. 본 투자사업은 아래와 같은 기준 중 하나를 만족하면 15년 미만 우대세율 적용에 대해 재무부 장관의 제안을 바탕으로 총리의 결정을 받을 수 있다.

- ✓ 세계적으로 경쟁력 있는 상품을 생산하며 투자사업에 의한 매출이 발생한 후 최대 5년 이내에 연간 총매출이 최소 20조동 달성
- ✓ 평균 6,000명의 근로자 채용
- ✓ 투자사업은 수자원공사, 발전소, 배수 시스템, 교량, 도로, 철도, 공항, 항구, 기차역, 새로운 에너지, 청정에너지, 에너지 절약산업, 석유화학 정제사업 등 경제 및 기술 인프라 분야의 투자사업

본 조항에 규정되는 근로자 인원수는 상근 근로계약을 체결한 인원수며 파트타임 및 1년 이하의 단기 근로계약 근로자는 제외한다.

마. 확장 업의 인센티브

법인세 우대 산업 또는 지역에 속한 법인에서 제조 규모의 확장, 생산성의 증가, 제조기술의 개혁(확장투자사업)과 같은 운영 중인 투자사업의 개발에 투자하는 사업이 있는 경우 아래와 같은 법인세 인센티브 방안 선택이 가능하다.

- 잔여 기간 내 운영 중인 사업에 대한 인센티브 적용
- 우대 지역 또는 사업의 신규 투자 사업과 감·면세 기간과 동일하게 확장 투자로 증가된 소득에 대한 감·면세의 적용

확장 투자사업이 아래와 같은 3개의 조건 중 하나 충족될 때 법인세 우대 적용이 가능하다.

- 투자사업이 완료되어 정식 운용되며 세금 인센티브 지역 내 확장 투자사업에 대해 고정자산의 원가가 최소 200억동 증가 또는 규정에 따라 어려운 경제 및 사회 조건의 지역 내 확장 투자 사업에 대하여 고정자산의 원가가 최소 100억동 증가
- 고정자산이 투자 전 고정자산의 총원가보다 최소 20% 이상 증가
- 확장 투자 후 생산능력이 투자 전 계획된 생산능력보다 최소 20% 이상 증가

본 시행령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 우대 산업 및 지역 내 운영 중인 사업에 관한 업그레이드

교체, 기술 개혁과 같은 투자가 발생하는 법인이나 상기에 3개의 조건을 충족되지 못하는 경우 세금 인센티브는 남은 기간 내 운영 중인 사업에 대해서만 적용된다.

법인에서 확장투자에 의한 인센티브를 선택하는 경우 확장투자로 증가되는 소득 부분을 별도로 가장 관리해야 한다. 별도로 가장 관리하지 않은 경우 확장투자로부터 발생한 소득은 법인의 고정자산의 총원가와 신규 투자 고정자산의 원가의 비율에 따라 확정된다.

바. 기타

- 여성 근로자와 소수민족을 다수 채용하는 제조, 건설, 운송 부문의 법인에 대한 법인세 감세 적용
- 향후 중소기업에 대해 일반 세율(20%)보다 낮은 법인세율을 적용할 계획

6. 지분 양도소득

베트남에서 설립된 법인에 투자한 전부 또는 일부 지분의 양도로 인한 소득에 대해서는 20%의 법인세를 부과한다. 해당 세목은 베트남 규정에 의하여 별도의 세금 종류로 구분되어 있지 않고 지분 양도세라 한다.

가. 지분 양도 세금(Capital Gain Tax) 신고의 경우

1) 직접적 지분의 양도: 법인에서 베트남 법인에 투자된 지분을 직접 소유하여 타 법인/개인에게 본인의 지분을 양도한다.

2) 간접적 지분의 양도: 법인에서 베트남 법인의 지분을 직접 소유하지 않고 다른 회사를 통해 해당 베트남 법인을 간접적 소유하고 해당 지분을 양도한다.

간접적 지분의 양도에 대해서는 베트남에서 지분 양도세 부과 대상인지 아닌지에 대한 논란이 있다. 다만 최근 베트남 과세당국에서 일부의 간접적 지분의 양도 거래에 대한 양도세 적용과 관련한 많은 안내 공문을 발행하였으므로 법인에서는 해당되는 경우 납세 의무에 대해 관련 공문을 참고해야 한다.

3) 그룹의 구조조정 목적의 지분의 양도소득도 지분 양도세 면제대상이 아니다.

4) 법인에서 부동산과 함께 지분 양도 형식으로 소유자가 하나의 구성원으로 설립된 유한 책임회사의 전부를 판매하는 경우 부동산 양도 활동에 의한 법인세를 신고 및 납부한다.

나. 지분 양도세 계산

$$\text{지분 양도세} = 20\% \times (\text{양도가격} - \text{양도 지분의 구매가} - \text{양도 비용})$$

1) 양도가격

가) 지분 양도 계약서에 의하여 양도인이 수취한 실제 총가치로 본다.

나) 양도가격은 시장가격의 원칙을 준수한다. 과세당국에서 양도가격은 시장가격과 부합하지 않다는 근거가 있는 경우 과세당국에서 양도가격에 관한 지정 권한이 있어 지분 양도세 가산세를 추가 징수한다.

다) 시장가격 확인 기준은 아래와 같다.

- 과세당국의 내부자료
- 동일한 시점과 경제조직의 다른 경우의 지분 양도가격 또는 양도시점에 유사한 양도 계약서

2) 양도지분의 구매가

양도지분의 구매가는 아래와 같다.

가) 양도지분 부분은 법인 설립 시 투입된 자본 부분이다. 양도 지분의 구매가는 회계장부, 서류, 증빙을 바탕으로 지분의 양도시점까지 누계로 되는 투자된 자본의 가치이며 양도 시점에 지분 투자자의 확인 또는 독립적인 회계사의 확정 금액으로 한다.

나) 이전에 제3자에게서 구매한 양도지분, 양도지분의 구매가는 구매하는 시점에 해당 지분의 가치와 동일하여 지분 구매계약서와 지급 세금계산서를 바탕으로 확인된다.

3) 양도비용

가) 양도비용은 거래비용, 상담과 계약체결 비용, 법무자문 비용, 세금자문 비용 등과 같은 양도거래와 직접 관련된 비용으로 한다.

나) 모든 비용은 합법적인 서류 및 세금계산서를 첨부하여 제출해야 한다. 해외에서 발생한 비용에 대해서는 비용이 발생한 국가의 공증 사무소 또는 독립적인 회계사의 인증된 서류 원본 및 베트남어 번역본을 갖추어야 한다.

4) 지분 양도거래 시 적용 환율

- 법인에서 외화 지분 양도에 관한 회계 제도의 법과 규정에 의하여 회계 계정 관리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양도가격과 양도 구매가도 외화로 확정된다.
- 법인에서 베트남등으로 회계 계정 관리하고 외화로 지분 양도하는 경우 양도가격은 양도 시점에 법인의 계좌개설한 상업 은행의 외화 매입 환율에 따라 베트남등으로 환산한 금액으로 한다.

다. 지분 양도의 세금신고

양도인	매수인	세금신고 및 납부	신고기한
베트남 법인	베트남 매수인 법인/개인	양도인	회계연도 종료 시점에 법인세 확정 신고서상 신고
외국법인	베트남 법인/개인	매수인	발생 신고, 세금신고서 접수 기한은 아래와 같다. • 유관기관에서 지분양도에 대해 동의한 후 10일 이내 • 양도에 관한 동의가 필요없는 경우 지분 양도 계약서상 지분 양도 협상일자부로 10일 이내
외국법인	외국법인/개인	양도 지분의 베트남 법인	

라. 협정 적용

베트남에서 지분 양도세 부과되는 외국법인, 개인은 관련된 각 협정에 의한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베트남과 연관된 국가 및 지역 간의 이중과세방지협정에 관한 적용을 신청할 수 있다.

협정에 의한 면세는 자동 적용되지 않으며 납세의무자가 현지 과세당국에 신청 서류 접수가 필요하다.

7. 증권 양도소득

가. 적용 범위

법인의 증권 양도소득은 규정에 의한 주식, 채권, 출자증권과 각종 기타 증권의 양도소득을 의미한다.

자본 조달을 위하여 법인에서 주식을 추가 발행하는 경우 발행 단가와 액면가 간의 차이는

법인세 부과 소득으로 반영되지 않는다.

법인에서 분할, 합병 등을 진행하면서 발생한 주식 전환 시 소득이 발생하는 경우 해당 소득은 법인세 부과대상이다.

법인에서 현금이 아닌 자산 및 기타 물질적인 이익(주식, 출자증권 등)으로 증권을 양도하여 소득이 발생하는 경우 법인세가 부과되며 자산, 주식, 출자증권 등의 가치는 자산 수취 시점에 관련된 대가의 판매가에 의하여 확정된다.

나. 세금계산

당기 증권 양도로의 과세소득 = 증권 판매가 (-) 양도 증권의 구매가 (-) 양도와 관련된 비용의 산식으로 산출된다.

구분	증권 판매가	증권 구매가
상장증권, 상장되지 않으나 증권거래소에서 거래 등록 이행한 법인의 증권	증권거래국 및 증권거래센터의 보고서에 의한 증권의 실제 판매가	증권거래국 및 증권거래센터의 보고서에 의한 증권의 실제 구매가이다. 입찰을 통해 구매한 증권에 대한 증권의 구매가는 해당 주식 입찰 개최 조직의 주식 낙찰 결과 보고서, 그리고 입금 확인서상 명시된 가격으로 한다.
위 경우가 아닌 법인의 증권	양도 계약서상 명시된 양도가	양도 계약서상 명시된 양도가

양도비용은 양도 이행과 직접 관련된 실비로서 합법적인 서류와 세금계산서로 증빙되는 비용이다.

양도비용에 대하여 양도를 위한 필수적인 법적 절차 이행 비용, 양도 절차 이행 시 납부할 비용, 중앙증권위원회의 규정에 의한 증권 보관비용과 증권법인의 입금 증빙, 위탁 수취 조직의 입금 증빙에 근거한 증권의 위탁비용, 양도계약서와 관련된 거래, 협상, 체결의 비용 그리고 증명 서류 있는 비용이 포함된다.

법인에서 증권 양도로 소득 발생 시 해당 소득은 기타소득 항목으로 분류되고 법인세 계산 시 과세소득으로 신고한다.

8. 부동산 양도소득

부동산 양도소득은 다음의 경우를 포함한다.

- 토지 사용권 양도, 토지 임차권 양도소득

- 부동산 경영 법인의 토지 재임차 운영소득
- 주택, 지상물, 지상 자산물 양도소득
- 주택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 양도소득
- 기타 지상 자산물의 소득

부동산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율은 20%이다.

세금계산

세금 산출소득 = 과세소득 - 전기 부동산 양도 활동의 결손금

과세소득 = (1) 부동산 양도가액 - (2) 부동산의 원가 - (3) 부동산 양도 활동과 관련된 공제 가능 비용

1) 부동산 양도가액

- 양도가액은 부동산 양도, 매매 계약에 의한 부동산의 실제 양도가격을 바탕으로 확정된다(추가 부가비용 및 징수비용이 있는 경우 포함)
- 토지 사용권 양도 가격이 성급 위원회 및 중앙직할시의 시세보다 낮은 경우 양도 시점에 규정된 성급 위원회 및 중앙직할시의 단가표를 적용한다.
- 구매자의 유관기관 소유권 등록 여부에 관계없이 양도 확정 시점은 판매자가 구매자에게 부동산을 양도하는 시점으로 한다.

2) 공제가능 부동산 양도의 비용

- 권한이 양도되는 부지의 원가는 토지 사용권 출처에 따라 확정된다. 정부로부터 수취한 토지 사용료 및 토지 임차료 부과 부지의 경우 원가는 정부에 실제 납부한 토지 사용료 및 토지 임차료로 타 법인, 개인의 토지 사용권을 인수하는 부지의 경우 해당 토지 사용권 및 토지 임차권의 인수 시 합법적인 계약서와 지급 증빙에 근거하여 산출된다.
- 정부에서 부지 회수 시 보상 및 지원 비용
- 토지 사용권 발급과 관련된 법적 과세 및 비용
- 부지 정리 및 평지 작업 이행의 비용
- 지상 인프라 구조물 및 건축물의 가치

- 양도된 부동산과 관련된 기타 비용
- 광고, 홍보, 프로모션 등은 공제 가능 비용에 해당하나 규정에 따라 부동산 양도 및 법인세 부과 거래 발생 첫 번째 해로 제한된다.
- 법인에서 다양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각종 비용을 별도로 정산한다. 각 사업의 비용을 별도 정산하지 못하는 경우 공동 비용은 부동산 양도의 매출과 법인의 총매출 비율에 따라 안분한다.
- 정부에서 지불하거나 기타 펀드에서 지급된 비용

9. 법인의 구조조정

법인의 구조조정은 법인의 유형 변경, 통합, 합병, 분할, 해산, 부도 등을 포함한다. 구조조정 이행 시 유의할 세무 이슈는 아래와 같다.

가. 법인세 정산

법인의 유형 변경, 통합, 합병, 분할, 해산, 부도를 진행하는 법인에서 해당 분할, 통합, 합병, 소유 형식의 변경, 해산, 활동의 종료와 관련된 결정 발행일로부터 45일 이내 세금을 정산하여야 한다.

법인의 분할, 합병, 통합되는 법인에서 분할, 합병, 통합 이행 이전 납세 의무 완료 책임이 있다. 납세의무 미완성 시 분할된 법인과 분할로 설립된 신규 법인들, 합병된 법인, 통합된 법인에서 해당 납세의무 완료에 대한 책임이 있다.

나. 고정자산의 재평가

법인의 분할, 합병, 통합, 유형 변경 시 이전할 고정자산에 대하여 해당 자산이 규정에 의해 고정자산 인식과 관련된 조건(예: 고정자산이 해당 자산 수취 법인의 소유임을 증명하는 세금계산서, 증빙 조건, 그리고 공제 비용에 감가상각비로 반영 가능한 조건 등)을 구비하고 있으며 재평가되는 경우 이 고정자산은 수취하는 법인에서 감가상각비로 비용 인정된다. 해당 감가상각비 산출은 재평가한 원가를 바탕으로 이행한다.

법인의 분할, 합병, 통합, 유형 변경(100%의 국영 법인의 민영화, 구조조정 등 경우 제외) 시 자산 이전을 위한 법적 규정에 의한 자산 재평가 금액은 법인세법상 기타소득으로 인정된다.

다. 결손금 이월

법인의 변경, 통합, 합병 이전 발생한 결손금은 발생 연도에 따라 세부 관리되며 해당 법인의 변경, 통합, 합병 이후 법인의 당기 소득에 정산하거나 법인의 변경, 통합, 합병 이후 법인의 다음 해의 소득에 지속적으로 전환 가능하나 결손 발생 연도의 다음 해부터 5년 이내로 제한한다.

다른 법인으로 분할되며 규정에 의하여 결손금 이월 기간 내 발생한 결손금은 분할된 법인에게 분할 비율에 의해 분배된다.

라. 법인세 우대의 상속

법인의 유형 변경, 소유권 변경, 분할, 통합, 합병으로 설립된 법인 또는 이로 인한 투자 프로젝트가 있는 법인에서 남은 기간 동안 법인세 인센티브 조건이 지속적으로 충족되면 변경, 분할, 통합, 합병 이전 기존 법인 또는 투자사업의 법인세 인센티브의 승계 적용이 가능하다.

법인의 분할, 통합, 합병, 유형 변경으로 설립된 투자사업에서 법에 의하여 신규 투자사업에 대한 법인세 인센티브 적용이 불가능하다.

10. 모국으로 이익 송금

- 외국 투자자는 회계연도 종료 시 또는 베트남에서 직접 투자 활동을 종료 시 베트남에서 분배된 이익 및 직접투자로 인해 수취된 이익을 외국으로 송부 가능하다.
- 외국 투자자는 베트남 정부에 대한 재무적 의무를 충분히 이행하고 관리 과세당국에 감사받은 재무보고서와 회계연도의 법인세 정산 신고서를 접수한 후 모국으로 이익 송금이 가능하다.
- 외국투자자는 투자된 법인에서 누적 손실이 발생하는 경우 외국으로 이익 송금이 불가능하다.
- 외국 투자자는 직접 또는 투자된 법인에 위임하여 이익 송금 전 7영업일 전에 과세당국에 해당 외국으로 이익 송금에 관한 통보를 한다.

11. 법인세 신고 및 납부

- 법인에서 분기마다 법인세 중간예납 신고서를 접수할 필요는 없으며, 법인에서 납세의 무 발생 분기 다음 분기의 30일 이내 분기별 세금을 예상하여 납부할 수 있다.
- 법인세 정산 시 각 분기별 중간예납 합계금액이 연간 납부세액의 80% 이하인 경우, 부족분에 대한 이자 상당액을 납부해야한다.
- 법인세 확정신고는 매년 이행한다. 법인세 확정 신고서 접수와 법인세 납부 기한은 회계연도의 종료일로부터 90일이다.
- 성급 및 중앙에 위치한 비독립지점(예: 지점) 본사 관리 지역에 법인세 신고서를 신고 납부한다. 다만 제조업의 경우 납세 금액을 비독립 제조지점이 있는 지역의 과세당국에 분배하여 납부한다. 지역별 납부할 금액의 분배 기준은 법인의 총비용을 기준으로 각 제조지점의 비용 비율에 근거하여 분배한다.

비용의 비율은 비독립 제조 지점의 총비용과 법인의 총비용 간의 비율로 계산된다. 비용의 비율을 확정하기 위한 자료는 세금계산 연도의 직전연도의 법인의 소득에 관한 세금 정산 자료에 근거하여 법인에서 납부 금액을 확정하기 위하여 자체적으로 확정하고 그 후 다음 해에 법인세와 관련된 신고와 납부로 사용된다.

III 특수관계자거래

1. 현행 법령

베트남의 특수관계기업 간의 거래에 관한 규정은 거래의 합법성 제고를 위해 OECD 이전 가격 가이드라인(Transfer Pricing Guidelines for Multinational Enterprise and Tax Administrations)과 소득이전을 통한 세원잠식(BEPS, Base Erosion and Profit Shifting)의 주요개념과 규칙을 바탕으로 수립된다.

문서명	발효일	만료일
국제법률		
OECD 이전가격 승인과 조세관리의 가이드라인	참고용	
소득이전을 통한 세원잠식(BEPS)		
베트남 법률		
세무관리법 제78/2006/QH1호 및 개정법	2007/07/01	2020/06/30
세무관리법 제38/2019/QH1호	2020/07/01	
정상가격산출법(APA) 사전승인 시행규칙 제201/2013/TT-BTC호	2014/02/05	
특수관계자거래기업의 조세관리 정부 시행령 제20/2017/NĐ-CP호	2017/05/01	
정부 시행령 제20/2017/NĐ-CP호 부속 재무부 시행규칙 제41/2017/TT-BTC호	2017/05/01	

2. 적용범위

가. 적용대상

다음 각 호의 생산업자, 용역 공급업자를 대상으로 적용한다.

- 특수관계자거래가 있는 기업
- 신고법에 따라 법인세를 신고 납부한 기업

나. 특수관계자거래

특수관계자 간 발생한 생산 및 영업활동을 특수관계자거래라고 하며 다음과 같은 거래가 이에 해당한다.

- 기계, 설비, 제품 등의 매매, 임대차, 양수도 및 이전, 용역 제공 등
- 금전의 대출, 차용, 보증, 금융지원 등 각종 금융거래
- 유무형자산의 매매·임대차, 양수도, 이전, 인적자원 개발협력 등의 자원공유 협의 등
- 특수관계인 간 비용 분담

특수관계자거래에는 물가안정법에 따른 정부의 가격조정범위 내 해당 상품 및 용역거래가 포함되지 않는다.

다. 적용원칙

이전가격 평가에 있어 과세당국은 독립거래원칙과 실질우선원칙을 적용한다. 납세의무자의 조세의무 등을 감소시킨 불합리한 이전가격은 인정받지 못하며 이때 조세의무를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 과세당국은 이전가격을 조정한다.

- 독립거래원칙

독립거래원칙은 베트남 영토에 적용되는 조세조약에 따라 특수관계를 지니지 아니한 당사자 즉 독립관계자 간 발생 거래로 정의된다.

- 실질우선원칙

실질우선원칙은 납세의무자의 생산, 경영활동을 분석하고 특수관계자거래의 본질을 파악하여 이에 상응하는 독립거래와 비교한다. 본 원칙은 특수관계자 간 발생 거래가 본래의 상업, 경제, 금융상황을 온전히 반영하게 함으로써 해당 특수관계가 납세의무자의 조세의무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한다.

유사한 조건하에 발생한 특수관계자 간 거래와 독립관계자 간 거래를 비교함에 있어 특수관계자 간 체결한 계약서나 협정서에 기재된 내용이 아니라 실질적 거래형태에 따라 관련 재무자료를 기준으로 한다. 특수관계자거래의 본질은 유사한 조건하에 이루어진 독립거래와의 비교를 바탕으로 파악할 수 있다.

실질우선원칙은 그룹 내부의 모든 거래가 실제 가치를 창출했다는 것을 보장하기 위해 특수관계자거래의 본질을 고려한다.

3. 주요 개념

가. 특수관계자 범위

특수관계자는 다음과 같은 경우를 말한다.

1) 일방이 어떠한 형식으로든 상대방의 관리, 통제, 자본출자 또는 투자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하는 경우

2) 어떠한 형식으로든 일방·상대방의 당사자들이 제3자로부터 관리, 통제, 자본출자 또는 투자를 받는 경우

제20호 정부 시행령은 특수관계자를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현행규정 (제20호 시행령 & 제41호 시행규칙)
지분에 의한 특수관계	a) 한 기업이 다른 기업의 투자자본 중 25% 이상을 직·간접으로 보유하는 경우 b) 한 기업과 다른 기업에 대해 제3자가 두개 기업의 투자자본 중 20% 이상을 직·간접으로 보유한 경우 c) 한 기업이 다른 기업의 최대주주이면서 투자자본의 10% 이상을 직·간접으로 보유하는 경우
거래에 의한 특수관계	d) 한 기업으로부터의 대출이 다른 기업 투자자본의 25% 이상을 차지하고 다른 기업의 장기차입금의 50%를 초과하는 경우(대여형식으로 사실상 지분투자하는 경우)
실질지배력 기준에 의한 특수관계	e) 한 기업의 이사회 임원 중 50% 이상 또는 감사 중 50% 이상을 다른 기업이 지명하며 재무 정책 또는 사업활동을 결정하는 권한을 가진 한 기업의 이사 또는 감사를 다른 기업이 지명하는 경우 f) 한 기업과 다른 기업에 대해 제3자가 재무 정책 또는 사업활동에 관한 의사결정권을 가진 이사회 임원의 50% 이상 또는 감사를 지정하는 경우(사업 중요의사 결정권의 통제) g) 한 기업이 다른 기업의 부부, 친아버지, 양부, 생모, 양모, 친자식, 양자, 친형제, 친남매, 처남, 율케, 조부모, 친손자, 친손녀, 외조부모, 외손자, 외손녀, 고모, 삼촌, 숙모, 이모, 친조카, 외조카 간 등 친인척관계에 의해 인력, 재무, 사업관련 업무 등 관리 또는 통제 받는 경우 h) 한 기업과 다른 기업이 본사와 고정사업장의 관계를 가지거나 동일한 외국기업 또는 개인의 고정사업장인 경우 i) 동일인이 한 기업과 다른 기업의 경영, 지배 또는 자본에 직접 또는 간접으로 참여하는 경우 j) 한 기업이 다른 기업의 사업(생산영업)활동에 대하여 실제로 경영, 지배하는 기타 각 경우

나. 이전가격 문서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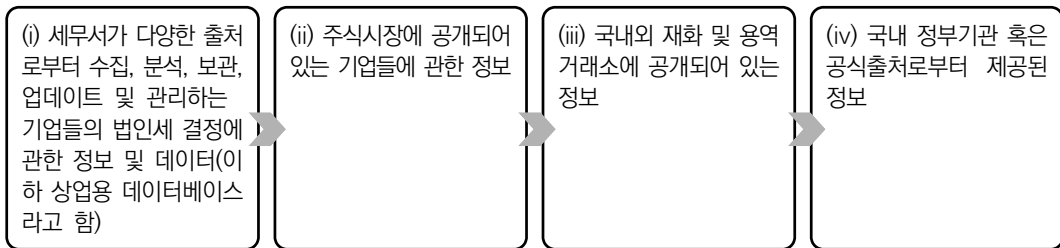
소득이전을 통한 세원잠식(BEPS, Base Erosion and Profit Shifting) 규정을 준용하여 납세의무자는 아래 3가지 보고서에 대한 작성의무를 가진다.

- Local file(개별기업보고서) : 제20호 정부 시행령 형식2에서 규정된 자료로서 특수관계 자거래 정보, 해당 이전가격 산정 정책 및 방법의 내용을 기술한 문서(납세의무자가 작성의무 부여)
- Master file(통합기업보고서) : 제20호 정부 시행령 형식3에서 규정된 자료로서 그룹(본사)의 경영, 사업활동에 대한 정보, 전 세계적으로 적용된 이전가격 정책, 이익률, 이익 분배율 및 그룹의 기능, 활동 등 분배에 대한 내용을 기술한 문서
- Country by country Report(국가별 보고서) : 현지 국가법에 따라 납세의무자의 그룹 본사에 작성의무를 부여하며 이 문서는 전 세계 독립 및 관련 자회사의 현황 등에 대한 보고서로서 매출액, 이익(세전), 세금납부액, 각 자회사의 활동영역과 기능 등(본사 소재 국가법에 따른)의 내용을 기술하는 문서

이전 제20호 정부 시행령에서는 개별기업보고서만 규정된 이전가격 문서였다.

다. 데이터베이스

납세의무자의 특수관계자거래 가격 산정을 위한 데이터베이스는 다음과 같다.



라. 특수관계자거래와 관련 납세의무자의 의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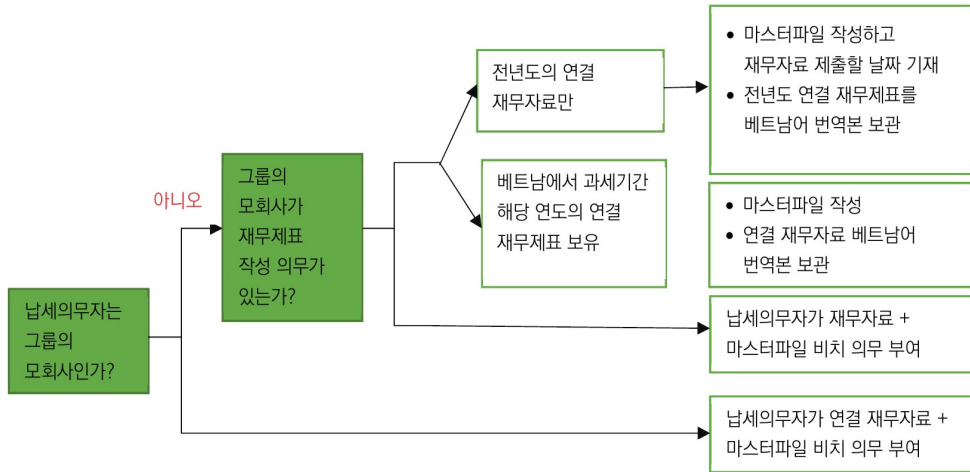
납세자가 특수관계자거래와 관련 규정을 준수하는 의무가 있는 자로서 다음 규정에 따라 특수관계자거래 가격 산정서류 작성 의무를 부여한다.

	제20호 시행령 & 제41호 시행규칙
신고양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양식 01: 특수관계자 및 거래 정보 신고서 • 양식 02: Local file(개별기업보고서) 체크리스트 • 양식 03: Master file(통합기업보고서) 체크리스트 • 양식 04: Country by country Report(국가별 보고서)
제출 기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법인세 확정 신고서에 첨부

제20호 시행령 & 제41호 시행규칙	
면제대상	<p>아래 3가지의 조건을 만족하는 경우 이전가격 신고서 서식 01의 III장과 IV장 작성이 면제된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오직 베트남 국내 특수관계자(베트남에서 법인세 납세 의무자)와 거래가 발생하는 경우 • 동일한 법인세 세율을 적용되는 경우 • 과세기간 내 각 법인이 법인세 우대혜택을 받지 않는 경우 <p>주의: 납세의무자는 신고서 서식 01의 I장과 II장에 그 면제근거를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 베트남 세무총국 및 각 지역 세무국은 신고서 서식 01의 III장과 IV장 작성이 면제되는 납세의무자를 대상으로 이전가격 보고서 작성 의무도 면제된다는 안내 공문을 회부한 바가 있었으나 특정한 경우만 적용될 뿐 보편적으로 적용되지 않음을 유의해야 한다.</p>
서류 유형	<p>Local file(개별기업보고서) Master file(통합기업보고서): 각주(*) 참고 Country by country Report(국가별 보고서): 각주(**) 참고</p>
준비 기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납세의무자는 당해 연도 법인세 신고서 제출 전(회계연도 종료 후 90일 이내) 이전가격 보고서를 작성해서 비치한다.
제출 기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과세당국의 요청 시 근무일 기준으로 15일 이내에 제출해야 한다. • 사전상담의 경우 서면으로 요청을 받은 날로 근무일 기준으로 30일 이내에 제출해야 하며 타당한 사유를 소명할 경우 연장이 가능하나 15일을 초과하면 안 된다.
이전가격 보고서 작성 의무의 면제	<p>아래 조건 중 하나를 만족하는 경우는 이전가격보고서 작성의무가 면제된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당해 연도 매출액이 500억동 이하이면서 특수관계자와의 거래규모가 300억동 이하인 경우 • 이전가격 사전승인제도(APA) 체결 경우 • 업자가 (i) 단순한 기능을 수행하는 업체의 경우(각주(***) 참고), (ii) 당해 연도 무형자산으로부터 발생이익이 없으며 (iii) 매출액이 2000억동 이하이면서 (iv) 법인세 이자 차감전 영업이익(EBIT, Earnings before Interests and Taxes)이 매출액의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p>✓ 도매업(유통): 최소 5% 이상 ✓ (단순) 제조업: 최소 10% 이상 ✓ (단순)임가공업: 최소 15% 이상</p> <p>법인세 이자 차감 전 영업이익이 위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규정에 따라 이전가격보고서 작성의무를 부여한다.</p> <p>본 항에서 면제받는 납세의무자는 서식 01을 신고할 의무가 있음을 유의해야 한다.</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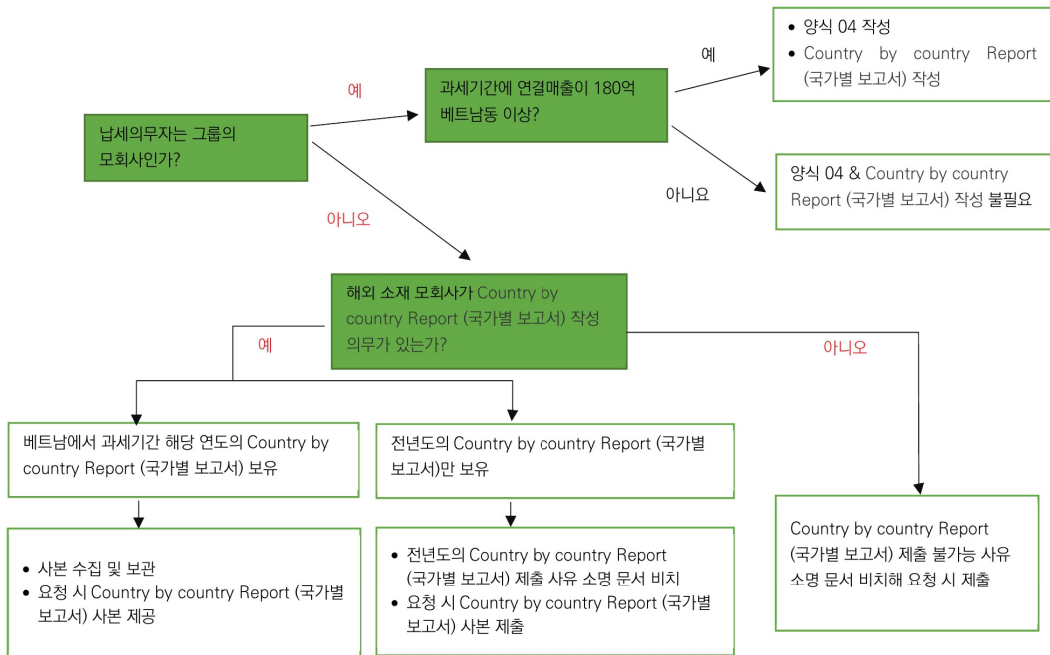
각주

(*) Master File(통합기업보고서) 작성 의무



납세의무자가 동시에 서로 다른 다국적기업에 속한 모회사의 자회사인 경우 이 모든 다국적기업의 Master File(통합기업보고서)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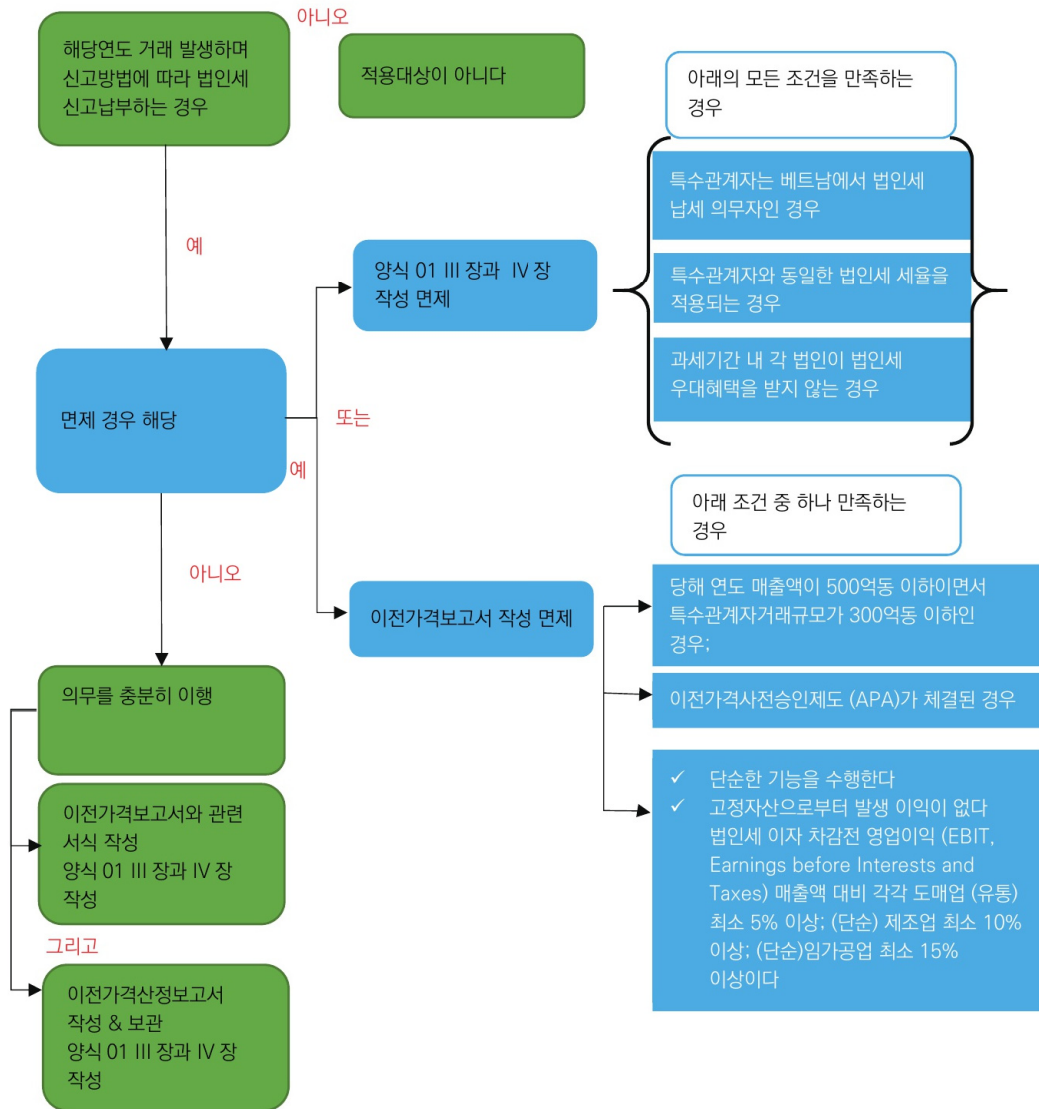
(**) Country by country Report(국가별 보고서) 작성 의무는 아래 표와 같다.



납세의무자는 동시에 서로 다른 다국적기업에 속한 모회사의 자회사인 경우 이 모든 다국적기업의 Country by country Report(국가별 보고서)의 사본을 보관해야 한다.

(***) 단순기능수행업체란 경영전략 수립기능 부재 업체로 저부가가치 거래만 하며 제조, 도매 사업에 있어서 재고자산, 시장변동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위험부담이 없고, 무형자산 활용으로 매출과 비용 등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적자를 부담하지 않는다.

특수관계자거래에 관한 규정 준수사항은 다음과 같다.



4. 특수관계자거래가격 산출방법

OECD 이전가격 가이드라인(OECD Transfer pricing guidelines for Multinational Enterprises and Tax Administrations) 에 의하여 베트남에서 아래의 방법을 규정으로 한다.

순서	제20호 정부 시행령/제41호 시행규칙
1	비교가능 제3자 가격방법(CUP)(P1) • 비교가능 제3자 가격방법(CUP)(P1.1) • 재화, 용역의 국내외 시장에 공시된 판매가격방법(P1.2)
2	거래이익률방법(P2) • 재판매가격방법(Resale Price Method)(P2.1) • 원가가산방법(Cost Plus Method)(P2.2) • 거래이익분할방법(Transactional Profit Split method)(P2.3)
3	거래순이익률방법(Transactional Net Margin Method)(P3)

납세의무자는 부합한 이전가격산출방법 및 비교가능 대상을 선정하고 위의 3항의 비교가능성 분석 원칙을 준용해 비교가능성 분석 작업을 진행한다.

이전가격산출방법 선정 시 우선적으로 고려하는 순서는 다음과 같다.

- 거래 이익률 방법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적용된다.
 - 납세의무자가 비교가능 제3자 가격법을 적용하기 위한 정보가 없는 경우, 또는 유사한 상품종류에 따른 분리가 적절하지 않은 경우 사업의 형태, 실제상황 등을 고려하여 완성된 거래로 통합하여 비교가능 독립기업들의 이익률을 산출한다.
 - 납세의무자가 전체 사슬가치의 생산, 경영활동에 있어 모든 의사결정권을 행사하지 않거나 특수관계자와 거래를 하지 않은 경우
- 제20호 정부 시행령은 비교대상으로 제3자 거래를 선정하는 경우 내부 제3자 거래에 우선순서는 아래와 같이 규정한다.
 - 무형자산 사용에 대하여 로열티를 지불하는 거래
 - 대출 및 차입 활동에 대하여 대출이자를 지불하는 거래
 - 고정자산 매매: 납세의무자가 해외 소재 특수관계자로부터 기계, 장비 등을 구매하는 경우 구매시점의 독립거래원칙을 준용해 해당 기계, 장비의 가격을 입증서류를 구비해야 한다. 새로운 기계나 장비의 경우, 비교가격은 제3자 독립기업으로부터 해당 기계, 장비를 구매한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가격이고, 중고 기계나 장비의 경우, 구매시점의 입증서류가 있어야 되며 이때 자산(해당 기계, 장비) 가치가 감가상각에 관한 현행법을 준용해 재평가된다.

5. 비교 가능성 분석

가. 기본원칙

- 가격법은 독립거래가격과 특수관계자 거래가격 비교 시 제품가격, 이익률 및 이익분배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제품 특성 및 계약조건상의 차이가 없다는 원칙하에 시행된다.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차이점이 있는 경우 비교요소를 이용해 해당 차이점을 제거해야 한다.
- 회계처리 및 세무에 관한 규정에 따른 세금산출, 신고 목적을 위해서는 비교거래의 재무정보는 신뢰도가 높은 수준이어야 한다.
- 비교가능거래를 찾지 못한 특별한 또는 유일한 특수관계자거래의 경우 산업, (지리적) 시장, 거래시점 등 범위를 확대하여 독립거래비교를 찾는다.
- 특수관계자거래와 독립거래 비교는 유사한 제품을 취급한 조건하에 진행한다. 비교 불가능한 경우 이전가격을 산정 시 사업의 형태, 실제상황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그 외에 제20호 정부 시행령은 특수관계자거래의 본질은 독립거래와 유사성 유무를 확인하기 위한 정상가격산출방법을 제시한다.

나. 비교 가능성 분석 과정

제20호 정부 시행령 제6조는 다음과 같이 비교가능성 분석에 대하여 규정한 바가 있다.

- 1단계: 비교가능 독립거래와의 유사성을 분석 전에 특수관계자거래 본질을 확인한다.
- 2단계: 유사한 비교가능 독립거래를 선정하고 분석한다. 제20호 정부 시행령은 다음과 같이 비교가능거래의 선정을 위한 기준 적용 우선순위를 제시한 바가 있다.
 - ✓ 납세의무자 내부 비교가능 대상
 - ✓ 납세의무자와 국내(베트남) 소재 비교가능 대상
 - ✓ 동일하거나 유사한 사회적 경제적 지역의 비교가능 대상
- 3단계: 비교가능 독립대상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거래가격, 이익률 및 이익분배율을 산출하여 납세의무자가 납부할 법인세액을 산출한다. 생산, 경영 과정에서는 선정된 방법은 해당 사업의 기능 및 형태에 부합하여야 한다.

다. 비교가능대상 선정에 있어 영향을 미치는 요소들

비교요소들은 재화, 용역, 자산의 특수성(이하 '제품 특수성'이라고 함)을 비롯해 사업기능 및 위험, 계약사항 및 거래 발생 시의 경제적 요건 등을 포함한다.

제20호 정부 시행령은 무형자산의 비교특수성 분석에 관한 내용도 있다. 납세의무자가 계약 상 규정된 경제이익 창출을 위한 다자간 합의를 확인하여야 한다. 무형자산 분석은 해당 자산의 소유권, 시장성 또는 사용에 있어 지리적 제한, 해당 자산의 경영상 효익, 소유권 이전 받은 당사자가 무형자산에 대한 개발, 향상, 유지, 보호 활동 참여 여부 등을 기초로 진행한다.

라. 비교대상 회사의 최소 건수

비교대상으로 선정될 수 있는 제3자 거래의 최소 건수를 다음과 같이 규정된다.

독립거래의 유사성에 의한 구분	제20호 정부 시행령/제41호 시행령
제3자 거래와 특수관계자거래의 차이가 전혀 없는 경우	1건
제3자 거래와 특수관계자거래간 차이가 있으나 기업이 차이를 제거하기 위한 정보 및 자료를 충분히 보유하는 경우	3건
기업이 거래의 차이를 대부분 제거하기 위한 정보 및 자료만 보유하는 경우	5건

비교대상들은 유사한 수준의 신뢰성을 지니지 못한 경우 확률법칙/확률방법을 사용해 표준시가 범위를 산정하여 특수관계자거래가격 산출방법들을 이용해 거래가격, 이익률, 이익분배율을 다시 산출한다.

6. 특수관계자거래가격/이익률 조정 근거

가. 독립거래가 범위

제20호 정부 시행령에 따르면 독립거래가 가능한 범위란 비교가능 독립대상들의 비교신뢰성이 유사한 수준으로 판단된 거래가격, 이익률 및 이익분배율을 포함한다. 정상가 범위를 산정함에 있어 보통 확률법칙을 준용하여 비교 신뢰성을 보장하도록 한다.

시가범위는 독립기업 간 거래로 인해 발생한 가격이나 마진율(gross profit margin) 또는 자산이익률을 포함한다.

나. 표준시가 범위

납세의무자의 거래가격, 이익률, 이익분배율 등을 조정함에 있어 사분위 범위를 이용하여 표준시가범위를 산정하되 과세소득이 감소하지 아니해야 한다. 사분위 범위는 관측값 즉 가격, 이익률, 이익분배율 등을 크기의 순서로 작은 값으로부터 올림차순으로 배열한다.

표준시가 범위는 사분위 값으로 산정되며 구체적으로는 제1사분위부터 제3사분위까지 인 정된다. 정상가 범위에 해당하는 가격은 제1사분위부터 제3사분위까지이며 제2사분위는 정상가 범위의 중윗값으로 본다.

다. 특수관계자거래가격/이익률 조정 근거

대상	제20호 시행령/제41호 시행규칙
납세의무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사한 수준의 신뢰성을 지닌 독립비교대상 거래를 발견했을 경우(차이가 없거나 모든 중대한 차이를 제거하기 위한 정보 및 데이터를 충분히 보유하는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납세의무자의 거래대가, 이익률, 이익분배율 요소들이 정상가 범위 안에 해당되는 경우 납세의무자에게 대가, 이익률, 이익분배율을 조정할 의무가 없다. - 납세의무자의 대가, 이익률, 이익분배율 요소들이 정상가 범위 외에 있는 경우, 납세자는 특수관계자 간의 거래와 제일 유사한 정상가 범위 안에 해당하는 독립거래의 가치를 파악하여, 대가, 이익률, 이익분배율의 조정을 해야 하며 이때 납세의무자의 조세의무, 과세소득 및 납세액을 감소시키면 안 된다. • 기초 데이터와 독립비교대상의 중대한 차이를 완전히 제거하지 못하고 대부분만 제거 가능한 경우 최소 5건의 독립비교대상 거래를 선정한다. <p>납세의무자의 대가, 이익률, 이익분배율이 상기 5건 거래의 표준시가범위에 해당하면 납세자가 이전가격을 정하는 데 필요한 대가·이익률·이익분배율을 조정할 의무가 없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납세의무자의 대가, 이익률, 이익분배율이 상기 5건 거래의 표준시가범위에서 벗어나는 경우 납세의무자는 특수관계자 간의 거래와 제일 유사한 정상가 범위 안에 해당하는 독립거래의 가치를 파악하여 특수관계자거래의 대가·이익률·이익분배율을 조정하며 과세소득 및 납세액을 산출한다. 이때 납세의무자의 조세의무, 과세소득 및 납세액을 감소시키면 안 된다.
과세당국	<p>과세당국은 납세의무자의 이전가격·이익률·이익분배율을 조정 혹은 결정하는 경우 조정가격은 표준시가 범위의 중윗값으로 정한다.</p>

7. 특수관계자거래 가격결정에 관한 규정을 위반한 경우

납세자가 특수관계자와의 거래의 가격결정에 관한 규정을 위반한 경우 세무당국은 이전가격 총매출이익률, 총과세소득 및 과세액에 결정권한을 부여한다. 아래와 같은 경우에 해당되면 가산세를 부과한다.

신고서 양식 01 제출하지 않거나 미흡하게 작성한 경우
특수관계자거래 이전가격 결정을 위한 미흡한 정보 및 데이터를 제공하는 경우 혹은 과세당국 요청으로 기한 내에 서류를 부실 제출한 경우
독립비교대상거래에 대한 부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거나 데이터출처가 불명확한 경우
특수관계자거래 이전가격에 대한 20호 시행령 제11조를 위반한 경우(이전가격 신고 및 문서화 면제 대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연납부 가산세: 지연납부 수 x 0.03% x 납부세액 ➢ 불성실신고 가산세: 과소신고 세액의 20% ➢ 탈세 가산세: 탈세 세액의 1~3 배

8. 기타 규정

가. 과세금액 산정: 특수관계자거래 사례

1) 당기 세금공제 불가능 비용 결정 원칙

독립거래원칙에 부합하지 않으며 납세의무자의 영업활동에 있어 매출이나 이익을 발생하지 않은 특수관계자거래는 당기 세금공제 불가능 비용으로서 다음과 같은 경우를 포함한다.

- 가) 납세의무자의 영업분야 혹은 영업활동과 연관되지 않는 특수관계자에게 지급한 비용
- 나) 사업을 영위하며 납세의무자의 영업분야에 연관되지만 해당 비용이 총자산 규모, 인원 수 및 생산량과 부합하지 않은 특수관계자에게 지급한 비용
- 다) 납세의무자에게 제공하는 자산과 재화 혹은 용역에 대한 책임 혹은 권리가 없는 특수관계자에 지급한 비용
- 라) 납세의무자의 영업활동에 있어 매출을 발생시키지 않으며 법인세를 과세하지 않은 국가나 지역에 소재한 특수관계자에게 지급한 비용

2) 특수관계자와의 용역제공거래

제20호 시행령은 용역거래의 비용 공제인정요건은 납세의무자가 특수관계자로부터 제공 받은 용역이 상업적, 재무적, 경제적 가치창출을 입증하여 용역비용이 합리적으로 산정된 자료를 제공해야 한다. 납세의무자가 명확한 자료를 제공하지 못하는 경우 용역비용은 세금공제 가능비용으로 인정이 불가하다.

A. 공제 불가능 용역비용	B. 세금공제 가능 용역비용
(i) 특수관계자에게만 가치 혹은 이익을 창출하기 위한 용역 비용 (ii) 특수관계자의 주주의 이익을 위한 용역 (iii) 여러 특수관계자가 중복 제공하여 납세의무자의 부가가치 창출 여부 확인 불가능 용역 (iv) 본질적으로 동일한 모회사 내에서 획득하는 이익으로 간주되는 용역 (v) 제3자를 통해 제공하는 용역에 더하여 부가가치를 창출하지 못하는 비용	납세자는 아래와 같은 경우로 과세소득에 공조를 인정한다. (i) 납세의무자의 영업활동에 직접 사용되는 상업적, 재무적, 경제적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용역 (ii) 독립적 거래와 유사한 조건하에서 제공되는 용역 (iii) 독립거래원칙 또는 이전가격산출법에 의해 지급된 용역비용 또는 특수관계자 간 비용배분은 그룹 전체 내의 유사한 용역에 대해서 일관된 가격을 적용한다. 납세의무자는 용역과 관련된 계약서, 계산서, 관련문서, 가격산출방법, 가격에 관한 정책 등의 자료를 제공하는 의무가 있다. 특정기능 이행으로 그룹의 가치가 증가하는 그룹센터와 관련된 경우 납세의무자가 해당 기능으로 발생하는 총가치와 특수관계자의 투입 가치에 적합한 이익 분배금을 특수관계자의 조율기능 이행과 유사한 독립거래의 서비스 제공에 상당한 용역 비용을 차감하여 산출해야 한다.

나. 이자비용에 대한 법인세 이자 감가상각비 차감 전 영업이익(EBITDA)의 20% 한도 규정

제20호 정부 시행령은 특수관계거래자가 있는 경우 당기에 발생하는 모든 이자비용의 세금공제가능비용 산입에 대하여 EBITDA의 20% 한도를 규정한다.

다. 정상가격 산출방법 사전승인(APA)

1) 정의

정상가격 산출방법 사전승인제도는 과세당국과 납세의무자의 서면 약정서에 의해 적용할 정상가격 산출방법과 근거를 정의한 협약으로 과세근거, 과세표준 산출방법 혹은 시가산출방법에 대하여 규정한다.

APA는 납세의무자가 법인세(사업소득세)를 신고하기 전에 작성된다.

2) APA 유형

가) 일방 APA는 APA 적용을 신청한 납세의무자와 베트남 과세당국 사이에 서명된 합의이다.

나) 쌍방 혹은 다자간 APA는 베트남 과세당국과 납세의무자, 1개 이상의 상대방 국가 과세당국 간 APA이다.

3) APA 절차

단계	절차 및 이행기간
1. 사전상담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전상담 단계 후 30일 내에 납세의무자가 제공한 정보를 검토하여 과세당국은 APA 공식제출 승인 여부를 결정하여 서면으로 통지한다.
2. 공식 신청서 제출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서면상담 승인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20일 이내 납세의무자가 APA 적용 공식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연장: 객관적 이유로 납세의무자가 제출하지 못하는 경우 서면으로 제출기한 연장을 요청 가능하되 30일을 초과할 수 없다.
3. 심사 절차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심사기간은 제출한 날로부터 90일 이내로 규정되며 필요 시 서면통지로 최대 60일 까지 연장 가능하다. 회의 개최: 제출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APA 신청 처리 계획 및 순서를 합의하기 위한 회의를 개최한다.
4. APA협상 및 논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일방APA: 협상은 과세당국이 작성한 APA 초안 위주로 진행되며 본 초안은 사전에 납세의무자에게 송부할 수 있다. 쌍방APA, 다자간APA: 과세당국의 대표자는 외국 과세당국의 관할 공무원에게 조세조약의 상호합의절차에 따라 APA 협상 내용을 통지한다.
5. APA승인 및 이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납세의무자와 관련 과세당국 간 협상이 종결된 APA 초안은 번역되어 (필요 시) 최종안을 체결하고 이행된다.

4) 적용기간, 연장

- 납세의무자가 APA 합의에 기재되는 규정을 충실하게 이행한 경우 과세당국과 납세의무자는 서명된 APA 합의 규정을 의무적으로 이행해야 한다(과세당국과 납세의무자 모두에게 구속력, 즉 승인내용 준수 의무를 부여한다).
- APA는 최대 5년간 유효하며 납세의무자가 APA신청서를 제출 시 효력이 발생한다.
- 다음의 경우 APA는 최대 5년까지 연장 가능하다.
 - ✓ 특수관계자거래의 범위 및 특수관계자들에 대한 중대한 변경 사항이 없는 경우
 - ✓ 중요한 추정에 중대한 변경 사항이 없는 경우
 - ✓ 비교가능성 분석을 위해 사용된 사분위 범위 또는 매출 총이익률이나 순이익률이 연장 기간 동안 안정된 경우

라. 상호합의 절차(MAP)

1) 이행 절차

베트남 거주자로서 양자간 APA 또는 다자간 APA를 체결하고자 하고 외국 과세당국과 연락, 협의, 협상을 위한 과세당국의 지원이 필요한 납세의무자는 관련 조세조약에 따라 상호합의 절차 개시신청서(제201/2013/TT-BTC호 시행령, 서식4/APA-MAP)를 제출하여 아래와 같은 정보를 제공한다.

- APA 합의한 국가에 납세의무자의 회사명, 소재지, TAX CODE(있는 경우) 그리고 APA 합의에 참여하는 각 기관들의 관계도(조직도 포함)
- 외국 과세당국의 기관명, 소재지
- 양자간 APA 혹은 다자간 APA 적용 사유
- 지원 필요 사유
- 외국 과세당국이 발행한 관련 자료(특수관계자거래로부터 창출된 소득에 대한 이중과세 발생 가능한 과세액 조정서)

본 신청서와 같이 세무총국에 규정한 정보 및 자료를 포함한 APA서류를 제출한다.

2) 처리기한

- 상호합의 절차 및 공식적인 APA 개시 신청 후 30일 이내에 베트남 세무당국은 해당 조세조약의 상호합의 절차에 따라 외국 과세당국 담당 공무원에게 연락하여야 한다.
- 외국 과세당국으로부터 답변서를 수령한 후 15일 이내에 베트남 세무당국은 해당 납세의무자에게 결과를 통지하고 납세의무자에게 상호합의한 요건을 이행하도록 안내해야 한다.

3) 세무당국

- 조세조약에 따라 베트남 세무당국은 재무부 장관 그리고 장관의 위임을 받는 수입자이다.
- 세무당국은 양자간 APA 또는 다자간 APA 신청서류 심사 및 이행 감독하는 과정에 있어서 베트남 과세당국과 외국 과세당국 간 연락(관련 서류 송부, 수령 역할)을 담당한다.

IV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는 베트남에서 제조, 유통, 소비 과정의 재화, 용역 및 외국 법인, 개인으로부터 구입한 재화, 용역의 부가가치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이다.

1. 현행 법령

내용	문서명	발효일	만료일
부가가치세	제13/2008/QH12호 부가가치세법	2009/01/01	
	제31/2012/QH13호 개정 부가가치세법	2014/01/01	
	부가가치세법 안내에 관한 제209/2013/NĐ-CP호 정부 시행령	2014/01/01	
	부가가치세법 및 제 219/2013/NĐ-CP호 정부 시행령의 안내에 관한 제219/2013/TT-BTC호 시행규칙	2014/01/01	
	제219/2013/TT-BTC호 시행규칙 및 제39/2014/TT-BTC호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제119/2014/TT-BTC호 시행규칙	2014/09/01	
	제209/2013/NĐ-CP호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제91/2014/NĐ-CP호 정부 시행령	2014/11/15	
	제91/2014/NĐ-CP호 정부 시행령의 안내에 관한 제151/2014/TT-BTC호 시행규칙	2014/11/15	
	제219/2013/TT-BTC호 시행규칙 및 제39/2014/TT-BTC호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제26/2015/TT-BTC호 시행규칙	2015/01/01	
	제209/2013/NĐ-CP호 정부 시행령을 개정하는 제100/2016/NĐ-CP 정부 시행령	2016/07/01	
	제100/2016/NĐ-CP호 정부 시행령의 안내에 관한 제130/2016/TT-BTC호 시행규칙	2016/07/01	
계산서	계산서에 대한 제51/2010/NĐ-CP호 정부 시행령	2011/01/01	2020/10/31
	전자계산서에 관한 제32/2011/TT-BTC호 시행규칙	2011/05/01	2020/10/31
	제51/2010/NĐ-CP호 정부 시행령을 개정하는 제04/2014/NĐ-CP호 정부 시행령	2014/03/01	2020/10/31
	제51/2010/NĐ-CP호 시행령 및 제04/2014/NĐ-CP호 정부 시행령의 안내에 관한 제39/2014/TT-BTC호 시행규칙	2014/06/01	2020/10/31
	제39/2014/TT-BTC호 시행규칙 및 제26/2015/TT-BTC호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제37/2017/TT-BTC호 시행규칙	2017/06/12	2020/10/31
	전자계산서에 관한 제119/2018/NĐ-CP호 정부 시행령	2018/11/01	
	전자계산서에 관한 제68/2019/TT-BTC호 정부 시행령	2019/11/14	

2. 적용범위

적용범위는 아래와 같은 3가지 경우로 나뉜다.

- 과세대상: 해당 경우별로 0%, 5%, 10%의 부가가치세율 적용
- 비과세대상
-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비대상

가. 과세대상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은 베트남에서 제조 및 유통 또는 소비되는 재화, 용역(외국 법인, 개인으로부터 구입한 재화, 용역 포함)이며 다음에 해당되는 비과세대상을 제외한다.

나. 부가가치세 비과세대상

- 가족경영, 개인경영의 재화, 용역의 연 매출액이 1억동 이하인 경우
- 일부의 농업계 재화, 용역은 다음과 같다.
 - ✓ 재배, 채취, 판매, 수입된 미가공 혹은 1차 가공 농산, 수산, 축산물
 - ✓ 가공하지 않거나 반가공 상태의 농산, 축산, 수산물을 다른 법인 혹은 협동조합에 판매한 경우는 부가가치세 대상이 아니며, 매입부가가치세의 경우 환급을 받을 수 있다.
 - ✓ 유관기관에서 발급한 등록증을 보유한 농축산물 생산업자 혹은 중개업자가 생산하거나 거래한 농·축산물로서 정부기관이 요구하는 품질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 ✓ 농산물 수확 용역(관개, 운송, 준설)
 - ✓ NaCl(염화나트륨)이 주요 성분으로 구성된 해수, 자연소금, 가공된 식염, 요오드 첨가 식염으로 제조된 소금 제품
 - ✓ 가축, 가금, 수산물과 기타 사료
 - ✓ 농업용 기계장치, 설비
 - ✓ 원양어선, 수산업용 기계장치와 용역
- 토지 사용권 이전(양도)
- 다음에 해당하는 금융, 은행, 증권 등 용역
 - ✓ 신용용역: 대출, 유가증권에 관한 할인, 재할인, 은행 보증, 금융리스, 신용카드 발행, 채권매입, 담보물 판매, 신용정보 제공, 기타 신용용역

- ✓ 금융기관이 아닌 납세자의 대출용역
- ✓ 증권거래: 중개, 자영, 예탁, 투자자문, 기금 및 투자항목 관리, 증권발행보증과 기타 증권거래 활동
- ✓ 자본양도: 다른 법인에게 양도한 경우 포함하여 기투자한 자금의 일부 또는 전부의 양도, 증권양도 그리고 법에 따른 기타 자본 양도 형식
- ✓ 채무양도
- ✓ 외환거래
- ✓ 파생금융상품거래: 금리 스와프, 선도계약, 선물계약, 외화매매 선택권 및 기타 파생 금융상품
- ✓ 금융기관의 불량채권 처리부문의 해당 대출금에 대한 담보물 판매
- 보험용역: 인간에 대한 보험, 농업보험, 어업용 기계장치 보험, 재가입 보험
- 일부 의료 재화용역
 - ✓ 인간에 대한 의료용역: 진단, 진료, 예방, 재활, 간호용역, 재활치료; 환자이송, 병실과 병실의 침대 대여
 - ✓ 수의용역: 진단, 진료, 예방
 - ✓ 노약자와 장애인 요양용역: 의료간호, 영양, 문화, 운동, 오락, 물리치료, 재활
 - ✓ 신체기능 대체용품
 - ✓ 목발, 휠체어, 장애인을 위한 장치
- 공공 우편, 통신용역, 해외에서 베트남에 제공되는 우편, 통신용역
- 교육용역: 직업훈련, 강의, 전문지식, 문화지식 양성 등
- 국가예산으로 방영된 방송과 라디오
- 신문, 잡지, 전문책, 교과서의 수입, 출판, 발행
- 버스, 전차, 전철 등 대중 고객 운송
- 국내에서 제조할 수 없어 수입된 내수 재화 대상은 다음과 같다.
 - ✓ 연구, 개발을 위한 기계장치, 자재
 - ✓ 원유, 가스 탐사, 개발을 위한 기계장치, 자재
 - ✓ 항공기, 석유 굴착장치, 조선
- 인도적 원조, 무상원조 지원 용도의 수입품과 법인, 개인에게 판매된 재화, 용역
- 국경통과 재화, 임시적 수입 재수출 재화, 임시적 수출 재수입 재화, 외국(지역)과 비관세 지역간의 거래 재화, 용역 또는 비관세 지역들 간의 거래 대상인 재화, 용역

- 기술이전 및 지적재산권 양도
- 수입된 미가공 금괴(바)와 금조각
- 미가공된 수출 자원, 광물 혹은 다른 제품으로 가공되나 해당 자원·광물의 가치와 에너지 용역의 합계가 제품 가치의 51% 이상 차지한 경우
- 용도 변경의 경우를 제외하여 면세점에서 판매된 면세 재화

다.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의무가 없는 경우

- 보상금, 상금, 보조금, 배출권 양도금 및 기타소득
 - ✓ 재화, 용역으로 배당한 경우 배상자는 재화, 용역 판매 형식과 동일하게 해당 부가가치세에 관한 계산서 작성 그리고 신고·계산·납부를 하며 배상 수령자는 규정에 따른 신고와 공제를 한다.
 - ✓ 수리·보수·광고와 같은 용역을 유상으로 법인·개인에게 공급하는 경우 규정에 따른 세금신고와 납부를 한다.
- 고정 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과 베트남의 거주자가 아닌 외국개인이 베트남 영토 밖에서 공급하여 진행하는 기계장치, 설비, 부품의 수리, 광고, 홍보, 투자와 무역촉진, 해외 재화, 용역의 중개무역, 교육, 국제우편, 통신 등의 용역
- 부가가치세 납세자가 아닌 법인, 개인이 비사업 목적으로 판매한 자산
-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재화, 용역의 제조와 경영을 위한 투자사업 양도
- 미가공되거나 1차 가공된 재배 농산물 및 수산물 판매
- 아래 조건을 만족하는 자산의 양도
 - ✓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사업에 사용 중인 감가상각 대상 자산의 관계회사 혹은 모회사와 자회사간의 이동
 - ✓ 한 법인의 별도로 회계처리 하지 않는 지점 간의 자산 이동
 - ✓ 분할, 합병, 통합, 법인유형 변경에 따른 자산 이동
- 법인 설립을 위한 현물 자본 투자
- 보험활동 중 제3자로부터 수령하는 금액
- 재화, 용역 판매와 관계없는 대지급금
- 수출 후 해외에서 반품된 재화를 수입하는 경우
- 우편, 통신, 복권, 항공권, 승차권, 승선권의 판매용역, 국제운송대리점, 항공, 해양용역 대리점, 보험판매 대리점과 포함된 용역 대리점의 활동으로 수령된 재화, 용역의 매출과

수수료

- 재화, 용역 판매 대리점의 활동으로 수령된 재화, 용역 매출과 수수료

3. 납세의무자(납세자)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는 다음과 같다.

-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재화, 용역을 생산/판매하는 법인, 개인
-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재화를 수입한 법인, 개인

구체적으로는

- 기업법, 합동법인법, 그리고 기타 사업자법에 따라 설립되어 등록된 사업자
- 외국인 투자법인 또는 외국인 투자자, 외국 투자 당사자가 경영에 참여하는 법인, 베트남에서 법인을 설립하지 않고 영업 활동 중인 외국법인, 개인
- 생산, 거래, 소득 활동 중인 개인, 가족 경영과 기타 대상
- 베트남에 고정사업장 없는 외국법인 혹은 베트남 거주자가 아닌 외국인으로부터 용역을 구매한 베트남 법인, 개인
- 재화 매매 또는 베트남에서 재화 매매와 직접 관련된 활동을 위하여 설립된 수출가공법인의 지사

4. 부가가치세 산출 시기

구분	부가가치세 산출 시점
재화판매	대가 지급 여부 상관없이 구매자에게 해당 재화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 이전 시점
수입재화	세관신고서 등록 시점
용역 제공	대가 지급 여부 상관없이 용역 제공 완료 시 또는 용역 제공 계산서 작성 시점
부동산 경영, 인프라 구축, 판매용, 임대용, 양도용 주택의 구축	계약서상 사업 진행률 또는 지급 계약에 따른 대금수취 시점
건설, 설치(선박 건조 포함)	대가 지급 여부 상관없이 완공된 건축물, 공사의 항목, 건축량, 완료된 조립의 검수와 인수인계 시점
통신용역	계약에 따라 통신용역 요금 청구시(요금 발생 월부터 최대 2개월 이내)
전력, 수도 공급	계산서 작성을 위한 계량기상 전기·수도의 소비량(지수) 확인일자

5.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세금 산출 기준

부가가치세 금액은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하여 산출한다.

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과세표준은 베트남동으로 계산한다. 외화로 된 매출액의 경우 해당 매출 발생 시점의 상업은행 매입 기준율에 따라 베트남동으로 환산한다.

구분	과세표준
생산자가 판매한 재화 및 용역	특별소비세 및 환경보호세가 포함되고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
수입 재화	특별소비세, 환경보호세 및 수입관세를 포함한 수입 가격(면세, 감세 금액 반영)
증여 또는 현물지급하는 재화 및 용역	해당 시점의 유사한 종류의 재화 및 용역의 과세가격
내부적인 소비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생산, 운영을 위해 내부적으로 사용하는 재화 • 반환, 임대 등의 방식으로 수출된 재화, 기계장치 등 •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생산 또는 판매를 위해 자체 제작한 유형자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가가치세 신고, 납부 의무가 없고 계산서를 작성하지 않음 • 유형자산 매입세액은 규정에 따라 공제
판촉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무상 샘플 제공 • 할인된 가격으로 재화 및 용역 공급 • 쿠폰과 같이 재화 및 용역 공급 	관련 법률 규정에 따른 경우 과세대상이 아님. 그렇지 않은 경우 증여, 현물지급을 위한 재화 및 용역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부가가치세를 신고, 납부해야 함.
자산 임대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기간에 따른 임대료 또는 선급한 임대료
할부지급 또는 연체계산 대상인 재화	할부지급으로 인한 이자를 포함한(일시 구매) 판매가
재화 임가공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계약서에 따른 임가공 가격(가공 비용 포함)
건물, 구축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원재료를 포함한 건설: 원재료 가격을 포함한 건물, 구축물 가격 • 원재료 또는 기계장치를 미포함한 건설: 원재료 및 기계장치 가격을 제외한 건설·구축물 가격 • 완공 구조물/진행물에 따라 지급된 경우: 인수인계 대상 구조물/진행물에 따른 건물, 구축물 가격
부동산 양도	부동산 양도 가격 (-) 공제된 토지 가격 아래와 같은 경우의 공제대상인 토지 가격 계산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가는 판매용 주택 건축 및 인프라 투자를 위해 토지를 임대하거나 양도할 경우: 관련 규정에 따른 토지 사용/임대비와 토지수용 또는 배상에 드는 비용(면제·감소대상 토지 사용/임대비 제외) • 국가의 토지 사용권 경매: 낙찰 토지 가격 • 개인의 토지 사용권 양수: 토지 사용권 양수 시 인프라 가치(있는 경우)

구분	과세표준
	<p>를 포함한 토지 가격. 위의 토지 가격을 계산하지 못하면 양수계약을 체결할 때 중앙직할 인민위원회에 의해 규정된 토지 가격을 사용할 수 있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토지 사용권 가치로 지급에 의한 청사이전(BT - building transfer)방법: BT계약을 체결 시점의 가격. BT계약을 체결 시점에 해당 가격을 계산하지 못하는 경우 법규에 따라 성지방의 인민위원회에 의해 결정된(해당 공사 결제) 가격을 사용할 수 있다. • 양수도계약서에 따라 농지사용권을 양수하여 관할기관의 승인을 받은 후 용도변경을 하여 판매용 주택지로 한 경우: 양수목적물인 농지 가격 및 기타 비용 • 판매용 고층 건물, 아파트 건설: m² 기준 토지 가격 계산방법: 공용면적을 제외한 전용면적에 따라 계산
재화 및 용역의 거래 중개·대리 또는 수출입에 대한 위탁에서 발생한 커미션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지 않은 해당 활동으로 인한 커미션
베트남에 거주하지 않고 외국에 있는 자 또는 베트남에 고정사업장이 없는 외국기관으로부터 상품을 구매한 베트남 사업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지 않은 계약서상 지급대가
매출 할인	<p>매출 할인된 판매가 재화 및 용역에 대한 매출량에 따른 할인: 판매된 재화와 용역의 할인 금액에 따라 산출되며, 최종 지불 또는 다음 단계/분기의 물품 구입 계산서에 의해 조정된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할인 행사 종료 후의 할인: 각종 계산서 명단 및 세금계산서 명세서와 해당 조정 내용(가격, 세금 등)을 작성
재화 및 용역의 대가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경우	$\text{과세대상금액} = \frac{\text{재화 및 용역의 대가}}{1 + \text{부가가치세율}}$

위의 재화 및 용역에 대한 과세대상 금액은 기업이 누릴 수 있는 추가 요금이나 부가금액 등을 포함한다.

나. 세율

부가가치세율은 3가지로 나뉜다. 0%, 5% 및 10%.

부가가치세율이 다른 재화 및 용역은 각 재화 및 용역별로 세율에 따라 구분 신고해야 한다. 각종 세율에 따라 구분하여 신고하지 않을 경우 최고 세율에 따라 납부해야 한다.

1) 영세율(0%)

영세율 적용 대상

• 수출 재화 및 용역

	수출 재화	수출 용역
내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외국에 수출된 물품(수출 위탁 포함) • 비관세 지역(자유무역지역 등)에 판매한 물품 • 면세점에 납품하는 물품 • 베트남을 벗어난 지역으로 운송되어 판매된 물품 • 외국의 기계장치 보수를 위한 부품/물자 • 수출의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임가공품 및 외국업체와의 매매 대리 운영이나 임가공 ✓ 현장수출(on-spot export) 대상 물품 ✓ 외국에서 열리는 전시회에 판매된 수출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베트남 외에 외국에서 소비하는 단체에게 직접 제공하는 서비스 • 비관세지역에 있는 개인, 단체 또는 비관세지역에서 소비하는 개인, 단체 등에게 직접 제공하는 서비스 <p>해당 용역제공 시 외국에 있는 개인이란 베트남에 거주하지 않는 외국인, 외국에 정착한 베트남 인, 베트남 외에 있는 개인이다.</p> <p>베트남 납세자 간에 이루어진 계약으로 베트남 국내 및 해외에서 동시에 제공된 서비스의 경우 해외에서 제공된 서비스에만 0%의 세율이 적용된다. 단, 수입품에 대한 보험서비스의 경우 전체 거래에 0% 세율이 적용된다.</p> <p>계약서에 베트남 국내에서 제공되는 서비스 대가에 대해 별도로 기재되지 않은 경우, 과세대상 금액은 베트남 국내에서 발생한 비용 비율(%)에 따라 계산한다.</p>
적용 조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출품가공계약서, 수출품판매계약서, 수출위탁계약서 • 은행을 통한 수출품에 대한 지급 증명서 또는 기타 법규에 따른 증명서 • 세관신고서(전자수단으로 서비스, 소프트웨어 수출 경우, 외국 또는 비관세 지역에 있는 건설·건설 경우, 수출가공기업의 전기·수도·사무용품·일상 생활용품 제공 기업 경우 제외) • 베트남 외에 있는 인수인계장소를 포함한 판매 대상물품 경우: 판매자는 외국에 있는 구매자와 체결한 물품구매계약서, 구매자와 체결한 물품 판매계약서 등 베트남 외에 있는 해당 물품 인수인계 증명서&국제관례에 따른 인보이스송장, 패키지증명서, 원산지증명서 등 베트남 외에 있는 인수인계대상 물품증명서&기업이 외국에 있는 판매자에게 지급함을 증명하는 은행의 증명서, 구매자가 기업에게 지급함을 증명하는 은행의 증명서 등 은행을 통한 지급증명서를 마련해야 한다. 	<p>베트남 납세자인 용역 제공 기업은 해당 서비스에 대해 베트남 외에서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증명서를 마련해야 한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외국 또는 비관세 지역에 있는 개인과 서비스 공급계약 체결 • 은행을 통한 수출대상서비스비용 지급을 증명하는 증명서 또는 기타 법규에 따른 증명서

- 베트남에서 외국으로, 외국에서 베트남으로, 또는 출발지와 도착지가 모두 외국소재인 국제화물운송·여객운송 서비스(운송수단 유무 상관없음). 국제운송계약에 국내의 운송 계약이 포함된 경우 해당 국내 운송은 국제 운송에 포함된다.
- 외국기관에 직접 또는 대리로 공급한 항공, 해운 서비스, 외국 개인·단체에 제공한 항공, 해운 수리서비스
 - ✓ 항공: 기내식 공급서비스, 항공기 이·착륙서비스, 공항 서비스, 비행기보안 서비스, 여객, 수하물, 물품에 대한 보안서비스, 공항 터미널에 있는 수하물 컨베이어 벨트 서비스, 지상기술 서비스, 항공기보호 서비스, 항공기 밀고 당기는 서비스, 항공기 유도 서비스, 항공기 이동식 경사로 임대서비스, 항공기의 운항서비스, 항공기 승무원과 승객 운송서비스, 화물 적재/기록 서비스, 베트남 공항에서 외국으로 가는 여객을 위한 서비스(passenger service charges).
 - ✓ 해운: 예인서비스, 수로안내서비스(항해사서비스), 구조서비스, 선창, 부두, 적재, 하역서비스, 화물창(배의 짐칸) 청소, 기록 및 인수인계, 등록서비스
 - ✓ 외국 개인·단체를 위한 선박, 항공기 수리, 보수서비스: 0% 세율을 받기 위해서는 위와 같은 계약서 및 증명서에 대한 조건 이외에 항공기, 선박은 베트남으로 들어올 때 수입 절차를 통과해야 하며, 수리한 후 수출 절차를 수행해야 한다.
- 외국이나 비관세 지역에 있는 시설 건설, 건립
- 수출 시 부가가치세 비과세대상인 재화 및 용역(0% 세율을 적용받지 못하는 경우 제외)
- 외국인 개인, 단체를 위한 선박, 항공기 수리, 보수서비스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

- 해외로의 재보험 이전
- 해외로의 기술이전, 지적재산권 양도
- 자본이전
- 해외 증권투자, 파생금융상품, 신용 발급
- 해외 또는 비관세 지역으로 발송하는 통신, 우편 서비스
- 수입된 후 수출 되는 주류, 담배(매입부가가치세 공제대상 아님)
- 비관세 지역에 있는 개인, 단체 등에 공급된 재화 및 용역
 - ✓ 사업자의 자동차에 판매되는 휘발유, 석유
 - ✓ 개인, 단체에 판매된 자동차

- ✓ 주택, 사무실, 호텔, 창고 등 임대서비스, 노동자이송서비스, 식음료서비스(비관세 지역에 있는 식음료서비스, 급식전문서비스 제외)
- 베트남에 있는 외국인 개인, 단체에 공급된 서비스
 - ✓ 운동경기, 문화, 오락서비스, 예술 공연, 회의, 호텔, 교육, 광고, 여행사
 - ✓ 인터넷 결제
 - ✓ 베트남에 있는 물품 판매, 소비와 관련된 서비스

2) 5% 세율

- 생수, 물통 및 기타 음료수를 제외한 생산 및 일상생활을 위한 정수 처리된 물
- 아래와 같은 산업에 속하는 재화와 용역
 - ✓ 비료 생산용 광석: 병충해 방제약 및 동물, 식물을 위한 성장 자극제
 - ✓ 상업목적으로 기업이나 협동조합에 판매된 미가공 혹은 1차 가공된 농축산, 수산물
 - ✓ 농업 생산을 위한 호수, 연못, 운하, 도랑에 대한 토목공사, 준설사업
 - ✓ 반처리된 고무 라텍스, 전처리된 테레빈유, 후릿그물의 네트
 - ✓ 신선 식품 및 가공되지 않은 산림작물
- 당류 및 당료작물
- 모로헤이아, 등나무, 대나무, 왕대속, 티시놀라에나 라티폴리아 등 주재료로 가공되는 상품
- 의료기기, 여러 가지 전용의료 용품
- 교육 도구, 여러 종류의 책과 유인물
- 문화, 전시, 체육에 관련된 활동, 예술 공연, 영화 제작; 영화 수입, 상영, 취급
- 아동완구품
- 연구와 개발을 위한 과학 기술 서비스
- 사회 주택 매매, 임대

3) 10% 세율

10% 세율은 부가가치세가 부과되는 일반 재화와 용역에 적용되며, 0% 세율과 5% 세율 과세대상을 제외한다.

6. 부가가치세액의 산정 방법

납세의무자는 아래의 2가지 산정, 신고, 납세 방식 중 하나의 방식을 따른다.

- 세액공제법
- 직접법

가. 세액공제법

세액공제법의 경우 납세자는 법률 규정에 따라 회계제도, 계산서와 관련 증빙 서류 등을 기초로 매출부가가치세(output sales tax)와 공제되는 매입부가가치세(input VAT)에 근거하여 납부해야 할 부가가치세액을 산정한다.

1) 적용 대상

-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매출이 연간 10억동 이상인 사업자
- 세액공제법 사용을 자진 등록한 사업자
 - ✓ 회계제도, 세금계산서와 관련 증빙 서류 등을 충분히 이행하고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연간 매출이 10억동 미만인 법인
 - ✓ 신설법인
 - ✓ 도급업자, 하도급업자 계약에 따라 베트남에서 활동하는 외국 단체와 개인

2) 부가가치세액 산출 방법

부가가치세액 = 매출부가가치세액(output sales tax) - 매입부가가치세액(input VAT)

- 부가가치세 = 과세금액 (×) 부가가치 세율
- 매출부가가치세(output sales tax) = 사업자의 세금계산서에서 표시하는 재화와 용역의 총부가가치세액
- 매입세액(input VAT) = 부가가치세가 부과되는 생산, 경영 활동을 위해 구입한 재화와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총금액

3) 매입부가가치세 공제 원칙

구분	매입부가가치세 공제
<p>재화와 용역의 매입부가가치세는 아래와 같은 목적으로 사용된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가가치세(0%, 5%, 10%)가 부과되는 재화와 용역의 생산, 영업 • 부가가치세 신고와 납세 의무 대상이 아닌 재화와 용역의 생산, 영업 	<p>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매입부가가치세가 공제된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재화의 손실과 관련하여 배상 불가능하다는 사실에 관한 증거자료를 충분히 갖춘 경우 • 운송 과정에서 물리, 화학적 성질 때문에 일반적인 수준을 초과하는 휘발유, 석유의 손실이 있는 경우 • 노동자의 복지를 위한 고정자산(식당, 휴게실, 탈의실, 주차장, 화장실, 물탱크, 의료센터) • 베트남에 업무상 목적으로 방문하는 외국기업의 외국인 전문가를 위한 주택 임대료. 외국인 전문가가 매니저 직급으로 베트남에 있는 기업으로부터 급여를 받고, 베트남에 있는 사업자와 노동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주택 임대료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공제되지 않는다. • 고정자산의 가치가 16억동 이하인 9인승 이하 차량에 대한 매입부가가치세(운송 사업, 여행, 호텔업, 자동차업에서 시범 운행용으로 사용되는 차량 제외) • 적법한 세금계산서에 따라 신규 취득한 토지를 포함한 고정자산의 매입부가가치세 • 회사 설립 전 대가 지급의 권한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의 명의로 발행된 세금계산서 상 부가가치세 금액: 회사는 2천만동 이상의 거래의 경우 위임받은 개인이나 단체에 은행을 통해 지급한다.
<p>부가가치세 비과세대상의 재화·용역 매입 부가가치세</p>	<p>매입부가가치세가 공제되지 않음</p>
<p>부가가치세 과세대상 및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 아닌 재화와 용역을 위한 생산·경영에 동시에 사용되는 재화와 용역(고정자산을 포함)의 매입부가가치세</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재화와 용역의 생산 및 경영에 사용되는 재화와 용역의 매입부가가치세만 공제될 수 있다. • 공제가능한 매입부가가치세는 공제가 불가능한 부가가치세와 별도로 구분 관리되어야 한다. 그렇지 않을 경우 공제대상 매입부가가치세 금액은 전체 매출액에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매출액이 차지하는 비율에 따라 계산된다. • 납세의무자는 매월/매분기 공제 예정 매입세액을 계산한 후 정산하고, 연말에 월/분기에 임시로 공제된 매입세액을 확정하기 위해 해당 연도에 공제되는 매입부가가치세를 재계산한다.
<p>고정자산, 기계, 설비를 구입하거나 대여 받을 때의 매입부가가치세; 또는 고정자산, 기계, 설비 정비, 수리할 때의 매입부가가치세, 해당 용도는 아래와 같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방보안을 위한 무기와 전투 장비 생산 전용 고정자산 • 금융기관, 재보험사, 생명보험 업체, 증권업체, 의료기관, 교육기관, 사람 수송 목적이 아닌 민간기와 유람선 경영, 관광·호텔 경영 기업들의 고정자산, 기계, 설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정자산에 대한 매입부가가치세가 공제되지 않는 경우 법인세법 상 고정자산 감가상각비 계산 시 취득원가에 반영하거나 비용으로 반영할 수 있다.

- 당기에 발생한 매입부가가치세는 차기에 납부해야 할 세액에 대한 공제액을 산정할 때 신고하여 공제받을 수 있다.
- 공제되지 아니하는 매입부가가치세는 법인세를 산정할 때 비용 처리되거나 고정자산의 원가로 처리된다.

4) 매입부가가치세 공제 조건

구분	보조 증빙 서류
매입부가가치세 공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매입 재화와 용역의 합법적 세금계산서나 수입 단계의 부가가치세 납세 서류, 또는 외국인계약자 대신 부가가치세 납부한 것에 대한 증빙 서류 • 2천만동 이상인 재화와 용역을 매입 시 현금 외 방식으로 대금을 지급하였다는 증빙 서류(수입 재화 또는 받은 선물의 경우 제외)
수출 재화와 용역의 매입부가가치세 공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출 재화 판매, 임가공 계약서, 용역 제공 계약서, 수출 위탁 계약 문서와 계약서 • 상업송장 • 세관신고서 • 은행을 통한 수출 재화 결제 혹은 재화 교환, 매출채권의 차감 관련 증빙 및 기타 관련 증빙
임가공 물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출 가공 계약서, 세금계산서 • 임가공상품 인계서 • 은행을 통한 결제 증거서류
현지 수출 상품 (on spot export)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매매계약서 혹은 가공계약서 • 세금계산서 혹은 상업송장 • 현지 수출 세관신고서 • 외화전환이 가능한 은행 결제 관련 증빙서류
해외 건설사업 시행을 위한 수출 재화, 물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세관신고서 • 해외 건설 사업을 진행하는 베트남 기업의 대표가 승인하는 해외 건설사업을 진행하기 위해 수출되는 재화 목록 • 수출 위탁 경우에 수출 위탁 계약서
해외 건설사업을 시행하는 베트남 기업에 판매하는 재화, 물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외 건설사업을 진행하는 베트남 기업과 국내 공급자 간에 체결된 매매 계약서 • 수출 위탁 경우에 위탁 계약서 • 세금계산서 • 세관신고서 • 해외 건설 사업을 진행하는 베트남 기업의 대표가 승인하는 해외 건설사업을 진행하기 위해 수출되는 재화 목록 • 은행을 통한 결제 증빙서류

나. 직접법

납부해야 할 부가가치세액은 재화, 용역을 제공으로 인한 매출액에 해당 부가가치세율을 적용하여 산출된다.

1) 적용 대상

- 신설기업 및 협동조합 또는 연간 매출액이 10억동 이하의 기업, 협동조합(세액공제법을 자진 신청하는 경우 제외)
- 금, 은, 보석류를 거래하는 사업자
- 베트남에서 투자법에 근거하지 않고 영업을 하는 해외기업 혹은 회계나 세금계산서 발행 규정을 위반한 경우(석유 탐사, 시굴, 개발 및 굴착 활동을 위한 상품 및 서비스를 제공한 경우 제외)
- 기업이나 협동조합이 아닌 기타 경제조직(세액공제법을 따라 납세 신청하는 경우 제외)

2) 부가가치세의 계산방법

부가가치세액 = 과세매출액 × 부가가치세율

3) 부가가치세율

업종	부가가치세율
상품 유통 및 공급	1%
원재료를 제외한 건설서비스	5%
건축자재를 포함한 건축 및 제품과 관련된 생산, 운송, 서비스	3%
기타 경영 활동	2%

4) 과세매출

- 과세매출액이란 세금계산서에 적힌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재화와 용역의 총판매액이며 추징금, 추가 요금 등을 포함한다.
-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닌 재화와 용역의 매출 및 수출 재화와 용역의 매출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매출에 대해 매출액 비율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각기 다른 부가가치세율을 적용받는 다수의 업종을 영위하는 경우 각 부가가치세율을 업종별로 구분관리해야 한다.

업종별로 매출액 산정이 불가능하거나 한 계약서에 포함된 서로 다른 세율을 적용받는 활동을 구분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업종 중 최고세율을 적용한다.

7. 부가가치세 환급

가. 세액공제법으로 납세한 투자사업에 부가가치세 환급

다음과 같은 경우는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지 못하며 미공제된 금액은 차기로 이월된다.

- 법 규정에 따라 등록된 자본금을 충분히 출자하지 않은 사업
- 조건부 투자업은 규정에 따라 사업 조건을 충분히 충족하지 않거나 활동 과정 중에 사업 조건 유지를 보증할 수 없는 사업
- 2016년 7월 1일부터 허가받은 광물자원 개발사업 또는 제조 투자 중 광물자원 및 에너지 비용이 전체의 51% 이상 차지한 사업

기업의 투자 사업은 세액공제법에 따른 부가가치세 납세대상이며 위에 명기한 경우가 아니면 부가가치세 환급은 다음과 같이 요약될 수 있다.

구 분	환급 조건
신규 투자 사업	투자사업으로써 신규 설립된 기업이 영업 활동 전에 아래의 2가지 조건을 충족하면 투자기간에 발생하는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을 수 있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투자를 위해 매입된 상품 및 용역의 부가가치세액이 누적액이 3억동 이상인 경우 • 투자 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
	기업은 영업 활동 중이며, 본사가 위치한 도시/성지방 이외에 있는 중앙 직속시에서 새로운 사업(매각을 위한 주택 건설 투자 사업 제외)을 갖고 있으며 본격적인 사업 활동 전 투자 기간 중으로 사업 등록 및 조세 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 새로운 사업에서 발생한 매입세액은 본사가 납부해야 할 부가가치세 금액과 상계된다. 상계 후 투자를 위한 매입 재화·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금액이 3억동 이상인 경우 투자 사업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을 수 있다.
	기업은 영업 활동 중이며, 본사가 위치한 도시/성지방에 있는 지방 현지에서 새로운 사업(매각을 위한 주택 건설 투자 사업 제외)을 갖고 있으며, 본격적인 사업 활동 전 투자 기간 중으로, 사업 등록 및 조세 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130/2016/TT-BTC호 시행규칙에 따르면, 기업은 투자 사업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를 별도로 하고, 투자사업의 매입세액은 이월하여 추진 중인 생산·영업활동에서 발생한 매출 부가가치세와 상계한다. 상계 후 투자사업의 미공제 매입세액이 3억동 이상인 경우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을 수 있다. 그러나 법과 시행규칙에는 위와 같은 경우의 부가가치세 환급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없음

구 분	환급 조건
	따라서 위와 같은 경우 부가가치세 환급과 관련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세무당국의 명확한 지침이 아직 없는 상황임
확장 투자사업	기업은 영업활동 중이며, 본사가 위치한 도시/성 지방 이외에 있는 지방에서 새로운 사업을 영위하며, 투자 기간 중으로 시행규칙에서 정해진 바에 따라 공제받지 못한 매입부가가치세액이 3억동 이상인 경우 부가가치세가 환급된다. 그러나 법과 시행규칙에는 위와 같은 경우의 부가가치세 환급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없음. 따라서 위와 같은 경우 부가가치세 환급과 관련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세무당국의 명확한 지침이 아직 없는 상황임

나. 수출 재화 및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

- 월/분기 내에 수출 재화와 용역이 있는 자 또는 수입품 비관세 지역이나 해외로 수출되며 미공제 매입세액이 3억동 이상인 경우 월별, 분기별로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을 수 있다. 한 달 또는 당기에 미공제 매입세액이 3억동 이하인 경우 익월 혹은 차기에 공제를 받을 수 있다.
- 월/분기 내에 수출 품목 및 서비스가 있으며 동시에 국내에서 판매된 상품 및 서비스가 있는 경우 수출 품목 및 서비스 운영 생산에 사용하는 매입세액을 별도 정산해야 한다. 별도로 정산할 수 없는 경우 수출 상품 및 서비스의 매입세액은 전기 부가가치세 신고 시점부터 현재 부가가치세 신고 시점까지 기간 동안 매출액에서 수출 상품 및 서비스가 차지하는 비율을 적용하여 산출한다.
- 수출 상품 및 서비스의 매입부가가치세(별도로 정산한 매입 부가가치세 및 위에 언급한 매출액 비율로 배분된 매입세액 포함)는 국내에서 소비되는 재화와 용역에 대한 매출 부가가치세와 상계 후 금액이 3억동 이상인 경우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다. 수출 상품 및 서비스에서 환급 가능한 매입부가가치세는 수출 상품 및 서비스 매출액의 10%를 초과할 수 없다.
- 수출 상품 및 서비스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 대상은 다음과 같다.
 - 수출 위탁: 수출 위탁품을 소유한 업자일 경우
 - 임가공: 해외 기업과 계약을 맺은 중계 가공업자일 경우
 - 해외 건설 작업을 위한 수출 상품: 해외 건설 작업을 위한 수출 상품 및 자재를 생산하는 업자
 - 현장 수출(on spot export) 상품: 현장 수출 상품을 가진 업자
- 수입 후 재수출 시 관세법 규정에 따라 해당 세관에 수출을 신고하지 않는 경우 세금 환급을 받을 수 없다.

다. 분할, 합병, 해산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

세액공제법으로 부가가치세를 납부하며 소유자 전환, 기업 전환, 합병, 분할, 해산, 청산 등이 일어난 경우 부가가치세를 과다 납부하거나 매입세액 미공제액이 있으면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을 수 있다.

라. 공적개발원조, 무상원조, 인도적 원조로 이행된 프로그램/사업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

- 사업, 프로그램 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외국 후원자가 지정한 사업주 또는 주계약자, 조직이 프로그램 또는 사업을 위해 베트남에서 구입한 상품 및 서비스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을 수 있다.
- 베트남에서 진행되는 사업, 프로그램을 위한 상품 및 서비스를 외국 단체 및 개인의 무상원조, 인도적 원조로 구입하는 경우 해당 상품 및 서비스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을 수 있다.

마. 기타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을 수 있는 경우

- 외교관 면책특권 규정에 따라 외교관 면책특권을 누리는 대상이 베트남에서 상품 및 서비스를 구매하는 경우 부가가치 세금계산서 또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계산 전표에 적힌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을 수 있다.
- 해외 여권 또는 입국 서류를 가진 외국인 및 외국에 거주하는 베트남 사람은 출국 시 베트남에서 구입한 상품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을 수 있다.
- 법률에 따라 해당 국가기관의 세금 환급 결정을 받는 자 또는 베트남이 회원국인 국제 조약에 의해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을 수 있는 경우

8. 세금계산서(e-invoice)

법인 또는 사업자가 2018년 11월 1일 이전에 출력하거나 지정인쇄소를 통해 구입한 종이 세금계산서는 계속해서 사용할 수 있다.

현행 규정에 따르면 기업과 경제단체들은 2020년 11월 1일부터 법령에 따라 전자세금계산서를 사용해야 한다. 그러나, 2020년 2월 재무부는 종이세금계산서에서 전자세금계산서로의 전환 기간을 연장하는 새로운 시행령 초안을 준비 중이다. 이 초안에 따르면 기업과 경제

단체들은 2022년 7월 1일부터 전자세금계산서 사용이 의무화된다.

아래의 표는 종이세금계산서 또는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사용 및 보관에 관한 유의사항들을 기술하고 있다.

	종이세금계산서	전자세금계산서
세금계산서 발행	<p>종이세금계산서 발행원칙</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재화 또는 용역을 판매, 공급 시 판매자가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야 한다. •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내용은 실제 발생거래와 일치해야 한다. 내용의 일부를 삭제하거나 수정해서는 안 되며 수정 불가능한 동일한 색상의 잉크를 사용하여야 하고 적색 잉크는 사용 할 수 없다. 숫자 및 문자는 연속적으로 기록되어야 하며 기 인쇄된 부분에 수기로 기입할 수 없다. 공백이 있을 경우 X 표시를 하여야 한다. • 세금계산서는 연속적인 번호를 가지고 낮은 번호부터 순서대로 발행되어야 한다. <p>세금계산서 발행이 요구되지 않는 경우 1회 20만동 이하의 재화와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구매자가 요청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세금계산서 발행을 하지 않아도 된다. 일별로 이러한 재화와 용역 공급 합계액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이 경우 구매자 성명, 주소란에는 세금계산서 없는 판매라고 기재한다.</p>	<p>전자세금계산서 발행원칙</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재화 또는 용역을 판매, 공급 시 금액과 관계없이 판매자는 세무당국의 규정에 따라 표준양식으로 세무당국 인증코드가 포함되거나 혹은 포함되지 않은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야 한다. • 판매자가 전자계산포스를 사용하는 경우 전자계산서를 세무당국에 전송가능하도록 등록하여 발행할 수 있다. • 세무당국의 전산망에 전송된 세금계산서는 다음의 원칙에 따른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세무당국 전산망에 자료 전송이 가능한 전자계산포스에서 발행되었는지 확인 ✓ 전자서명 불필요 ✓ 납세의무 확정을 위한 계산서 또는 증빙서류를 충분히 구비해야 함
세금계산서 종류	<p>종이세금계산서는 다음 종류가 있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세액공제법을 적용받는 업자가 다음의 거래 시 발행하는 세금계산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내수 시장에서 재화 또는 용역 판매 및 공급 ✓ 국제운송 ✓ 보세구역으로의 수출 또는 일반수출 • 세금계산서 적용 대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내수 시장에서 재화와 용역을 판매 또는 제공하거나 보세구역으로 수출시 부가가치세를 신고, 납부의무를 가지는 법인 또는 개인 ✓ 보세구역에서 활동하는 법인 또는 개인이 내륙 또는 타 보세구역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판매, 공급하는 경우 • 기타 계산서 종류: 티켓, 전표, 카드, 보험료고지 등 • 국제관례 및 관련 규정에 따라 작성된 항공운송비, 국제운송비, 은행수수료 등의 전표 	<p>전자세금계산서는 다음 종류가 있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세액공제법을 적용받는 업자가 발행하는 세금계산서(세무당국의 전산망에 정보전송이 가능한 계산포스에서 작성된 계산서 포함) • 직접법에 따라 세금을 납부 등록하는 업자가 발행하는 세금계산서(세무당국의 전산망에 정보전송이 가능한 계산포스에서 작성된 계산서 포함) • 기타 계산서 종류: 전자티켓, 전표, 전자카드, 출고증명서 및 전자송장 등

	종이세금계산서	전자세금계산서
		(*) 전자세금계산서는 세무당국으로부터 인증코드를 부여받아 사용하는 경우와 인증코드를 부여받지 않고 사용하는 경우로 나누어진다.
세금계산서의 필수 기재 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세금계산서명 • 세금계산서의 종류 및 분별 기호 • 시트명 • 세금계산서의 일련번호 • 판매자명, 주소, tax code • 구매자명, 주소, tax code • 재화 또는 용역명, 단위, 수량 및 단가, 부가가치세 별도 가격, 공급가액, 부가가치세율, 총부가가치세액,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총공급가액 등을 숫자와 글자로 병행 기재 • 판매자 및 구매자 서명, 판매자 인감(해당하는 경우) 및 발행일자 • 지정인쇄소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세금계산서명 • 세금계산서의 종류 및 분별 기호 • 세금계산서 일련번호 • 판매자명, 주소, tax code • 구매자명, 주소, tax code • 재화 또는 용역명, 단위, 수량 및 단가, 부가가치세 별도 가격, 세율 별 공급가액, 부가가치세율, 총부가가치세액,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총공급가액 등을 숫자와 글자로 병행 기재 • 판매자의 전자서명 • 구매자의 전자서명(해당하는 경우) • 세금계산서 발행일자 • 세무당국으로부터 인증코드를 부여받아 사용하는 경우 해당 인증코드 • 기타 징수항목 또는 기타 관련 내용(해당 경우)
세금계산서 작성 시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재화 판매: 대가 지불 여부에 관계없이 재화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구매자에게 이전하는 날 • 용역 제공: 대가 지불 여부 관계없이 용역 제공을 완료한 날. 선금 또는 용역 제공 중 대가 지급이 이루어진 경우: 대가 지급이 이루어진 날 • 생활 전기, 수도, 방송통신 등의 용역 제공 시: 전월 소비량 기록일로부터 7일 이내 혹은 방송통신 서비스 제공 완료일. 용역의 공급 주기는 운송·방송 용역 공급법인과 구매자 간의 협의에 따라 결정 • 설치, 건설 등의 용역의 경우: 대가 지급 여부와 관계없이 준공일, 인수인계, 설치 완공일 • 여러 번에 걸쳐 제품을 공급하거나 공사 진행단계 혹은 진행률에 따라 공급하는 경우: 해당 거래일 • 부동산 사업자, 인프라 건설 사업자, 주택 건설사가 공사진행률에 따라 대가를 받는 경우: 대가지급을 받은 날 • 소매대리점의 단골고객으로서 사업자에게 연료 판매; 은행, 증권서비스 제공 경우: 당사자 간 계약에 따라 정기적으로 작성하되 	<p>판매자가 전자세금계산서에 전자서명한 날. 구체적으로 아래와 같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재화 판매: 종이세금계산서와 동일 • 용역 제공: 대가 지급 여부 관계없이 용역 제공을 완료한 날 또는 용역거래계산서 작성일 • 설치, 건설 등 용역의 제공: 종이세금계산서와 동일 • 여러 번에 걸쳐 제품을 공급하거나 공사 진행단계 혹은 진행률에 따라 공급하는 경우: 종이세금계산서와 동일 • 부동산 사업, 매매 또는 분양 목적으로 한 인프라, 주거지 등 건설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유권 또는 사용권이 이전되기 전: 공사 실제 진행률 또는 계약상의 합의에 따라 대가를 지급 받는 경우 대가 지급을 받은 날 또는 계약상의 합의한 날 ✓ 소유권 또는 사용권 이전 후: 대가 지급 여부에 관계없이 해당 소유권 또는 사용권 이전일

	종이세금계산서	전자세금계산서
	해당 거래가 발생한 월의 마지막 일을 기한으로 함(계약 당사자가 서명한 상세내역 또는 기타 증빙서류 첨부)	
전자세금계산서의 형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전자세금계산서는 XML 전자문서 형식으로 한다. 전자계산서는 XML 형식을 따르며 전자계산서의 기술적인 자료(technical data)와 전자서명 데이터 2가지의 요소를 포함해야 한다. 세무당국의 코드(Tax authority's code)를 부여받은 경우 코드에 관한 자료를 추가적으로 포함해야 한다.
전자세금계산서 문서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규정에 따라 작성된 전자세금계산서는 문서화하여 보관해야 한다. 세무당국 전산망에 전송 가능한 계산포스에서 발행된 전자세금계산서 외에는 출력한 전자세금계산서는 회계규정 및 전자상거래법의 규정에 따라 내부 보관 및 관리 목적으로만 사용 가능하며, 거래 또는 정산 등의 목적으로 사용하지 못한다.
전자세금계산서 사용 중단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세무당국은 다음에 해당하는 법인, 기타 경제활동 단체, 가족사업자 또는 개인에게 전자세금계산서 코드 발급을 중단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TAX CODE 만료 사업자 ✓ 세무당국 조사결과 등록된 주소에서 활동을 하지 않은 사업자 ✓ 경영활동을 일시 중단한 사업자 ✓ 조세채무 강제집행을 위해 전자계산서 사용이 중단된 사업자 TAX CODE 만료 법인, 기타 경제활동단체, 가족사업자 또는 개인은 세무당국에게 사업재개 통지 이후 또는 세무당국으로부터 인증코드가 복원되거나 조세채무 강제집행 철회 후 전자계산서 사용이 가능하다. 일시적으로 영업활동이 중단되었으나, 세무당국으로부터 중단 통지를 받기 이전에 체결된 계약을 수행하기 위해 전자계산서 발행이 필요한 경우 세무당국에 서면으로 전자계산서 사용을 신고하여야 한다.
계산서 사용 보고서	전월 세금계산서 사용에 관한 보고서 제출기한은 익월 20일로 한다. 설립일 또는 세무당국이 발행한 세금계산서 사용 시작일로부터 12개월 동안 보고서를 작성 및 제출한다.	

	종이세금계산서	전자세금계산서
	<p>이후 세무당국은 사업자의 계산서 사용, 부가 가치세 신고 및 납부내역 등을 조사하고 사업자에게 분기 단위로 보고서를 작성하고 제출하도록 요청한다. 세무당국으로부터 공식 통지를 받지 못한 사업자는 기존대로 월 단위로 보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한다.</p> <p>해당 기간 내 세금계산서 사용 내역이 없는 경우에도 재화 또는 용역을 판매하고 공급하는 사업자의 경우 보고서를 작성하고 제출해야 할 의무가 있다.</p>	

주: * 세무당국으로부터 Identification Code(인증코드) 부여받아 사용하는 전자세금계산서 및 인증코드 없는 전자세금계산서

가. Identification Code(인증코드) 있는 전자세금계산서

1) 인증코드 있는 전자세금계산서를 사용해야 하는 경우

- 세무상 리스크가 크다고 판단하는 일부의 사업자
- 상시 근로 종업원 수가 10명 이상이며 농업, 임업, 수산업 및 건설업 부문에서 연간 매출액 30억동 이상인 개인사업자 또는 도소매/무역업 부문에서 연간 매출액 10억동 이상인 개인사업자
- 인증코드 발급 대상이 아니더라도 세무당국에 신청 후 인증코드를 발급받아 사용할 수 있다.
- 법인 또는 기타 경제단체가 세무당국의 인증코드 있는 전자세금계산서 사용을 자발적으로 신청하는 경우
- 인증코드가 있는 전자세금계산서 사용 대상이 아닌 법인 또는 개인업자가 구매자에게 계산서를 제공함에 있어 인증코드가 필요한 경우 해당 거래 발생 시 세무당국으로부터 인증코드가 기재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을 수 있으며 제119/2018/ND-CP호의 정부 시행령과 공포된 부록의 06서식을 이용해 신고 및 납부하여야 한다.

2) 인증코드 있는 전자세금계산서 사용 및 관리

가) 사용 등록

- 납세자가 세무당국의 웹사이트에 접속하여 제119/2018/ND-CP호의 정부 시행령에 첨부된 01서식을 이용하여 인증코드 사용을 신청한다.
- 신청서 수령일로부터 1일 이내 세무당국은 웹사이트를 통해 승인 여부를 통지하여야 한다.

나) 전자세금계산서 인증 코드 부여 및 전송

- 1단계: 전자세금계산서 작성
판매자가 세무총국(General Tax Department)의 웹사이트 또는 전자계산서 대행단체의 웹사이트에 접속한다.
 - ✓ 재화 또는 용역 판매·제공 계산서 작성
 - ✓ 작성된 계산서에 전자서명하고 해당 세무당국 또는 대행단체에 제출한다.
- 2단계: 전자세금계산서 인증코드 발급
전자계산서 작성 완료 후 세무총국의 인증코드시스템이 자동적으로 코드를 발급하고 신청인에게 결과를 전송한다.
- 3단계: 전자세금계산서 전송
판매자가 구매자에게 세무당국의 인증코드가 부여된 전자세금서를 전송한다. 전송방식은 양측 간 합의로 결정한다.

나. Identification Code(인증코드) 없는 전자세금계산서를 사용하는 경우

- 전기, 우편, 통신, 항공, 철도, 항만, 신용, 보험, 의료, 전자무역, 유통 등 분야의 사업자
- 전자수단으로 거래를 하는 법인 또는 기타 경제단체로서 세무당국 또는 구매자에게 전자계산서 전송에 있어 방송통신 인프라, 회계 소프트웨어 또는 전자계산서 작성을 위한 소프트웨어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세무상 리스크가 크다고 판단되는 일부 사업자 또는 세무당국의 인증코드를 부여받아 사용하는 자 제외)

1) 인증코드 없는 전자세금계산서 사용 및 관리

가) 사용 등록

- 납세의무자가 세무총국의 웹사이트에 접속하여 제119/2019/NĐ-CP호의 정부 시행령에 첨부된 01서식을 이용하여 인증코드 없는 전자세금계산서 사용을 신청한다.
- 신청서 수령일로부터 1일 이내 세무당국은 웹사이트를 통해 승인 여부를 통지하여야 한다.
- 인증코드 없는 전자계산서 사용 시작 시점에 사업자가 미사용 종이계산서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 종이계산서 미사용분을 폐기해야 한다.
- 세무당국의 승인을 얻지 못한 경우 인증코드 있는 전자계산서 사용을 신청한다.

나) 인증코드 없는 전자세금계산서 작성 및 전송

- 1단계: 전자세금계산서 작성
재화 또는 용역 판매, 제공 시 사업자가 전자계산서 작성 소프트웨어를 이용하여 작성하고 전자서명을 한다.
- 2단계: 전자세금계산서 전송
판매자가 구매자에게 전자세금서를 전송한다. 전송방식은 양방 간 합의로 결정된다. 세무당국은 다음에 해당하는 법인, 기타 경제활동하는 단체, 가족사업자 또는 개인에게 전자세금계산서 코드 발급을 중단한다.

- ✓ 인증코드 만료 사업자
- ✓ 세무당국 조사결과에 따라 등록된 주소에서 활동을 하지 않은 사업자
- ✓ 경영활동을 일시 중단하는 사업자
- ✓ 조세채무 강제집행을 위한 전자계산서를 사용 중단하는 사업자

TAX CODE 만료 법인, 기타 경제활동 단체, 가족사업자 또는 개인은 세무당국에게 사업 재개 통지 후 또는 세무당국의 TAX CODE를 복원 후, 조세채무 강제집행 철회 이후 전자계산서를 계속 사용 가능하다.

일시적으로 영업활동이 중단되었으나, 세무당국으로부터 중단 통지를 받기 이전에 체결된 계약을 수행하기 위해 전자계산서 발행이 필요한 경우 세무당국에 서면으로 전자계산서 사용을 신고하여야 한다.

다. 세금계산서의 오류 정정

1) 종이계산서

구분	정정방법
잘못 작성된 계산서가 구매자에게 전달되지 않은 경우	잘못 작성된 계산서에 X 표시 후 보관한다.
계산서를 작성하고 구매자에게 전송 후 해당 재화 또는 용역을 판매하거나 제공하지 않은 경우 또는 계산서를 작성하고 구매자에게 전송 후 판매자 및 구매자가 이에 대한 신고 전인 경우	양측은 잘못 작성된 계산서 회수 고지를 작성한다. 판매자가 잘못 작성된 계산서를 보관하며 규정에 따라 새로운 계산서를 발행한다.
계산서를 작성하여 구매자에게 전송 후 판매자 및 구매자가 세금신고 절차를 완료한 경우	양측은 세금계산서상 오류를 명확하게 기록한 문서를 작성하고, 판매자는 수정된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한다.

2) 전자세금계산서

가) 세무당국의 인정코드 있는 전자세금계산서: 잘못 작성된 세금계산서 처리

인증코드를 발급 받았을 경우	잘못 작성한 내용을 정확히 기재한 기록 작성	04서식을 이용하여 세무당국에게 통보	취소 및 새 세금계산서 작성(*)	오류 정정 계산서 작성
구매자에게 전송하지 않았을 경우		✓	✓	
구매자에게 전송했을 경우	구매자명 및 주소 잘못 기재	✓ (구매자에게 통보)		
	거래금액, 세율, 세액 등 잘못 기재 또는 제품의 품질규격 수준에 미달	✓ (판매자 및 구매자는 해당 오류를 명확히 기술한 문서를 만들어야 한다)	✓	✓
공제, 판매가 조정				✓

나) 세무당국의 인증코드 없는 전자세금계산서: 잘못 작성된 세금계산서 처리

인증코드 없는 경우		잘못 작성한 내용을 정확히 기재한 기록 작성	04서식을 이용하여 세무당국에 통보	취소 및 새 세금계산서 작성(*)	오류 정정 계산서 작성
구매자 또는 세무당국에게 전송했을 경우	구매자명 및 주소 잘못 기재	✓ (구매자에게 통보)	✓		
	거래금액, 세율, 세액 등 잘못 기재 또는 제품의 품질규격 수준에 미달	✓ (판매자 및 구매자는 해당 오류를 명확히 기술한 문서를 만들어야 한다)	✓	✓	

주 : * 세무당국은 세무총국의 웹사이트를 통해 전자세금계산서 취소 처분을 통지한다. 취소 처분된 전자세금계산서는 무효이지만 대조 목적으로 계속 보관된다.

9. 부가가치세 신고

가. 분기별 부가가치세 신고 대상

분기별 세금신고는 전년도에 500억동 이하의 매출액을 가진 사업자에게 적용된다.

- 신규 사업자의 경우 분기 단위로 부가가치세 신고가 가능하다. 제조와 경영 활동의 기간이 12개월이 경과한 경우 다음해에는 전년도 재화, 용역의 매출(12개월 단위)에 따라 월별 또는 분기별로 부가가치세 신고를 이행해야 한다.

나. 월별 부가가치세 신고 대상

분기 단위 신고 대상이 아닌 경우는 월 단위 신고 대상이 된다.

다. 신고의 원칙

- 납세의무자가 해당 관할세무당국에 부가가치세를 직접 신고, 납부한다.
- 공제법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신고하고 납부하는 납세자가 주사무소 소재지가 아닌 다른 지역(성, 직할 도시 또는 일반도시 등)에 별도로 회계처리하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재화의 제조시설을 보유하는 경우, 주사무소 소재지 및 제조시설 소재지에서 부가가치세 납부의무를 가진다.
- 직접법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신고하고 납부하는 납세자가 주사무소 소재지가 아닌 다른

지역(성, 직할 도시 또는 일반도시 등)에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재화를 판매 하는 경우, 해당 판매 지역에서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의무가 있으며 이 경우 해당 판매건은 주사무소 소재지에 부가가치세를 신고, 납부하지 않아도 된다.

V 외국인계약자세

외국인계약자세는 베트남 내 사업을 영위하고 있거나 재화, 용역을 제공함으로써 원천소득을 발생시킨 베트남 법에 따라 설립되거나 영업활동을 수행하지 않는 외국 개인 및 외국법인(조직)에 부과된다.

1. 현행 법률

발행기간	문서명	발효일	만료일
2014/10/01	베트남 내 사업을 영위하거나 원천소득을 발생시킨 외국 개인 또는 조직 대상으로 한 세법에 관한 시행령 제 103/2014/TT-BTC호	2014/10/01	

2. 적용범위

가. 적용대상

- 외국인(거주자, 비거주자) 혹은 외국 법인으로서 베트남 내 고정사업장 유무와 관계없이 베트남에서 사업을 영위하거나(외국계약자, 외국하청계약자), 베트남인(개인, 법인) 또는 베트남 내의 외국인계약자와 계약, 하도급계약 등에 의하여 사업을 영위하고 소득이 발생하는 경우
- 외국인 또는 외국 법인과 베트남에 있는 기업 간에 계약에 따라 베트남 내에서 현지 수출입 형식으로 물품을 공급하고 수익이 발생하는 경우(외국인 혹은 외국 법인에 가공 후 재수출 형태로 공급하는 경우 제외), 또는 외국인, 외국 법인이 베트남 내에서 재화와 관련된 위험을 모두 부담하는 거래조건에 따라 물품을 공급하거나 Incoterms에 따라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
- 외국인 또는 외국 법인이 베트남 내에서 베트남 기업이 소유하는 재화의 실제 소유자로서 재화를 판매하는 경우 또는 재화의 유통/광고/마케팅 비용을 부담하는 경우, 재화 및 용역의 품질에 대한 책임을 부담하고 가격 결정 권한이 있는 경우, 베트남 하청회사를 고용하여 재화의 유통 및 용역을 부분적으로 수행하게 하는 경우
- 외국인 또는 외국 법인으로서 베트남 법인 또는 개인을 통하여 협상을 진행하거나 계약

을 체결한 경우

- 외국인 또는 외국 법인으로서 베트남 수출입 또는 베트남 내 유통사업을 위해 재화를 구매하여 베트남 법인 또는 개인에게 제공한 경우

나. 비과세대상

외국인계약자세는 아래와 같은 경우 부과되지 않는다.

- 투자법·석유가스법·금융기관법에 따라 베트남 내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 베트남 내에서 수행되는 용역 없이 베트남 법인/개인에게 해외 혹은 국경에서 재화를 공급하는 외국 법인/개인의 경우
- 베트남 영역 밖에서 공급되고 소비되는 용역의 경우
- 베트남 법인/개인을 위해 해외에서 수행되는 다음과 같은 용역을 공급하는 외국 법인/개인의 경우
 - ✓ 운송/이동수단(항공기 부품, 선박), 기계, 설비(해저 케이블, 전송설비)의 수리
 - ✓ 광고, 마케팅(인터넷상의 광고/마케팅은 제외)
 - ✓ 투자 & 무역 추진
 - ✓ 중개: 외국에서의 물품 판매, 서비스 공급
 - ✓ 교육훈련(온라인 교육훈련 제외)
 - ✓ 베트남 국외에서 이루어지는 베트남과 외국 간의 국제 우편, 통신 용역의 분할 요금
- 보세창고 및 ICD(Inland Container Depot)에 재화를 국제 운송, 화물 수송, 환적 및 베트남 업체의 재가공 후 수출을 위한 목적으로 보관하는 경우

다. 납세의무자

외국인계약자세 납세의무자는 다음과 같은 2가지 경우이다.

- 베트남 개인 또는 법인은 외국인계약자에게 재화, 용역의 대가를 지급할 경우 외국인계약자세를 원천징수할 의무가 있다.
- 외국인계약자세를 공제법 또는 혼합법을 사용하는 외국인계약자 또는 외국인 하도급 계약자의 경우 직접적인 신고 및 납세의무가 있다.

3. 조세 부과대상

- 외국 법인: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 외국 개인: 개인소득세 및 부가가치세

4. 외국인계약자세 산출방법

외국인계약자 또는 외국인 하도급 계약자는 아래와 같은 세 가지 방식 중 하나를 선택하여 신고, 납부할 수 있다.

- 공제에 의한 방법
- 원천징수방법(직접법) 또는
- 혼합법(차감공제 방식에 따른 부가가치세+원천징수방식에 따른 법인세)

외국인계약자 또는 외국인하도급계약자는 선택한 방식으로 계약 종료 시까지 신고 및 납부 의무를 이행한다. 외국인계약자가 기존 계약서 종료 이전에 베트남 내에서 별도의 계약을 체결한 경우 신규 계약도 기존 계약과 동일한 방식을 적용한다. 기존 계약 종료 후 신규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산출방식을 재신청할 수 있다.

가. 공제방식에 의한 신고방법

외국인계약자는 베트남 내 설립된 법인과 같이 공제법을 준용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 납부하고 법인세법에 따라 매출액 및 비용을 신고하여 법인세를 신고, 납부한다.

1) 적용대상

아래와 같은 3개의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공제방식을 적용할 수 있다.

- 베트남 내 고정사업장이 있는 외국법인 혹은 베트남 거주자인 경우
- 베트남에서의 사업 활동 기간이 계약서 또는 하도급계약서 시행일자로부터 183일 이상인 경우
- 베트남 회계제도(VAS)를 적용하고 TAX CODE를 발급받은 경우

2) 세금 산출공식

- 부가가치세 = 매출세액-공제가능한 매입세액
- 법인세 = 법인세법상 과세표준×법인세율

나. 원천징수법(직접법, 고정세율에 의한 방법)

원천징수법에 따른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는 과세대상 매출액에 대한 정해진 세율을 적용하여 산정한다.

1) 적용대상

공제방식의 3개의 요건 중 하나 이상을 충족하지 못한 외국인계약자 또는 외국인하도급계약자

베트남 법인 또는 개인이 외국인계약자 또는 외국인하도급계약자와 계약에 근거하여 재화·용역을 구입하고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원천징수해야 한다.

2) 세금 산출공식

- 부가가치세 = 부가가치세 대상 매출액×부가가치세율
- 법인세 = 과세대상 수입금액×법인세율

가) 과세대상 매출액

-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매출액은 외국인계약자 또는 외국인하도급계약자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재화 및 용역을 제공함에 따라 받게 되는 세금과 비용 등을 모두 포함한 금액
- 법인세 과세대상 수입금액은 외국인계약자가 지급받는 세금 등을 포함한 총액에서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베트남계약자가 외국인계약자를 대신하여 지급한 비용을 포함

과세대상 매출액은 각 경우별로 다음과 같이 산정된다.

거래가격	외국인계약자세 납세의무자	외국당사자 부담 세금	과세대상 매출액
외국인계약자세 포함한 거래가격	<ul style="list-style-type: none"> 외국인계약자가 외국인계약자세 전액을 부담한다. 베트남계약자가 공제 후 외국인계약자에게 대금을 지급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부가가치세 법인세 	<ul style="list-style-type: none">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매출액 = 거래가격 법인세 과세대상 매출액 = 거래가격 - 부가가치세
외국인계약자세 제외한 거래가격	<ul style="list-style-type: none"> 외국인계약자는 외국인계약자세 신고, 납부 의무를 지지 않는다. 베트남 계약당사자가 모든 신고, 납부 의무를 가진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없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매출액 = 법인세 과세대상 매출액 / (1 - 부가가치세율) 법인세 과세대상 매출액 = 거래가격 / (1 - 법인세율)
부가가치세는 제외되고 법인세는 포함된 거래가격	<ul style="list-style-type: none"> 외국인계약자는 법인세에 대한 신고 납부 의무를 부담한다. 베트남계약자가 부가가치세에 대한 신고, 납부 의무를 부담하며 부가가치세 공제 후 외국인계약자에게 대금지급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법인세 	<ul style="list-style-type: none">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매출액 = 거래가격 / (1 - 부가가치세율) 법인세 과세대상 매출액 = 거래가격

나) 원천징수세율

업종	부가가치세율	법인세율
무역 : 베트남내 서비스 관련배송, 물품·원료·물자·기계·설비 공급 (현지 수출입형식 모든 물품, DDP, DAP, DAT 인도조건 공급물품)	면세	1%
서비스/용역	5%	5%
식당, 호텔, 카지노 등 관리서비스	5%	10%
파생금융 서비스	면세	2%
건설(원재료, 기계장치 등 공급하지 않는 경우)	5%	2%
건설(원재료, 기계장치 등 공급하는 경우)	3%	2%
기계, 장치 대여	5%	5%
운송 (단, 국제운송의 경우)	3% 0%	2% 2%
증권, 양도성예금증서, 양수도	면세	0.1%
보험	5%/면세(*)	0.1%
로열티 수익	면세(**)	10%
대출이자	면세	5%
기타 경영활동	2%	2%

업종	부가가치세율	법인세율
두 가지 이상이 통합된 거래: 사업활동별 금액을 분리할 수 없는 경우 단, 건설, 원재료, 기계장치 등 공급하는 경우로서 계약서상 기계장치대가와 용역대가를 따로 분리하지 않은 경우	업종별 최고율 적용 3%	업종별 최고율 적용 2%

주: (*) 주의: 부가가치세 비과세 보험용역: 생명보험, 건강보험, 학생보험, 기타 인간 관련 보험; 애완동물보험, 농작물보험, 기타 농업 보험, 어업활동에 이용되는 선박, 보트, 기계장비 및 기타 필요 도구에 대한 보험, 재보험

부가가치세 부과대상인 기타 보험용역의 경우 부가가치세 원천징수율 5%가 적용된다.

(**) 컴퓨터 소프트웨어 라이선스, 기술 이전 및 지적 재산권 (저작권 및 산업 재산 포함)은 VAT가 면제됩니다. 다른 로열티들에는 VAT가 부과 될 수 있습니다 (ex. 상표권은 5 % VAT가 부과됨)

다. 혼합법(부가가치세: 공제법, 법인세: 원천징수방식)

부가가치세는 공제법, 법인세는 원천징수방법(직접법)으로 산정한다.

1) 적용요건

적용요건은 다음과 같다.

- 베트남 내 고정사업장을 소유하는 외국법인 또는 베트남 거주자일 것
- 베트남에서의 계약 수행기간은 계약서 또는 하도계약서 효력일자부터 183일 이상일 것
- 베트남 회계기준(VAS) 및 재무부 규정을 준수하는 경우.

2) 산출공식

- 부가가치세 = 매출 세액-공제 가능한 매입세액
- 법인세 = 과세대상 수입금액×법인세율

5. 이중과세방지협정

베트남과 외국인계약자가 속하는 국가 간에 체결된 이중과세방지협정에 따라 법인세에 대한 원천징수는 면제받을 수 있다. 단 이중과세방지협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자는 이중과세방지협정 적용 신청서를 과세당국에 제출해야 한다. 이중과세방지협정의 세부 내용은 제Ⅲ장 2조에서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다.

6. 외국인계약자세 신고, 납부 절차

순서	내용	신고방법	직접법(원천징수법)	혼합법
1	신고의무자	외국인계약자	베트남 법인	외국인계약자
2	신고기간			
	부가가치세 신고	매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외국인계약자가 지급을 받은 시점, 즉, 납세의무 발생 시점을 기준으로 10일 이내 매월 	매월
	법인세 신고	분기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외국인계약자가 지급을 받은 시점, 즉, 납세의무 발생 시점을 기준으로 10일 이내 매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외국인계약자가 지불을 받은 시점, 즉, 납세의무 발생 시점을 기준으로 10일 이내 매월
	세금결산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해당 회계연도 종료일로부터 90일 이내 계약만료일로부터 45일 이내 	계약만료일로부터 45일 이내	계약만료일로부터 45일 이내(법인세 경우)
3	납부용 TAX CODE	외국인계약자가 과세당국에 직접 세금 납부 신청의 경우 체결된 계약별 10자리 번호 TAX CODE를 발급받는다.	베트남 당사자가 세금신고 의무를 가지며, 외국인계약자 대신 세금 납부용의 추가 10자리 번호 TAX CODE를 발급받는다.	외국인계약자가 과세당국에 직접 세금 납부 신청의 경우 체결된 계약별 10자리 번호 TAX CODE를 발급받는다.
4	세금신고서류	베트남 법인과 동일한 규정 적용(제2장, 2조, X항 - 법인세 신고 및 납부 - 내용 참고요망)	<ul style="list-style-type: none"> 본 시행규칙에 첨부된 서식 01/NTNN 세금신고서 납세의무자가 서명한 외국인계약자와의 계약서 사본 지참(하도급 계약 최초 세무신고 시) 납세의무자가 서명한 사업자등록증 혹은 사업허가서 	부가가치세 베트남 법인과 동일한 규정 적용(제4장, 4 - 부가가치세 내용 참고) 법인세 <ul style="list-style-type: none"> 양식 03/NTNN 세금신고서 납세의무자가 서명한 외국인계약자와의 계약서 사본(하도급 계약 최초 세무신고 시) 납세의무자가 서명한 사업자등록증 혹은 사업허가서

VI 베트남과 한국 간의 이중과세방지협정

이중과세방지협정이란(이하 '협정') 양국 또는 영토 간에 소득과 관련하여 부과된 각종 세금에 대한 이중과세방지와 조세포탈 방지를 목적으로 체결된 국제 조약이다. 본 항에서는 베트남과 한국 간의 협정에 대해 집중적으로 소개한다.

1. 현행 법령

문서명	발효일	만료일
소득과 관련된 세금에 관한 이중과세방지와 조세포탈 방지에 대한 베트남 사회주의 공화국 정부와 대한민국 정부 간의 협정	1994/09/11	
협정 적용 절차에 관한 156/2013/TT-BTC호 시행령	2013/12/20	
베트남에서 발생한 소득과 재산에 관한 세금에 대한 이중과세방지와 조세포탈 방지에 대한 베트남과 타 국가 및 영토 간의 협정 이행 안내에 관한 205/2013/TT-BTC호 시행령	2014/02/06	
156/2013/TT-BTC호 시행령 개정에 관한 26/2015/TT-BTC호 시행령	2015/01/01	

2. 적용 범위

베트남 또는 한국 거주자 혹은 베트남과 한국 동시 거주자를 대상으로 한다.

이중과세방지협정은 소득과 자산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을 대상으로 하며 베트남의 경우 아래와 같은 직접세를 포함한다.

- 소득세
- 법인세

3. 거주자

한 국가의 거주자란 해당 국가의 현지법에 의해 결정되며 통상적으로 거주 기간, 주택, 운영 사무소 보유 여부 등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한 개인이 양국의 거주자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거주 현황은 아래와 같은 우선 순서로 확정된다.

- 거주하는 주택이 소재하는 국가, 양국에 거주하는 주택이 있는 경우 더욱 긴밀한 경제

활동을 하는 국가의 거주자로 본다.

- 양국 모두에 상주하는 주택이 없거나 양국에서의 경제활동을 비교할 수 없는 경우 주로 체류하는 국가의 거주자로 본다.
- 양국 모두에 주로 체류하거나 또는 어느 국가에도 주로 체류하지 않는 경우 보유한 국적 국가의 거주자로 본다.
- 양국의 국적을 모두 보유하고 있거나 혹은 해당 국가들의 국적을 보유하지 않는 경우 양국의 유관기관에서 해당 개인의 거주 현황에 대해 공동으로 협의하여 결정한다.

대상이 개인이 아니며 양국의 거주자에 해당하는 경우 실제 운영 사무소가 위치한 국가의 거주자로 인정된다. 결정이 어려운 경우 양국 유관기관에서 공동 협의하여 결정한다.

4. 베트남 내 협정 적용의 원칙

- 이중과세방지협정과 현지법 간의 차이가 있는 경우 협정을 우선으로 적용한다.
- 이중과세방지협정은 현지법에서 규정하는 것보다 중과하거나 현지법에 규정되지 않은 세목을 다루지 않는다. 예를 들어 협정에 의하여 베트남에서의 일정 소득에 대해 징수 권한을 가지거나 일정한 세율을 부과하지만, 베트남 현지법에 해당하는 소득에 관한 세금 징수 규정이 없거나 더 낮은 세율을 적용하는 경우, 현지법에 따라 세금을 징수하지 않거나 낮은 세율을 적용한다.
- 이중과세방지협정에서 정의되지 않은 용어는 해당 시점의 베트남 법의 정의를 따른다. 이중과세방지협정, 모든 베트남과 한국 법에서 정의하지 않거나 혹은 동시에 정의한 용어의 경우 양국의 유관기관 협상을 통해 결정한다.

세법과 기타 법에서 동시 정의되는 용어는 세법상의 정의를 우선으로 적용한다.

이중과세방지협정 수혜 원칙에 따른 협정 미적용 사례

협정에서 수혜권리 제한에 대해 다르게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베트남 과세당국은 아래와 같은 경우 협정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

- 협정 적용 시점으로부터 3년 이상 경과한 시점에 대한 세금
- 계약의 주요 목적이 협정에 의한 세금 감면, 면제인 경우
- 협정 적용 신청자가 협정에 의해 감면, 면제받는 소득의 실제 수익자가 아닌 경우 소득의 실제 수익자란 소득, 재산 또는 소득을 발생시키는 권리에 대한 소유와 통제권

이 있는 자로서 거래의 형식이 아닌 실질에 따라 판단한다.

- 실제 수익자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
 - 가) 비거주자로서 소득 발생 후 12개월 이내 50% 이상의 소득을 제3국 거주자에게 분배할 의무가 있는 경우
 - 나) 비거주자로서 소득을 발생시키는 자산 또는 권리의 소유 이외의 경제활동이 없는 경우
 - 다) 비거주자로서 경제활동을 수행하나, 발생하는 소득에 비해 자산 및 사업의 규모, 고용인원의 숫자가 현저히 낮은 경우
 - 라) 비거주자로서 소득과 재산 또는 소득을 발생시키는 권리에 대한 통제권과 결정권이 없으며 이에 대한 위험을 부담하지 않거나 거의 부담하지 않는 경우
 - 마) 비거주자로서 베트남에서의 대출, 저작권, 기술 서비스 공급 계약상 제3자와의 계약을 통해 수행하는 데 있어 해당 비거주자가 대출, 저작권, 기술서비스 공급 계약의 수취인인 경우
 - 바) 소득세를 부담하지 않거나 낮은 세율(10% 이하)을 적용받는 국가의 거주자인 경우
 - 사) 대리점 및 중개법인의 경우(실제 수익자의 위임을 받은 경우 제외). 대리점 또는 중개법인이란 세금 면제, 감면, 이익 이전의 목적을 위해 형식상으로만 존재하며 생산과 무역, 서비스 공급과 같은 활동에 참여하지 않는 대상을 말한다.

5. 한국여권 소유자의 베트남 영토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과세 여부 분류

소득 종류		한국(*) (거주 국가)	베트남 (소득 발생 국가)
부동산 소득		세금징수 권한 있음	세금징수 권한 있음
경영 활동소득	베트남에 고정사업장(Permanent Establishment)이 없는 경우(**)	세금징수 권한 있음	세금징수 권한 없음
	베트남에 고정사업장(Permanent Establishment)이 있는 경우	세금징수 권한 있음	베트남 영토에서 발생한 소득에 한해 세금징수 권한 가짐
국제 해상 운송과 항공 운송		세금징수 권한 있음	세금징수 권한 없음
주식 배당		세금징수 권한 있음	주식 배당의 최대 10% (현재 베트남 규정에 의해 법인에 지급되는 주식 배당에 대해서는 법인세가 면제되고 개인에게 지급되는 주식배당에 대하여는 소득세 5%가 적용된다.)

소득 종류		한국(*) (거주 국가)	베트남 (소득 발생 국가)
대출의 이자	다음과 같은 기관에 지급된 대출 이자 - 지방자치단체를 포함한 한국 정부 - 아래와 같은 한국의 중앙은행 또는 정부 관련 금융기관 ✓ 한국은행 ✓ 한국수출입은행 ✓ 한국개발은행 ✓ 정부 관련 기타 금융 기관 - 한국정부, 한국중앙은행, 또는 정부 금융기관에서 보증하거나 혹은 간접적으로 지원하는 대출과 관련하여 한국 거주자에게 지급되는 이자 비용	세금징수 권한 있음	면제
	한국 거주자에게 지급되는 기타 이자 금액(***)	세금징수 권한 있음	이자의 최대 10% (현재 베트남 규정에 의하면 외국인 계약자세의 경우 법인세율 5%가 적용된다)
저작권(***)	발명, 설계 또는 디자인 사용권 및 산업, 과학 설비의 사용권	세금징수 권한 있음	지급대가의 최대 5% (현재 베트남 법인세법상 저작권에는 10%의 세율이 적용된다)
	기타 경우	세금징수 권한 있음	지급대가의 최대 15% (현재 베트남 규정에 의하면 저작권 대금의 경우 법인세율 10%가 적용된다)
자산 양도로 발생되는 소득	베트남 고정사업장(Permanent Establishment)의 동산 양도 또는 베트남 고정사업장(Permanent Establishment)의 양도	세금징수 권한 있음	세금징수 권한 있음
	국제 운송 분야에 사용 중인 선박, 항공기 양도, 해당 선박, 항공기 운항과 관련된 동산의 양도	세금징수 권한 있음	세금징수 권한 있음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베트남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의 주식 및 지분 양도	세금징수 권한 있음	세금징수 권한 있음
	기타 자산 양도	세금징수 권한 있음	세금징수 권한 있음
독립적인 개인 서비스	한국 거주자로서 직업적인 개인 서비스 활동 또는 기타 독립적인 활동을 통해 발생한 소득	세금징수 권한 있음	- 사업 활동을 위한 베트남 내 고정사업장(Permanent Establishment)을 보유한 경우: 베트남 내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 세금징수 - 고정사업장(Permanent Establishment)을 보유하지 않은 경우: 세금징수 권한은 없다.

소득 종류		한국(*) (거주 국가)	베트남 (소득 발생 국가)
고용된 개인 서비스	한국인 거주자가 베트남에서 근무하고 받는 급여, 수당 및 유사한 성격의 소득	세금징수 권한 있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음의 3가지 조건을 동시에 만족하는 경우 세금징수 권한이 없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i) 베트남 입국 후 12개월 동안 체류기간이 183일 미만 (ii) 급여 및 수당을 지급하는 사업자는 베트남 법인이나 개인이 아님 (iii) 베트남의 고정사업장(Permanent Establishment)에서 발생한 소득이 아닌 경우. - 국제운송 영역의 경우 한국에 본사를 둔 법인이 운영하는 선박과 항공기에서 발생하는 소득은 한국에서만 세금이 부과된다. - 기타 경우: 세금징수
대표자 급여 및 임금	베트남 거주자인 법인 이사회의 구성원인 한국 거주자가 받은 대표자의 각종 급여 및 임금	세금징수 권한 있음	세금징수 권한 있음

주: (*) 두 번째 조약은 발효 전이기 때문에 상기 표는 첫 번째 조약을 기초로 작성됨. 법인 및 개인이 한국의 거주자에 해당하며 협정에 의해 한국에서 세금징수 권한이 있는 경우, 해당 거주자는 베트남에서 발생한 소득과 관련해서 납부한 세금에 대한 환급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환급절차는 한국 국내법에 따른다.

(**) 고정사업장(Permanent Establishment)에 대한 개념은 협정 제5조에 규정되어 있으며, 아래와 같이 요약가능하다.

(***) 한국 거주자이며 베트남의 고정사업장(Permanent Establishment)/고정소재지를 통해 경영 활동을 수행하고 지급받는 금액이 해당 고정사업장(Permanent Establishment)/고정소재지를 통해 발생한 경우 해당 소득은 베트남 세법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지 않는다.

6. 고정사업장(Permanent Establishment)

고정사업장(Permanent Establishment)이란 고정소재지로서 법인의 일부 또는 전부의 경영 활동을 진행하는 곳을 말하며 구체적으로는 아래와 같다.

고정사업장으로 보는 경우	고정사업장으로 보지 않는 경우
<p>아래와 같은 경우 한국 법인이 베트남의 고정사업장을 통해 경영 활동을 수행하는 것으로 본다.</p> <p>가) 협정 이행 안내에 관한 205/2013/TT-BTC호의 시행령에 의하여 협정 체결 국가의 법인(예: 한국)이 아래와 같은 3가지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베트남에 고정사업장(Permanent Establishment)이 있는 것으로 인정된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물, 사무실, 설비 등의 소재지를 베트남에서 유지한다. • 해당 소재지는 고정되어야 한다. 고정된다는 것은 특정한 곳에서 지속적으로 유지되어야 한다는 뜻으로 특정한 지리적 위치에 일정 기간 동안 유지되어야 하는 것을 의미한다. • 해당 소재지에서 일부 또는 전부의 경영 활동을 수행하는 경우 <p>나) 고정사업장(Permanent Establishment)은 다음과 같은 곳을 포함한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총괄 운영사업소(Head office) • 지점 • 사무실 • 공장 • 소규모의 공장 • 광산, 유정, 가스전, 채석장 또는 기타 천연 자원 개발 소재지 <p>다) 6개월 이상 건설 공사, 조립 및 설치 공사가 수행되는 장소</p> <p>라) 대리점/대행사: 타 법인을 대신하여 활동하고 베트남에서 해당 타 법인의 명의로 계약 체결 위임을 받아 수행하는 경우(해당 활동이 사업준비 활동 또는 고정사업장(Permanent Establishment) 주선 활동인 경우 제외)</p>	<p>가) 해당 법인이 베트남 내에서 영업을 위한 시설을 준비 중인 경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당 시설을 저장 및 전시용도로만 사용하는 경우 • 저장, 전시, 다른 법인에 공급하여 가공하는 목적으로만 재고를 보유하는 경우 • 재화, 자산의 구매, 정보 수집의 목적으로만 사용 중인 소재지 • 다른 법인을 대신하여 상기 활동을 수행할 목적으로 사용 중인 소재지 <p>나) 독립적인 자격을 가진 중개 대리점, 수수료 대리점, 해당 대리점의 활동은 일반 경영/사업 활동 범위에 포함된다.</p> <p>다) 법인이 계약 체결국의 거주자이거나 혹은 계약 체결 국가 거주자의 통제에 있거나 또는 계약체결 국가에서 고정사업장(Permanent Establishment) 등을 통해 영업을 수행하는 경우</p>

7. 협정 적용 절차

이중과세방지협정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아래와 같은 절차를 이행해야 한다.

- 가. 이중과세방지협정에 따른 세금면제 신청. 세금면제 신청을 한 경우에도 세금신고 의무를 가진다. 이중과세방지협정에 따른 세금면제 신청을 받은 경우 현행법상 과세당국의 세금면제 신청에 대한 확인 규정은 없다.

나. 세금을 납부하고 환급 신청을 하는 경우 협정에 따라 환급한다.
신청시점으로부터 3년 이내에 발생한 소득에 대해 이중과세방지협정 적용 요청을 할 수 있다.

가. 협정 적용 통보

구분	통보 접수 시점	절차(*)
비거주자	최초 세금신고서 접수일	<p>직접 또는 타인에게 위임하여 아래 문서를 포함하여 협정 적용 신청서를 제출한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156/2013/TT-BTC호 시행령과 함께 발행된 01/HTQT호 양식인 협정에 의한 감면, 면세 대상임을 통보 통보연도 직전연도에 현지 과세당국에서 발급한 거주 국가의 거주증(원본 또는 영사 공증본) 소득원천 증명에 관한 근로 계약서 또는 법적 서류, 상속, 증여 권한, 베트남 법인, 개인과의 체결된 경제활동 계약서의 사본 베트남 출입국 확인을 위한 여권 사본 거주 국가 또는 베트남에서 독립적인 직업 활동을 수행하는 개인의 사업자등록증 및 자격증 사본 대행자에게 위임하는 경우 위임장
	베트남 근로 계약서 종료 전 영업일 15일 이내 또는 과세연도 종료 시점 중 빠른 날	직접 또는 타인에게 위임하여 해당 과세연도 거주증과 여권 사본을 과세당국에 제출한다.
외국법인	세금신고 기한 전 15일 이내	<p>베트남에서 관리 과세당국에 이중과세방지협정에 의한 감면, 면제대상 신청서류를 직접 제출한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156/2013/TT-BTC호 시행령과 함께 발행된 01/HTQT호 양식인 협정에 의하여 감면, 면제대상임을 통보 통보 직전연도 현지 과세당국에서 발급한 거주 국가의 거주증(원본 또는 영사 공증본) 베트남 법인, 개인과 체결한 계약서 사본 대행자에게 위임하는 경우 위임장
	베트남 내 근로계약 종료 15일 이내 또는 과세연도 종료 시점 중 빠른 날	외국인계약자는 해당 과세연도의 거주증(원본 또는 영사 공증본)을 베트남측에게 발송한다.
	베트남 거주증 수령일로부터 3일 이내	베트남측은 해당 세금부과연도의 거주증을 직접 관리 과세당국에 접수한다.

주: (*) 유의사항:

- 이전 연도에 협정에 따른 감면, 면제를 통보받은 경우 다음 해에는 베트남과 외국 법인 또는 개인 사이에 신규 체결된 근로 계약서 사본만 제출하면 된다. 서류 사본은 납세의무자의 확인을 거쳐야 한다.
- 상기 신청기한 만료 시까지 협정 적용 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도 이전 3개년에 대해 이중과세방지협정 적용을 신청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 과세당국은 이중과세방지협정 요건 충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추가 서류를 요청할 수 있다.

나. 협정에 의한 환급

법인 및 개인은 법인의 운영 소재지, 개인의 거주지 또는 법인, 개인이 환급받고자 하는 현지 과세당국에 환급 관련 서류를 제출한다.

환급 관련 서류는 아래와 같다.

- 156/2013/TT-BTC호 시행령과 함께 발행된 02/ĐNHT호 양식인 협정에 의한 환급 제안서
 - 거주 국가의 과세당국에서 발급된 거주증의 영사 공증 원본(공증된 사본/해당 과세연도 거주자 여부가 명확히 명시되어야 함)
 - 납세의무자의 확인이 있는 베트남 법인, 개인과의 계약서, 베트남 내 예금 인증서, 베트남 법인에 대한 자본 투자 인증서 사본(각 상황의 소득 종류에 따라 달라짐)
 - 계약에 따른 수행 현황과 기간에 대한 베트남 계약 체결 당사자의 확인서
 - 해당 절차 진행을 대행자에게 위임하는 경우 위임장
- 과세당국에서는 협정 적용 조건 충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추가 서류를 요청할 수 있다.

VII 관세법

1. 과세대상

일반적으로 관세는 베트남으로 수입 또는 베트남에서 수출되는 각종 유형의 재화를 부과 대상으로 한다.

- 베트남 국경을 통한 수출, 수입 물품
- 국내시장에서 보세구역으로 반입되는 물품, 보세구역에서 국내시장으로 반입되는 물품
- 현지 가공 수출입 재화; 수출입 대행업자에 의해 수출입되는 재화

위에서 언급한 재화와 관련된 특정 무형자산의 경우 관세 과세대상 금액에 포함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과세표준 부분에서 다루도록 한다.

2. 납세의무자

일반적으로 수출입 재화의 소유자가 납세 의무자이나 수출입거래의 성격에 따라 납세의무자가 달라질 수 있다. 관세법에 따른 납세의무자는 아래와 같다.

- 해당 재화의 소유자
- 재화의 수입을 위탁받아 수입업자가 대행 수입한 경우 해당 재화의 수입을 수탁한 자
- 베트남 국경 또는 국경 검문소를 거쳐 재화를 가지고 입국, 출국하는 자
- 법률에 의한 납세의무자 대신 납세하는 중개 대리인, 운송업체 또는 국제특급운송업체 등
- 소비 또는 제조용으로 사용하지 않고 국내에서 판매할 목적으로 재화를 구매 또는 운송하는 자
- 수입 활동에 참여하는 외국 무역회사
- 기타 법으로 규정된 경우

납세의무자가 언제나 수입업자와 일치하는 것은 아니다. 현재 베트남 관세에서는 수입업자에 대해 명확하게 정의하고 있지 않다.

3. 세금 산출(과세방법)

가. 관세 산출

관세액은 주로 세관신고서에 명시된 물품의 실제 수출, 수입 수량, 과세가격에 백분율로 표시되는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된다. 일부 종량세가 적용되는 물품의 경우 세관신고서에 명시된 수출, 수입 물품의 실제 수량에 물품 한 단위당 규정된 종량세액을 적용하여 산출한다.

종가세 계산 방식:

$$\text{관세} = \text{물품의 실제 수출, 수입량} \times \text{단위당 과세가격} \times \text{세율}(\%)$$

종량세 계산 방식:

$$\text{관세} = \text{물품의 실제 수출, 수입량} \times \text{단위당 절대세액}$$

나. 과세가격

1) 수출관세 과세가격

수출물품 과세가격은 계약에 따라 수출 국경관문에서 판매되는 가격으로 하며 운송료와 운임보험료는 제외한다. 이와 같은 방식으로 과세가격을 산출하지 못하는 경우 과세가격은 가장 최근에 수출된 유사한 제품의 가격으로 한다.

2) 수입관세 과세가격

수입물품 과세가격은 국제협약에 부합하는 계약에 따라 실제 지불해야 하는 가격이다.

가) 거래가격

나) 같은 수입제품의 거래가격

다) 유사한 수입제품의 거래가격

라) 공제금액

마) 산출가격

3) 가산 및 차감 조정

가) 가산 조정

• 적용요건

가산금액은 과세가격의 필수 구성요소이나 일부 상품의 가격에 해당 금액이 반영되지 않는 경우가 있다. 따라서 정확한 과세가격 산출을 위해 아래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납세자는 해당 금액을 과세가격에 포함하여 산출한다.

- ✓ 구매자가 판매자에게 지급해야 할 금액이 실제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금액에 포함되지 않은 경우
- ✓ 해당 추가금액이 수입품과 관련이 있는 경우
- ✓ 관련 서류에 근거하는 객관적인 금액 추정이 가능한 경우

• 가산 조정의 종류

법에서 규정하는 일반적인 추가조정 유형은 다음과 같다.

- ✓ 판매 수수료, 중개 수수료(베트남에서 납부 예정인 제세공과금으로 관세 계산 시 과세 가격에 불포함되는 금액 제외), 수입품 포장비
- ✓ 로열티 및 라이선스 비용
- ✓ 지원금: 베트남에서 제조 또는 판매의 목적으로 구매자가 제조업자나 판매자에게 무료 또는 할인된 금액으로 직·간접적으로 제공하는 재화, 용역 대가
- ✓ 수입 장소까지의 운송비 및 운송과 관련된 비용(상차, 하역비 등은 제외)
- ✓ 수입업자가 수입되는 장소까지의 보험료를 부담하지 않은 경우 수입품에 대한 보험료는 과세가격에서 제외
- ✓ 재화와 별도로 구분할 수 없는 소프트웨어의 가치 혹은 소프트웨어 사용을 위해 지급되거나 지급될 가치

나) 차감 조정

• 적용요건

아래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과세가격에서 제외한다.

- ✓ 관련 증빙서류에 의해 적법한 방식으로 객관적인 금액이 산출 가능
- ✓ 구매자가 판매자에게 실제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금액에 포함되지 않음

- ✓ 차감 조정이 베트남 회계처리 규정에 부합하는 경우
- 차감금액 종류
차감금액 산출은 건별로 이루어진다. 일반적으로 차감금액은 수입시점에 미확정되거나 수입자가 부담하지 않는 금액이다. 주요 차감금액은 다음과 같다.
 - ✓ 수입 후 발생한 비용
 - ✓ 최초의 국경관문에서의 운임료 및 보험료
 - ✓ 베트남 내 판매가격에 포함된 세금, 수수료 등
 - ✓ 특정 조건하의 수입품에 대한 할인금액
 - ✓ 수입 전에 이루어진 제품의 수량 확인 및 품질 조사비용
 - ✓ 구매자가 부담한 수입품의 마케팅 비용
 - ✓ L/C 개설 비용, 송금 수수료
 - ✓ 수출입품 구매와 관련하여 구매자와 합의된 이자금액

다) 로열티 & 라이선스 이용료

로열티란 특정한 권리를 이용하는 자가 해당 권리를 가진 자에게 직·간접적으로 지급하는 대가를 의미한다. 라이선스 이용료란 특정한 지적재산을 이용하는 자가 해당 지적재산을 소유하는 자에게 직·간접적으로 지급하는 대가를 의미한다.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로열티와 라이선스 비용은 수입물품 과세가격에 포함된다.

- 구매자는 특정한 권리 또는 지식재산 이용권이나 이용권 양도의 로열티/라이선스 이용료를 지불할 의무가 있다.
- 구매자는 계약서상 거래조건에 일부인 로열티/라이선스 이용료를 직·간접적으로 지불한다.
- 로열티/라이선스 이용료는 수입품 가격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

4) 과세가격에 관한 분쟁

과세가격에 관한 어떠한 분쟁이나 의문이 제기된 경우 신고된 가격에 대해 과세당국이 세무 조사를 진행하고 필요시 과세가격을 재산출한다.

5) 부과고지 적용의 경우

수출입 절차 이전에 관할 세무당국이 납세자가 부담해야 하는 세액을 결정하여 공식 문서를 발송하여 통지한다. 납세의무자는 신청서와 과세가격 산출을 위한 각종 필수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다. HS코드(품목번호)

1) HS코드 분류

베트남은 세계관세기구(World Customs Organization) 및 ASEAN의 회원국으로서 두 기구에서 발표한 HS코드 시스템 분류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수출입 품목에 관한 제 65/2017/TT-BTC 및 09/2019/TT-BTC 시행령에서는 HS코드 목록과 분류의 6가지 원칙을 규정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국내법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 아래 내용을 참조할 수 있다.

- 세계관세기구의 HS목록에 관한 참고사항
- 아세안 국가 간 관세코드(AHTN) 참고
- 세계관세기구 및 기타 국가의 분류방식 참고

2) HS코드에 대한 분쟁

관세에 관한 현행 규정에 따르면 수출입업자가 직접 세관에 신고하고 절차를 수행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기업이 신고한 HS코드, 즉 상품분류코드가 관세당국 기준과 다를 수 있다. HS코드 분류에 대한 분쟁이 발생한 경우 기업은 위에서 언급한 분류 기준 혹은 WCO, AHTN 등의 자료에 근거하여 관세당국에 분류 기준 근거를 제출한다.

HS코드는 수출입업자가 결정하여 신고하는 것이 원칙이나 관세당국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는 경우 자료 검토, 샘플 채취 후 HS코드를 결정한다. 이 결정에 불복하는 경우 수출입업자는 재분류 요청을 할 수 있다.

3) HS코드 사전 분류

HS코드 사전 분류를 원할 경우 기업은 세무총국에 신청서를 제출한다. 세무총국은 신청서를 접수하고 심사를 진행한다. 세무총국의 결정에 불복하는 경우 기업은 공식문서를 통해 세무총국의 재심사를 요구할 수 있다.

라. 세율

1) 수입세율

- 최혜국 관세율/우대관세율(MFN)

최혜국 관세율/우대관세율 MFN(Most Favored Nation) 수입관세율은 WTO 회원국을 포함한 대다수의 국가로부터 수입되는 경우 적용되는 수입세율이다. 이외에 자유무역지역에서 국내시장으로 수입되는 재화에도 이 수입세율을 적용할 수 있다.

- 특혜관세율

특혜 관세율은 베트남과 FTA 등 특혜관세협정을 체결한 국가를 원산지로 하는 수입품, 또는 베트남과 특혜관세협정 관계에 있는 국가를 원산지로 하며 자유무역지대에서 국내 시장으로 수입되는 재화에 적용된다.

- 일반세율

상기 우대관세율 또는 특혜관세율 적용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수입품에 적용되는 세율로 베트남은 품목별로 적용되는 우대관세율의 150%를 일반관세율로 한다. 단 우대관세율이 0%인 품목에 대해서는 일반세율 5%를 적용한다.

2) 수출세율

수출물품에 대한 세율은 수출세율표에 항목별로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다. 다음의 일부 품목을 제외한 대부분의 품목은 수출세율 0%가 적용된다.

- ✓ 목재, 광물, 광석, 금속 등 천연자원
- ✓ 천연자원과 에너지의 가치가 임가공제품가격의 51% 이상을 차지하는 반제품, 완제품
- ✓ 금이나 침향나무 등의 고가의 희귀 제품

수출 관세가 포함되지 않은 품목은 비과세대상으로 간주한다. 관세양허 협정이 체결된 국가로 수출되는 경우 해당 협정이 적용된다.

마. 원산지증명서(C/O)

1) 원산지증명서 정의

원산지증명서는 물품의 원산지를 증명하는 문서로서, 해당 물품이 특정 국가에서 재배, 사육, 제조 또는 가공된 것임을 증명하는 국제 무역에 있어 중요한 문서이다. 통상은 수출자

서류 중 하나로 발행되거나 수입국에서 덤핑 방지 목적이거나 상계관세 목적으로 요구되는 경우도 있다.

2) 원산지증명서의 일반 원칙

• C/O 발급

수출물품의 수출자(원산지증명서 발급신청자)는 공급받은 재료 또는 최종 물품의 생산자 또는 공급자에게 원산지확인서 발급을 요청하고 원산지확인서 발급을 요청받은 생산자 또는 공급자는 해당 FTA 협정의 원산지결정기준을 확인 후 원산지확인서를 작성하여 수출업자에게 발급한다.

• C/O 제출

우대관세를 적용받기 위해서 수입업자는 수입 절차 시 신고서 및 기타 증빙서류와 같이 세관당국에 원산지 확인서를 제출해야 한다.

3) 자유무역협정

원산지증명서 제출 여부는 FTA에 따른다.

No.	대상	진행상황	당사국
발효된 FTA들			
1	AFTA	1993년부터 발효	ASEAN(동남아시아국가연합)
2	ACFTA	2003년부터 발효	ASEAN, 중국
3	AKFTA	2007년부터 발효	ASEAN, 한국
4	AJCEP	2008년부터 발효	ASEAN, 일본
5	AIFTA	2010년부터 발효	ASEAN, 인도
6	AANZFTA	2010년부터 발효	ASEAN, 호주, 뉴질랜드
7	AHKFTA	2019/06/11일부터 중국, 라오스, 미얀마, 싱가포르, 베트남에서 발효	ASEAN, 홍콩(중국)
8	VJEPA	2009년부터 발효	베트남, 일본
9	VCFTA	2014년부터 발효	베트남, 칠레
10	VKFTA	2015년부터 발효	베트남, 한국
11	VN-EAEU FTA	2016년부터 발효	베트남, 러시아, 벨라루스, 아메니아, 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탄

No.	대상	진행상황	당사국
12	CPTPP(전신 'TPP')	2018/12/30일부터 발효, 베트남에서는 2018/01/14일부터 발효	베트남, 캐나다, 멕시코, 페루, 칠레, 뉴질랜드, 호주, 일본, 싱가포르, 브루나이, 말레이시아
미발효 FTA			
13	EVFTA	2019/06/30일에 서명	베트남, EU
• 협상 중인 FTA			
14	RCEP	2013/03월부터 협상 개시	ASEAN, 중국, 한국, 일본, 인도, 호주, 뉴질랜드
15	베트남-EFTA FTA	2012/05월부터 협상 개시	베트남, EFTA(스위스, 노르웨이, 아이슬란드, 리히텐슈타인)
16	베트남-이스라엘FTA	2015/12월부터 협상 개시	베트남, 이스라엘

4. 관세 신고, 납부

가. 신고 원칙

신고자는 자발적인 신고와 신고된 정보가 정확하고 관련규정에 부합한다는 사실에 대한 책임이 있다. 신고자는 세관신고서를 세관에 제출하고, 산출된 세액을 납부해야 한다.

세관 서류는 수출입형식, 상품 유형 및 적용되는 관세혜택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일반적으로 통관 서류는 세관 신고서, 송장 및 포장 목록, 계약/협상문, 원산지증명서, 운송장, 수출입 허가서 등이 포함된다.

나. 신고 기한

수출의 경우 상품 수령 후 신고 장소에서 운송수단이 출발하기 최소 4시간 전에 세관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특급(빠른) 우편으로 발송되는 수출품의 경우 출발 최소 2시간 전에 세관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수입의 경우 제품이 세관에 도착하기 전 또는 도착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세관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 납부 기한

일반적으로 수출입관세 및 반덤핑, 상계관세 등은 세관통관 전에 납부가 이뤄져야 한다. 다만 법률에 규정된 일부의 경우에는 다른 납부기한을 가질 수 있다.

라. 수정 신고

세관 신고사항에 오류, 수정사항이 발생한 경우, 제39/2018/TT-BTC 시행령의 제1조 9항 그리고 제38/2015/TT-BTC 시행령 제20조에 따라 수정신고하되 행정위반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라 처벌을 받을 수 있다.

5. 면제, 감면, 환급 및 세액추징

가. 수입관세 면제

- 1) 가공 계약에 따라 가공 후 외국 수출을 목적으로 수입되는 물품, 또는 베트남 내 사용을 목적으로 외국에 수출 후 재수입되는 물품

제134/2016/ND-CP 정부 시행령의 제12조와 수출입법의 제16조 7항에 따르면 국내에서 제조용 재료로 사용할 목적으로 수입된 원자재, 물자, 부품, 반제품 등의 경우 수입관세가 면제된다.

- 2) 투자권고사업, 공적개발원조사업 투자계획을 위한 수입물품

제134/2016/ND-CP 시행령의 제12조 및 수출입법의 제16조 7항에 따르면 가공, 제조 목적으로 수입된 원자재, 물자, 부품, 반제품 등은 수입세가 면제된다.

베트남 내에서 생산이 불가능하거나, 투자인센티브 조건을 만족하는 투자사업 혹은 투자법에 따라 특정 저개발 지역에 사용될 목적으로 수입되는 물품

이 조항은 광물 채굴사업 또는 천연 자원, 광물과 에너지 비용의 총가치가 임가공제품 가치의 51% 이상을 차지하는 제조사업, 특별 세금이 부과되는 재화와 용역 등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3) 기타 경우

상기의 경우 외에 다음의 경우도 관세 면제대상이다.

- 박람회, 전시회, 상품소개 행사를 위해 일시수입-재수출 또는 일시수출-재수입되는 재화, 일정기간 동안 업무 수행에 사용하기 위해 일시수입-재수출 또는 일시수출-재수입되는 기계, 설비, 작업용구
- 제조의 목적으로 수입된 베트남에서 생산되지 않는 원자재, 원료 등
- 과학연구 및 기술발전에 직접 사용되는 수입물품으로 국내에서 제조가 불가능한 기계, 설비, 부품, 물자, 운송수단, 국내에서 아직 제공되지 않는 기술, 재료, 과학 서적
- 보세구역에서 생산, 가공, 재활용, 조립된 물품에 국내에서 생산된 원료, 부품을 사용한 경우 보세구역에서 국내 반입 시 국내에서 생산된 원료, 부품은 관세 부과대상이 아니다. 다만 외국에서 수입한 원료, 부품을 사용한 경우 국내 반입 시 그 물품을 구성하는 수입 원료, 부품에 대한 비율에 따라 수입관세를 부담해야 한다.

이와 관련해 납세의무자는 관련된 법률 규정을 면밀히 확인하고 필요시 당국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납세의무자는 면세된 원자재, 원료, 기계류, 장비, 재화 등의 사용내역이 기재된 보고서를 매년 관세당국에 제출하여야 한다.

나. 관세 환급

1) 환급 대상

가) 수출한 물품을 재수입하는 경우

수출한 물품을 재수입해야 하는 경우 이미 납부한 수출관세는 환급되며 수입관세가 면제된다.

- 수출관세를 납부하고 수출한 물품을 베트남에 재수입하는 경우
- 베트남 개인 또는 법인이 국제 우편으로 해외로 발송한 물품에 대한 수출관세를 납부하였으나 배송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해 베트남으로 반송된 경우

나) 수입한 물품을 재수출 하는 경우

수입한 물품을 재수출해야 하는 경우 이미 납부한 수입관세는 환급되며 수출관세가 면제된다.

- 해외로 재수출하거나 자유무역지역에서 사용할 목적으로 수출된 경우
- 외국 개인 또는 법인이 국제 우편으로 베트남으로 발송된 물품에 대한 수입관세를 납부하였으나 배송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해 발송 국가로 반송되는 경우
- 수입관세를 납부한 물품이 베트남 국경을 경유하는 외국 운송업체 또는 국제노선을 이용하는 베트남 운송업체에 판매된 경우
- 수입관세를 납부한 물품이 세관의 감시하에 국경관문의 창고 등에 보관되어 있다가 외국으로 재수출되는 경우

다) 투자사업 실현을 위해 일시수입-재수출 허가를 받은 법인, 개인의 기계, 설비, 용구, 운송수단 세금 환급 신청 시 물품을 보유하고 사용하는 기간 동안 베트남 회계규정에 따른 감가상각 내역을 신고해야 한다. 감가상각은 재수출 물품의 잔여 가치 산출을 위한 것이다.

라) 일시수입-재수출 또는 일시수출-재수입 물품으로 수출관세, 수입관세를 기납부한 경우

수출제품 생산공정(임가공 포함)에 투입할 관세환급 대상 원재료 등을 수입한 이후, 수출을 이행한 경우

- 원자재, 물자(수출 포장지 제조용 포함), 구성품 또한 수출품 제조용 반제품 및 완제품
- 임가공 물품에 사용된 수입 완제품
- 보증기간 내에 임가공 수리를 위해 수입되는 부속품
- 수입 샘플(판매, 사용 목적 제외)로 계약 종료 후 판매자에게 재수출되는 물품

수입된 원자재나 물자가 베트남 내 다른 생산 및 제조업자에게 공급 예정인 외국 법인에게 판매된 경우는 임가공 수출로 간주한다. 이 경우 수출에 사용된 원자재에 대한 수입관세는 관련 규정을 충족하는 경우 환급 가능하다.

마) 기타 경우

상기의 경우 외에 다음 경우도 환급 대상이다.

- 수출관세, 수입관세 납부에 비해 실제 수출, 수입 물량이 적은 경우
- 수출세, 수입세를 납부한 물품이 관세당국으로부터 면제 또는 환급 결정을 받은 경우
- 외국 개인 또는 법인으로부터 국제 우편으로 베트남으로 발송된 물품 또는 그 반대 경우로서 관련 세금을 납부한 상황에서 배송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발송국가로 다시

반입되거나 회수, 파기된 물품의 경우

세관이 수입품에 대한 위반을 발견한 경우 세관신고서 등록 후 해당 물품을 폐기한다. 세관당국은 수입 관세 취소 결정문을 발행해야 한다.

2) 환급 절차

수입된 원부자재를 수출용 원부자재로 용도 변경하는 경우 수입신고필증이 발급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수출 사실을 증명함으로써 관세 환급 신청이 가능하다. 환급 신청서는 (i) 환급 전 심사 대상인 신청서 및 (ii) 심사 전 환급 대상인 신청서 2가지 종류가 있다.

6. 보호무역, 반덤핑, 반보조금, 반차별을 위한 관세조치

가. 보호무역조치

베트남으로 과도하게 수입되는 물품에 대한 수입세 증과는 외국물품 수입에 대한 보호무역 법률의 규정에 따른다.

상계관세는 수출국에서 장려금이나 보조금을 지원받아 가격경쟁력이 높아진 물품을 제조하는 업자를 대상으로 한다.

세이프가드는 특정 품목의 수입이 급증하여 국내 업체에 심각한 피해 발생 우려가 있을 경우 발동하는 긴급 수입제한조치이다.

반덤핑관세는 특정물품에 대해 특정 국가로부터 일정 가격 이하로 수입이 이루어져 국내 기업들이 생산을 중단하거나 노동자들이 일자리를 상실하는 경우 또는 가격변동으로 인해 국내의 생산·제조업에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 수출국의 덤핑효과를 상계하기 위해 수입국에서 부과하는 관세이다.

나. 보호무역조치 제외대상

다음의 경우에 해당하는 수출입품은 보호무역조치 대상에서 제외된다.

- 제품의 특성과 품질이 국내에서 생산되는 다른 유사품 또는 직접적인 경쟁품과 다른 경우
 - 수입량이 상대적으로 작고 국내산업에 피해를 입히지 않는다는 보장 근거가 있는 경우
- 해당 제품을 수입 또는 사용하는 자는 보호무역조치 제외 신청서류를 구비해서 규정에 따른 절차를 수행해야 한다.

7. 수출전용기업(EPE)

가. 수출전용기업

EPE 기업은 Export Processing Zone에 소재하거나 산업단지에 소재하며 생산한 제품을 대부분(실무적으로 95% 이상) 해외로 수출하는 기업으로 정의된다. 조사, 감독 등을 위해 일반 지역과 구분되어 세관 등 당국의 관리를 받는다. EPE는 세관당국으로부터 인가를 받아야 한다.

나. EPE 기업의 면세 혜택

자유무역지역에서 수출되는 물품, 해외에서 자유무역지역으로 반입되어 동 지역 내에서 사용되는 물품, 자유무역지역 간의 운송되는 물품은 수입관세가 면제될 수 있다. EPE 기업은 수입재화를 수출제품의 제조에 사용하였음을 보고하여야 한다.

EPE의 계약자는 작업장 건설, 사무실 건물, 장비 설치를 위해 수입되는 물품에 대한 계약 내역을 감독 관세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8. 수출안전관리 우수업체(AEO) 제도

가. AEO 자격 조건

AEO 제도는 다음에 해당하는 기업에 적용된다.

- 수출입업자로서 세관당국으로부터 '우선기업'으로 인정받은 기업
- 세관 중개인으로서 세관당국으로부터 '우선 대리인'으로 인정받은 중개인
- 주요 투자사업으로서 투자 허가를 발급받기 전 총리 승인을 받고 세관당국의 우선혜택 제공을 받는 사업

나. AEO 기업이 얻게 되는 혜택

AEO 자격을 취득한 기업들은 다음과 같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 수출입물품 관련 세무절차 우대
- 세관전산 처리시스템에 세관신고서 등록이 완료되지 않은 경우에도 통관 가능

- 통관서류의 증빙서류 조사 및 현물 조사 면제
- 수입물품이 조사대상인 경우, 조사결과 수령 전에도 기업의 창고에 보관이 가능하고 샘플 조사가 필요한 경우 샘플의 통관절차 완료 전에 반출 가능
- 간접적인 수출입 절차
- 수입세 환급
- 사후심사

다. AEO 자격 취득 조건

AEO 자격 취득을 위해서는 다음의 4가지 조건을 엄격하게 준수하여야 한다.

- 법규 준수: 신청일로부터 과거 2년 동안 탈세, 세금 포탈, 밀수입 등의 불법 행위가 없을 것
- 회계 및 감사 법률 준수
- 수출입액에 대한 조건 중 한 가지 이상 충족할 것
- 내부 통제 시스템: 전자 통관 절차를 수행하며 수출입 관리소프트웨어 프로그램은 세관 당국의 기준을 충족할 것

확인 후 신청기업은 세관당국의 심사를 거치는 등 일정한 절차를 밟아야 하는 점을 유의하여야 한다.

9. 수출입 관리

가. 원칙 및 유형

수출입 관세 이외에 베트남으로 수입되는 물품은 베트남 법률의 각종 규정에 따라 건강, 환경, 보안, 안전, 기술 등에 관한 표준(수출입통제/상품 정책)을 준수해야 한다. 이 정책들은 다음과 같이 분류된다.

- 수출입 금지 품목
- 허가서 발급을 조건으로 수출입이 허가되는 품목
 - ✓ 수출입 라이선스를 요구하는 품목: 수출입업자는 통관 전에 관할 당국이 발급한 라이선스를 취득해야 한다.
 - ✓ 특정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만 수출입 가능한 품목: 수출입업자는 베트남 내외로

물품을 수입/수출하기 위한 특정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 ✓ 조사 대상 품목: 수출입된 다음 물품은 통관 전·후에 관할 세관당국의 조사를 받아야 한다.
 - 기술, 검역 대상인 품목
 - 국제, 지역 기구의 권고에 따라 안전하지 않거나 잠재적 위험이 있다고 판단되는 품목
 - 관할 당국이 검사 후 부적합 판정을 내린 품목

현재 베트남은 수출입 품목에 관한 통합 규정이 없으며 수출입 금지 품목, 허가서 발급조건으로 수출입된 품목 등은 제69/2018/ND-CP 시행령의 I, II, III부록에서 규정하고 있다. 조사 대상 해제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각 전담부서에서 규정하도록 한다.

나. 유의사항

1) 화학물질 수출입

- 산업용 전구물질, 폭발물 및 화학무기금지협약에서 규정한 독가스와 같은 유독화학물질 등의 경우 통관 시 산업통상부(MOIT) 산하 전담기관으로부터 수출입 허가서를 발급받아야 한다.
- 각종 법률 규정하는 성분을 포함된 화학물질의 경우는 통관 전 세관 시스템(The Vietnam National Single Window, VNSW)을 통해 신고하여야 한다.

2) 중고기계, 생산라인용 설비 수입

- 다음에 해당하는 생산용 설비는 수입이 가능하다.
 - ✓ 환경보호·에너지 절약 및 안전에 관해 국가기술표준(QCVN), 베트남 표준(TCVN) 혹은 G7 표준에 부합하는 경우
 - ✓ 기존 생산능력 혹은 생산효율성을 최소 85% 이상 향상시키는 경우
 - ✓ 에너지 및 원료 소모량이 최초 설계 대비 15%를 초과하지 않는 경우
 - ✓ 기술이전에 관한 가이드라인 및 법령(Decree No. 76/2018/ND-CP)에서 제한, 금지한 기술은 수입이 불가함
 - ✓ 도입 시점에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회원국 중 최소 3곳 이상에서 사용되고 있는 생산 기술인 경우

- 다음에 해당하는 중고기계는 수입이 가능하다.
 - ✓ 제조연도로부터 10년, 경우에 따라 20년을 초과하지 않은 경우
 - ✓ 환경보호, 에너지 절약 및 안전에 관해 국가기술표준(QCVN), 베트남 표준(TCVN) 혹은 G7 표준에 부합하는 경우

VIII 기타 세금

1. 특별소비세

특별소비세란 생산과 소비 동향을 조절 할 목적으로 국가가 지정한 특정 재화나 용역의 수행과 관련하여 부과되는 직접세 또는 간접세를 말한다.

가. 현행 법률

문서명	발효일	만료일
2008년 11월 14일에 통과된 「특별소비세에 관한 법률」 제27/2008/QH12호	2009/04/01	
2014년 11월 26일에 공표된 「특별소비세법 보완 & 개정조항에 관한 법률」 제70/2014/QH13호	2016/01/01	
2015년 10월 28일에 공표된 「특별소비세법 시행에 관한 정부 시행령」 제108/2015/NĐ-CP호 및 법 제70/2014/QH13호	2016/01/01	
2015년 11월 24일에 공표된 제195/2015/TT-BTC호 재무부령 (2015년 3월 9일에 공표된 정부 시행령 제26/2015/NĐ-CP호에 관한 건)	2016/01/01	
2015년 11월 24일에 공표된 제195/2015/TT-BTC호 재정부의 시행령의 제8조 2항 보완 & 개정조항에 관한 2017년 3월 6일에 공표된 제20/2017/TT-BTC호 재무부의 시행령	2017/04/20	
2014년 4월 6일에 공표된 「특별소비세법(일부) 보완 & 개정조항」에 관한 제106/2016/QH13호 법률	2016/07/01	
제106/2016/QH13호 법률 시행령에 관한 2016년 7월 1일에 공표된 제100/2016/NĐ-CP호 정부 시행령	2016/07/01	
2015년 10월 28일에 공표된 제108/2015/NĐ-CP호 정부 시행령 개정에 관한 2019년 2월 1일 공표된 제14/2019/NĐ-CP 정부 시행령	2019/03/20	

나. 적용대상

1) 과세대상

특별소비세가 부과되는 재화 및 용역은 다음과 같다.

- 재화: 담배, 시가 및 기타 담배제품, 증류주, 맥주, 자동차, 125cc 이상의 각종 이륜차 및 삼륜차(바퀴가 둘 혹은 셋 달린 차), 항공기, 요트, 모든 종류의 가솔린, 9만 BTU

이하의 에어컨, 오락용 카드, 사원 등에서 사용되는 각종 용품 및 향전용품(조상을 기리기 위해 종교의식 중에 불태우는 금색이나 은색의 종이 또는 제물 등)

- 서비스: 나이트클럽, 마사지업소, 노래방업소, 카지노, 사행성게임, 경마권 및 자동차경주 복권 판매, 골프(회원권 및 골프장 사용권 판매)

2) 비과세대상

위의 과세대상에서 언급된 재화와 용역 중 다음 각 내용에 해당하면 과세되지 아니한다.

- 생산업자가 보유한 시설에서 생산하거나 가공한 물품을 직접 판매하거나 수출하는 경우 또는
- 다음 각 항에 해당하는 수입품
 - ✓ 인도주의적 지원품, 무상원조, 각 국가기관, 인민위원회 산하기관, (교육, 의료, 문화, 체육 등)국영기관, (정당 등)정치조직, (노조, 언론사 등)정치사회기관, (직능)협회 등에 수여된 금품, 정부 규정에 따른 베트남 내 어떠한 개인을 위한 선물 또는 금품
 - ✓ 국경지역에서 환적되는 물품 혹은 정부의 규정에 따라 수입되지 않고 국경지역에서 다른 국경지역으로 이동하는 물품
 - ✓ 재수출을 위한 일시수입 및 재수입을 위한 일시수출 상품으로서 규정된 일정기간 내 수출입세금이 부과되지 않은 상품
 - ✓ 외교관의 면제 기준을 적용받는 개인 또는 조직의 물품, 면세 한도 내에서 구입한 물품, 면세 판매 목적으로 수입된 물품
 - ✓ 면세구역 판매를 위한 수입물품, 면세구역에서 사용할 목적으로 국내 다른 지역에서 반입한 물품, 면세구역 간 유통 물품(24인승 이하 자동차 제외)
- 재화, 승객, 관광객 등 운반, 운송을 위한 항공기, 요트 등 또는 국방보안을 위한 항공기
- 구급차, 범인수송차, 장례차, 24인승 이상 승합차(좌석, 입석 있는 차), 놀이공원, 오락공간 등에서 사용되는 도로 주행목적이 아닌 미등록 자동차

3) 납세의무자

특별소비세 납세의무자는 특별소비세 과세대상 항목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생산하거나 수입을 하는 법인 또는 개인을 대상으로 한다.

다. 세금산출 공식

$$\text{특별소비세} = \text{특별소비세 과세표준} \times \text{특별소비세율}$$

1) 과세표준

가) 일반원칙

특별소비세 과세표준은 특별소비세와 환경보호세를 제외한 판매가격으로 생산업자가 추가적으로 받을 수 있는 금액이 포함된다. 담배제품의 경우 담배의 피해 방지·예방법에 따라 담배제품에 사용되는 포장비용 및 의무 기부금 등을 포함한다.

$$\text{공식: 과세표준} = \frac{\text{부가세 미포함된 가격} - \text{환경보호세}}{1 + \text{특별소비세율}}$$

- 판매가격이 일반적인 시장가격과 차이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과세당국은 과세표준을 재계산할 수 있다.
- 생산업자 혹은 수입업자가 특수관계자에게 특별소비세가 부과되는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 특별소비세 과세표준 산정 근거가 되는 판매가격은 특수관계가 없는 생산업자나 수입업자로부터 공급받은 재화의 해당 월평균 가격 대비 7% 이하는 인정되지 않는다.
- 생산업자 혹은 수입업자가 다수의 중개업자와 특수관계를 가진 경우 특별소비세 과세표준 산정을 위한 근거가 되는 판매가격은 해당 제3자에게 공급한 평균가격 대비 7% 이하는 인정되지 않는다.
(여기에서 말하는 특수관계란 한쪽이 다른 쪽의 지분을 최소 20% 이상 직간접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경우를 말한다.)

나) 특례

- 생산업자 혹은 수입업자가 특수관계자를 통해 재화를 유통하는 경우 특별소비세 과세표준 산정을 위한 가격은 특수관계자가 해당 재화를 판매하는 가격으로 본다. 특수관계자가 재화판매를 대리하며 해당 수수료를 받는 영업을 하는 경우는 수수료를 제외한 생산업자 혹은 수입업자가 정한 가격으로 한다.
- 24인승 이하 수입자동차의 경우 특별소비세 과세표준 산정을 위한 판매가격은 수입업자가 정하도록 하되 수입가격의 105% 이하면 안 된다. 수입가격은 과세표준 (+) 수입관

세 (+) 특별소비세(수입업자가 세관에 지급한 금액)를 포함한 가격으로 본다. 수입업자가 수입가격의 105% 이하 가격으로 판매 할 경우 과세당국은 특별소비세 과세표준을 재계산 할 수 있다.

- 24인승 이하 자동차를 조립 또는 제조하는 경우 특별소비세 과세표준의 산정 근거가 되는 판매가격은 해당 월에 동일한 업자가 제조한 동일한 제품의 판매가격으로 하되 특수관계자에게 판매하는 평균가격 대비 7% 이하는 인정되지 않는다.
- 수입단계에서 세관에 특별소비세를 납부한 물품의 과세표준은 다음과 같이 산정한다.

$$\text{특별소비세 과세표준} = \text{수입관세 과세가격} + \text{수입관세}$$

관세 감면, 면제 대상 재화인 경우 과세표준은 감면 혹은 면제된 금액을 제외한다.

- 임가공품의 경우 과세표준은 가공위탁자가 판매하는 가격 또는 동일한 시점에 판매되는 유사하거나 동일한 제품의 부가가치세, 환경보호세, 특별소비세를 제외한 판매가격으로 한다.
- 생산업자와 상표 및 기술 사용권 또는 소유권을 보유한 업자가 합작형식으로 생산한 제품의 경우 특별소비세 과세표준은 부가가치세와 환경보호세를 제외한 판매가격으로 한다. 생산업자가 허가를 받아 제품을 생산하거나 유통 목적으로 베트남 소재 외국계 본사의 지사나 대리업자에게 제품을 납품한 경우 특별소비세 과세표준은 해당 지사나 대리업자가 판매하는 가격으로 한다.
- 할부 또는 이연 결제로 판매된 상품의 경우 특별소비세 과세표준은 부가가치세, 환경보호세, 특별소비세 및 할부, 지연이자 등을 제외한 금액으로 한다.
- 내부 소비, 교환, 수수 등의 경우 특별소비세 과세표준은 같은 시점에 발생한 동일하거나 유사한 재화 또는 용역의 특별소비세 과세표준으로 한다.
- 수출업자가 특별소비세 부과 대상 재화를 구매 후 수출하지 않고 국내에서 유통하는 경우 특별소비세 과세표준은 특별소비세, 환경보호세, 부가가치세 등을 포함하지 않은 가격으로 시장가격 대비 7% 이상 낮은 가격은 인정되지 않는다.
- 골프 사업의 경우(골프장 사업 포함) 특별소비세 과세표준은 골프회원권, 티켓 판매, 골프코스 유지관리 및 운영, 전동차 및 캐디 대여, 보증금 및 기타 관련 수익에서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한다. 보증금이 반환되는 경우 보증금과 관련하여 지급된 특별소비세는 차기 납부금액에서 공제 혹은 규정에 따라 환급된다. 골프 사업자가 특별소비세 부과 대상이 아닌 사업(호텔, 음식, 잡화판매 등)을 하는 경우 해당 사업 부분에 대해

서는 특별소비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 사행성 게임 등의 사업을 하는 경우 특별소비세 과세표준은 매출액에서 당첨자에게 지급한 금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
- 나이트클럽, 마사지, 노래방 업소의 경우 특별소비세 과세표준은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서비스의 가격이다(음식물 판매 서비스, 사우나 등 포함).
- 복권 사업의 경우 특별소비세 과세표준은 법률에서 허용되는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복권 판매 매출금액으로 한다.

2) 세율

순서	재화, 용역	세율(%)
I	재화	
1	담배, 시가, 기타 담배제품(필터 담배)	75
2	증류주	
	a) 20도 이상 증류주	65
	b) 20도 이하 증류주	35
3	맥주	65
4	24인승 미만 자동차	
	a) 10인승 미만 자동차(본 조에 규정된 세표의 4d, 4e, 4g항에서 언급된 경우 제외)	
	- 500cc 이하	35
	- 1500cc 이상 2000cc 이하	40
	- 2000cc 이상 2500cc 이하	50
	- 2500cc 이상 3000cc 이하	60
	- 3000cc 이상 4000cc 이하	90
	- 4000cc 이상 5000cc 이하	110
	- 5000cc 이상 6000cc 이하	130
	- 6000cc 이상	150
	b) 10인승 이상 16인승 미만 자동차(본 조에 규정된 세율표의 4d, 4e, 4g항에서 언급된 경우 제외)	15
	c) 16인승 이상 24인승 미만 자동차(본 조에 규정된 세율표의 4d, 4e 4g항에서 언급된 경우 제외)	10

순서	재화, 용역	세율(%)
	d) 승객&화물 운송 자동차(본 조에 규정된 세표의 4d, 4e 4g항에서 언급된 경우 제외)	
	- 2500cc 이하	15
	- 2500cc 이상 3000cc 이하	20
	- 3000cc 이상	25
	d) 휘발유, 전기, 바이오에너지를 연료로 하는 자동차(휘발유 사용의 비율은 사용에너지의 70%를 초과하지 아니한다)	세율표의 4d, 4e 4g 항에서 언급된 동일한 차종 대비 70% 부과
	e) 바이오에너지를 연료로 하는 자동차	세율표의 4d, 4e 4g 항에서 언급된 동일한 차종 대비 50% 부과
	g) 전기차	
	- 9인승 미만	15
	- 10인승 이상 16인승 미만	10
	- 16인승 이상 24인승 미만	5
	- 화물, 승객 동시 수송차량	10
	h) 모터홈(배기량 무관)	75
5	125cc 이상의 각종 이륜차 및 삼륜차(바퀴가 둘 혹은 셋 달린 차)	20
6	항공기	30
7	요트	30
8	모든 종류의 가솔린	
	a) 가솔린	10
	b) E5	8
	c) E10	7
9	90000BTU 이하의 에어컨	10
10	오락용 카드	40
11	각종 향전용품(유령돈 및 유령제물, 사원 등에서 사용되는 용품)	70
II	용역/서비스	
1	나이트클럽	40
2	마사지업소, 노래방 업소	30
3	카지노, 사행성게임	35
4	마권 및 자동차경주 복권 판매	30
5	골프: (회원권 및 골프장 사용권 판매)	20
6	복권	15

라. 특별소비세 신고기간

유형	특별소비세 부과 시점
재화	대가 지급 여부와 관계없이 구매자에게 재화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 이전된 시점
용역	대가 지급 여부와 관계없이 용역 제공 완료 시점 또는 용역 제공서류 구비 시점
수입품	관세신고서 제출 시점

마. 특별소비세 공제

특별소비세 부과대상인 생산업자가 생산용 원자재(해외로부터 수입하거나 국내에서 구입한 원자재를 포함)에 대한 특별소비세를 납부하고, 그 원자재를 사용하여 제품을 생산 및 판매한 경우 사용한 생산용 원자재에 대한 특별소비세를 공제받을 수 있다.

바. 감면

특별소비세 부과대상인 생산업자가 갑작스러운 천재지변 등으로 인해 불이익을 당한 경우 특별소비세가 감면된다. 감면액은 실제 피해수준을 고려하여 산정하며 해당연도 납부세액의 30% 또는 보상 이후 자산가치를 초과할 수 없다.

사. 환급

다음의 경우에는 특별소비세를 환급받을 수 있다.

- 특별소비세를 납부한 재수출용 임시수입 물품으로 재수출 대기 중이며 세관의 관리하에 국경 관문의 창고에 보관 중인 경우 기납부한 특별소비세를 환급받을 수 있다.
- 수출용 재화 생산에 사용할 목적으로 수입한 원자재에 대해 특별소비세를 납부한 경우, 해당 재화 수출 시 기납부한 수입 원자재에 대한 특별소비세를 환급받을 수 있다.
- 합병, 통합, 분할, 해산, 파산, 소유권 이전, 기업 전환, 영업활동 중단 시 과다납부한 특별소비세 금액을 환급받을 수 있다.
- 법률 규정에 따라 관할기관이 특별소비세 환급 결정을 하는 경우 또는 베트남이 참여한 국제조약 규정에 따라 특별소비세 환급을 받는 경우

2. 천연자원세

가. 현행법령

발행기간	문서명		
2010/07/01 ~ 현재	천연자원세에 관한 제45/2009/QH12 법률	2010/07/01	
	천연자원세법에 관한 제50/2010/NĐ-CP 정부 시행령	2010/07/01	
	세무관리법 일부개정사항에 관한 제71/2014/QH13 법률	2015/01/01	
	제71/2014/QH13 법률에 관한 제12/2015/NĐ-CP 시행령	2015/01/01	
	천연자원세에 관한 제152/2015/TT-BTC 시행규칙	2015/11/20	
	제152/2015/TT-BTC 시행규칙 개정에 관한 제12/2016/TT-BTC 시행규칙	2016/07/01	
	물리적 또는 화학적 성질이 유사한 자원 종류에 대한 천연자원세에 관한 제44/2017/TT-BTC 시행규칙	2017/07/01	

나. 적용대상

1) 과세대상

천연자원세 과세대상은 베트남의 주권이 미치는 모든 내륙, 도서, 내수로, 영해, 연안, 경제특수구역 등에서 채취된 모든 천연자원이다.

- 금속
- 비철금속
- 원유
- 천연가스, 석탄가스
- 산림작물, 동물 제외
- 자연해산물, 해양 동물 및 식물 포함
- 천연광천수: 지표수와 지하수(농림어업용, 염전업용, 기계 냉각수용 해양수 제외)
- 천연 제비집

2) 납세의무자

천연자원을 채취하는 개인 또는 법인은 천연자원세 납부의무를 가진다.

다. 세금 산출방법

$$\text{천연자원세} = \text{과세대상 채취량} \times \text{단위당 과세표준} \times \text{세율}$$

1) 과세대상 채취량

구분	과세대상 채취량
자원채취	
수량, 중량 등이 확인 가능한 경우	과세기간 내 실제 채취량
다양한 수준, 품질 또는 상업적 가치를 가지는 자원 채취의 경우	동일한 수준, 품질 또는 상업적 가치를 가진 각 자원별 채취량 혹은 가장 높은 판매량을 가진 자원을 기준으로 계산된 채취량
타 물질 및 불순물의 존재로 인해 실제 채굴량을 정확히 산출할 수 없는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각 물질별로 분류된 경우: 선별 혹은 구별 작업 이후 순수 자원의 실제 채굴량 ✓ 광물 추출물이 여러 물질로 구성되어 있어 선별, 구별 작업 후에도 각 물질별 채굴량을 산출할 수 없는 경우 실제 총채굴량에서 각 물질이 차지하는 비율로 안분계산
판매목적이 아닌 타 제품생산을 위해 채굴된 자원	실제 채굴량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과세기간 동안 자원을 이용하여 생산된 제품량과 제품 단위당 사용량을 기준으로 계산
천연광천수	
수력발전용수	전기매매계약서에 따라 발전소에서 구매자에게 공급되는 생산량 또는 전기매매계약서가 없는 경우 베트남 품질평가기준 측정시스템에 의해 산출되며 구매자, 판매자 혹은 할당자, 수령자가 확인하는 생산량
상업용 또는 생산용 천연광천수, 천연온천, 정제수	베트남의 품질 측정 기준에 따라 m ³ 또는 리터(L) 단위로 측정

2) 천연자원세 과세표준

- 천연자원세 과세표준은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단위당 자원 판매가격으로 한다.
- 판매가격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 과세표준은 다음과 같이 산정된다.
 - ✓ 동일한 자원 1단위의 실제 판매가격
 - ✓ 개발자원은 다양한 성분이 포함된 경우 과세표준은 개발자원의 각 성분의 함량 및 단위의 판매가격에 따라 확인된다.
- 천연광천수가 수력발전용수로 사용된 경우 전기판매가격으로 한다.

- 목재의 경우 납품지에서의 판매가격으로 한다.
- 수출용 채굴 자원의 경우 수출가격으로 한다.

(*) 주의: 위와 같이 산정된 천연자원세 과세표준은 각 성 인민위원회가 정한 과세표준보다 낮아서는 안 된다.

라. 천연자원세율

자원별 세율표(원유, 천연가스 등 제외)

순서	자원 종류	세율(%)
I	금속	
1	철	14
2	망간	14
3	티탄	18
4	금	17
5	희토류	18
6	백금, 은, 주석	12
7	볼프람, 안티몬	20
8	납, 아연	15
9	알루미늄, 보크사이트	12
10	동	15
11	니켈	10
12	코발트, 몰리브덴, 수은, 마그네슘, 바나듐	15
13	기타 금속	15
II	비철금속	
1	건설용 간척지	7
2	돌, 돌맹이	10
3	석회·시멘트 제조용 돌	10
4	대리석	15
5	모래	15
6	유리 제조용 모래	15
7	벽돌 제조용 흙	15
8	화강암	15

순서	자원 종류	세율(%)
9	내화점토	13
10	백운석, 규암	15
11	고령토	13
12	운모, 석영	13
13	황철석, 인회석	10
14	광물인회석	8
15	사문석	6
16	매장 무연탄	10
17	노천 무연탄	12
18	갈탄, 역청탄	12
19	기타 석탄	10
20	금강석, 루비, 사파이어	27
21	에메랄드, 묘안석(알렉산드라이트), 단백석(흑오팔)	25
22	로돌라이트, 파이로프, 남옥(아쿠아마린), 첨정석(스피넬), 황옥(토파즈)	18
23	청색, 황색, 주황색 석영; 빙정석, 백색, 적색 오팔, 장석, 터키석, 연옥	18
24	기타 비철금속	10
III	천연산림작물	
1	1등급 목재	35
2	2등급 목재	30
3	3등급 목재	20
4	4등급 목재	18
5	5, 6, 7, 8등급 목재 또는 기타 목재	12
6	가지, 꼭대기, 뿌리	10
7	숯	5
8	대나무과	10
9	침향나무	25
10	아니스, 계피, 카르다몸, 초과	10
11	기타 천연숲 자원	5
IV	천연해산물	
1	진주, 전복, 해삼	10
2	기타 천연해산물	2

순서	자원 종류	세율(%)
V	천연광천수	
1	천연광천수, 천연온천, 정제수	10
2	수력발전용수	5
3	위 1, 2에서 규정된 천연광천수를 제외한 상업, 공업 등 용수	
3.1	지표수	
a	상수도 제조용	1
b	기타 용도	3
3.2	지하수	
a	상수도 제조용	5
b	기타 용도	8
VI	천연제비집	20
VII	기타 자원	10

원유, 천연가스, 석탄가스 등에 대한 세율표

순서	생산량	세율(%)	
		투자촉진사업	기타 사업
I	원유		
1	일 2만배럴 이하	7	10
2	일 2만배럴 이상 5만배럴 이하	9	12
3	일 5만배럴 이상 7,5만배럴 이하	11	14
4	일 7,5만배럴 이상 10만배럴 이하	13	19
5	일 10만배럴 이상 15만배럴 이하	18	24
6	일 15만배럴 이상	23	29
II	천연가스, 석탄가스		
1	일 500만 ^m 이하	1	2
2	일 500만 ^m 이상 1000만 ^m 이하	3	5
3	일 1,000만 ^m 이상	6	10

마. 천연자원세 면제, 감면

1) 면제

천연자원세가 면제되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 천연수산물을 채취하는 법인 또는 개인
- 수력발전용수로 사용할 목적으로 천연광천수를 채취하는 법인 또는 개인
- 할당 수령 및 임차 부지, 군사, 건설안전, 개간사업 등에 사용되는 부지

2) 감면

- 납세의무자는 갑작스러운 천재지변 등으로 인해 불이익을 당한 경우 신고 절차를 통해 천연자원세를 감면, 면제받을 수 있다. 이미 납부한 천연자원세의 경우 차기 납부액에서 차감하거나 환급을 받을 수 있다.

3. 비농업용 토지세

비농업용 토지세는 농업 외의 목적으로 토지를 사용하는 자에게 부과하는 세금이다.

가. 현행법령

발행기간	문서명	발효일	만료일
2012/01/01 ~ 현재	비농업용 토지 사용세에 관한 제48/2010/QH12 법률	2012/01/01	
	제48/2010/QH12법을 시행에 관한 제53/2011/NĐ-CP호 시행령	2012/01/01	
	비농업용 토지 사용세에 관한 제153/2011/TT-BTC 시행규칙	2012/01/01	
	비농업용 토지 사용세 산정을 위한 토지면적 측정에 관한 제45/2011/TT-BTNMT 시행규칙	2012/01/01	

나. 적용범위

1) 과세대상

- 도시 또는 지방의 거주용 토지
- 비농업 생산과 영업용 토지
 - ✓ 클러스터, 산업단지, 수출용 임가공업 단지, 기타 생산과 영업을 위한 토지
 - ✓ 산업용 부지, 상업용 부지, 제조 및 생산과 관련된 공사 건설용 부지(하이테크 및 경제단지 내 제조와 경영 소재지 건설용 부지 포함)
 - ✓ 광산채취, 광산물 가공에 사용되는 부지(지표면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광산채취 제외)
 - ✓ 원료 채취 및 건설자재 생산 및 가공 부지, 도자기 제작에 사용되는 토지
 - ✓ 법인·가족경영·개인이 사업 용도로 사용하는 비농업용 토지

2) 비과세대상

비과세대상인 비농업용 부지는 다음과 같다.

- 공공 목적으로 사용되는 토지: 도로, 관개 토지, 공공이익을 위한 문화, 의료, 교육, 체육 등의 건축물을 위한 토지, 역사, 문화 유적지가 보존되어 있는 토지, 기타 정부규정에 따른 공공건축물을 위한 토지
- 종교단체가 사용 중인 토지
- 묘지, 묘장을 위한 토지
- 사원, 성지, 암자, 사당, 조상 예배당 등의 건축물이 있는 토지
- 국가기관 본사 또는 국방&안보 목적의 건축물 건설을 위한 토지
- 법에 따른 기타 비농업 토지

3) 납세의무자

- 과세대상인 토지에 대한 사용권을 보유한 개인 및 가족 또는 법인
- 토지 사용권 및 관련 건축물 등에 대한 소유권 증명서를 발급 받지 못한 경우 납세의무자는 실제 사용자로 본다.
- 납세의무자의 구체적인 사례는 아래와 같다.

구분	납세의무자
투자사업 이행을 위한 정부의 부지 수령 및 임차	정부에서 토지의 할당 및 임대를 받은 자
계약서에 따라 부지 임대하는 토지 사용권 보유자	계약서의 협상에 따라 확정. 계약서상 협상 조항이 없는 경우 토지 사용권 보유자를 납세의무자로 인정
토지 사용권이 발행되었으나 분쟁 중인 부지	분쟁 해결 전까지는 토지사용자를 납세의무자로 간주
하나의 부지에 다수의 토지 사용권 보유자가 있는 경우	해당 토지 사용권 보유자들의 합법적 대리인
토지 사용권을 가진 자가 현물출자하여 과세대상 토지의 사용권을 보유하게 된 신설 법인	신설법인
정부 소유권의 주택 임차	임대인(세입자와 계약 체결 위임 받는 자)
판매 및 임대용 주택의 건설 사업 이행을 위해 정부로부터 할당 받거나 임대한 부지	정부에서 토지의 할당 또는 임대를 받은 자. 타 법인 또는 개인에게 토지 사용권을 양도하는 경우 토지 사용권양수인

다. 산출방법

$$\text{비농업용 토지} = \text{과세토지면적(m}^2\text{)} \times \text{토지의 m}^2\text{당 가격(VND/m}^2\text{)} \times \text{세율(\%)}$$

1) 과세토지면적

과세토지면적은 실제 사용 중인 비농업용 토지의 면적으로 한다.

- 중앙정부 소속 성, 도시(이하 성이라 한다) 내 다수의 부지를 보유한 경우 과세토지면적은 성 내 과세대상인 부지들의 총면적으로 한다.
- 토지 사용권이 발급된 경우 과세토지면적은 토지 사용권에 따른 면적이다. 토지 사용권 면적이 실제 토지면적보다 작은 경우 과세토지면적은 실제사용면적으로 한다.
 - ✓ 토지 사용권이 미발급된 부지를 다수의 법인, 가족경영, 개인이 사용하는 경우 과세 토지면적은 각 납세의무자가 실제 사용하는 토지면적으로 한다.
 - ✓ 토지 사용권이 발급된 부지를 다수의 법인, 가족경영, 개인이 사용하는 경우 과세토지면적은 사용권에 따른 면적으로 인정한다.
 - ✓ 주거 및 사업 용도로 다수가 사용하는 다층 주택 또는 아파트 용지의 경우 각 법인, 가족경영, 개인의 과세토지면적은 각 자의 사용면적 비율을 기준으로 산출한 분배율을 전체면적에 적용해 산출한다. 분배율 계산은 다음과 같다.
 - 지하층 없는 경우

$$\text{분배율} = \frac{\text{다층 주택과 아파트의 건설 토지면적}}{\text{법인, 가족경영, 개인이 사용 중인 총면적}}$$

- 지하층 있는 경우

$$\text{분배율} = \frac{\text{다층 주택과 아파트의 건설 토지면적}}{\text{법인, 가족경영, 개인이 사용 중인 총면적(지상 부분)} + \text{법인, 가족경영, 개인이 사용 중인 50\%의 지하 면적}}$$

- 지하 건축물만 있는 경우

$$\text{분배율} = \frac{0.5 \times \text{지하 건축물에 상당한 토지면적}}{\text{법인, 가족경영, 개인이 사용 중인 건축물의 총면적}}$$

2) 과세 토지의 m²당 가격

- 해당 성급 인민위원회에서 2012년 1월 1일부터 5년 주기로 발표되어 그 기간 동안 유지되는 토지가격을 기준으로 한다.
- 토지가격 유지기간 동안 납세의무자 변경 또는 과세토지의 m² 토지당 가격 변동 요소가 발생한 경우에도 이후 기간 동안 토지가격은 변동하지 않는다.
- 토지가격 유지기간 동안 정부에서 토지의 할당 및 임대, 농업용 토지를 비농업용 토지로 또는 비농업용 생산 및 운영 토지를 주거용 토지로 용도 변경하는 경우 과세토지의 m² 토지당 가격은 토지 할당 또는 변경 시점에 성급 인민위원회에서 규정한 용도별 토지가격을 적용한다.
- 부당한 용도로 사용된 토지 혹은 잠식되거나 전용된 토지의 경우 과세토지의 m² 토지당 가격은 성급 위원회에서 규정한 용도별 토지가격을 적용한다.

3) 세율

구분	세율(%)
토지 할당 한도 적용 대상인 주거 용지(*)	
• 한도 내 면적	0.03
• 초과 면적이 한도보다 3배 이하	0.07
• 초과 면적이 한도보다 3배 이상	0.15
많은 가정이 생활하는 다층 주택·아파트·지하 건축물의 용지	0.03
비농업용 제조와 경영 용지	0.03

구분	세율(%)
투자사업 중인 용지	0.03
부당한 용도 사용 중인 토지, 규정과 달리 사용 중인 토지	0.15
잠식지	0.2

주: (*) 주의: 과세토지한도는 중앙정부 소속의 도시 및 성 위원회의 토지할당 한도규정을 따른다.

라. 감면/면제 원칙

- 납세의무자가 한 부지에 관하여 감면, 면제를 동시에 받을 수 있는 경우 면제를 적용한다. 납세의무자가 둘 이상의 감면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면제를 적용한다.
- 납세의무자가 감면, 면제 대상인 다수의 사업을 보유한 경우 각 투자사업별로 감면, 면제를 적용한다.

1) 면제대상

- 투자우대분야의 사업 용지로 저개발 지역에 대한 투자가 이루어졌고 전쟁 상이군인 고용비율이 50% 이상인 사업자의 토지
- 교육, 직업양성, 의료, 문화, 체육, 환경 분야의 활동을 수행하는 기관이 보유한 토지. 해당 기관은 수상(Prime Minister) 결정문의 규모 및 정도에 관한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 불가항력의 사건으로 인해 납세의무자의 토지와 지상물의 손해가 과세가격의 50% 이상인 경우

2) 감면대상

다음의 경우에 해당하면 50% 세액 감면을 받을 수 있다.

- 투자우대분야의 사업 용지로 저개발 지역에 대한 투자가 이루어졌고 전쟁 상이군인 고용비율이 20~50% 사이인 사업자의 토지
- 불가항력의 사건으로 인해 납세의무자의 토지와 지상물의 손해가 과세가격의 20~50% 사이인 경우

4. 환경보호세

환경보호세란 환경을 오염시키는 등 환경에 악영향을 미치는 재화 품목 사용에 대한 간접세이다.

가. 현행법령

발행기간	문서명	발효일	만료일
2012/01/01 ~ 현재	환경보호세에 관한 제57/2010/QH12 법률	2012/01/01	
	환경보호세법에 관한 제67/2011/NĐ-CP 시행령	2012/01/01	
	제67/2011/NĐ-CP 시행령에 관한 제152/2011/TT-BTC호 시행규칙	2012/01/01	
	제67/2011/NĐ-CP 시행령 보완&개정사항에 관한 제69/2012/NĐ-CP 시행령	2012/11/15	
	제152/2011/TT-BTC 시행규칙 개정사항에 관한 제159/2012/TT-BTC 시행규칙	2012/11/15	
	제152/2011/TT-BTC 시행규칙 개정사항에 관한 제106/2018/TT-BTC 시행규칙	2019/01/01	

나. 적용범위

1) 적용대상

환경보호세는 다음과 같은 재화 품목에 적용된다.

- 휘발유, 기름, 윤활유
- 석탄
- 수소염화불화탄소 용액(HCFC)
- 나일론봉투(환경보호세 적용대상)
- 사용이 제한된 제초제
- 사용이 제한된 흰개미약
- 사용이 제한된 산림작물 보관제
- 사용이 제한된 창고살균제

세부 사항은 세표 제3항에서 구체적으로 제시된다.

2) 비과세대상

2.1항에서 언급된 재화 품목은 다음과 같은 경우 해당하면 베트남 영토에서 환경보호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 세표 제3항에 해당하지 않는 제품의 경우
- 외국에서 외국으로 운송되는 재화로서 베트남 국경 관문을 통해 수입 또는 수출 절차를 수행하지 않은 제품의 경우
- 베트남 국경 관문을 거쳐 운송되는 재화의 경우
- 재수출용 임시수입 제품의 경우
- 수출입 재화, 수입원재료를 사용해 가공된 제품 포함

3) 납세의무자

- 제품 생산업자 또는 수입업자
- 수입 수탁업자
- 임가공 수탁업자 및 베트남에서 판매 위탁업자
- 소규모 석탄 매매업자가 해당제품에 대한 환경보호세 납부를 증명하지 못하는 경우

다. 세금 산출방법

과세표준

$$\text{환경보호세} = (\text{a})\text{과세재화단위의 수량} \times (\text{b})\text{재화 1의 단위당 절대금액}$$

1) 과세대상

- 국내 제조의 경우: 국내에서 제조, 판매, 교환, 소비, 기부, 광고 등의 용도로 사용하는 제품량
- 수입의 경우: 실제 수입량

2) 절대금액은 다음 표와 같이 규정된다.

순서	재화	단위	세율(절대금액) (재화 단위당 VND)
I	휘발유, 기름, 윤활유		
1	에탄올을 제외한 휘발유	리터	4,000
2	항공연료	리터	3,000
3	디젤유	리터	2,000
4	케로신(등유, 석유)	리터	1,000
5	마주트유	리터	2,000
6	윤활유	리터	2,000
7	그리스(기름)	킬로	2,000
II	석탄		
1	갈탄	톤	15,000
2	무연탄	톤	30,000
3	역청탄	톤	15,000
4	기타 석탄류	톤	15,000
III	수소염화불화탄소(HCFC 혼합제에 있는 HCFC용액 포함)	킬로	5,000
IV	나일론봉투(환경보호세 적용대상)	킬로	50,000
V	사용이 제한된 제조제	킬로	500
VI	사용이 제한된 흰개미약	킬로	1,000
VII	사용이 제한된 산림작물 보관제	킬로	1,000
VIII	사용이 제한된 창고살균제	킬로	1,000

주: (*) 주의:

- (1) 과세 휘발유, 기름, 윤활유는 화석계 연료로 에탄올, 식용유 등의 프로바이오틱스를 포함하지 않는다.
- (2) 화석계 연료인 휘발유, 오일, 그리스 또는 바이오 연료를 포함하는 혼합 연료의 경우 과세기간의 과세 수량은 실제 수입 또는 생산, 교환, 내부소비된 혼합 연료에 화석계 연료의 함유량으로 보며 해당 과세 단위는 다음과 같다.
과세대상 화석계 연료량=수입, 생산, 교환 등의 혼합 연료량×혼합 연료의 화석계 연료 함유율(%)
- (3) 과세대상 HCFC용액은 반도체 산업에 사용되는 액체 냉매로 국내에서 생산 또는 해외에서 별도 혹은 기계에 저장되어 있는 형태로 수입된 오존을 파괴하는 물질을 말한다.
- (4) 과세 나일론봉투는 봉지의 형태로 되어 있는 제품으로 각각 밀면, 벽면 등이 있는 단층 HDPE(고밀도 폴리에틸렌 수지), LDPE(저밀도 폴리에틸렌) 또는 LLDPE(선형 저밀도 폴리에틸렌 수지)로 제조된 얇은 나일론 봉투이다. 다음의 경우는 제외한다.
 - ✓ 수입품 포장지나 개인 또는 법인, 가게 등이 직접 생산하거나 수입 또는 생산업자나 수입업자로부터 구매한 포장지, 판매 시 사용되는 봉지 제외
 - ✓ 친환경 기준을 충족하는 나일론봉투
- (5) VI, VII, VIII장에 언급된 제품은 2018년 9월 26일에 체결된 제579/2018/UBTVQH14 의결 부록에서 구체적으로 규정된다.

라. 환경보호세 환급

다음의 경우에는 환경보호세를 환급받을 수 있다.

- 재수출용 임시수입 물품은 재수출 대기 중이며, 세관의 관리하에 국경 관문의 창고에 보관되고 있는 경우
- 베트남 유통업자(대리점)를 통해 외국으로 납품하는 목적으로 수입된 경우
- 베트남 공항 또는 항만 등을 거치는 외국계 이동수단에 판매되는 연료 또는 외국 공항 또는 항만 등을 거치는 베트남계 이동수단에 판매되는 연료
- 재수출용 임시 수입 제품
- 수입업자가 재수출하는 수입 제품(반품 경우 포함)
- 전시회, 박람회, 제품소개를 위한 일시수입품

5. 등록세

등록세란 면제 경우를 제외하고는 부과대상에 해당하는 재산을 소유하는 법인 또는 개인이 재산상의 소유나 사용 권리를 등록할 때 관할 국가기관에서 부과하는 세를 말한다.

가. 과세대상

- 주택, 토지 등의 부동산
 - ✓ 거주용, 상업용을 비롯한 다양한 용도의 주택
 - ✓ 토지법에 따른 법인 또는 개인이 소유하거나 사용권을 가진 농업용 또는 비농업용 토지(건축물 유무는 상관없음)
- 사냥용 라이플 또는 훈련, 운동경기용 총기류
- 바지선, 카누, 연락선, 예인선 등의 선박
- 요트 등 관할 국가기관에 소유권 등록이 의무 대상인 선박
- 항공기
- 이륜차, 삼륜차 등 원동기를 장치하여 그 동력으로 바퀴가 돌아가게 만들고 관할 국가기관에 번호 등록 의무대상에 해당하는 차(이하 xe máy - 오토바이라고 함)
- 자동차나 부속차량, 트레일러 등 관할 국가기관에서 번호 등록 의무대상에 해당하는 자동차 종류

기계 및 장비는 관할기관에 의해 소유자 및 변호관 등록의무를 갖더라도 도로교통법상 자동차로 분류되지 않는 경우 등록세를 부담하지 않는다.

나. 납세의무자

등록세 과세대상 자산을 소유한 법인 또는 개인은 소유권이나 사용권을 등록하기 전에 관할 국가기관에 등록세를 납부하여야 한다(면제 경우 제외).

다. 등록세 산출

등록세는 등록세 대상 가격에 등록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다.

라. 등록세 신고, 납부

등록세는 등록의무 발생 시 신고한다. 납세의무자는 관할당국으로부터 통지서에 서명한 날로부터 30영업일 이내에 지정된 관할세무서에 납부한다.

마. 국제협약/조약 적용

베트남이 가입한 국제 협약/조약이 베트남 국내법과 다른 경우 국제협약/조약 내용을 우선하여 적용한다.

6. 영업세

영업세는 매년 납부해야 한다. 영업세는 자본금액이나 매출액을 기준으로 산출한다.

가. 기업의 영업세 기준

순서	자본금/투자자본금	영업세액
1	자본금 또는 투자자본금 100억동 이상의 법인	년 300만동
2	자본금 또는 투자자본금 100억동 미만의 법인	년 200만동
3	지사, 대표 사무소, 영업소 등	년 100만동

자본금/투자자본금 확인 근거

- 사업자등록증이나 협동조합정관 등의 서류에 기재된 자본금
- 투자증명서나 투자결정서 등의 서류에 기재된 투자자본금
- 자본금, 투자자본금 변경이 있는 경우 해당 연도의 영업세는 전년도 등록 자본금, 투자자본금을 기준으로 산출

나. 개인, 가구의 영업세 기준

순서	매출액(년/백만)	영업세액
1	500만동 이상	100만동
2	300만동 이상 ~ 500만동 이하	50만동
3	100만동 이상 ~ 300만동 이하	30만동

매출액 확정 근거

- 개인 또는 가구의 영업세 산출을 위한 매출액은 소득세 과세대상 매출액으로 한다.
- 개인 또는 가구의 매출액 변경이 있을 경우 전년도 소득세 과세대상 매출액을 기준으로 한다.
- 당해 새로 영업을 개시한 경우 영업세 산출을 위한 매출액은 해당 과세연도의 매출액이다.

유의사항

- 새로 영업을 개시한 개인 또는 법인, 가구가 세금코드와 사업코드를 부여받은 경우
 - ✓ 상반기에 부여받은 경우: 1년치 영업세 납부
 - ✓ 하반기에 부여받은 경우: 1년치 영업세의 50% 납부
- 개인 또는 법인, 가구가 영업 활동을 하면서 영업세를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는 1년치 영업세를 기준으로 100% 납부해야 한다.
- 개인 또는 법인, 가구가 세무당국에 1년 간의 영업중단통지서를 발송한 경우 해당 연도에 대해서는 영업세를 납부하지 않는다. 다만, 영업 중단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1년치 영업세의 100%를 납부해야 한다.

다. 영업세 신고, 납부 시기

	구분	신고	납부
법인	영업 개시 이후 영업세를 신고하는 경우	영업 개시 달의 마지막 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매년 1월 30일까지 • 신규 영업 법인의 경우 영업세 납부 기한 경과 이전
	본격적인 영업활동 개시 이전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발급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	
개인 또는 가구	일회 납부	영업세 신고 의무 없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매년 1월 30일까지 • 일회 납부의 경우 신고의무가 발생월 익월 말일까지

제3장 한국 투자자의 주요 세무 이슈

- I. 베트남 외국인투자자의 사업 유형별 세무 관련 유의사항
- II. 사업 유형별 세무 이슈

제3장 | 한국 투자자의 주요 세무 이슈

I 베트남 외국투자자의 사업 유형별 세무 관련 유의사항

1. 베트남 외국투자자의 사업 유형

베트남에서 투자·경영 활동을 진행함에 있어 외국투자자의 요구에 따라 각종 사업 유형을 택할 수 있다. 투자자가 베트남에 투자 진출 의향이 있는 경우 대표적인 참고 유형과 세무관련 유의사항은 다음과 같다.

	외국인계약자	베트남에서 설립된 법인		외국사업자의 지사	대표사무소
		수출전용기업 (EPE)	일반법인		
총론	<ul style="list-style-type: none"> 베트남에서 법인 설립 없이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베트남 측과 계약을 체결하는 외국사업자(베트남에 고정사업장이 있거나 없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수출가공단지 내 설립과 운영 중인 법인 혹은 산업단지, 경제지역에서 수출하기 위하여 제조 활동을 하고 있어 유관기관에서 수출가공법인으로 인정되는 법인 수출가공단지, 수출전용기업과 기타 비관세 단지 간의 재화 교환 관계는 수출입의 관계이며, 수출전용기업이 해당 법인 사무실의 건설공사, 운영의 지원 그리고 직원의 생활의 용도로 구입하는 베트남 내수 건설자재, 사무용품, 식량, 식품, 소비용품을 제외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일반법인은 수출가공법인으로 등록되지 않은 법인이다. 일반법인은 수출가공법인으로 전환 또는 반대의 경우도 가능하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국제조약상 베트남의 용역에 관한 기약표에 따라 베트남에서 설립된 외국사업자의 지점 형식은 법무법인, 보험, 은행, 증권, 관리자문과 같은 분야에만 적용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베트남에서 외국사업자의 대표사무소는 외국사업자의 비독립조직이며 베트남법에 따른 시장조사와 일부의 무역촉진 활동을 위해 합법적으로 설립된다. 대표사무소는 베트남에서 직접 영리 활동을 해서는 안 된다.

	외국인계약자	베트남에서 설립된 법인		외국사업자의 지사	대표사무소
		수출전용기업 (EPE)	일반법인		
수입세					
	<ul style="list-style-type: none"> 베트남 당사자가 수입할 때 세금 신고와 납부 의무가 있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본적으로 수출가 공법인은 수출가공 단지에서 해외 수출 용 또는 해외 수입용 재화에 대한 수출입 세가 면제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수입세 과세대상의 수출입 재화에 관한 수출입세를 납부한다. 수출입세 면제는 투자 우대 지역 혹은 분야의 사업의 고정자산을 위한 수출입 재화 또는 수출제조를 위한 원재료, 자재 등과 같은 경우 적용한다. 		
부가세					
매출 부가세	<ul style="list-style-type: none"> 납세자는 적용 조건에 충족되면 다음에 해당되는 3가지 신고 방법 중 하나를 택할 수 있다. (i) 공제법 (ii) 직접법(원천징수법) (iii) 혼합법 (i), (iii) 방법 적용 경우 부가세율을 일반 기업과 동일하게 적용한다. (ii) 방법 적용 경우 부가세는 매출에 근거해서 산출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수출 재화 판매 시 매출부가세 비부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내수 재화, 용역에 대하여 5%, 10% 부가세율 적용 부가세법에 따른 증빙 있는 재화, 용역 0% 적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대표사무소에서 영리활동 진행이 불가하므로 매출부가세가 발생하지 아니한다. 	
매입 부가세	<ul style="list-style-type: none"> 매입부가세 공제는 (i), (iii) 방법에만 적용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수출전용기업의 수입 혹은 내수 재화, 용역은 0% 부가세 우대 적용되며 주택, 회의장, 사무실의 임대, 근로자 운송 용역 등과 같은 용역은 제외한다. 수출전용기업은 매입부가세 공제 대상이 아니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품목별 세율 적용(통상적 10% 적용) 매입부가세는 매출부가세와 공제할 수 있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품목별 세율 적용(통상적 10% 적용). 매입부가세는 대표사무소의 운영 용역으로 한다. 	
부가세 신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납세자는 (i), (iii) 방식을 적용하는 경우 부가세 신고 책임이 있다. 납세자가 (ii) 방식을 적용하는 경우 대가를 지급하는 베트남측은 신고 책임이 있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수출 활동에 관한 부가세 신고는 불필요하다. 베트남 내수 시장에 상품 판매, 무역 활동이 있는 경우 해당 수출가공법인은 해당 소득에 관하여 일반법인처럼 등록과 신고하여야 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법인은 월별 혹은 분기별로 부가세 신고와 납부 의무가 있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부가세 신고 대상 아님 	

외국인계약자	베트남에서 설립된 법인		외국사업자의 지사	대표사무소
	수출전용기업 (EPE)	일반법인		
법인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득에 관한 법인세 부과는 (i)방법에만 적용한다. 남은 2가지 방법의 경우 법인세는 매출에 근거해서 산출한다. • 법인세 신고 절차는 부가세 신고 절차와 유사하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통상적으로 법인은 소득에 관하여 법인세를 신고 납부하고 현행 세율인 20% 적용한다. • 투자사업이 인센티브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해당 법인은 규정에 의한 법인세 인센티브를 적용받는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법인세 부과 대상은 아니다. 		
개인소득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외국인계약자가 (i), (ii)방식에 따라 베트남에서 운영사무소를 설립하며 해당 운영사무소를 통하여 직원들의 소득을 지급하는 경우 운영사무소가 소득세공제, 신고와 납부를 수행한다. • 외국인계약자가 해외에서 개인에게 직접 소득을 지급하는 경우 해당 개인은 직접 법인세 신고와 납부할 책임이 있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법인은 규정에 따른 각 개인에게 지급한 소득에 관한 법인세의 공제, 신고와 납부한다. 			

주: (*) 유의: 수출전용기업은 유관기관의 승인하에 내수 시장에 대한 상품 판매 활동을 진행할 수 있다. 수출전용기업은 상품매매 활동과 관련된 활동에 대해 별도로 기장하며, 수출품 제조를 위한 재화 보관 구역과 별도로 해당 재화 보관 구역을 배정하거나 해당 활동을 위하여 수출전용기업 밖에서 별도의 장소를 지정해야 한다.

2. 베트남에서 설립된 법인의 (회계적)독립지점과 부속지점 간의 세금에 관한 유의사항

지점이란 법인에 비독립한 조직이며 법인의 일부 혹은 전부의 기능을 수행할 의무는 있다. 지점의 사업 업종은 법인의 업종과 동일하여야 한다.

법인은 지점 설립 시 (회계적)독립지점과 비독립 (부속)지점의 두 가지 방식을 택할 수 있다. 각 방식별 세무상 유의사항은 다음과 같다.

순서		(회계적)독립지점	비독립 (부속)지점
1	법인세 신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회계적)독립지점은 해당 과세관청에 법인세를 직접 신고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주사무소(본사)에서 합산하여 법인세를 신고한다. 비독립지점은 관리 과세관청에 별도의 법인세 신고서류 접수가 불필요하다. 법인의 사업장(가공, 조립업 포함)이 주사무소의 소재 중인 성, 중앙 수속 도시 지역과 동일하지 않는 경우 법인은 주사무소와 의존사업장이 소재하는 지역에서 납부할 법인세를 별도로 산출하여야 한다.
2	부가세 신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독립지점은 관리 과세관청에 부가세를 직접 신고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주사무소와 동일한 지역 소재 중인 경우 공동 혹은 별도로 신고 방법을 택할 수 있다. 지점이 주사무소와 다른 지역 소재 중인 경우 지사는 관리 과세관청에 부가세를 직접 신고한다. 해당 지점의 판매와 매출활동이 없는 경우 주사무소에서 합산하여 부가세를 신고한다.
3	개인소득세 신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법인이 근로자에게 소득을 지급하는 경우 법인은 근로자의 개인소득세 공제와 신고할 책임이 있다. 지점이 근로자 개인에게 소득을 지급하는 경우 지점은 근로자의 개인소득세 공제와 신고할 책임이 있다. 	

II 사업 유형별 세무 이슈

관련 법규 준수도를 향상하고 세무 이슈를 줄이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각 산업 유형별 일반적인 세무 이슈를 제기한다.

- 건설 및 부동산업
- 가공, 제조업
- 특수관계자거래

1. 건설 및 부동산업 기업의 경우

가. 매출금액 발생 & 세금계산서 발행 시점 오류

-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거나 시점이 잘못된 경우(ex. 기선수금에 대해 영수증 발행 & 세금신고하지 않고 선수금을 처리)
- 투자자는 불법 부가가치세 공제 신고 목적으로 건설기업에 선급금을 기준으로 세금계산서 발행을 요청한 경우
- 부동산 인수인계 시점과 다른 시점의 매출 확정: 부동산 인수인계를 완료하지만 사업 전부 완료해야 세금계산서와 결산의 목적으로 고의적으로 연장하는 행위
- 미지급 금액의 고객에게 청구서를 발행하지 않고 부동산을 인수인계한 행위, 거푸집 공사와 마감작업으로 나누는 계약의 경우 각각 단계별 청구서를 발행하지 않고 마무리하고 나서 하나의 청구서를 발행한 행위

나. 세금에 관한 위반 행위

- 개인 또는 법인은 비용 허위 청구(하청업자, 주계약업자 등의)와 부가가치세 공제의 목적으로 일련의 법인을 설립함(해당 업자 중 불법적 세금계산서 사용업자 한 군데 있음)
- 도급금 지불을 하기 위해 법인 설립이 안된 시공사들로 하여금 시공을 진행함. 또는 시공사들은 실제 받는 금액을 증빙 목적으로 불법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거나 계절근로의 대가를 지급하는 증명서를 허위 작성함
- 구매자로 하여금 대가를 먼저 지불하도록 하여 법인이 조건부 대출이나 조건부 자본 조달의 형식으로 결산한 경우, 일부의 사업을 기반 시설이나 기초 토지 공사가 완공되지

않은 상태로 선수금을 수취하고 토지를 양도하지만 이에 대한 과세수익을 신고하지 아니함

- 제품을 고가로 판매하고 세금계산서에서 실제 거래가격보다 낮은 가격을 기재한 경우
- 현금거래를 매출로 기록하지 않은 경우
- 공사 완공 후 여러 해가 지난 후 다음 감리 서류를 구비 못해 최초의 설계에 맞게 건설되지 못했다고 보여지며 부가가치세도 잘못 확정, 신고한 경우

다. 잘못된 회계처리에 의해 법인세 과세표준이 잘못된 경우

- 시공 중인 건설사업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비용을 해당 분기의 영업, 제조비로 포함시켜 결산하거나, 또는 건설사업과 무관한 비용을 해당 건설 사업비용으로 처리하는 것은 베트남 제15호 회계기준(VAS) 제16항 규정에 부합하지 않음
- 진행률에 의해 비용을 인식하지 않아(수익 비용 대응 하지 않음) 제15호 회계기준(VAS)의 제22항 규정과 부합하지 못함
- 고정자산 형성에 있어 대출이자비용의 자본화 유예가 제16호 회계기준의 제10항 규정과 부합하지 못한 경우
- 상실, 분해 등의 비용들은 부동산의 실제가격에 포함시켜 결산하여 제02호 회계기준의 제11항 규정과 부합하지 못한 경우

라. 기타 위반 행위

- 부가가치세 신고서(서식01) 작성 시 토지이용권 양도에 의한 매출을 신고하지 않은 행위(매입부가세를 포함시키지 않고 매출부가세를 납부하지 않음)
- 공제 가능한 토지 가격과 부가가치세 과세가격 확정에 있어 법률의 규정을 준수하지 못함 (관할 당국이 승인한 범위 외의 농업용 토지보상가격을 공제 가능 가격에 포함시킴. 또는 양도 계산상의 양도 가격과 불일치함. 개인소득세를 계약 내용에 반영하지 않음)
- 선급금을 기준으로 건설시공의 매입부가세 공제 신고
- 인수인계 완료된 부동산 가격을 불합리하게 산출한 경우
 - ✓ 임대를 위한 면적, 분양(소유자 있는) 등의 다른 상업 목적에 사용될 양도 불가 면적에 대한 발생 비용을 적절히 구분하지 않거나 구분이 부족한 경우
 - ✓ 내부도로 건설 비용, 녹지 조경 비용, 배수 설비 시스템, 변압기 등 설치 비용, 토지

상의 자산 배상 등을 비롯한 사업의 총편성된 비용에 있어 진도에 따른 비용이 면적에 비해 불합리한 경우

- 부동산 양도 및 다른 상업활동에 비용을 적절히 배분하지 않아 납부해야 할 법인세액을 줄임
- 관리 담당 부서가 없는 경우 주차비 매출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고 세금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
- 부동산 양도 및 다른 상업활동 또는 분양, 임대 등의 목적으로 건설된 주택과 공영주택 양도에 있어 비용을 불합리하게 분류 확정된 경우
- 과세수익을 줄이기 위해 건설, 설치 등의 비용을 토지이용권 양도 비용으로 계산한 경우
- 도주 폐업한 업체의 세금계산서로 비용을 인식한 경우
- 대출이자비용을 법률의 규정에 따라 자본화하지 않은 경우
- 대출받은 자가 대출이자비용을 공제 가능 비용으로 처리했지만,
 - ✓ 정관 자본금이 부족하거나 가장납입한 경우
 - ✓ 설명할 수 없는 제3자의 개인에게 선급금을 지급한 경우

2. 가공, 제조업 기업의 경우

가공, 제조업 기업의 경우 대부분의 세무관련 위반은 부가가치세나 법인세와 관련된다.

가. 부가가치세

- 국내에서 자체 생산·제조를 위해 원자재, 가공품 등을 수입한 기업의 매입부가세는 주로 수입 원자재로부터 발생되기 때문에 가공, 제조업자는 물품을 수입 시 해당 부가가치세 납부의무에 유의하여야 한다. 제조 목적(수출/내수) 변경 등으로 인해서 법규위반을 하게 될 수 있다. 또는 관세확정신고는 매입부가세액을 늘리게 된다.
- 도주 폐업한 업체에 의해 발행된 세금계산서를 사용한 경우
- 부가가치세 대상 및 면제 대상인 용역, 재화를 동시에 가공 또는 제조하는 목적으로 투입되는 고정자산 및 다른 용역·재화의 경우 해당 사업활동에 있어 공제 가능한 매입부가치세를 재산출할 필요가 있다
- 고객, 임직원 등에게 제공한 금품의 용역, 재화에 대해 매출부가세 세금계산서를 발행하

지 않는 경우

- 업자가 보세창고를 이용하여 수출가공지역으로 재화를 공급한 경우 세금계산서 발행 시 부가가치세 세율 0%를 적용하지 않고 면세로 처리한 경우

나. 법인세

법인세 확정 및 법인세 인센티브 적용

- 사업자가 해당 영업분야별 법인세 인센티브를 모르거나 누리지 못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한다.
 - ✓ 자동차, 전자기기, 섬유, (가죽)신발, 기계 등 제조 및 첨단산업을 위한 지원산업의 법인
 - ✓ 첨단기술 개발 및 적용 법인
 - ✓ 복합재료 등 생산 법인 등
- 법인이 누릴 수 있는 세금에 관한 세율, 세액감면 등의 세제혜택을 잘못 확정 또는 신규 투자사업과 확장투자를 잘못 구분
 - ✓ 신규 투자사업에 대한 세제혜택: 기존 투자사업과의 관계에 있어 법인이 신규 투자사업의 독립성을 증명하지 못한 경우(신규 사업의 세금 혜택을 증명하기 위해 기존 투자사업의 고정자산, 생산라인용 설비 이용 등)
 - ✓ 1급 도시로 새로 인정된 지역 안에 있는 산업단지에서 추진된 투자사업은 지역에 따른 법인세 인센티브 대상에서 제외됨
 - ✓ 사업 확장에 대한 세제혜택
 - 사업영역, 생산 제품 등 추가, 생산설비의 증대 등이 있으나 투자허가서 상의 자본금 증자를 신고하지 않은 경우 세제혜택 대상에서 제외
 - 고정자산이 20% 증가하지 못한 경우 세제혜택 대상에서 제외
 - 산업단지 안의 확장투자의 경우 고정자산이 100억동 증가하였으나, 고정자산이나 생산성이 20% 증가하지 않은 경우 세제혜택 대상에서 제외
- 법인이 매출, 과세소득이 발생한 첫해를 정확히 확정하지 못한 경우
- 법인이 우대세율, 감면, 면제 등의 세제 혜택 대상 영업활동 및 비대상 활동을 구분 못한 경우
- 법인이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는 과세소득을 잘못 확정된 경우(예를 들면 지역에 따른

세제혜택을 받는 대상인 법인이 해당 지역에서 발생한 소득을 확정함에 있어 다소 어려움을 겪은 경우)

과세매출

- 법인이 회계연도 동안 판매가격이 일정하지 못하거나 동일한 거래 조건하에 동일한 제품이 차이가 나는 가격으로 판매한 경우 과세관청은 그 중 가장 높은 가격을 기준으로 과세매출을 산출할 수 있다.
- 납품 조건에 따라 매출이 발생한 시점을 잘못 기록하거나 고의적으로 허위 기록한 경우
- 실제 출고량과 매출이 불일치하는 것을 발견하나 납득할 만한 설명을 못한 경우

공제 가능 비용

- **설립 전의 비용:** 일반적으로는 외국투자자가 베트남에서 법인 설립 전의 단계에서 지불한 비용들은 세금 공제 신고를 위한 조건을 충족하지 않는다. 2019년 9월 6일 이전까지 베트남에 자회사를 내고자 하는 외국투자자는 해당 비용을 지출 시 베트남에서 운영되고 있는 은행에서 외국투자자의 외환/베트남 동화의 계좌를 개설해서 그 계좌를 통해 지불해야 했다. 이는 해외에 있는 은행 계좌를 지불하면서 베트남 중앙은행의 규정들에 부합하지 못할 가능성을 고려한 조치였다. 하지만 2019년 9월 6일 이후부터 제 06/2019/TT-NHNN 시행령이 발효되면서 관련된 규정들이 완화되어 외국투자자는 본인이 갖고 있는 해외에 있는 은행계좌를 이용하여 해당 비용을 이체할 수 있게 되었다.
- **원자재 비용 및 임금:** 제조, 가공 기업의 경우 원자재 비용 및 임금이 주요 비용이다. 법인세 계산 시 이 두 가지의 비용에 대한 공제 가능한 비용을 확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 생산재료의 실제 소모율은 생산계획과 상이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기업이 과세 소득을 줄이기 위해 의도적으로 원자재 비용을 과다 기록하거나 (생산자)세금계산서 발행 없이 원자재를 판매한 (가공자)것으로 의심받을 수 있다.
 - 기업은 해당 분기 동안 진행 중인 활동에 관한 비용을 관리하지 않거나 잘못 산정함으로써 세금 목적으로 판매되는 제품 비용을 조정한다(과소신고를 위한 하향 조정 또는 세제우대를 받기 위해 상향 조정).
 - 근로계약에 따라 급여를 결산하지 않은 것, 임직원 보너스, 수당 등의 비용은 노동청에 등록된 기준으로 책정하지 않거나 기준을 초과하여 책정한 것, 또는 기업의

경영에 직접적으로 참여하지 않은 이사에게도 임금을 책정한 것

- 월급명세서를 조작함으로써 OT 근로시간으로 처리한 경우
- 규정에 맞지 않는 급여 총당금 설정
- 재고의 가격을 하향조정함에 있어 규정을 준용하지 않거나 증빙서류가 부족한 것

• 기술이전료 지불

2018년 7월 1일부터 발효된 제07/2017/QH14 기술이전법에 따르면 다음의 2가지 조건을 동시에 충족한 기술이전계약은 과학기술부나 과학기술청 등의 전담기관에 신고·등록해야 한다.

(i) 등록 대상: 투자사업 범위의 기술이전, 기술자산 투자, 프랜차이즈, 지식재산 소유권 이전, 기술적 대상과 기계류 판매(기술노하우, 기술비법, 기술솔루션, 사양, 기술도면, 생산 및 기술 혁신을 합리화한 공식, 소프트웨어, 데이터 등)

(ii) 계약 체결 시기

- ✓ 2018년 7월 1일부터 체결(기술이전법 발효)
- ✓ 2018년 7월 1일 이전에 체결된 계약은 2018년 7월 1일 이후 연장, 수정, 보완 등이 있는 경우

(일부 이전이 제한된 기술은 기술이전 허가증 요구 등 행정 절차가 더 까다로울 수 있다.)

보통 과세관청은 기술이전료의 성격 및 증빙서류를 바탕으로 (i)의 비용은 공제 가능 여부를 판단하고 (ii)의 비용은 시장의 정상가격을 준수하였는지 여부를 판단한다.

과세관청의 판단 기준	리스크
1. 소유권 등록 의무 준수 여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전하는 주체는 해당 기술에 대한 소유권 증명 가능 여부(해외 관련 기관에 등록했는지, 특허권을 보유하고 있는지 등) • 이전받는 주체(베트남 기업)는 법률 규정에 준용하여 기술이전 계약서를 등록했는지 여부 	준수하지 않은 경우 기술이전에 대한 모든 비용은 세무상 공제 불가
2. 제조·경영 활동에 있어 해당 기술의 성격과 연관성 유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술이전은 실제 이루어지는지 - 베트남 기업에 해당 기술이 실제 이전되었다는 사실 증명 유무 • 베트남 기업의 제조·경영에 있어 해당 기술은 실제 이익이 되는지 여부 	입증 안 된 경우 기술이전에 대한 모든 비용은 세무상 공제 불가

- 기타 비용
 - 규정을 준수하지 않고 고정자산 상각비로 포함시켜 결산한 비용(제조에 직접적 관련성이 없는 자산 또는 제조과정에 투입되지 않은 기간의 상각비로 결산)
 - 대출이자비용은 법률의 규정에 따라 자본화하지 않은 것
 - 공제 불가 비용은 현행 법인세법에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음

3. 특수관계자거래

베트남 조세관청의 최근 세무 조사 추세는 특수관계자거래를 통한 세원잠식과 이익이전을 방지하기 위해 특수관계자거래를 확인하는 데 중점을 둔다. 이전가격과 관련된 일반적인 세금 위반 행위는 다음과 같다.

- 매입 요소에 의한 이전가격
 - 내부거래를 통해 해외 모회사가 보유하는 유무형자산, 기계, 기술 등의 가격을 시장정상가격보다 높게 책정한 경우
 - 투입 원자재 가격을 높게 책정함으로써 기업의 이익을 하향 조작한 경우
- 매출 요소에 의한 이전가격: 모회사에게 공제하는 제품가격을 시장가격보다 더 낮게 책정한 경우
- 모회사가 자회사에 할당해 준 비용, 그룹 내부의 비용 등에 대해 거래가 실제 이루어졌는지 입증 불가능한 경우
- 상표 비용, 로열티/라이선스, 교육/훈련 등의 활동에 대한 비용의 합리성을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
- 세금 면제, 감면, 낮은 법인세 부담 등의 혜택을 받기 위해 시중은행의 이자율보다 특수관계인에게 더 높은 이자율을 적용한 경우
- 우대세율 대상인 회사나 조세피난처(tax heaven)의 법인과 거래를 통한 이익이전
 - 그룹 내의 다른 자회사의 경영활동과 관련된 비용을 반영한 것
 - 수년간 지속적으로 적자를 기록하지만 투자를 계속 확대하고 총수익이 늘어난 경우
 - 그룹 내의 다른 회사를 대신하여 대가를 지불하고 보증·자본 비용 등을 부과하지 않은 경우

• 신흥국의 세정연구 베트남 •

제4장 베트남 진출확대 방안

제4장 | 베트남 진출확대 방안

1. 수출 및 투자진출 유의사항

가. 시장 및 소비자 특성

1) 소비인구

베트남 통계청이 공시한 현지 인구는 9,704만명(2019년 기준)에 육박하며, 만 15세 이상의 현지 노동인구는 5,482만명이다. 베트남의 연령별 인구 분포는 넓은 피라미드 형태를 보인다. 젊은 20~30대, 그리고 소득이 높은 40대 연령층의 비중이 높다. 베트남의 이러한 인구 특성과 이들의 왕성한 소비 활동은 베트남 경제 성장 원동력으로 작용하고 있다.

특히 1980년대생과 1990년대생들은 베트남의 경제 개방·개혁 정책인 ‘도이머이 정책’ 이후에 태어났으며, 한국의 2030세대와 비슷한 소비패턴을 지닌 세대들이다. 이들은 베트남의 젊은 부모세대이기도 하며 베트남 소비시장을 주도하는 거대한 축이다. 또한 인터넷에 능숙하며, 온라인 쇼핑에 대한 관심과 수요가 높다. 그리고 외국 브랜드에 호의적이고, 익숙하지 않은 브랜드의 경우 직접 제품 정보를 찾아보는 적극성도 있다. 이 연령층이 베트남 소비시장을 주도하고 베트남 소비시장에서 매우 잠재적인 계층으로 평가된다.(자료원: 베트남 통계청)

2) 소비성향

베트남은 경제성장률이 높은 국가 중 하나다. 주요 도시가 위치한 북부와 남부에서는 특히 그 성장률이 빠르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특히 베트남 인구 중 최소 12%가 북부 하노이, 남부 호치민시에 분포해 있으며, 두 도시는 베트남 내 63개 시·성 중 개인 소득이 가장 높은 곳이다. 이 때문에 베트남에서 소비재 시장의 유행은 두 도시에서 먼저 시작되어 다른 지역으로 전파되는 것이 보편적이다.

하노이와 호치민시는 지리, 기후, 각기 다른 사회 이념을 추구했던 통일 이전의 역사 등 대내외적 요인으로 인해 지역 문화와 소비자 성향이 상이한 특징을 보인다. 베트남에서 북부

(하노이) 소비자들은 미래의 가치를 고려한 상품, 사회적 지위를 과시할 수 있는 상품, 사회 기준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고 사회 구성원들에게 인정받을 수 있는 상품 등에 수요가 높다고 알려져 있다. 반면 호치민시를 중심으로 한 남부 소비자들은 일상에서의 여유에 가치를 둔 상품, 가격 대비 성능이 실속 있는 상품, 구매자의 개성을 강조할 수 있는 상품 등에 상대적으로 수요가 높다. 따라서 고급화 전략을 내세운 과시 성향의 브랜드는 하노이, 상품 자체의 기능과 품질로 차별화를 내세운 브랜드는 호치민시 시장을 우선 공략하곤 한다. 일례로, 명품 브랜드 루이비통은 1997년(당시 베트남 1인당 GDP 361달러) 하노이를 통해 베트남 시장에 진출한 한편, 맥도날드는 2014년 베트남 첫 진출 시장으로 호치민시를 택했다. 반대로 루이비통 호치민시 지점은 2007년, 맥도날드 하노이 지점은 2017년 말에 정식 개장했다.

한편, 베트남은 최근 몇 년간 전자상거래의 성장이 눈에 띄는 추세다. 2018년도 베트남 전자상거래 시장은 2017년도 대비 약 30% 성장했으며 베트남 소비자들은 전자상거래 사이트(Tiki, Shopee, Lazada 등) 혹은 Facebook, Instagram, Zalo 등과 같은 SNS 등을 통해 상품 정보를 얻는 데 익숙해져 있다. 그 중에서도 패션, IT 및 화장품 분야가 인기를 끌고 있다. 특히 베트남은 젊은 세대 비율이 높아 전자상거래 시장이 활발하게 발전하고 있다. 베트남의 인터넷 및 스마트폰 보급의 확산 또한 베트남 전자상거래 시장에 큰 영향을 끼치고 있다. 한편, 베트남은 모바일 쇼핑 시 후불현금결제(COD)를 선호한다.

나. 외국인투자촉진정책

베트남 정부는 최근 하이테크, 고부가가치산업 분야에서 외국인투자 유치에 위한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통해 중국 이탈 기업 등 많은 외국기업에 베트남 투자 유인을 제공하고 있다.

- 반면 단순 노동집약산업, 환경오염 유발 산업의 경우 투자 허가에 인색

2019년 8월 베트남 공산당 정치국은 「외국인투자 중장기 정책 방향의결」을 채택하여 향후 외국인투자 관련 정책적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 동 의결에서는 베트남 정부가 지난 30년 이상 외국인 투자에 친화적인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해 왔으며, 그 결과 많은 다국적·첨단기술 외국 기업들이 베트남에 투자해 왔고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해 왔다고 평가

- 그럼에도 불구하고 ① 외국인 투자 유치 정책의 일관성 및 효율성 결여 ② 등록된 투자 금액에 비해 실제 집행 금액 저조 ③ 대부분의 외국인 투자가 노동집약산업에 집중되는 등의 문제점이 있었다고 분석

- 향후에도 외국인투자를 국가 경제의 가장 중요한 요소로 인식하고, 투자자의 권리와 이익을 존중해 나감으로써 2021년 이전까지 아세안 국가 중 4위, 2030년 이전까지 아세안 국가 중 3위의 비즈니스 환경 조성을 목표로 외국인투자 촉진 정책을 지속해 나갈 것임을 천명
- 세부 과제로서 ① 투자 유치 법령 시스템 개선 ② 국가 산업에 영향이 큰 대형 프로젝트 유치를 위한 R&D 센터 및 혁신센터 건립 ③ 4차 산업혁명을 위한 신규투자 및 비즈니스모델 개발 ④ 프로젝트 진행 시 환경보호 의무와 환경오염 발생 시 투자자 책임 의무 명확화 등을 설정

[베트남 투자 인센티브 종류]

분류	목적	지원 대상 및 내용
지역개발	낙후 지역에 대한 투자 유치 및 주변 지역 인프라 개발 촉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원 대상: ① 사회 경제적 낙후 지역 ② 특수 낙후 지역에 투자하는 기업 ■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회·경제 낙후 지역) 법인세 최초 2년 면제, 4년 50% 감면, 총 10년간 17% 우대세율 적용 - (특수 사회·경제 낙후 지역) 법인세 최초 4년 면제, 9년간 50% 감면, 사업 개시연도로부터 15년간 10% 우대세율 적용
산업투자	국가 경제·사회 개발전략에 따른 주요 거점 산업 분야 투자 유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원 대상: 고품질 철강 생산 신규 프로젝트, 에너지 절감 생산품 투자, 에너지 사업, 총리가 지정한 SOC 사업 ■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철강, 에너지 절감 생산품 등) 법인세 최초 2년 면제, 4년 50% 감면, 사업 개시연도로부터 10년간 17% 우대세율 적용 - (에너지사업, 총리 지정 SOC 사업) 법인세 최초 4년 면제, 이후 9년간 50% 감면, 사업개시 연도로부터 15년간 10% 우대세율 적용
수출가공 활동지원	수출 경쟁력 향상 및 투자기업 유치를 위한 수출 임가공 기업 전용구역 거점 마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원 대상: 수출가공구 내에서 설립하고 활동하는 기업, 또는 공업구 및 경제특구 내에서 활동하며 생산품 전량을 수출하는 기업 ■ 지원 내용: 생산 활동을 위해 수입하는 원부자재, 기계장치에 대한 수입관세 면세
하이테크 (R&D투자)	하이테크, R&D 등 고부가가치 산업유치를 통한 국내산업 역량 강화 및 기존 노동집약적 산업의 체질 개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원 대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Decision No.66/2014/QD-TTg, No.13/2017/QD-TTg에 따른 하이테크 투자 우대 분야 및 제품에 속하는 기업 - 품질/환경관리: ISO 9001:2008, ISO 14000 인증 기업 - 연구개발 인력: 종합대학 졸업 이상 학력 전체 직원의 5% 이상 유지 기업 - 연구개발비: 매출액 1% 이상 R&D 비용 지출 기업 ■ 지원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최초 4년 면제 이후 9년간 50% 감면, 사업 개시연도로부터 15년

분류	목적	지원 대상 및 내용
		간 10% 우대세율 적용 - (부가세·수입세) 과학 연구 및 기술 개발 활동에 사용하는 원부자재 및 부품 부가세·수입세 면제
부품소재 산업	선진기술 도입과 글로벌 가치사슬 참여 확대를 통한 제조업 육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상: 정부가 지정한 부품소재 산업 분야에 투자하는 외국 및 자국 기업 • 지원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최초 4년 면제, 이후 9년간 50% 감면, 사업 개시연도로부터 15년간 10% 우대세율 적용 - 24인승 차량, 부속품, 국내에서 생산되지 않는 원자재 및 건축자재 등에 대한 수입세 면제 - 투자 기업이 중소기업일 경우 신용보증기관의 보증을 통해 저금리로 투자금의 70% 대출 지원 - 부품소재 산업 시험 생산 비용 50% 보조금 지원 등
개발특구 투자	산업단지와 경제특구로 구분, 동지역에 투자하는 기업들에게 인센티브 제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산업단지: 정부가 개발한 하노이·다낭·호치민에 위치한 총 3개의 산업단지에 투자하는 하이테크 산업 분야 투자 기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원 내용: 법인세 최초 4년 면제, 이후 9년간 50% 감면, 사업 개시연도로부터 15년간 10% 우대세율 적용 • 경제특구: 베트남 내 17개 경제특구에 포함된 지역에 투자하는 기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원 내용: 법인세 최초 4년 면제, 이후 9년간 50% 감면, 사업 개시연도로부터 15년간 10% 우대세율 적용

다. 2019년 주요 경제 이슈 및 향후 전망

1) 정부 역량 강화 및 개혁, 경제 신성장 동력 확보

- (사회주의 시장경제체제의 확립과 거버넌스 강화) 개혁과 공정경쟁 체제 구축을 통한 사회주의 시장경제체제를 확립하여 2035년까지 1인당 GDP 10,000달러를 달성한다는 비전하에 2019년 거시경제 안정화, 투자 및 비즈니스 환경 개선, 경제성장 촉진, 행정 및 사법개혁, 부패 척결 노력을 진행 중이다.
- (4차 산업혁명 대응을 통한 질적 성장 달성) 2018년 7%대 경제성장률을 달성하였으나, 노동집약적 산업 및 외국인 투자에 크게 의존하고 있는 상황으로, 질적 성장 및 새로운 성장 동력 확보를 위해 4차 산업혁명 대응을 기회로 인식하고 경제사회 개발 전 분야에 적용하고자 노력 중이다.

2) 인프라 확충을 통한 지속가능한 국토 개발

- 베트남은 인프라가 경제의 중추라는 인식 아래 개발 이슈에서 인프라 구축, 특히 교통 네트워크 인프라 구축에 우선순위를 두고 노력 중
- 급속도로 진행되는 도시화로 인해 주요 도시의 교통 인프라 대비 교통량 증가가 심각한 수준이므로 베트남 정부는 ① 도로 교통 의존도 감소 및 철도·수로와의 연결을 통한 조화 ② 현대화된 교통 인프라 구축 ③ 정부 정책 역량 강화 및 법적 프레임워크 (Framework) 강화 ④ 현대화된 기술 적용 등을 주요 추진 방향으로 설정하고, 재원 확보를 위해 PPP법 마련 등 투자자에게 유리한 법적 환경을 조성할 것으로 전망된다.
- 또한 정보통신기술을 기반으로 한 스마트시티 추진을 통해 베트남의 도시화로 인한 교통·환경 문제를 해결함과 동시에 지속가능하고 포용적인 국토개발을 추진 중이다.

3) 산업화 국가 역량 배양을 위한 고급 인력 양성

- 국제적 경쟁력을 갖춘 산업화 국가로서의 역량 확보를 위해 지식기반 경제 체제를 지향하고 있으며, 선진적인 교육 훈련과 과학기술의 개발이 베트남을 현대화된 산업국가로 발전시키고 국가 경제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핵심 요소로 인식되고 있다.
- 2018년 12월 기획투자부가 발표한 'Viet Nam Economic Policy Framework'의 중기 성장 동력 중 하나로 '인적자원 개발 및 혁신'을 설정하고, 4차 산업혁명에 발맞춘 3개 중점 대학의 역량 강화, 특히 농업·관광·IT에 초점을 맞춘 과학기술 개발, 스타트업 기업의 육성 등을 설정하였다.

4) 지속가능하고 포용적인 경제 성장

- 베트남은 1990년대 58%이던 빈곤율이 2017년 5.2%까지 감소하였으나 도시 개발로 인한 지역 간 빈부격차, 특히 산간지역 소수민족이 총빈곤 인구의 72%를 차지하는 등의 문제가 남아있다.
 - 베트남 정부는 정책적으로 도시-농촌 간 균형발전과 주민들의 삶의 질 제고를 위한 한국의 새마을운동을 벤치마킹한 '신농촌개발'을 국가 프로그램으로 채택하여 추진 중
- 급격한 경제성장의 도움으로 현재 베트남 국민의 70%는 경제적으로 안정된 것으로 구분되며, 이 중 13%는 세계 중산층에 해당하는 것으로 평가된다.
 - 사회정책이 기존 절대빈곤 감소에서 삶의 질 향상, 공동번영 중심의 의제로 변화 중

2. 법인 설립 및 개인 등록 절차 및 유의사항

베트남의 경우 외국인에게 개인사업자 또는 합작회사(베트남 지인 간의 합명회사)는 개방되어 있지 않으며, 투자규모가 작을 경우 경영 및 관리가 간편한 1인 유한책임회사 형태가 다수의 파트너가 공동 출자할 경우 2인 이상 유한책임회사 형태가 유리하다고 할 수 있다. 주식회사의 경우 한국과 달리 1인 주식회사가 인정되지 않고 3인 이상 주주가 공동 출자하는 형태만 가능하므로 대규모 사업에 적합하여 초기 진출 시에는 거의 활용되고 있지 않다.

가. 현지법인

1) 유한책임회사

1인 유한책임회사는 투자자가 1인인 경우로 회사설립 및 운영에 있어 각종 서류작업 및 운영 방식이 간단하며, 특히 내부의사 결정기관과 절차를 투자자의 뜻대로 정해 정관에 기입할 수 있다. 다만, 회계나 세무적인 측면에서 1인 독자운영을 전제로 하므로 정부의 입장에서 도 최소한의 규제가 필요하다.

2인 이상 유한책임회사는 투자자가 2인에서 50인인 경우 설립 가능한 회사로 법률적으로는 주로 소규모 합작회사나 지인들끼리 공동사업을 영위하고자 할 때 유용한 형태를 가지고 있다. 즉 내부운영규칙이나 의사결정기관을 임의대로 정할 수 있으며 주식회사의 경우보다 대외 공시규정이 완화되어 있다. 다만 최고 의결기관은 항상 투자자의 모임인 사원총회가 돼야 하며 정관자본의 65% 이상 출석 및 출석 정관 자본의 65% 또는 75%의 찬성으로 의결되므로 의결권 확보가 중요한데 과반수 확보만으로는 불완전하다.

2) 주식회사

3인 이상의 발기인(초기 투자자)을 필요로 하며 투자자의 수는 제한이 없는 것이 주식회사의 특징이다. 주식회사는 기본적으로 대규모 회사를 전제로 하며 따라서 이사회를 필수기관으로 하고 있고 주식양도의 자유를 기본원칙으로 하고 있다. 추후 상장을 기본원칙으로 하고 있으므로 운영에 관련(특히 재무)한 사안들이 정확히 기재되고 공시되도록 하는 규정들이 많이 있다. 베트남 기업법에 따라 의결정족수는 주주총회 51%(특별결의의 경우 65%)를 기준으로 한다.

3) 유한책임회사 및 주식회사 설립 절차

	구분	준비사항	유의사항	기일
1	설립요건	최소 1명 이상 필요		
		자본금 결정(최소 자본금 규정 없음)	자본금 예치 필요 없음	
2	임대차계약	임대차계약 체결	본 계약이 아닌 MOU와 같은 가계약으로도 신청가능(본사 명이나 법인장 내정자 명의로 가계약 후 허가 취득 후 본 계약 체결)	
3	투자등록증(IRC)(첨부3) 구비서류	투자허가신청서(첨부1)	DPI 허가신청 양식	
		합작투자계획서(2부)	합작투자의 경우	
		창립주주명부(2부)	주식회사의 경우	
		창립사원명부(2부)	유한회사의 경우	
		설립할 회사정관(원본 2부)		
		사업타당성조사서(원본 2부)	투자계획서(첨부2)	
		사업자등록증(사본 2부)		
		법인등기부 등본(사본 2부)		
		사업장 임대차계약서(원본 2부)		
		재정능력확약서(2부)	2년간 재무제표 혹은 은행 잔고 증명 첨부	
		본사정관(사본 2부)	지방정부별로 요구조건이 다르므로 확인 필요	
		위임장(원본 1부)		
대표자(법인장) 여권				
4	투자등록증(IRC)(첨부4) 신청·발급	공단 내: 공단관리위원회 기타지역: 주소지 군(district)에 위치한 기획투자국(DPI)에 접수	사업장 소재지 실사 방문하는 경우가 있음	15
5	기업등록증(ERC) 신청	1) ERC 신청서 2) 정관 3) 투자등록증(IRC) 4) 법정대리인 지정 및 여권	사업자등록사무소(Business Registration Office, BRO)에서 발급하여 상호, 주소, 세무번호, 대표자 등 일반등록 정보 기재	3
6	법인인감 제작·등록			10
7	법인계좌 개설	1) 자본금 계좌(DICA) 2) 회사운영 입출금계좌	ERC 승인 후 반드시 90일 이내 자본금 납입(미이행 시 법인폐쇄)	

【참고 1】 투자등록증 신청서 양식(호치민 기획투자국(DPI) 제공)

ANNEX I-1
SOCIALIST REPUBLIC OF VIETNAM
Independence - Freedom - Happiness

REQUEST FORM FOR IMPLEMENTATION OF INVESTMENT PROJECT

Respectfully to: Ho Chi Minh city Department of Planning and Investment

The following Investor hereby requests to be permitted to implement an investment project with the contents stated below:

I. INVESTOR

[***]

Incorporation Certificate: [***] issued by [***] on [***].

Head office address: [***]

Tel.: [***]

Fax: [***]

Email:

Website:

Legal representative:

Full name: Mr. [***]

Title: [***]

☞Date of birth: [***] Nationality: [***]

Passport No.: [***] issued by [***] on

Permanent address: [***]

Current address: [***]

Tel.: [***]

Email: [***]

II. INFORMATION ABOUT THE ECONOMIC ORGANIZATION TO BE ESTABLISHED

1. Name:

Vietnamese name: CÔNG TY TNHH [***]

English name: [***] COMPANY LIMITED

Abbreviated name (if any): [***]

2. Type of economic organization: One-member limited liability company

3. **Charter capital:** [***] Vietnam Dongs, equivalent to [***] US Dollars.
4. **Charter capital contribution ratio of each investor:**

No.	Name of investor	Capital amount		Ratio (%)
		VND	USD equivalent	
1	[***]	[***]	[***]	100

III. INFORMATION ABOUT THE INVESTMENT PROJECT

Name of the investment project: [***] COMPANY LIMITED

Details of the investment project are available in the Proposal of Investment Project attached hereto.

IV. THE INVESTOR HEREBY UNDERTAKES

1. To be responsible for the legality, accuracy, truthfulness of the application file and the documents submitted to the relevant State authorities.
2. To strictly comply with the relevant provisions of the law of Vietnam and the Investment Registration Certificate.

V. ENCLOSURE

1. Proposal of investment project;
2. Decision & Letter of Authorization of the Investor;
3. Copies of Financial Statements of the Investor in the two latest years or Bank Account Statement
4. Copies of Incorporation Certificate of the Investor and Passport of Mr. [***] (legal representative);
5. Legal documents related to the location of the project.

Prepared in Ho Chi Minh city, on

Investor
[***]

Mr. [***]
Director

【참고 2】 투자계획서 양식(호치민 기획투자국(DPI) 제공)

ANNEX I-3

SOCIALIST REPUBLIC OF VIETNAM
Independence - Freedom - Happiness

PROPOSAL OF INVESTMENT PROJECT

*(enclosed with Request Form for Implementation of Investment Project
dated)*

I. INVESTOR

[***]

hereby proposes an investment project with the contents stated below:

II. IT IS PROPOSED THAT THE FOLLOWING INVESTMENT PROJECT BE IMPLEMENTED

1. Name and location of the project:

1.1 Name of the project: [***] COMPANY LIMITED

1.2 Location of the project: [***], Ho Chi Minh city, Vietnam

2. Investment objectives:

No.	Objectives	Items	VSIC code	CPC code
1	[***]	[***]	[***]	[***]
2	[***]	[***]	[***]	[***]
3	[***]	[***]	[***]	[***]

3. Investment scale:

- Estimated sales: USD [***] per annum.
- Storage and warehouse: at [***], covering [***] m².

4. Investment capital:

4.1. Total investment capital: [***] ([***)] Vietnam Dongs, equivalent to [***] ([***)] US Dollars. In which:

a) Fixed capital: [***] ([***)] Vietnam Dongs, equivalent to [***] ([***)] US Dollars.

b) Working capital: [***] ([***]) Vietnam Dongs, equivalent to [***] ([***]) US Dollars.

4.2. Sources of investment capital:

a) Capital contributed to implement the project:

No.	Name of investor	Capital amount		Ratio (%)	Contribution method	Contribution schedule
		VND	USD equivalent			
1	[***]	[***]	[***]	[***]	In cash	Within days from the date of issuance of the Investment Registration Certificate

b) Mobilized capital: [***]

c) Other capitals: [***]

5. **Term of operation of the project:** [***] ([***]) years from the date of issuance of the Investment Registration Certificate.

6. **Implementation schedule of the project:**

- Basic construction schedule: None
- Schedule of putting the project into operation: None
- Schedule for implementing the project's main objectives, items: To come into official operation from the date of issuance of the Investment Registration Certificate.

7. **Demand on labor:**

Estimated number of employees: [***], including:

- Vietnamese: [***].
- Foreigner: [***].

8. **Consideration of socio-economic impacts and effects of the project**

8.1. The most significant impacts of the project on the socio-economic development of the local city and the relevant industry

[***]

8.2. Assessment of impacts on the environment:

[***]

9. Explanations on the satisfaction of investment conditions against foreign investors

[***]

9.1. About charter capital ownership ratio and investment form

[***]

9.2. About scope of activities

[***]

9.3. About Vietnamese partners jointly implementing investment activities

[***]

III. PROPOSED INVESTMENT INCENTIVES AND SUPPORTS

1. Corporate income tax - related incentives:

Legal grounds: Law on Corporate Income Tax, the relevant guiding documents and provisions of the international treaties of which the Socialist Republic of Vietnam is a member.

2. Import duty - related incentives:

Legal grounds: Law on Export / Import Duties No. 45/2005/QH11 dated 14 June 2005 and the relevant guiding / amending documents.

3. Exemption / reduction of land rent, land use fee, land use tax.

None.

4. Proposed investment support:

In accordance with the relevant laws.

Prepared in Ho Chi Minh city, on

Investor

[***]

Mr. [***]

Director

【참고 3】 투자등록증 예시

UBND THÀNH PHỐ HỒ CHÍ MINH	CỘNG HÒA XÃ HỘI CHỦ NGHĨA VIỆT NAM
SỞ KẾ HOẠCH VÀ ĐẦU TƯ	Độc lập - Tự do - Hạnh phúc
투자기획부 소관	
GIẤY CHỨNG NHẬN ĐĂNG KÝ ĐẦU TƯ	
Mã số dự án:	
Chứng nhận lần đầu:	
Căn cứ Luật Đầu tư số 67/2014/QH13 ngày 26 tháng 11 năm 2014;	
Căn cứ Nghị định số 118/2015/NĐ-CP ngày 12 tháng 11 năm 2015 của Chính phủ quy định chi tiết và hướng dẫn thi hành một số điều của Luật Đầu tư;	
Căn cứ Thông tư số 16/2015/TT-BKHĐT ngày 18 tháng 11 năm 2015 của Bộ Kế hoạch và Đầu tư về biểu mẫu thực hiện thủ tục đầu tư và báo cáo hoạt động đầu tư tại Việt Nam;	
Căn cứ Quyết định số 2559/QĐ-UB-NC ngày 27 tháng 5 năm 1996 của Ủy ban nhân dân thành phố về việc thành lập Sở Kế hoạch và Đầu tư Thành phố Hồ Chí Minh;	
Căn cứ văn bản đề nghị thực hiện dự án đầu tư và hồ sơ kèm theo do Nhà đầu tư	
SỞ KẾ HOẠCH VÀ ĐẦU TƯ THÀNH PHỐ HỒ CHÍ MINH	
Chứng nhận:	
Nhà đầu tư:	투자자 인적사항

Điều 1. Nội dung dự án đầu tư: **사업(프로젝트) 세부사항**

1. Tên dự án: **사업(프로젝트)명**

2. Mục tiêu dự án: **사업(프로젝트)목적**

Stt	Mục tiêu hoạt động	Mã ngành theo VSIC	Mã CPC
01		4659 4773	622 632

3. Quy mô dự án: **사업(프로젝트) 규모**

4. Địa điểm thực hiện dự án: **사업(프로젝트) 지역**

5. Diện tích mặt đất, mặt nước sử dụng: **토지사용 면적**

6. Tổng vốn đầu tư của dự án: **자본금 총액**

【참고 4】 기업등록증(ERC) 예시

호치민시 투자계획부
SỞ KẾ HOẠCH VÀ ĐẦU TƯ
THÀNH PHỐ HỒ CHÍ MINH
PHÒNG ĐĂNG KÝ KINH DOANH

CỘNG HÒA XÃ HỘI CHỦ NGHĨA VIỆT NAM
Độc lập – Tự do – Hạnh phúc

GIẤY CHỨNG NHẬN ĐĂNG KÝ DOANH NGHIỆP 기업등록증
CÔNG TY TRÁCH NHIỆM HỮU HẠN MỘT THÀNH VIÊN

Mã số doanh nghiệp: **기업등록번호**
Đăng ký lần đầu: **최초등록일**

1. Tên công ty **회사명**
 Tên công ty viết bằng tiếng Việt: **베트남어 회사명**
 Tên công ty viết bằng tiếng nước ngoài: **외국어 회사명**
 Tên công ty viết tắt: **회사 약자**


2. Địa chỉ trụ sở chính **주사무소**
 Điện thoại: **전화** Fax: **팩스**
 Email: **이메일** Website: **웹사이트**

3. Vốn điều lệ **자본금**

4. Thông tin về chủ sở hữu
투자자 정보

5. Người đại diện theo pháp luật của công ty
회사의 법률상 대표자 정보

담당자 직인


Kc Thành Sơn

나. 지사

1) 지점

법인은 법적으로 현지에서 독립된 하나의 회사이며, 본사와는 다만 업무적 협력 관계와 TOP 경영진에 대한 선임권만 있게 되는 형태이고, 지점은 일종의 현지 사무소로, 독립된 회사가 아니라 본사 직원이 업무를 보기 위해 편의상 마련해 놓은 사무실의 개념이라 할 수 있다.

지점을 마련하는 경우는 현지에서 영업 활동을 위해 본사 직원이 파견되므로, 현지 통제가 용이하며, 업무 진행상 커뮤니케이션 오류가 줄어들고, 회사의 기밀 보안 유지 등의 장점을 가지고 있다.

2) 대표사무소

대표사무소는 직접적인 회사의 영업활동 이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연락사무소 개념으로 단순 시장조사 및 바이어 발굴 등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3) 지점 및 대표사무소 설립 절차

	구분	준비사항	유의사항	기일
1	설립요건	지점: 1) 본사 최소 5년간 운영 2) 잔여기간 최소 3년 대표사무소: 1) 본사 최소 1년 운영 2) 잔여기간 최소 1년	담당부서: 산업무역부 (Department of Industry and Trade)	
2	임대차계약	사무실 임대 계약 체결		
3	구비서류	지사 및 대표사무소 허가신청서 사업자등록증, 법인 등기부 등본 사본 직전 회계연도 본사의 회계 감사자료 혹은 재무제표 대표사무소장 여권 사본* 대표사무소 임대차 계약서	* 구비서류 각 2부씩 영어번역, 공증 → 영사확인 → 베트남어 번역, 공증 및 대사확인	10
4	허가서 신청·발급	해당 구비서류는 관할지역 산업무역지구국 (Department of Industry and Trade)에 신청	업무일 15일 이내 발급	15
5	후속조치	인감 등록, 세무번호 등록, 계좌 개설, 인사 등록 등 무역국 안내를 받아 수속		5

참고문헌

Deloitte Vietnam, *Doing Business in Vietnam 2020*

베트남 국세총국(General Department of Taxation) 웹사이트, <http://www.gdt.gov.vn/worksportal>

베트남 관세총국(General Department of Customs) 웹사이트, <http://customs.gov.vn>

베트남 통계청(General Statistics Office in Vietnam) 웹사이트, <https://www.gso.gov.vn>

Daniel Workman, Vietnam's Top 10 Exports(<http://www.worldstopexports.com/vietnam-top-10-exports/>)

부록 1: 사례 연구

1. CIT 실제 사례

회사 A는 Bac Ninh시 Nam Son구 Que Vo 확장 공단에 위치한 외국인 투자기업이다. Que Vo 확장공단은 2017년 12월 25일 이후부터 더 이상 인센티브가 적용하는 구역이 아니었지만 회사 A의 설립 시점에는 공단에 투자 인센티브가 유효하였으므로 투자허가서에서 기재된 법인세 인센티브를 적용받을 수 있다.

회사 A는 2018년에 투자허가서상 최초투자에 대한 50%의 감면 혜택을 적용했다. 회사는 2018년에 새로운 생산 라인에 500억동을 투자했으며, 이는 법인세법(CIT) 상 확장투자에 대한 조건을 만족하였다. 2018년 12월 31일 회계연도에 회사 A의 고정자산(새로운 생산라인 포함)의 총취득원가가 2,000억동이다.

2018년에 회사가 480억동의 과세소득을 신고하였으며 그중에 비영업 과세소득이 80억동으로 나타났다.

2019년에 회사의 인센티브 기간이 만료되었고 일반적인 세율을 적용해왔다. 재무제표 초안에 따르면, 회사 A는 2019년에 회계상 세전 1600억동의 이익을 인식했다. 회사의 CIT 확정신고시 회계상 이익에 아래와 같은 이슈가 파악되었다.

1. CIT확정신고 기한전에 85억동의 미지급 임금과 수당이 지급되지 않은 상황이었다. 회사 A의 2019년에 총실제급여는 550억동이며 2019년 12월 31일까지 급여에 대한 총당금이 없었다.
2. 세금계산서 없는 지출 92억동이 비용으로 인식되었으며 그중에 28억동은 가족기업으로부터 소모품을 구매하는 지출이며 01/TNDN호 양식으로 상품리스트를 받았다.
3. 2016년에 60억동의 취득원가로 구매된 기계의 내용연수가 5년(정액법 적용)으로 예상되었지만 유지보수를 위해 2018년 6월 1일부터 사용 중단되었다. 회사 A는 2018년에 기계의 유지보수기간이 13개월이 걸릴 것으로 예상했지만 실제로 2019년 8월 31일에 완료되었고 2019년 9월 1일부터 다시 사용되었다. 회사의 재무제표에는 이 기계가 2019년에 12개월간 감가상각되었다.
4. 유니폼 경비(유효하고 합리적인 증빙서류를 갖춘)는 현금으로 총 7.2억동이 지급되었으며, 현물로 36억동이 지출되었다. 회사는 2019년에 평균 120명이 있었다.
5. 회사 A가 체결한 경영협력협약(business co-operation contract - BCC)으로부터 400

역동의 수익을 얻었다. 이 수익은 운영자에 의해 신고 및 납세된 20% CIT를 공제한 후에 계산된 금액이었다.

2020년부터 회사 A의 외국본사가 제공한 IT 지원 서비스에 대한 비용을 청구하기로 하였다. 청구금액은 회사 A가 요청하는 사항에 해당된 비용을 바탕으로 계산되었다. 그 외에 본사의 결정에 따라 모든 자회사로 배분된 금액도 포함되며 매년 변경될 수 있다.

질문:

(a) 회사A의 2018년에 초기투자, 확장투자 및 기타 영업활동에 과세소득 및 2018년 12월 31일 만기 회계기간의 총법인세 금액을 계산

비교: 2018 기준 CIT율 22%

(b) 회사A의 2019년 12월 31일 만료한 연도기준으로 CIT확정신고에 과세소득 및 조세채무

답변

(a) 2018년 12월 31일 만료한 회계기간의 CIT

(단위: 백만동)

	최초투자에 대한 소득	확장투자에 대한 소득	비영업 소득
세율	10%	20%	20%
	VND mil	VND mil	VND mil
고정자산의 취득원가	150,000 (200,000-50,000)	50,000	
고정자산 비율	75%	25%	
영업 과세소득	40,000 (48,000-8,000)		
최초 투자와 확장 투자에 대한 과세소득 배분	30,000 (40 * 75%)	10,000 (40 * 25%)	
비영업 소득			8,000
세금	3,000 (30,000 * 10%)	2,000 (10,000 * 20%)	1,600 (8,000 * 20%)

(b) 2019년 12월 31일 만료한 회계기간의 CIT

	(단위: 백만동)
회계이익	160,000
가산: CIT 확정신고 기한까지 미지급 급여 및 수당(17% 총당금 적용되지 않음)	8,500
가산: 지원 증빙서류가 없는 비용(9,200-2,800)	6,400
가산: 기계가 사용되지 않는 2016년의 8개월에 해당 감가상각비(6,000/5년 * 8/12)	800
가산: 현금으로 지급된 1인당 VND 5백만 기준을 초과하는 유니폼 지출(720-120 * 5)	120
공제: BCC로부터 배분된 이익(배당금 수입과 같은 방법으로 차감)	(40,000)
총과세소득	135,820
CIT 20%	27,164

2. PIT 실제 사례

실제 사례 1

- 개인 A는 베트남인이며 2019년 4월 1일부터 베트남 영토에서 식당업 영위 시작, A식당의 경영활동으로부터 얻은 모든 서비스 비용은 월 1억동(VND) 예상
 - 개인 A는 18세 미만의 자녀 2명
- 2019년 개인 A의 베트남에서 개인소득세, 부가가치세 납세의무 확정

개인소득세 신고/납부 의무

	최초 과세연도(04-12/2019)	2 nd 과세연도부터(01-12/2020)
과세대상매출액 산출 시기	식당영업 개시일로부터 10일 이내 (10/04/2019).	과세연도의 전년도 11월 20일부터 12월 15일 까지
신고방법	사업장(식당) 소재지의 관할 과세관청에서 연간 1번 신고/납부 또한 세액 정산을 하지 않는다(예정세납신고/납부 방식)	사업장(식당) 소재지의 관할 과세관청에서 연간 1번 신고/납부 또한 세액 정산을 하지 않는다(예정세납신고/납부 방식)
납세신고서	서식01/CNKD	서식 01/CNKD
납세신고서 제출기한	식당영업 개시일로부터 10일 이내	과세연도의 12월 15일
과세대상매출액	2019년 4월부터 연간 실제 발생 매출액 (1억동×9개월)	1월 1일부터 연간 실제 발생 매출액 (1개월의 매출액×12개월)
적용세율	개인소득세: 1.5% 부가가치세: 3%	개인소득세: 1.5% 부가가치세: 3%

A의 개인소득세 신고/납부

개인소득세율 1.50%

부가가치세율 3.00%

(단위: 동)

개인명	기간	과세대상매출액	납부할 개인소득세액	납부할 부가가치세액	총납세액
		(1)	(2')=(1)×개인소득세율	(2'')=(1)×부가가치세율	(2)=(2')+(2'')
합계		900,000,000	13,500,000	27,000,000	40,500,000
A	2019년	900,000,000	13,500,000	27,000,000	40,500,000

실제 사례 2

개인 A는 한국인이다. 2019년 6월에 A는 2년의 임기로 발령장에 의하여 베트남에 발령받아 베트남의 개인소득세를 포함하지 않은 급여는 다음과 같다.

- 한국 내 급여(한국 본사에서 지급): 월 500만원
 - 베트남 내 급여(베트남 지사에서 지급): 월 2천달러
- 급여 외 A는 다음의 각종 수당을 베트남 회사에서 지급한다.
- 현금 지급 점심 식사 수당: 월 100만동
 - 현금 지급 통신 수당: 월 150만동
 - A의 대행 월세 지급: 월 5천만동과 월 200만동의 전기, 수도세가 포함된다. 해당 수당은 10%의 부가세가 포함되지 않았다.
 - A의 자녀의 베트남 초등학교 학비는 학교에 직접 지급되어 베트남 회사명과 세금코드에 따라 세금계산서가 발행된다. 이는 학비 월 2천만동 그리고 버스 이용료 월 200만동이 포함된다.
 - 용역 공급자에게 지급되는 A의 개인소득세 컨설팅비: 월 200만동
- 급여와 기타 수당 외 A는 다음의 혜택을 수령한다.
- 발령장에 의하여 2019년 6월에 한국 본사에서 지급되는 1회 근무 지역 변경 지원비에 상당한 300만원
 - 베트남 회사에서 용역 공급자에게 지급되는 골프 회원비: 월 500만동
- A는 한 명의 피부양자인 자녀가 초등학생이며 한국에서 월 50만원의 의무보험료를 납부한다.

요구사항

- (1) A의 과세대상 기간 확정
- (2) 세금신고의무 확정
- (3) 2019년 6월까지 A의 개인소득세 의무 확정

KRW과 VND의 환율이 지급일에 Vietcombank의 구매환율에 의하여 20.00이며 미화와 베트남동의 환율이 지급일에 A의 계좌 개설 은행의 구매 환율에 의하여 23,000이다.

A는 2019년도 베트남에 183일 이상 거주하였다.

답변

- (1) 회계연도 확정

111/2013와 119/2014호의 시행규칙에 의하여 A는 2019년도 베트남에 183일 이상 거주하기 때문에 과세 연도는 월역으로 확정된다(2019.01~2019.12).

다만 A는 한국 국적이며(베트남과의 조세의 이중과세방지협정 체결 관계) 베트남에 처음 왔기 때문에 개인소득세 의무는 베트남에 도착한 월부터 근로계약을 만료하고 베트남을 떠나는 월까지(월 단위로) 산정된다. 즉 첫 회계연도는 2019년 6월부터 2019년 12월까지 산정된다.

- (2) 세금신고 의무 확정

매월 베트남 지사는 5-KK/TNCN호 신고서상 지불된 A의 소득에 해당된 개인소득세 원천징수 책임이 있다.

매 분기 A는 02-KK/TNCN호 신고서상 한국에서 받은 소득에 대한 개인소득세를 신고할 의무가 있다.

개인소득세 결산 시점(2020.03.30까지)에 A는 당해의 모든 소득을 02/QTT-TNCN호 양식상 본인의 명의로 개인 세금코드에 따라 신고하고 납세한다.

- (3) 2019년 6월의 개인소득세 의무 확정

a. 세금 부과 소득 종류

소득 종류	세금 부과 여부	금액
한국 내 급여	과세대상	KRW 5,000,000
베트남 내 급여	과세대상	USD 2,000

소득 종류	세금 부과 여부	금액
점심 식사 수당	월 73만동 내의 경우는 세금이 부과되지 않음	VND 1,000,000-VND 730,000 =VND 270,000
통신 수당	회사 내부 정책에 따라 지불되면 세금이 부과되지 않음	-
월 임대료	월세 포함되지 않은 과세 소득의 15% 이하는 과세대상임 과세대상 월세는 전기, 수도세와 기타 부과금을 포함한다.	(VND 50,000,000+VND 2,000,000)×(1+10%) =VND 57,200,000
자녀의 학비	학비 비과세. 그러나 버스 이용료는 과세대상	VND 2,000,000
세금 컨설팅비	과세대상	VND 2,000,000
1회 지역 변경 지원비	근로계약서 또는 근로집단 협약서에 의한 세금 비과세 금 액 기준: 300만원	-
골프 회원	과세대상	VND 5,000,000

b. 공제 항목

종류	공제 가능 여부	금액
한국 내 필수보험	공제 가능	KRW 500,000/월(KRW 500,000 ×20=VND10,000,000)
본인 공제	월 900만동 공제 가능	VND 9,000,000/월
피부양자 공제	인당 월 360만동 공제 가능	VND 3,600,000/월/인
월 공제 계		VND 22,600,000

c. 2019년 6월 개인소득세 의무 확정의 세부 사항

과세소득(Net) (주택수당 미포함)	실제 주택비용	총공제액	공제후 과세소득(Net) (주택수당 미포함)	과세소득- Gross up (주택수당 미포함)	과세소득 (주택수당 포함)	과세 주택수당	주책 수당 포함한 총 과세소득(Net)	세금 계산 소득	개인소득세액	총 과세소득 (Gross)
(1)	(2)	(3)	(4)=(1)-(3)	(5)=Gross up(4)	(6)=(5)+(3)	(7)=min(15%*(6),(2))	(8)=(1)+(7)-(3)	(9)=Gross up(8)	(10)=PIT(9)	(11)=(9)+(3)
155,270,000	57,200,000	22,600,000	132,670,000	188,953,846	211,553,846	31,733,077	164,403,077	237,773,964	73,370,887	260,373,964

3. FCWT case study

유럽계 E회사는 베트남에서 본사를 둔 V회사와 베트남에서 태양광발전소 사업 계약을 체결한 상태다.

베트남에서 납부할 외국인계약자세의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지 않은 금액은 다음과 같다.

항목	세전 금액 (USD)	비고
기계, 장치	45백만	이 금액은 아래와 같이 구분된다. 미화 4,200만 상당의 기계장치, 3백만 상당의 1년 보증
설계 및 기술 등에 관한 용역	8백만	
건설 & 설치	15백만	
시공 감사	4백만	
수수료	1백만	
기술훈련	2백만	E회사는 전문인력을 파견하여 베트남에서 훈련을 진행한다.
합계	75백만	

요구사항: 외국인계약자세는 다음과 같이 원천징수법(Deem method)에 의해 산출된다고 가정

1. 당사자 간 협의하에 계약서에는 항목별로 나누어 금액을 기재하기로 한 경우 외국인계약자세를 계산하시오.
2. 당사자 간 협의하에 계약서에는 총합계 금액만을 기재하기로 한 경우 외국인계약자세를 계산하시오.

답변:

(단위: 백만USD)

순서	항목	세전 금액	외국인계약자세(CIT)			외국인계약자세(VAT)			합계
			과세수입 Gross-up	세율	세액	과세수입	세율	세액	
[1]	[2]	[3]	$[4]=[3]/(1-[5])$	[5]	$[6]=[4]*[5]$	$[7]=[4]/(1-[8])$	[8]	$[9]=[7]*[8]$	$[10]=[6]+[9]$
I. 항목별로 나눈 경우									
1	기계, 장치	42.00	42.42	1%	0.42			-	0.42
2	설계 및 기술 등에 관한 용역	8.00	8.42	5%	0.42	8.86	5%	0.44	0.86
3	건설 & 설치	15.00	15.31	2%	0.31	15.78	3%	0.47	0.78
4	시공 감사	4.00	4.21	5%	0.21	4.43	5%	0.22	0.43
5	수수료	1.00	1.05	5%	0.05	1.11	5%	0.06	0.11

순서	항목	세전 금액	외국인계약자세(CIT)			외국인계약자세(VAT)			합계
			과세수입 Gross-up	세율	세액	과세수입	세율	세액	
6	기술훈련	2.00	2.11	5%	0.11	2.22	5%	0.11	0.22
7	보증	3.00	3.16	5%	0.16	3.32	5%	0.17	0.32
	합계	75.00	76.68		1.68	35.72		1.47	3.15
II. 합계 금액으로 계약한 경우									
	계약의 총금액	75.00	76.53	2%	1.53	78.90	3%	2.37	3.90
	합계	75.00	76.53		1.53	78.90		2.37	

4. 관세 실제사례

2019년 10월 1일 S사는 베트남에서 J사와 일본에서 UV쿨링 기술로 생산된 1,000㎡의 원단 대상으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제품의 세율이 5%이다). 계약서상 S사는 해당 원단에 관한 사용권의 양도계약을 체결하며 J사의 본사인 A사에게 사용권에 대한 비용을 지급하기로 하였다.

S사는 J사에게서 제품을 받아 매매계약서에 의하여 J사에게 대금을 지불하였으며 동시에 S사는 양도계약서에 의하여 A사에게도 사용권 비용을 지불하였다.

사용권 비용은 판매된 ㎡당 순판매가의 0.9%로 계산된다. 사용권 비용은 월말에 지불된다.

2019년 11월 31일까지 이 회사에서 ㎡당 40만동의 가격으로 800㎡의 원단을 시장에 판매하였다.

요구사항

위 내용에 따를 경우 (만약 있다면) 추가 납부 수입세를 계산하라. 수입시점에 사용권에 대한비용이 포함되지 않은 수입가치를 신고한 것으로 가정한다.

답변:

- 39/2015/TT-BTC호 시행규칙의 제14조를 수정하는 인 60/2019/TT-BTC호 시행규칙 제1조 8항에 의하여 해당 경우의 관세가치는 최초 수입 시의 과세 가치(화물의 가치)와 사용권 비용이 포함된다.

- 해당 경우의 사용권 비용은 사용권 계약서상 규정된 매출액에 대한 비율로 산정된다.
- 사용권 비용은 수입 시점 이후 확정되기 때문에 수입 시점에는 회사에서 임시 추정액을 신고하여 사용권을 포함하고 있다는 내용을 기재하고 차후 규정에 의하여 신고서를 정정신고한다.

$$\begin{aligned}\text{추가 납부 수입세} &= \text{사용권 비용 비율} \times \text{단가} \times \text{판매수량} \times \text{원단의 세율} \\ &= 0.9\% \times 400,000 \times 800 \times 5\% \\ &= 144,000,000\text{동}\end{aligned}$$

(비고: 사용권(Royalty)의 경우에는 VAT가 부과되지 않음)

부록 2: Useful websites

1. Websites of taxation and customs authorities:

- General Department of Taxation: <http://www.gdt.gov.vn/wps/portal>
- General Department of Customs: <http://customs.gov.vn>

2. Websites of relevant Vietnamese authority

- Ministry of Finance: <http://www.mof.gov.vn>
- Ministry of Planning and Investment: <http://www.mpi.gov.vn/>
- Foreign Investment Agency - Ministry of Planning and Investment:
<http://fia.mpi.gov.vn/Home/en>
- Ministry of Industry and Trade: <http://www.moit.gov.vn>
- State Bank of Vietnam: <http://www.sbv.gov.vn>
- Vietnam Chamber of Commerce and Industry <http://www.vcci.com.vn>
- General Statistics Office: <http://www.gso.gov.vn>

3. Others:

- Vietnam Association of Financial Investors: <http://vafi.org.vn/2006/index.php>
- National Business Registration Portal:
<https://dangkykinhdoanh.gov.vn/en/Pages/default.aspx>
- Enterprise Information Portal: <http://business.gov.vn/>

4. Websites for reference regulations in English:

- <https://thuvienphapluat.vn/>
- <https://luatvietnam.vn/>

신흥국의 세정연구 베트남

발행	2019년 12월
발행인	김유찬
발행처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주소	30147 세종특별자치시 시청대로 336
전화	TEL: (044)414-2114(代)
홈페이지	www.kipf.re.kr
등록	1993. 7. 15. 제2014-24호
조판및인쇄	(주)프리비
I S B N	978-89-8191-713-5

© 한국조세재정연구원 2019

* 잘못 만들어진 책은 바꾸어 드립니다.

